

연구보고서 2021-24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공·사적이전의 변화와 대응방안

황남희
이원진·진화영·이상협·안서연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진화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이상협	하와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안서연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 2021-24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공·사적이전의 변화와 대응방안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주)삼일기획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ISBN 978-89-6827-821-1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1.24>

발|간|사

한국은 2020년, 인구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발생하며 인구의 자연 감소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8년에 5,194만 1,946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 변동은 초저출산 현상의 지속과 베이비붐 세대의 단계적 고령인구 진입과 맞물려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으로 고령인구의 부양 부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인구구조 고령화가 야기하는 고령인구 부양에 관한 부담 문제는 한국의 가족 부양의식 변화와 관련 있다. 지난 약 10년간 한국 사회에서 부모 부양은 '가족, 정부, 사회'가 함께 담당해야 한다는 견해가 40%대 이상으로 가장 높았는데, 특히 2020년에는 61.6%로 나타나 가족과 더불어 정부, 사회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에 반해 '가족'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2년 33.2%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20년 22.0%로 나타났다(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이처럼 가족 간 사적이전을 통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줄어드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효'라는 전통적 가치에 의존하여 가족의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여준다.

정부는 1인 1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해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가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재 고령층은 공적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충분한 노후소득을 연금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기준 고령층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53.1%로 절반에 가까운 고령층은 공적연금을 수급하지 못한다.

한편 고령층의 공적이전과 사적이전 실태는 정부의 소득이전 정책의 효과나 부양 부담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고령층 가구의 공적이전이 늘어나는 만큼 사적이전이 줄어드는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t)가 발생한다면 정부의 공적 개입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및 빈곤 완화 효과는 감소하며, 고령가구의 소득보장을 단순히 가족에서 국가로 이전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공적이전과 사적이전 간에 구축 효과가 없거나 크지 않다면 공적이전 정책은 고령층의 후생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전승훈, 박승준, 2012, p.64; 금종예, 금현섭, 2018, p.26).

이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복지제도의 발전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한국에서 고령층의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관계를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공적이전 정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하였다.

이 연구는 황남희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본 원의 이원진 부연구위원, 진화영 연구원이 연구진으로 참여하였으며, 하와이대학교 경제학과 이상협 교수와 국민연금연구원 안서연 부연구위원이 외부 연구진으로 집필에 참여하였다. 모든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유익한 의견을 주신 본 원의 김경래 부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정지운 연구위원, 그리고 익명의 평가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적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202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7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21
제1절 인구구조 고령화와 고령층 부양	23
제2절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관계	33
제3절 소결	41
제3장 공·사적이전에 관한 거시적 접근: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하여	45
제1절 분석 배경과 목적	47
제2절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49
제3절 한국의 공·사적이전 실태와 변화	55
제4절 부양체계의 국제비교	98
제5절 소결	118
제4장 공·사적이전에 관한 미시적 접근: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121
제1절 분석 배경	123
제2절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124
제3절 연령집단별 공·사적이전 실태와 변화	131

제4절 고령층의 공·사적이전 실태와 변화	147
제5절 소결	164
제5장 고령층 공·사적이전 변화에 관한 국제비교: LIS를 이용하여	167
제1절 분석자료 및 분석전략	169
제2절 고령층의 공·사적이전 실태 국제비교	175
제3절 고령층의 공·사적이전 변화 추이 국제비교	189
제4절 소결	199
제6장 결론	203
제1절 요약	205
제2절 정책 대응방안	208
참고문헌	227
부록	241
[부록 1]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분석 결과표	241
[부록 2] LIS를 이용한 분석 결과표	255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1-1〉 전년 대비 인구증감: 2011~2020년	11
〈표 2-1〉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27
〈표 2-2〉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	28
〈표 2-3〉 고령층의 연금 수급권 구조 및 급여수준	30
〈표 2-4〉 고령층의 개인소득 및 구성비 추이	31
〈표 2-5〉 고령가구의 소득 및 구성비 추이	32
〈표 2-6〉 사적이전의 동기	37
〈표 2-7〉 공·사적이전 소득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40
〈표 3-1〉 부양체계 간 구축 효과 분석대상 국가 및 자료 연도	53
〈표 3-2〉 소득수준별 분석대상 국가 및 자료 연도	54
〈표 3-3〉 생애주기적자 기간	62
〈표 3-4〉 연령집단별 생애주기적자 규모와 연평균 증가율 추이(총량 기준)	63
〈표 3-5〉 분석연도 연령집단별 인구 규모 및 구성비	65
〈표 3-6〉 세부 연령집단별 생애주기적자 규모와 연평균 증가율 추이(총량 기준)	68
〈표 3-7〉 분석연도 세부 연령집단별 인구 규모 및 구성비	70
〈표 3-8〉 세부 연령집단별 생애주기적자 규모와 연평균 증가율 추이(1인당 기준)	72
〈표 3-9〉 연령집단별 및 부문별 연령재배분 규모와 연평균 증가율 추이(총량 기준)	75
〈표 3-10〉 세부 연령집단별 및 부문별 연령재배분 규모와 연평균 증가율 추이 (총량 기준)	77
〈표 3-11〉 세부 연령집단별 및 부문별 연령재배분 규모와 연평균 증가율 추이 (1인당 기준)	79
〈표 3-12〉 연령집단별 및 구성 항목별 연령재배분 규모와 연평균 증가율 추이 (총량 기준)	82
〈표 3-13〉 세부 연령집단별 및 구성 항목별 연령재배분 규모와 연평균 증가율 추이 (총량 기준)	84
〈표 3-14〉 세부 연령집단별 및 구성 항목별 연령재배분 규모와 연평균 증가율 추이 (1인당 기준)	86

〈표 3-15〉 고령층의 공공이전과 민간이전 추이(총량 기준)	89
〈표 3-16〉 고령층의 공공이전과 민간이전 추이(1인당 기준)	92
〈표 3-17〉 65세 이상 고령층 부양체계의 구성비	95
〈표 3-18〉 후기고령층 부양체계의 구성비	96
〈표 3-19〉 0~19세 유소년층의 부양체계	100
〈표 3-20〉 65세 이상 고령층의 부양체계	102
〈표 3-21〉 고령층 부양체계 간 상관관계	117
〈표 3-22〉 아시아 지역 여부별 부양체계 간 상관관계	118
〈표 4-1〉 소득 정의	127
〈표 4-2〉 2019년 연령집단별 사적이전 및 공적이전 평균	135
〈표 4-3〉 2019년 일차소득분위별 사적이전 및 공적이전 평균	139
〈표 4-4〉 2011년/2016년/2019년 연령집단별 순사적이전 및 순공적이전 평균	142
〈표 4-5〉 2011년/2016년/2019년 일차소득분위별 순사적이전 및 순공적이전 평균	143
〈표 4-6〉 2011년/2016년/2019년 연령집단별 빈곤율 감소 효과	146
〈표 4-7〉 65세 이상 고령층의 하위집단별 빈곤율	162
〈표 4-8〉 65세 이상 고령층의 하위집단별 빈곤율 감소 효과	163
〈표 5-1〉 국가별 분석연도	173
〈표 5-2〉 노인빈곤율과 공·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	182
〈표 5-3〉 OECD 주요국의 가구 유형별 노인의 소득구성 변화	191
〈표 5-4〉 OECD 주요국 노인의 소득분위별 소득구성: 1분위와 5분위	194
〈표 5-5〉 아시아 주요국의 가구 유형별 노인의 소득구성 변화	196
〈표 5-6〉 아시아 주요국의 소득분위별 노인 소득구성: 1분위와 5분위	197
〈표 5-7〉 한국 노인의 소득분위별 소득구성: 1분위와 5분위	199
〈표 6-1〉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214
〈표 6-2〉 지역별 주택연금 이용 현황	218
〈표 6-3〉 국민연금 가입 추이	220
〈표 6-4〉 퇴직연금 가입 현황(근로자 기준)	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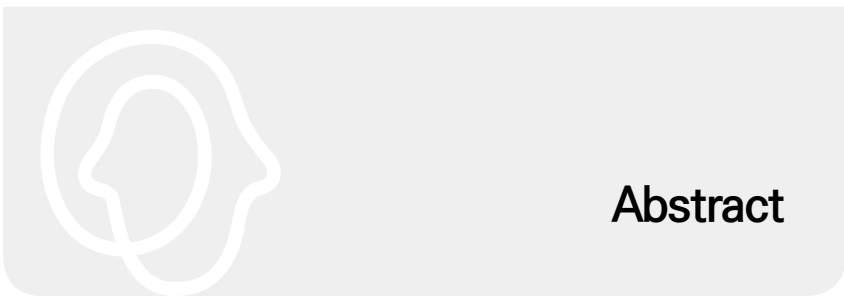
〈부표 4-1〉 가치분소득 중윗값	241
〈부표 4-2〉 사적이전소득 및 사적이전지출 평균	242
〈부표 4-3〉 연령집단별 비율	243
〈부표 4-4〉 2019년 연령집단별 소득 평균	244
〈부표 4-5〉 일차소득분위별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	245
〈부표 4-6〉 2019년 일차소득분위별 소득 평균	246
〈부표 4-7〉 65세 이상 고령층의 특성	247
〈부표 4-8〉 65세 이상 고령층의 사적이전 및 공적이전 평균	248
〈부표 4-9〉 65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 평균	249
〈부표 4-10〉 65세 이상 고령층의 하위집단별 순사적이전 및 순공적이전 평균	250
〈부표 4-11〉 65세 이상 고령층의 하위집단별 일차소득 및 가치분소득 평균	252
〈부표 4-12〉 65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율	254
〈부표 5-1〉 OECD 주요국의 노인 소득 항목별 평균 금액	255
〈부표 5-2〉 한국의 자녀가구주 동거 형태에 따른 소득 항목별 평균 금액 (2006년, 2008년, 2014년, 2016년)	256
〈부표 5-3〉 가구 유형별 비율	256

그림 목차

[그림 1-1] 복지국가에서 공적 이전의 소비 평탄화 효과(이념형적 모델)	13
[그림 1-2] 한국의 생애주기적자와 연령재배분(2017년)	14
[그림 1-3] 연구구성 및 내용	20
[그림 2-1] 연령별 인구구조 및 구성비	24
[그림 2-2]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1순위	25
[그림 3-1] 국민이전계정 구조	50
[그림 3-2] 연령별 1인당 생애주기적자 및 연령재배분 구성 항목 비교	57
[그림 3-3] 연령별 총량 생애주기적자 및 연령재배분 구성 항목 비교	58
[그림 3-4] 연령별 1인당 소비 원천 비교	60
[그림 3-5] 연령별 총량 소비 원천 비교	61
[그림 3-6] 연령집단별 생애주기적자 규모 및 연평균 증가율(총량 기준)	63
[그림 3-7] 분석연도 연령집단별 인구 구성비	65
[그림 3-8] 세부 연령집단별 생애주기적자 규모 및 연평균 증가율(총량 기준)	69
[그림 3-9] 분석연도 세부 연령집단별 인구 구성비	70
[그림 3-10] 세부 연령집단별 생애주기적자 규모 및 연평균 증가율(1인당 기준)	73
[그림 3-11] 고령층의 공공이전과 민간이전 추이(총량 기준)	90
[그림 3-12] 고령층의 공공이전과 민간이전 추이(1인당 기준)	93
[그림 3-13] 65세 이상 고령층 부양체계의 변화 궤적	95
[그림 3-14] 후고령층 부양체계의 변화 궤적	97
[그림 3-15] 0~19세 유소년층의 부양체계	99
[그림 3-16] 65세 이상 고령층의 부양체계	102
[그림 3-17] 공공이전 유입, 유출, 순유입(전 세계 평균)	104
[그림 3-18] 국가 소득수준별 공공이전 순유입	106
[그림 3-19] 국가 소득수준별 공공이전 유입, 유출, 순유입	108
[그림 3-20] 지역별 공공이전 유입, 유출, 순유입	109
[그림 3-21] 민간이전 유입, 유출, 순유입(전 세계 평균)	111
[그림 3-22] 국가 소득수준별 민간이전 순유입	112



[그림 3-23] 국가 소득수준별 민간이전 유입, 유출, 순유입	114
[그림 3-24] 지역별 민간이전 유입, 유출, 순유입	116
[그림 4-1] 가처분소득 중위값	125
[그림 4-2] 사적이전소득 및 사적이전지출 평균	130
[그림 4-3] 연령집단별 비율: 2011~2019년	132
[그림 4-3] 2019년 연령집단별 소득 평균	138
[그림 4-4] 2019년 일차소득분위별 소득 평균	140
[그림 4-5] 65세 이상 고령층의 특성: 2011~2019년	149
[그림 4-6] 65세 이상 고령층의 사적이전 및 공적이전 평균	152
[그림 4-7] 65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 평균	153
[그림 4-8] 65세 이상 고령층의 하위집단별 순사적이전 및 순공적이전 평균	156
[그림 4-9] 65세 이상 고령층의 하위집단별 일차소득 및 가처분소득 평균	157
[그림 4-10] 65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율: 2011~2019년	158
[그림 5-1] OECD 주요국 노인의 평균 총소득 규모(연간 기준)	177
[그림 5-2] 한국 노인의 소득수준	179
[그림 5-3] 전체 및 가구 유형별 노인빈곤율	181
[그림 5-4] 핵심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의 평균/중위소득 수준	184
[그림 5-5] 한국 노인의 소득구성 변화	185
[그림 5-6] 전체 노인의 소득구성비	187
[그림 5-7] 가구 유형별 노인의 소득구성비	188
[그림 6-1]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213
[그림 6-2] 주택연금 가입자 수: 2006~2022년	218



Abstract

Changes in Public Transfer and Private Transfer due to Population Aging, and Countermeasures

Project Head: Namhui, Hw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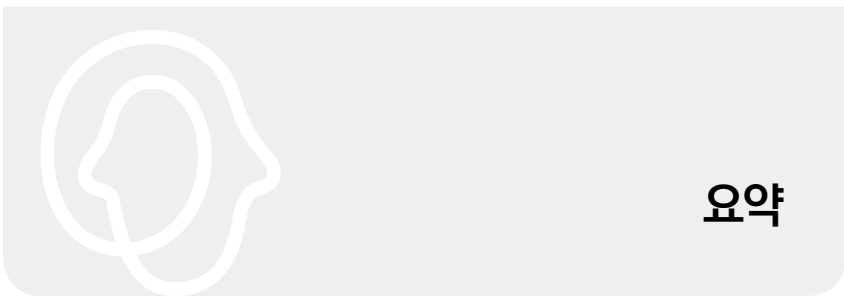
As Korea is experiencing the phenomenon of low birthrate and aging at the same time together with development of the welfare system, this study comprehensively examined using various data whether increase of the public transfer income of the elderly causes any changes in the private transfer income. Based on this, the countermeasures were sought against the burden of support increment due to the increase of the elderly population in future.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we analyzed the status and changes of public and private transfers by using the National Transfer Account, Household Financial Welfare Survey, and Luxembourg Income Study. We could confirm that there was an altern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ransfers.

Based on the results, the research team would suggest the ways for improvement of old-age income security policies such as public and private pensions.

Keyword : public transfer, private transfer, crowding-out effect, substitution effect, old-age income security

Co-Researchers: Wonjin, Lee · Hwayoung, Chin · Sang-hyop, Lee · Seoyeon, Ahn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은 2020년, 인구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발생하며 인구의 자연 감소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8년에 5,194만 1,946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 변동은 초저출산 현상의 지속과 베이비붐 세대의 단계적 고령인구 진입과 맞물려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으로 고령인구의 부양 부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복지제도의 발전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한국에서 고령층의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공적이전 정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한 거시적 접근과 함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LIS 등을 이용한 미시적 접근을 통해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실태와 변화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거시적 접근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 더 넓은 의미의 공·사적이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장점이 있으며, 미시적 접근은 개인의 이질성 등을 고려하여 실제 개인들이 느낄 수 있는 수준에서 공·사적이전의 관계를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2. 주요 연구 결과

Cox(1987)의 사적소득이전의 동기에 관한 선구적 연구 이후 가족 간

4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공·사적이전의 변화와 대응방안

사적이전의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공·사적이전의 대체 관계를 실증하는 연구가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나 합의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다만 최근 연구에서 공·사적이전의 대체 관계가 약화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배성우, 손지아, 박순미, 2008; 전승훈, 박승준, 2011; 전승훈, 박승준, 2012; 이정화, 문상호, 2014; 황남희, 이상협, 양찬미, 2014; 박종선, 정세은, 2020; 최유성, 황남희, 2020).

공·사적이전에 관한 거시적 분석에서 한국의 유년층은 부양 재원으로 사적이전의 역할이 큰 반면, 고령층은 공적이전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최근으로 오면서 고령층의 공적이전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노인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른 효과로 보인다. 고령층 부양체계의 변화 궤적을 살펴보고 공공이전의 증가(2010년 47.3% → 2017년 68.1%)와 민간이전의 감소(2010년 16.3% → 2017년 15.1%)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즉 최근 한국 고령층의 부양체계에서 공·사적이전의 대체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38개국의 국민이전계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층을 부양하는 재원으로 사적이전은 아시아적 특성으로 유럽과 미주,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공적이전은 국가의 경제적 특성, 즉 소득수준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상대적으로 고소득 국가의 고령층 노후소득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공·사적이전에 관한 미시적 접근으로 2011~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 최근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발전에 따라 공적이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커지고 있으나(2011년 181만 원 → 2019년 493만 원) 사적이전은 완만하게 약화하고 있었다(2011년 99만 원 → 2019년 64만 원). 따라서 국민이전계정(가구 간 이전 + 가구 내 이전)보다 사적이전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 간 이전)에

서도 고령층의 노후소득으로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대체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한국의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 생산자료라는 점에서 고령층의 빈곤율을 살펴보았다. 최근 공적이전 정책의 확대로 인해 고령층의 빈곤율은 2011년 49.2%에서 2019년 41.6%로 감소하였지만, 빈곤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즉 최근 약 10년간 고령층의 노후소득원에서 공적이전은 사적이전의 감소 폭보다 더 크게 증가하였지만, 한국 고령층의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역부족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인 자녀는 사적이전이라는 가구 간 이전 행위뿐만 아니라 동거라는 가구 내 이전 행위를 통해 노부모를 부양한다는 점에서(이원진, 2018, pp.3-4), 자녀동거 여부에 따른 고령층의 빈곤율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녀동거는 고령층의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으로 오면서 고령층이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고령층의 빈곤율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LIS 분석에서도 한국의 경우 2006년과 2016년 사이의 짧은 기간 중 기초연금 중심의 공적연금 확대기에 사적이전이 감소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대체효과로 해석된다.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유사하게 고령층의 빈곤은 높은 수준이며, 자녀와 동거하는 고령가구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 향후 고령층의 빈곤 수준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층의 소득구성을 분석한 12개국의 LIS 국제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적연금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아시아권 국가(일본 제외)에서 고령층의 소득구성은 OECD 국가의 소득구성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데, 노동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비율은 높지만 연금소득과 연금 제외 공적이전소

득의 비율이 매우 낮았다. 반면 비아시아권(일본 포함) 국가는 연금소득의 구성비가 높지만, 근로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 특히 비아시아권 내 OECD 선진국의 경우 이미 1970년대 후반이나 1980년대 초반부터 공적연금제도의 성숙도가 높아서,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사적이전소득이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시아 및 비아시아권 12개국은 공통적으로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고령층의 노동소득 구성비가 높아 가구 내 이전을 통한 부양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고령층이 자녀와 함께 살면 자녀의 노동소득을 경제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즉 고령층의 가구 형태가 1인 혹은 부부가구 중심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노후소득원으로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관계를 분석할 때, 사적이전의 범위는 가구 간 이전에 국한하기보다 가구 내 이전을 포함하여야 현실을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생애주기별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실태, 특히 고령층의 공·사적이전의 실태와 변화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한국 고령층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분석자료와 분석 시점에 상관없이 한국 고령층의 공적이전은 증가 추세인 반면 사적이전은 감소 추세로 일관된 결과를 보여줘 공·사적이전의 대체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사적이전의 대체 관계는 복지제도가 발전하지 않은 아시아권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특성이며, 향후 복지제도가 성숙하는 과정에서 고령층의 부양 재원으로 사적이전의 역할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 고령층의 소득수준은 한국 내에서 다른 연령집단과 비교하여 낮고,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OECD 회원국 내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가난한 고령층의 부양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진은 가족 부양의식의 약화와 노부모에게 사적이전이 감소하는 가운데 높은 노인빈곤율을 경험하는 한국에서,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방향성은 첫째, 빈곤 노인 대상 소득보장 지원 강화, 둘째,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소득보장정책은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현세대 노인 대상 노후소득보장 지원방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도, 주택연금제도를, 그리고 아직 연금소득을 준비할 수 있는 미래 세대 노인 대상 노후소득보장 지원방안으로 국민연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짚어보았다.

주요 용어: 공적이전, 사적이전, 구축 관계, 대체 관계, 노후소득보장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은 2019년 전체 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이 14.9%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6년 후인 2025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3%로 증가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인구구조 고령화의 진전은 지속되어 2067년에는 전체 인구 2명 중 1명(46.5%)이 고령인구인 사회로 전망된다. 세계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19년 9.1%에서 2067년 18.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는 점에서 현재 한국의 인구구조 고령화 진전 수준은 세계적으로 높으며, 향후 한국의 인구구조 고령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19.9.2., p.2).

이러한 한국의 빠른 인구구조 고령화는 2020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으로 인해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에 의하면, 2020년 말 주민등록인구는 5,183만 명으로 2019년에 비해 약 2만 명이 감소하여 한국 역사상 처음 인구 감소를 기록하였다(행정안전부, 2021.1.4.).

〈표 1-1〉 전년 대비 인구증감: 2011~2020년

(단위: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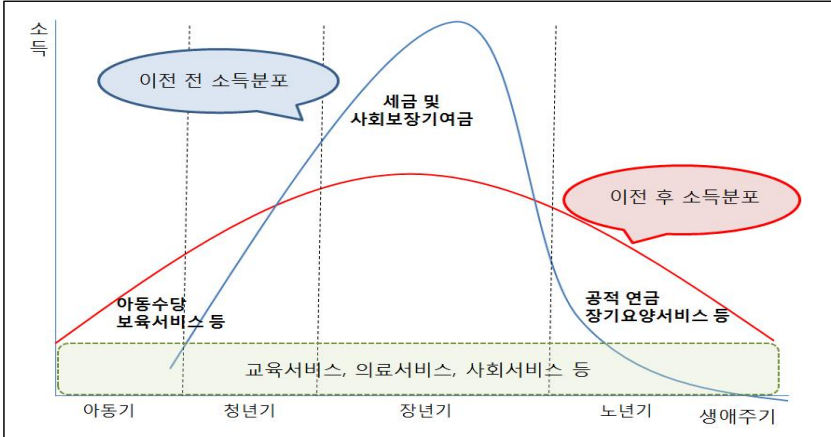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구 증감	22	21	19	19	20	17	8	5	2	△2.1

자료: 행정안전부. (2021.1.4.), 사상 첫 인구감소, 세대수는 사상 최대. 행정안전부 주민과 보도자료. p.4.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82058 (2021.6.28. 인출)

인구구조 고령화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사회적 부양 부담을 증가시키고 사회 전반의 활력을 낮춘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려하는 사회 현상이다. 인구구조 고령화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부터 발생하는 세입을 감소시키고,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연금이나 보건 등 사회지출과 복지비용을 증가시켜 재정부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인구구조 고령화는 노동공급 및 노동생산성의 하락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총수요와 저축,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관계부처 합동, 2020, p.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조사에 의하면, 한국 성인의 91.2%는 고령인구 증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82.1%는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젊은 사람들의 부양 부담이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이윤경 외, 2020b, p.112, p.314).

이와 같은 인구구조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은 [그림 1-1]과 같이 상당 부분 노령 위험에 대응한 복지제도와 관련 있다. 복지국가는 실업, 질병, 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안정의 기제”(mechanism of security)”이며(Garland, 2014, p.340; 여유진, 남찬섭, 조한나, 2018, p.218에서 재인용), 특히 노령 위험에 대한 대비는 청·장년기 근로활동을 통해 획득한 소득을 은퇴한 노년기로 이전(transfer)하여 소비를 평탄화(smoothing of consumption)하는 것이다(여유진 외, 2018, p.218-219).

[그림 1-1] 복지국가에서 공적 이전의 소비 평탄화 효과(이념형적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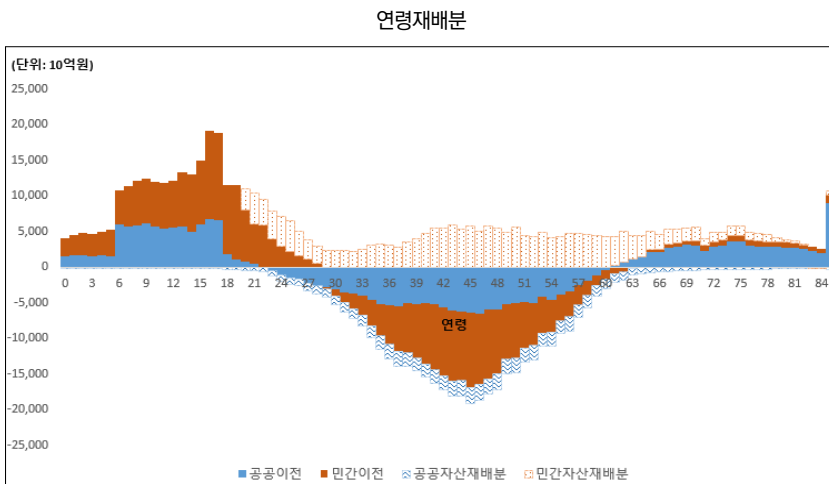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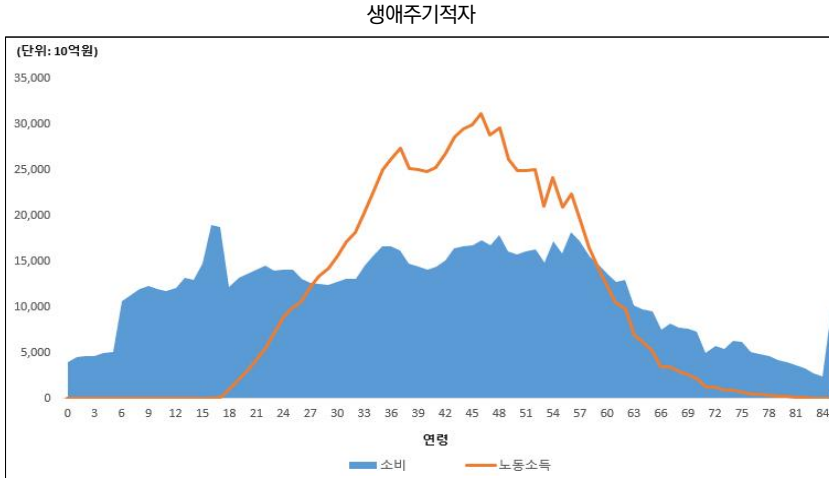
자료: 여유진, 남찬섭, 조한나. (2018).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복지국가의 역사적·철학적 기반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19. [그림 7-1] 재인용

한국 통계청은 복지국가의 공적이전 소비 평탄화 효과를 국민계정에 기반하여 측정한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s)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이전계정은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연령 간 경제적 자원 배분 및 재배분 흐름에 대한 계량지표”(통계청, 2019.1.22., p.1)이다. 2017년 국민이전계정 분석 결과에 의하면, 유소년층(0~14세)과 고령층(65세 이상)의 경우 소득보다 소비가 더 많은 생애주기적자 상태로 각각 135.7조 원과 94.6조 원을 기록하였다. 반면 생산연령층(15~64세)의 경우 소득보다 소비가 적은 생애주기흑자 상태로 112.1조 원(생애주기적자 -112.1조 원)이었다(통계청, 2020.12.7., p.2). 이러한 부양대상 인구의 생애주기흑자는 주로 생산연령층으로부터의 이전(transfer)에 의해 충당되는데, 상대적으로 유소년층은 사적이전(private transfer), 고령층은 공적이전(public transfer)의 규모가 크다. 인구구조 고령화는 고령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공적이전의 확대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14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공·사적이전의 변화와 대응방안

[그림 1-2] 한국의 생애주기적자와 연령재배분(2017년)

(단위: 세, 10억 원/년)



- 자료: 1) 통계청. (2021c). 국가통계포털-국민이전계정: 생애주기적자계정(국가총액규모).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outLink=Y&entrType=#content-group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2021.2.28. 인출)
- 2) 통계청. (2021d). 국가통계포털-국민이전계정: 연령재배분계정(국가총액규모).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outLink=Y&entrType=#content-group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2021.2.28. 인출)

한국은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서구 선진국에 비해 노령 위험에 대응한 복지제도의 도입이 늦었으며, 전통적인 가족문화에 의해 고령의 부모는 성인 자녀로부터 부양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였다. 이와 같이 한국은 사적이전이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발생하는 공적이전보다 큰 규모로 발생하여, 선진국에 비해 복지 발전이 더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황남희 외, 2014, p.22). 그러나 가족 부양의식의 변화로 한국 고령층의 노후소득원에서 사적이전의 역할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전승훈, 박승준, 2012; 황남희 외, 2014; 이원진, 2018). 2020년 사회조사에 의하면, 부모의 노후를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돌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2012년 48.7%에서 2020년 61.6%로 12.9%p 증가한 반면, 가족이라는 응답은 같은 기간 33.2%에서 22.0%로 11.2%p 감소하였다(통계청, 2020.11.18., p.9).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어 노인 복지정책이 크게 확대되고, 주요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고령층의 노후소득원으로 공적이전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령층에서 보이는 공적이전의 역할 확대는 사적이전의 역할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2000~2011년 동안 한국 고령층의 노후소득원으로 공적이전이 크게 증가한 반면, 사적이전소득은 소폭 증가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밝혀지고 있다(황남희 외, 2014).

한편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관계는 정부의 공적이전 정책의 효과나 공적이전 정책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고령층 가구의 공적이전이 늘어나는 만큼 사적이전이 줄어드는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t)가 발생한다면 가구의 후생 수준은 증가하지 않아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만일 공적이전이 사적이전을 완전히 구축한다면 정책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 있

다. 그러나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구축 효과가 없다면 정책은 고령층 후생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전승훈, 박승준, 2012, p.64; 김종예, 금현섭, 2018, p.26).

이러한 배경하에 이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복지제도의 발전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한국에서 고령층의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후,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공적이전 정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진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한 거시적 접근과 함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LIS 등을 이용한 미시적 접근을 통해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변화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거시적 접근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 더 넓은 의미의 공·사적이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장점이 있으며, 미시적 접근은 개인의 이질성 등을 고려하여 실제 개인들이 느낄 수 있는 수준에서 공·사적이전의 관계를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한편 거시적 접근에서 공적이전은 기초연금, 공적연금과 더불어 건강 및 돌봄 정책 등의 현금 및 현물 수혜금을 모두 포함하며, 사적이전은 가구 간 이전(inter household transfer)과 더불어 가구 내 이전(intra household transfer)을 포함한다(황남희 외, 2014). 그러나 미시적 접근은 활용하는 자료 특성상 공적이전의 경우 기초연금과 공적연금 등 현금 수당과 의료 혜택이나 바우처 등 일부 현물 지원을, 사적이전의 경우 가구 간에 발생하는 이전만을 의미한다(전승훈, 박승준, 2012). 이처럼 공·사적이전의 관계를 분석할 때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범위 차이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공·사적이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이차자료 분석, 전문가 자문, 정책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는 정부의 행정자료와 통계연보, 학술연구지와 보고서, 홈페이지 자료 등을 활용하여 인구구조 고령화 현황을 살펴보고, 인구구조 고령화가 야기하는 고령인구 부양 부담 이슈에 대한 성인 자녀 세대와 노부모 세대의 가족 부양의식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또한 현재 고령층의 소득수준과 소득구성의 특성과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전소득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 짚어본 후,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관계를 규명한 국내외 기존 연구를 검토하였다.

이차자료 분석은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총 3개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첫째, 거시적 접근을 위해 통계청의 2010~2017년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하여 한국 국민의 전체 연령집단별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비교 분석하며, 고령층의 연령집단을 세분화하여 공·사적이전의 변화와 특성을 파악하였다. 국민이전계정 홈페이지에서 공식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38개국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고령층의 부양체계와 공·사적이전 특성에 대한 국제비교를 실시하였다.

국민이전계정은 한국은행이 생산하는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에서 도출되는 대표적인 거시경제지표인 1인당 GDP, 경제성장률은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한 연령별 및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론이자 자료이며, 한국의 통계청은 전 세계 최초로 2019년부터 국가 주도적으로 국민이전계정 자료를 구축·관리하고 있다. 2013년 UN Population Division의 지원으로

국제 표준의 국민이전계정 매뉴얼이 개발되었으며, 2019년 기준으로 한국, 미국, 호주 등을 포함하여 54개국의 대학, 연구소, 정부기관 등에서 국민이전계정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만이 국민이전계정을 국가 승인통계로 지정하여, 정부 차원에서 작성·공표하고 있다(통계청, 2019.1.22., p.95).

둘째, 미시적 접근으로 국내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의 2011~2019년(소득 연도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였다.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연령집단별 공·사적이전 실태를 살펴본 후 고령층의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특히 고령층의 공·사적이전 변화에 따른 빈곤 수준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 이유는 정책적 관점에서 고령층의 공·사적이전 및 소득 분포에 대한 분석은 결국 한국의 심각한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와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거시적 접근 자료인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한 분석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소득, 연령, 가구 유형을 기준으로 하위집단을 구분하여 고령층의 공·사적이전의 실태를 분석하였다.¹⁾ 참고로 연구진은 미시적 분석을 위한 국내 소득자료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하였다. 국가 차원에서 소득 관련 지표는 과거 가계동향조사를 주로 활용하였으나, 최근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국제 소득분배지표를 작성·공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확정하였다.

마지막으로, OECD 및 아시아 주요국 고령층의 공·사적이전의 수준과 추이를 미시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기 위해 룩셈부르크 소득조사(Luxembourg Income Study, 이하 LIS)를 이용하였다. 분석대상 국가는 유럽

1) 국민이전계정은 국민 전체의 평균적인 소득수준을 연령집단별로 보여준다. 따라서 개인 단위의 이질성을 고려할 수 없다.

국가의 경우 북유럽의 노르웨이, 중부 유럽의 오스트리아와 독일, 남부 유럽의 그리스, 서유럽의 영국을, 북미 국가의 경우 캐나다와 미국, 그리고 아시아 국가의 경우 일본과 베트남, 대만을 선정하였다. 이들 OECD 및 아시아 주요국 고령층의 공·사적이전 변화 추이와 특성, 소득계층별 분석 등을 실시하고, 한국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전문가 자문은 연구구성, 연구 결과의 해석과 시사점 도출 등 연구 전반에 걸쳐 소득보장정책과 분석 방법론 등의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차례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진은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공·사적이전에 대한 대응방안을 정책과 연결 지어 모색하기 위해 행정자료와 정책보고서, 정부의 정책 안내 홈페이지 자료 등을 이용하여 노후소득보장정책 현황을 분석하였다.

한편 이 연구는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을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공적소득이전과 사적소득이전 등의 용어와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어지는 제2장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에 의하면, 연구자 및 분석자료별로 이들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며, 공적 및 이전소득의 범위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제3장에서 활용하는 국민이전계정은 공공이전, 민간이전, 가구 간 이전, 가구 내 이전 등으로 계정 구성 항목 명칭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시 조사자료와 차이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자료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또한 이 연구는 65세 이상 연령집단에 대해 맥락에 따라 고령자와 노인, 고령층과 노년층 등의 용어와 함께 사용한다. 노인이라는 용어는 의존성, 연로 등 부정적인 이미지와 연결되고 있어 최근 고령자, 고령층 등의 용어로 대체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노인과 노년층이라는 용어도 널리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전반적인 구성과 내용은 [그림 1-3]과 같다.

20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공·사적이전의 변화와 대응방안

[그림 1-3] 연구구성 및 내용

서론	연구 필요성 및 연구내용 소개	
	연구내용	연구자료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구조 고령화 현황과 고령층 소득 특성 - 사적이전의 동기와 공·사적이전의 관계 	행정자료, 통계연보, 학술연구지 및 보고서, 홈페이지 자료 등
이차자료를 이용한 양적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시 차원에서 한국의 연령집단별 소득 수준과 소득구성 비교 - 38개 주요국 자료를 이용하여 공·사적이전 관계 분석 	국민이전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시 차원에서 한국의 연령집단별 소득 수준과 소득구성 비교 및 공·사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 파악 - 한국의 고령층의 소득, 연령, 가구 유형별의 공·사적이전 특성 	가계금융복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시 차원에서 OECD 주요국 및 아시아 고령층의 소득 변화 추이와 특성 - 한국 고령층과 비교한 공·사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와 구축 관계 	룩셈부르크 소득조사(LIS)
정책 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소득보장 관련 정책 현황과 문제점 파악 	행정자료, 정책보고서, 홈페이지 자료 등
결론	고령층 부양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자료: 연구진 작성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인구구조 고령화와 고령층 부양

제2절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관계

제3절 소결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인구구조 고령화와 고령층 부양

1. 인구구조 고령화 현황과 국민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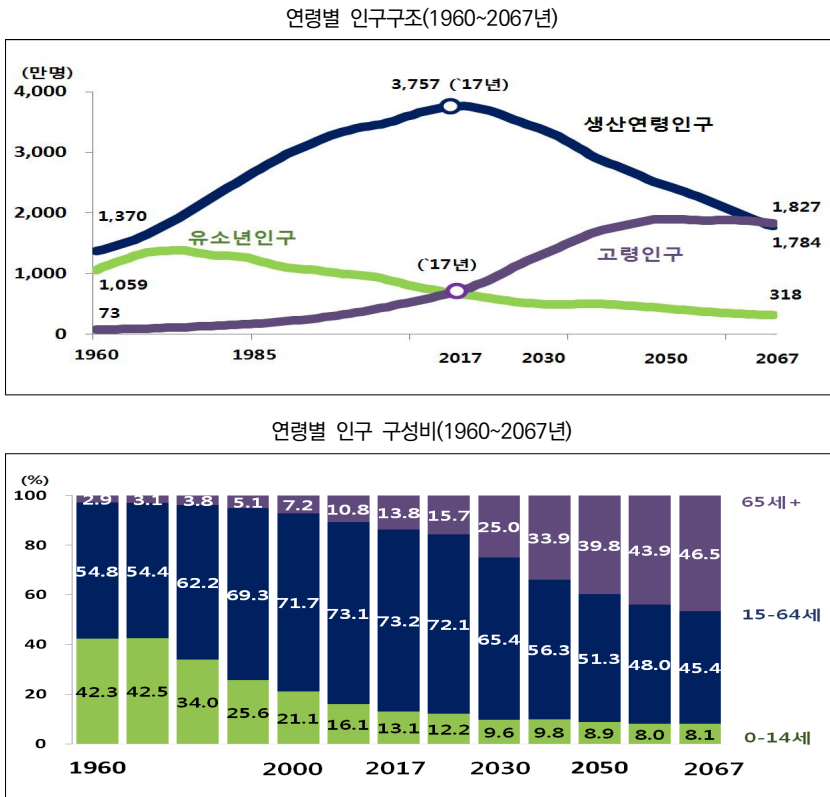
우해봉(2021)은 한국 사회는 인구구조 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본격적으로 인구 감소를 경험하는 인구학적 전환기에 직면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한국은 2020년, 인구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 수(30만 4,948명)가 출생아 수(27만 2,337명)를 초과하는 ‘인구 테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나타나는 등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의 자연 감소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총인구는 2028년 5,194만 1,946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통계청, 2021f). 이러한 인구 변동은 초저출산 현상의 지속과 베이비붐 세대의 단계적 고령인구 진입과 맞물려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1983년에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약 35년간 저출산 현상이 지속·심화되어 왔으며, 급기야 2000년대 들어서서는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의 초저출산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 베이비붐 1세대인 1955년생이 고령인구로 편입되기 시작하여, 한국은 2025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1천만 명, 고령화율 20.0%의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관계부처 합동, 2020). 한국의 연령별 인구구성비를 살펴보면, 0~14세 유소년인구 비중은 2020년 12.2%에서 2040년 9.8%, 2067년 8.1%로 감소하고,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 비중 역시 2020년 72.1%에서 2040년 56.3%, 2067년 45.4%로 계속 감소

24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공·사적이전의 변화와 대응방안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0년 15.7%에서 2040년 33.9%, 2067년 46.5%로 증가하여 생산연령인구보다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그림 2-1] 연령별 인구구조 및 구성비



자료: 통계청. (2019.3.28.).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보도자료. p.2.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2/6/index.board?bmode=read&aSeq=373873 (2021.6.28. 인출)

생산연령인구 1백 명당 부양할 인구수를 의미하는 총부양비는 2020년 38.6명에서 2040년 77.5명, 2067년 120.2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

처럼 인구구조 고령화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부양 부담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차원에서 노동공급과 노동생산성, 총수요와 저축·투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관계부처 합동, 2020). 즉 한국의 급격한 인구 변동은 사회 전반의 활력을 낮춘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사회현상이다.

한국인들은 인구구조 변화를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인구 변화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1순위를 조사한 결과, ‘사회보장 부담 증가’(42.2%)를 가장 우려하였으며, 그다음으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31.8%), ‘국방력 약화’(8.2%), ‘세대 간 사회갈등 증가’(6.4%),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위기’(6.2%) 등의 순이었다([그림 2-2] 참조). 감사연구원(2019)에서도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젊은 세대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져 향후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곧 인구구조 고령화는 증가하는 고령인구에 대한 생산연령인구의 부양 문제를 핵심으로 한다.

[그림 2-2]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1순위

(단위: %)



자료: 이윤경 외. (2020b).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98~99, <표 4-1> 재구성

2. 가족 부양의식의 변화

인구구조 고령화가 야기하는 고령인구 부양 부담 문제는 한국의 가족 부양의식 변화와 관련 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효 중심의 유교 문화가 강한 대가족 국가에 속하며, 집안의 장남은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의 부양을 전적으로 책임져 왔다. 그러나 한국은 고도의 경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근대적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핵가족의 보편화, 세대 간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공적연금의 도입 등을 경험하며 전통적인 노인 부양의식이 바뀌고 있다(이원진, 2013). 이와 관련하여 김유경(2016)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맞물려 가족구조와 부양환경이 변화하여 가족 부양의 사회화 경향이 뚜렷해졌다고 주장하였으며, 여유진(2019)은 각 개인이 본인의 부모를 책임지는 확대가족 내에서의 사적 부양책임 대신, 전체 근로 세대가 고령인구의 부양을 담당하는 ‘세대 간 연대의 제도화’를 통해 사회적 부양책임으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부양 가치관과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에서 엿볼 수 있다. 지난 약 10년간 한국 사회에서 부모 부양은 ‘가족, 정부, 사회’가 함께 담당해야 한다는 견해가 40%대 이상으로 가장 높았는데, 특히 2020년에는 61.6%로 나타나 가족과 더불어 정부, 사회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가족’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2년 33.2%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20년 22.0%로 나타났다(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즉 부모 부양을 ‘가족’이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은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담당해야 한다는 응답과는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가족 간 사적이전을 통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의 약화는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효’라는 전통적 가치에만 의존하여 가족의 부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한국 사

회에 고착화된 장남 중심의 가부장적인 가족의 부양 가치관과 태도는 점차 약화하고, 국가 및 사회 등 공적 부양에 대한 인식은 증가 추세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단위: %)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부모님 스스로 해결	13.9	16.6	18.6	19.4	12.9
가족	33.2	31.7	30.8	26.7	22.0
가족, 정부, 사회가 함께	48.7	47.3	45.5	48.3	61.6
정부, 사회	4.2	4.4	5.1	5.7	3.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주: 1) 사회조사는 10개 부문을 2년 주기로 진행하며, 가족에 대한 조사는 짝수 해에 진행됨.
 2) 기타 의견이 있으나 0.1% 이하여서 표에서는 생략함.
 3) 일부 수치는 반올림 값으로 하위 분류의 합이 상위 분류의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자료: 1) 통계청. (2012.12.20.). 2012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보도자료. p.11.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bmode=read&bSeq=&aSeq=269287&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2021.10.1.인출\)](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bmode=read&bSeq=&aSeq=269287&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2021.10.1.인출))
 2) 통계청. (2014.11.27.). 2014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보도자료. p.7.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bmode=read&bSeq=&aSeq=332322&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2021.10.1.인출\)](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bmode=read&bSeq=&aSeq=332322&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2021.10.1.인출))
 3) 통계청. (2016.11.15.). 2016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보도자료. p.8.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bmode=read&bSeq=&aSeq=357457&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2021.10.1.인출\)](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bmode=read&bSeq=&aSeq=357457&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2021.10.1.인출))
 4) 통계청. (2018.11.6.). 2018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보도자료. p.11.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bmode=read&bSeq=&aSeq=371501&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2021.10.1.인출\)](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bmode=read&bSeq=&aSeq=371501&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2021.10.1.인출))
 5) 통계청. (2020.11.18.). 2020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보도자료. p.9.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bmode=read&bSeq=&aSeq=386249&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2021.12.3.인출\)](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bmode=read&bSeq=&aSeq=386249&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2021.12.3.인출))

28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공·사적이전의 변화와 대응방안

〈표 2-2〉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

(단위: %)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본인 및 배우자 부담	60.1	63.6	66.6	69.9	69.9	72.5
자녀, 친척 지원	32.0	28.8	23.0	20.2	17.7	14.1
정부 및 사회단체	7.7	7.6	10.4	9.9	12.4	13.4
기타	0.2	0.0	0.0	0.0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자료: 1) 통계청. (2011.12.15.). 2011년 사회조사 결과(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보도자료. p.17.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bmode=read&aSeq=252721&pageNo=&rowNum=10&amSeq=&sTarget=&sTxt= (2021.5.20. 인출)
- 2) 통계청. (2013.12.4.). 2013년 사회조사 결과(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보도자료. p.17.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bmode=read&bSeq=&aSeq=310486&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2021.5.20. 인출)
- 3) 통계청. (2015.11.26.). 2015년 사회조사 결과(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보도자료. p.14.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bmode=read&bSeq=&aSeq=349987&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2021.5.20. 인출)
- 4) 통계청. (2017.11.7.). 2017년 사회조사 결과(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보도자료. p.10.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bmode=read&bSeq=&aSeq=364361&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2021.5.20. 인출)
- 5) 통계청. (2019.11.25.). 2019년 사회조사 결과(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보도자료. p.13.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bmode=read&bSeq=&aSeq=378876&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2021.5.20. 인출)
- 6) 통계청. (2021.11.17.). 2021년 사회조사 결과(복지·사회참여·여가·소득과 소비·노동).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보도자료. p.18.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bmode=read&bSeq=&aSeq=415115&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2021.12.24. 인출)

최근 통계청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약 73%가 자녀 및 정부의 지원에 의지하지 않고 본인의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통계청, 2021.11.17., p.18). 고령층의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에서 흥미

로운 부분은 ‘자녀나 친척 지원’이라는 응답이 2011년 32.0%에서 2015년 23.0%, 2020년 14.1%로 감소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성인 자녀들의 부모 부양에 대한 의식 약화와 더불어, 실제 고령층의 경제생활에서 ‘자녀나 친척에 대한 의존’이 최근 10년간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

노후생활비를 본인 및 배우자가 마련하는 경우, 그 방법은 2021년 기준으로 근로·사업소득이 5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다음 연금·퇴직급여 29.7%, 재산소득 7.7%, 예금 5.3% 등이다(통계청, 2021. 11.17., p.18). 즉 한국 고령층의 주된 수입원은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 수단인 연금이 아니라 근로·사업소득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인구구조 고령화의 진전으로 노인 부양의식의 변화, 공적 부양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확대됨으로써, 이제는 노인 부양의 책임을 자식이 온전히 떠맡는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찾아보기 힘들다(이원진, 2013). 이는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후 공적연금제도를 통해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받는 한국 사회의 표준적인 생애과정이 균열을 보인 것이며, 전형적인 가족 부양의식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경제위기 이후에 공적이전과 복지지출을 늘려 사회안전망 확대를 추진하면서 한국 사회의 불균등한 분배 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지만, 고령인구의 급증하는 속도에 보조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다(김진욱, 2002; 반정호, 2008). 더욱이 고령인구 집단 내 만연화된 경제적 취약성은 막대한 재정지출의 소요 등 복지 부담에 대한 우려로 연결되고 있다(이정화, 문상호, 2014).

3. 고령층의 소득수준과 소득구성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한국의 보편적인 공적연금제도로 도입되었지만, 현재 고령층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낮은 상황이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2016년 44.6%에서 2018년 48.6%, 2020년 53.1%로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고령층은 공적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고 있다(통계청, 2021.9.29., p.34).

〈표 2-3〉 고령층의 연금 수급권 구조 및 급여수준

		(단위: %, 만 원/월)	
구분		수급률	수급자 평균 금액
무연금자		12.7	0.0
소계		64.8	39.8
기초연금		44.1	19.2
단일 수급권자	공적연금	20.6	84.1
	국민연금	37.1	40.1
특수직역연금		6.2	199.6
주택연금/개인연금		0.1	25.3
소계		22.5	48.0
기초연금+공적연금		21.6	45.7
중층 수급권자	기초연금+주택연금/개인연금	0.2	124.4
	공적연금+주택연금/개인연금	0.4	64.3
	기초연금+공적연금+주택연금/개인연금	0.2	84.5
	공적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개인연금	0.1	450.8
합계		100.0	36.6

주: 일부 수치는 반올림 값으로 하위 분류의 합이 상위 분류의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황남희, (2021a). 고령층의 연금 수급권 구조 분석. 연금포럼, 84, p.12. 〈표 3〉 재구성

〈표 2-3〉에 제시된 고령층의 연금 수급권을 기초연금을 포함하여 살펴 보면, 2018년 기준 고령층의 87.3%는 1개 이상의 연금을 수급하는데 이중에서 44.1%는 월평균 19만 원의 기초연금이다. 국민연금제도가 늦게

도입되어 현재 고령층은 공적연금을 10년²⁾ 이상 가입하여 노후소득원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조세를 재원으로 65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고령층의 20.6%는 월평균 84만 원의 공적연금(특수직역연금 포함)만을 수급하고, 고령층의 21.6%는 월평균 46만 원의 기초연금과 공적연금을 동시에 수급하고 있다(황남희, 2021a). 따라서 한국의 고령층은 노후소득원으로 연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고령층의 개인소득 분포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근로·사업소득이 16.9%에서 2017년 26.9%, 2020년 41.3%로 증가하여 개인소득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다음으로 2020년 기준 개인소득 중 2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적이전소득은 2011년 32.5%에서 2017년 36.9%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20년에 다소 감소하여 27.5%를 기록하였다. 즉 고령층의 개인소득 구성비 측면에서 근로·사업소득의 빠른 증가 추세 속에서 공적이전소득은 최근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고령층의 개인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4〉 고령층의 개인소득 및 구성비 추이

(단위: 만 원/월, %)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전체 소득(만 원)	70.8	79.9	98.0	96.5
근로·사업소득	16.9	27.8	26.9	41.3
재산소득	9.3	11.9	13.0	17.3
구성비 (%)				
공적이전소득	32.5	35.0	36.9	27.5
사적이전소득	39.8	23.8	22.0	13.9
기타	1.4	1.3	1.2	0.0
소계	100.0	100.0	100.0	100.0

주: 일부 수치는 반올림 값으로 하위 분류의 합이 상위 분류의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2011, 2014, 2017,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 연구진 분석

2) 국민연금을 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 납입기간이다.

부모와 자녀와의 상호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적이전소득은 고령층의 90.0%가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높지만, 그 구성비는 공적이전소득(27.5%)에 비해 절반가량 낮은 13.9%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고령층 본인의 기여소득이 향상된 것을 의미하며,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성이 증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1.6.7.).

고령가구의 소득 분포에서도 고령자 개인소득 분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고령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은 2011년 180만 원에서 2020년 252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소득구성에서 근로·사업소득의 증가와 사적이전소득의 감소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약 10년 동안 근로·사업소득은 13.1%p(2011년 37.9%에서 2020년 51.0%) 증가하였고, 사적이전소득은 14.8%p(2011년 26.5%에서 2020년 11.7%) 감소하였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고령가구의 재산소득이 확대되어, 2020년에는 사적이전소득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공적이전소득은 대체로 20%대를 유지하고 있어 기초연금의 급여수준 인상이나 공적연금제도의 성숙 등의 영향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황남희, 2021b).

〈표 2-5〉 고령가구의 소득 및 구성비 추이

(단위: 만 원/월, %)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전체 소득(만 원)	180.2	192.2	215.8	252.3
근로·사업소득	37.9	52.9	47.3	51.0
재산소득	8.7	8.2	9.2	15.0
구성비 (%)				
공적이전소득	25.2	22.6	27.4	22.3
사적이전소득	26.5	15.1	15.2	11.7
기타	1.7	1.3	0.9	0.0
계	100.0	100.0	100.0	100.0

주: 일부 수치는 반올림 값으로 하위 분류의 합이 상위 분류의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2011, 2014, 2017,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 연구진 분석
 2) 황남희. (2021b). 노인의 경제활동과 경제 수준. 보건복지포럼, 300, p.16, [그림 5] 재구성

고령층의 약 절반은 가처분소득 중위소득 50% 기준 이하인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율은 2011년 49.1%에서 2018년 42.1%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빈곤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정해식, 이다미, 이병재, 한겨레, 2020). 가구 유형별로 보면 독거노인의 빈곤율이 2017년 가장 높은 74.0%이며, 빈곤의 주요 원인은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한 지위와 동거 가구원 규모의 감소로 꼽히고 있다(김태완 외, 2020).

고령층의 연금 수급권이나 개인 및 가구소득 등을 통해 고령층의 소득 수준과 소득구성을 다각적으로 살펴본 결과, 2014년 기초연금의 도입과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축소 지원 등 그간 고령층의 소득보장에 대한 공적 개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령층의 주요 소득원은 근로·사업소득이며 빈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고령층의 사적이전소득 감소는 두드러진 특징으로 포착되지만, 공적이전소득의 변화는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2절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관계

1. 이전소득의 정의와 특성

이전소득(transfer income)은 경제적 자원이 반대급부 없이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수입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소득은 제도적 근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생하는 공적이전(public transfer)과 그 외 가족, 친인척 및 사회단체로부터 비공식적으로 발생하는 사적이전(private transfer)으로 분류할

수 있다(금종예, 금현섭, 2018). 그러나 이들 이전소득은 조사자료나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첫째, 공적이전소득에 대해 살펴보면, 국제적으로 공적이전소득은 사회보장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가 지급하는 사회보험금(social insurance payments), 공적 부조금(public assistance), 정부 보조금(public subsidies)의 수령액의 합”으로 정의하며, 국가별 운영 제도에 따라 구체적인 항목이 다르다. 공적이전소득은 현물이나 서비스 형태의 이전소득도 포함해야 하지만 이들은 화폐가치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03, p.83 item 19). 한국의 대표적인 미시 소득자료인 가계금융복지 조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사회보장 수혜금”으로 정의하며(통계청, 2020c, pp.104), “사회적 현물(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현물이 아닌 물품과 서비스)”은 포함하지 않는다(통계청, 2020c, p.99).³⁾ 반면 거시 차원의 자료인 통계청의 국민이전 계정은 공공이전(공적이전)을 “정부에 의해 중개되는 이전으로 한 연령집단으로부터 조세 등을 걷어 다른 연령집단에 지급(공교육, 국민연금, 건강보험)하는 형태의 이전”으로 보며 국제기준보다 넓게 정의하고 있다(통계청, 2019.1.22., p.3).

공적이전소득의 기능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공적이전소득은 개인으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 규모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장현주, 2019), 가구소득을 늘리거나 소득의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는 주요 소득원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다른 소득원이 감소할 수 있어 개인의 근로 의욕과 사적이전소득의 감축을 유발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금현섭, 백승주, 2014; 금

3) 공적연금,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지원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타 정부 보조금 등이 해당된다(통계청, 2020c, pp.104~105).

종예, 금현섭, 2018).

둘째, 가족이나 비영리 단체 등 민간 부문 간에 이전되는 사적이전소득은 주요 노후소득원으로 인식되며 공적이전소득보다 더 다양한 범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부모가 자녀에게 이전하는 소득(증여액)과 자녀가 부모에게 이전하는 소득(수령액), 동거 여부에 의해 사적이전소득의 범주가 나뉘고 있다(김희삼, 2008; 강성호, 2011; 하석철, 2012; 김희삼, 2014; 박기백, 성명재, 2016; 장현주, 2019; 통계청, 2019.1.22.). 김희삼(2014)은 사적이전소득을 민간경제주체들 사이의 거래 관계에 의한 순수한 소득이전으로 정의하였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을 가구 간 이전소득과 비영리 단체의 이전소득 등으로 정의한다. 국민이전계정은 사적이전소득을 민간이전(사적이전)이라 칭하며 “많은 부분 주로 가족 이전으로 이루어지며 가구 간 이전(사적 보조금, 송금 보조금)과 가구 내 이전(자녀 양육, 부모 부양)”을 포함한다(통계청, 2019.1.22., p.3). 강성호(2011)는 사적이전을 가족 단위로 한정하여 동거하는 가구원(가구 내 이전소득), 비동거하는 가구원(가구 간 이전소득), 기타 이전소득으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소득을 이전하는 대상이 부부간 이라면 세대 내 이전으로,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면 세대 간 이전으로 구분하였다. 이외에 장현주(2019)는 사적이전소득을 사적연금소득과 기타 사적이전소득으로 분류하였다. 하석철(2012)은 가족 간 소득이전을 수혜자와 제공자의 특성이 모두 반영되는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정의하였고, 가구 간 소득이전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한 가족 구성원에게 그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주요 자원인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사적이전소득은 부모나 자녀의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부모에서 자녀로, 자녀에서 부모로)에서 상호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사적이전의 동기와 공·사적이전의 대체 관계

그동안 이전소득에 관한 연구들은 사적소득이전의 동기를 중심으로 사적소득이전의 결정요인을 탐색하거나, 공적소득이전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였다(강성진, 전형준, 2005; 황남희 외, 2014; 손병돈, 2020).

그중 두 이전소득의 관계는 사적이전소득을 발생하는 동기가 이타적(altruism)인지 아니면 이기적 교환(exchange)인지⁴⁾ 주된 이유를 밝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족 간 사적이전의 동기가 부모의 근로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 보전의 성격인지(이타적 동기), 손자녀 돌봄 및 가사 도움 등 서비스에 대한 보상의 성격인지(이기적 교환 동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김중예, 금현섭, 2018).

Becker(1974)의 주도로 발전한 이타주의(altruism)는 가족 간 소득재분배의 기제로서, 이전소득 수혜자와 제공자의 효용은 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강성호, 2011; 손병돈, 2020). 즉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할수록 사적이전소득을 줄이는 것으로 대체 관계를 형성한다고 보며, 이를 공적이전의 구축 효과로 정의한다(신혜리, 남승희, 이다미, 2014; 김을식, 이지혜, 2016; Becker, 1974; Cox & Jimenez, 1989). 구축 관계(crowding-out)⁵⁾는 경제학에서 주로 논의되는 개념으로, 정부의 정책이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에서 발생하는 파생적 외부효과를 의미한다(백동현, 김용훈, 2013). 이는 정부가 사회보장 지출, 사회복지

4) 이전소득의 관계는 사적이전의 동기에 따라 상이하며, 그중 이타적 동기는 공적이전으로 인해 사적이전이 줄어드는 대체 관계로, 이기적 교환 동기는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이 무관한 보완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5) 공·사적이전소득의 구축 효과는 빈곤 완화 효과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노인가구의 소득보장을 가족에서 국가로 이전하는 효과를 유발한다. 그러나 구축 효과가 없으면 사적이전소득을 제공하는 가구는 공적이전소득의 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도 부담해야 한다(이경배, 2018).

서비스 공급 등에 집중하여 사적 부문의 자발적 공급을 구축하는지, 구축한다면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는 관점이다. 만약 이타적 동기에 의해 사적소득이전이 이루어진다면, 수혜자의 소득이 적을수록 사적 소득이전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사적소득이전의 수혜량이 수혜자의 소득과 부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교환주의(exchange)는 가사 및 손자녀 양육, 상속 등 가구 내 서비스에 대해 서로의 이해를 충족하기 위해 심리적 또는 물질적인 보상 등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Secondi, 1997; 이경배, 2018). 이는 부모와 자녀가 본인의 이해관계 충족을 위해 서로에게 유리한 교환 행위를 약속하고, 각 구성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일종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 셈이다(Arrondel & Masson, 2006; 신혜리 외, 2014 재인용). 이에 대해 손병돈(2020)은 가족 간 소득이전이 이기적 교환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수혜자의 소득이 적을수록 사적소득이전을 수혜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았다. 즉, 교환주의 관점에서는 사적소득이전의 수혜량이 수혜자의 소득과 정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표 2-6〉 사적이전의 동기

구분	내용
이타적 동기 (Altruis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이전의 제공자가 이타주의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이전행위를 수행 • 수혜자 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부적(-) 관계 존재
이기적 교환 동기 (Excha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이전의 제공자가 이전의 대가를 고려하여 미래를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에 의해 이전을 수행 • 수혜자 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정적(+) 관계 존재

자료: 연구진 작성

한편 Cox(1987)의 사적소득이전 동기에 관한 선구적 연구 이후 가족 간 사적이전의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공·사적이전의 관계를 실증하는 연구가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나 합의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공적이

전과 사적이전의 관계는 분석 시기와 분석대상(노인과 중고령층), 국가의 제도적 상황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금종예, 금현섭, 2018).

한국은 외형상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공적이전소득이 다소 미비한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고, 이를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소득이전, 즉 자녀로부터의 부양을 통해 보완하고 있는 상황이다. 1990년 말 이후 연이은 2차례의 경제위기 속에 가족구조 및 부양환경의 변화로 사적이전소득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사적이전소득은 여전히 노후소득원으로 인식되어 그 규모와 수혜 범위는 공적이전소득보다 큰 편이다(배성우 외, 2008; 김수영, 이강훈, 2009; 이석민, 박소라, 김수호, 2015). 그러나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이 부양자에게 추가 노후소득원으로 인식되며, 그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강성진·전형준(2005)은 IMF 외환위기 전후에 가구의 사적이전의 동기가 이타적 동기에 의해 주도되었고, 동시에 공적이전과의 구축 관계가 강하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이후 한국에서는 2000년대 중후반까지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간 대체 관계를 형성하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성재민, 2006; 김희삼, 2008; 강성호, 2011; 여유진, 2013; 박기백, 성명재, 2016; 금종예, 금현섭, 2018; 이경배, 2018; 손병돈, 2020), 2010년 전후부터 공·사적이전의 대체 관계가 약화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배성우 외, 2008; 전승훈, 박승준, 2011; 전승훈, 박승준, 2012; 이정화, 문상호, 2014; 황남희 외, 2014; 박종선, 정세은, 2020; 최유성, 황남희, 2020). 또한 공·사적이전의 관계는 성별, 가구 유형,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강성호, 2011; 신혜리 외, 2014; 진재문, 김수영, 문경주, 2014; 금종예, 금현섭, 2018; 손병돈, 2020).

국의 연구에서도 공적이전의 사적이전 대체효과에 대한 일치된 결론을 보이지 않는다(Cox & Fafchamps, 2008; Nikolov & Bonci, 2020). 그러나 국가별로 공·사적이전의 관계는 다르며, 미국의 경우 사적이전의 동기는 주로 교환주의를 지지하거나 이타주의를 기각하여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대체효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Altonji, Hayashi, & Kotlikoff, 1997; Cox & Jakubson, 1995; Cox & Rank, 1992). 반면에 중국, 베트남, 멕시코 등 상당수 개발도상국의 경우 사적이전의 동기는 이타주의를 지지하며 공적이전은 사적이전을 일정 수준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ikolov & Adelman, 2019; Nikolov & Bonci, 2020; La & Xu, 2017). 이와 같이 복지제도가 발달하는 단계에 있는 국가에서는 부양인구에 대한 부양이 가족 중심에서 사회로 전환되며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구축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0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공·사적이전의 변화와 대응방안

〈표 2-7〉 공·사적이전소득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자료	분석대상	대체/구축 관계 여부
강성진, 전형준 (2005)	한국가구경제패널조사 (1995~1998)	1,978가구	구축 효과 ○
	한국노동패널조사 (1999~2003)	3,158가구	
성재민(2006)	한국노동패널 6차(2003)~7차(2004)	사적 이전소득의 수혜가구	구축 효과 ○
김희삼(2008)	한국노동패널 4차(2001)~8차(2005)	60세 이상 중고령자 가구	공공부조 수급으로 사적이전 구축 효과 ○
강성호(2011)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1982~2008년 원자료	도시근로자 가구주 가구	부분적인 구축 효과 ○
하석철(2012)	한국노동패널 10차(2007)~11차(2008)	자녀(소득 제공) 부모(수혜 여부)	구축 효과 ○
여유진(2013)	국민생활실태조사 (2007~2010)	노인 가구 (4가지 유형)	대체 효과 ○
금현섭, 백승주 (2014)	한국복지패널 1차(2005)~7차(2012)	가구원 수 2인 이하, 가구원 평균연령 56세 이상 가구	공적연금의 구축 효과 ○
김희삼(2014)	국민노후보장패널 1차(2005)	부모-자녀 동거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구축 효과 ○
신혜리, 남승희, 이다미(2014)	국민노후보장패널 4차(2011) 학술대회용	60세 이상 노인단독가구, 노인부부가구	대체 효과 ○
박기백, 성명재(2016)	재정패널 3차(2009)~5차(2011)	사적 이전소득의 수혜자	구축 효과 ○
김중예, 금현섭 (2018)	국민노후보장패널 2차(2007)~6차(2015)	65세 이상 노인 가구	기초연금 구축 효과 ○
이경배(2018)	재정패널 7차(2014)~9차(2016)	노인단독가구, 노인부부가구	노인 단독가구만 구축 효과 ○
설귀환, 임병인(2019)	국민노후보장패널 2차(2007)~6차(2015)	65세 이상 가구원 유무, 기초노령연금 수령 여부	(즉각적) 구축 효과 × (동태적) 구축 효과 ○
손병돈(2020)	한국복지패널 14차 (2019)	사적 이전소득의 수혜자	구축 효과 ○
배성우, 손지아, 박순미(2008)	한국노동패널 4차(2001), 8차(2005)	60세 이상 노인 가구주 가구	구축 효과 ×
전승훈, 박승준(2011)	가계동향조사 (1990~2010)	2인 이상 근로자 가구	구축 효과 약화(↓)
전승훈, 박승준(2012)	가계동향조사 (1990~2010)	(비)노인 가구	구축 효과 약화(↓)
이정화, 문상호(2014)	한국복지패널 7차(2012)~8차(2013)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수급	구축 효과 ×
황남희, 이상협, 양찬미(2014)	국민이전계정 2006, 2009, 2011	65세 인구 전체	구축 효과 ×
박종선, 정세은(2020)	국민노후보장패널 4차(2011)~7차(2017)	60세 이상인 단독, 부부가구	공적연금의 구축 효과 ×
최유성, 황남희(2020)	국민이전계정 2010~2016	75세 인구 전체	구축 효과 ×

자료: 연구진 작성

한편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대체 관계는 단지 소득이전의 주체를 가족에서 정부로 변화시킬 뿐이며, 공적이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고령층의 낮은 소득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공적이전과 사적이전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은 공적이전은 사적이전과 완전한 구축 관계가 아니라 부분적 구축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공적이전의 순기능적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은 은퇴한 노인인구의 소득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노인의 소득구성에서 공적이전소득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큰 규모로 사적이전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소득이전체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강성호, 2011; 신혜리 외, 2014; 진재문 외, 2014; 금종예, 금현섭, 2018; 손병돈, 2020). 인구구조 고령화와 고령층의 심각한 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공적이전은 노후소득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고령층 대상의 사적소득이전체계의 역할에 주목하며, 고령 친화적인 공동체 형성으로 노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 세대의 의식을 유지 및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진재문 외, 2014).

제3절 소결

한국은 2020년, 인구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발생하며 인구의 자연 감소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총인구는 2028년 5,194만 1,946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통계청, 2021e). 이러한 인구 변동은 초저출산 현상의 지속과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인구구조의 고령

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인구구조 고령화가 야기하는 고령인구 부양에 관한 부담 문제는 한국의 가족 부양의식 변화와 관련 있다. 지난 약 10년간 한국 사회에서 부모 부양은 ‘가족, 정부, 사회’가 함께 담당해야 한다는 견해가 40%대 이상으로 가장 높았는데, 특히 2020년에는 61.6%로 나타나 가족과 더불어 정부, 사회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에 반해 ‘가족’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2년 33.2%에서 점차 감소하여 2020년 22.0%로 나타났다(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이러한 가족 간의 사적이전을 통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의 약화는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효’라는 전통적 가치에만 의존하여 가족의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며, 고령층 본인도 자녀 부양 및 정부의 지원에 의지하지 않고 본인의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고령층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2020년 기준 53.1%로 절반에 가까운 고령층이 공적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고 있다. 고령층의 개인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근로·사업소득이 41.3%로 개인소득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으로 공적이전소득(27.5%)이 높다. 부모와 자녀와의 상호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적이전소득은 고령층의 90.0%가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높지만, 그 구성비는 공적이전소득(27.5%)의 절반 수준인 13.9%에 그치고 있다(이윤경 외, 2020a).

한편 Cox(1987)의 사적소득이전 동기에 관한 선구적 연구 이후 가족 간 사적이전의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공·사적이전의 구축 관계를 실증하는 연구가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나 합의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강성진·전형준(2005)은 IMF 외환위기 전후에 가구의 사적이전은 이타적 동기에 의해 주도되었고, 동시에 공적이전에 관한 구축 효과가 강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후 한국에서는 2000년대 중후반까지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간에 구축 관계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성재민, 2006; 김희삼, 2008; 강성호, 2011; 여유진, 2013; 박기백, 성명재, 2016; 금중예, 금현섭, 2018; 이경배, 2018; 손병돈, 2020), 2010년 전후부터 공·사적이전의 구축 관계가 약화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배성우 외, 2008; 전승훈, 박승준, 2011; 전승훈, 박승준, 2012; 이정화, 문상호, 2014; 황남희 외, 2014; 박종선, 정세은, 2020; 최유성, 황남희, 2020).

이처럼 연구자들이 고령층을 부양하는 공·사적이전의 구축 관계 여부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사적이전소득의 구축 효과는 정부의 공적 개입을 통한 빈곤 완화 효과를 감소시키며, 고령가구의 소득보장을 단순히 가족에서 국가로 이전시킬 가능성이 있다. 선행연구들은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관계를 규명하면서 활용한 분석자료와 분석 시기, 공·사적이전의 정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는 제3장과 제4장에서 거시 및 미시적인 접근을 통해 고령층의 공·사적이전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제5장에서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의 공·사적이전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와 같은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변화 속에서 고령층의 소득구성과 빈곤 수준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고 노후소득보장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제3장

공·사적이전에 관한 거시적 접근: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하여

제1절 분석 배경과 목적

제2절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제3절 한국의 공·사적이전 실태와 변화

제4절 부양체계의 국제비교

제5절 소결

제 3 장

공·사적이전에 관한 거시적 접근: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하여

이 장에서는 공공 부문에서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정책을 시행할 때 민간 부문의 부양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짚어본 후,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s: NTA)을 이용하여 한국의 연령집단별 경제적 자원의 흐름과 부양체계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분석한다. 특히 고령층의 부양체계 변화 중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자료 이용이 가능한 38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별 부양체계의 특성을 분석하고 관련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분석 배경과 목적

1. 인구구조 고령화와 정부 정책 고려사항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는 연금 및 의료와 같은 사회복지제도의 재정 지속성을 위협하고, 생산연령인구에 대한 부양인구 비율을 높이는 등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정부들이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상향이 그 예이다. 미국의 경우 법정 퇴직 연령이 오랫동안 65세에 머무르다 1983년 사회보장 수정법이 통과됨에 따라 출생연도별로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개시 연령을 조정하였고, 한국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연금 혜택의 축소 또는 법정 퇴직 연령의 연장 등은 국가의 재정지속성

을 분명히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정책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많은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개인의 행동도 이들 요인의 하나이다.

개인은 정부의 정책에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경제생애 주기 모델로 보면, 근로자는 연금 혜택이 줄면 미래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부를 축적함으로써 은퇴 후를 대비한다. 이는 개인의 소비나 저축 또는 노동공급을 조정할 수 있다. 만약 근로자가 정부 정책에 대응하여 퇴직 시기를 미루면 퇴직 후 소비를 뒷받침할 미래의 준비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축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다. 또한 사적이전이 활발한 국가들은 연금 혜택의 축소나 증가 또는 법정 퇴직 연령의 연장이 사적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고령화에 대한 정책 대응은 이렇듯 정부 정책에 대한 민간 부문의 대응을 이해해야 적절하게 평가될 수 있다.

2. 민간 부문의 부양 중요성

민간 부문을 이해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2가지 이유에서 중요하다. 첫째, 민간 부문은 정부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동일한 종류의 세대 간 이전과 자원 배분의 영향을 받는다(Mason, Lee, & Lee, 2010). 세대 간 이전은 이전(transfer)의 법칙을 적용받는데, 받는 사람 수에 비해 주는 사람 수의 변화는 1인당 유출에 비해 1인당 유입과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칙은 Becker-Lewis의 Quantity-Quality 모델(197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가 자녀에게 이전(하향 이전)하거나, 또는 성인 자녀가 연로한 부모에게 이전(상향 이전)하는 모든 사적이전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민간 부문, 특히 사적이전은 재정지속성을 추정하는 경우에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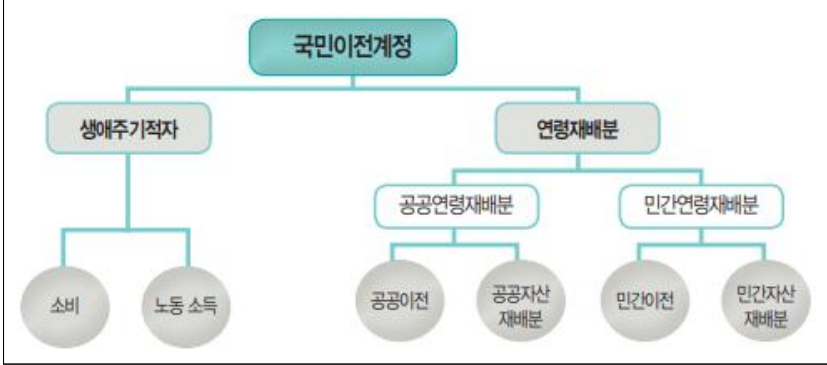
요하다. 공적이전은 현물이나 현금의 이전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현물이전, 예컨대 학교와 의료 제공 등의 경우 다양한 연령층의 공공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현금이전, 예컨대 연금은 자원의 변화가 소비, 저축 및 이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각 연령대 또는 어느 일정 세대의 복지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2절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1. 분석자료

국민이전계정(NTA)은 국민계정과 일치하도록 거시적 수준에서 세대 간 이전을 측정하는 회계방식이다. 국민이전계정은 기본적으로 미시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 간에 발생하는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측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측정된 자원은 국민계정과 일치하도록 총량 수준으로 조정하며, 이렇게 측정된 총량 자원은 연령 간 재배분을 통해 다시 분배된다. 이처럼 재배분이 일어나는 근본적 이유는 어떤 연령에서는 개인들이 자신의 노동을 통해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또 어떤 연령에서는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즉 개인은 살아가는 동안 경제적 생애주기를 거치면서 생애주기적자(즉 소비의 부족분)를 다른 연령층에서 보조받거나 또는 생애주기흑자(즉 생산의 잉여분)를 다른 연령층에 재배분함으로써 경제생활을 영위한다. 국민이전계정은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차감하여 산출한 값을 ‘생애주기적자(Lifecycle deficit)’로 부른다 ([그림 3-1] 참조).

[그림 3-1] 국민이전계정 구조



자료: 1) 통계청. (2019.12.9.). 2016년 국민이전계정. 통계청 통계개발원 연구기획실, 경제통계국 소득통계개발과 보도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3/6/index.board?bmode=read&bSeq=&aSeq=379134&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2021.5.3. 인출)
 2) 최유성, 황남희. (2020). 우리는 생애주기적자를 어떻게 충당하나? - 세대 간 경제 이해: 국민이전계정. KOSTAT 통계플러스. 2020년 가을호. 40-53. 대전: 통계청 통계개발원. p.43. [그림 2] 재구성

유소년층과 고령층의 경우 소비가 생산보다 많은 생애주기적자의 시기이므로 다른 생산연령층에서 자원을 제공받아야 하는데, 이는 공공이전, 민간이전, 또는 자산재배분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같이 생애주기적자를 구성하는 항목들을 종합하여 국민이전계정에서는 ‘연령재배분(Age reallocation)’이라 한다. 또한 국민이전계정에서 공공이전은 정부에 의해 증개되는 이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한 연령집단으로부터 조세를 걷어 다른 연령집단에 지급(가족수당, 유아 보조, 조세 혜택 등)하는 형태로 발생”한다(통계청, 2019.1.22., p.96). 민간이전은 대체로 가족에 의해 발생하는 이전으로, “크게 가구 간 이전(사적 보조금, 송금 보조금 등)과 가구 내 이전(자녀 양육, 부모 부양 등)으로 구분”된다(통계청, 2019.1.22., p.96). 자산재배분(Asset reallocation)은 자본, 토지, 신용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 “젊은 연령대에서 노령 연령대로 자원이 상향 배분되는 형

태로 발생”한다(통계청, 2019.1.22., p.96). 즉 국민계정에서 자산재배분은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저축과 투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편의상 국민이전계정의 공공이전을 공적이전, 민간이전을 사적이전으로 혼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국민이전계정의 공식 용어인 공공이전과 민간이전보다 공적이전, 사적이전을 더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며, 이 연구의 다른 장에서는 분석자료 등의 특성에 따라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이전계정의 연령재배분 자료를 이용하여 세대 간 이전의 형태나 서로 간의 대체 관계 또는 보완 관계 등을 측정할 수 있고, 인구구조 고령화와 사회경제적 정책 함의를 도출하는 데 유용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방법론 및 그 함의는 Lee & Mason(2011)과 통계청(2019.1.22.) 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렇듯 국민이전계정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시작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고, 미국 하와이주 동서센터(East-West Center)와 버클리대학을 주축으로 2021년 현재 전 세계 90여 개 이상 국가에서 참여하여 연구를 진행 중이다. 글로벌 국민이전계정 프로젝트는 전 세계 연구진이 참여하여 2013년에 국민이전계정 작성 매뉴얼을 UN과 함께 발간하였다(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13). 한국의 경우 2019년에 전 세계 최초로 국민이전계정이 국가 공식 통계로 지정되어, 현재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2.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국민이전계정 홈페이지에서 공식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실태 분석과 국제비교를 수행한다. 한국의 자료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서 2010~2017년 국민이전계정 데이터를 다운로드했으며, 추가적으로 국민이전계정의 세부 자료는 통계청에 자료 공개를 요청하여 제공받았다. 국가통계포털에서는 공적이전과 사적이전, 자산재배분 등에 대해 유입에서 유출을 차감한 순(net)값만을 제공하지만, 이들의 유입과 유출을 고려하여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의 자료 공개 절차가 필요하였다.

한국 이외 국가의 국민이전계정은 글로벌 국민이전계정 프로젝트 홈페이지⁶⁾의 공개자료와 연구진이 보유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국제비교의 대상 국가는 분석내용에 따라 다르다. 첫째, 부양체계 간의 구축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민이전계정 구조의 모든 자료가 필요하다. 많은 국가에서 국민이전계정을 작성하고 있지만, 이 연구에 필요한 공적이전, 사적이전, 자산재배분 등의 모든 자료가 2010년 이후 완벽하게 구축된 국가는 28개국이다(아시아 9개국, 비아시아 19개국). 부양체계는 국가별 및 시기별로 사회문화와 제도의 변화에 맞춰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가능한 최신 연도의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2010년 이후의 국민이전계정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표 3-1>은 부양체계 전반의 실태와 관련성을 횡단면 분석한 총 28개의 국가와 자료 연도이다.

6) National Transfer Accounts Project. (각 연도). DATA-Database[데이터파일]. <https://www.ntaccounts.org/web/nta/show/> (2021.4.3. 인출)

〈표 3-1〉 부양체계 간 구축 효과 분석대상 국가 및 자료 연도

국가 분류	국가 및 자료 연도
미주 (6개)	칠레(2018), 코스타리카(2013), 엘살바도르(2010), 멕시코(2004), 우루과이(2006), 미국(2011)
아시아 (9개)	중국(2014), 인도(2004), 인도네시아(2005), 일본(2004), 필리핀(2015), 싱가포르(2013), 한국(2017), 대만(2015), 태국(2004)
유럽 (12개국)	오스트리아(2010), 핀란드(2006), 프랑스(2005), 독일(2003), 헝가리(2005), 이탈리아(2008), 몰도바(2014), 러시아(2016), 슬로베니아(2010), 스페인(2008), 스웨덴(2003), 영국(2012)
오세아니아 (1개국)	호주(2010)
4개 국가 분류 총 28개국	

주: 2010년 이후 국민이전계정 자료에서 부양체계 항목을 모두 포함한 27개국 대상이며, 국가명은 영문명 기준으로 제시함.

자료: 연구진 작성

둘째, 국가 단위의 소득수준을 4분위로 구분하여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양상을 살펴볼 때는 자료의 효율성을 위해 해당 항목의 소득자료만 있는 국가도 모두 활용한다. 특히 세계은행의 소득 분류에 따른 고소득, 상위 중소득, 하위 중소득, 저소득 분류에 맞추기 위해서는 2000년 이전의 자료는 물론, 국가별로 국민이전계정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여 완전한 국민이전계정 자료를 작성하기 어려운 저소득 국가의 부분적인 정보-국민이전계정의 일부 항목만 작성된 경우-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 단위의 소득수준별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개별 항목별 비교 분석에서는 국민이전계정 자료의 완전성이나 연도에 상관없이 해당 개별 항목의 자료가 있는 경우 국가별로 최대 2개 연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국가별로 최대 2개 연도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특정 국가의 긴 시계열 자료-가령, 미국의 31년간 자료-의 가중치 효과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연도별로 국가 간 소득 분류가 다른 경우 최근 소득자료 기준으로 국가를 분류하였다. 〈표 3-2〉는 이러한 자료의 분석대상 및 국가를 정리한 것이다.

54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공·사적이전의 변화와 대응방안

〈표 3-2〉 소득수준별 분석대상 국가 및 자료 연도

소득 분류	국가 및 자료 연도
고소득 국가 (14개)	호주(2004, 2010), 오스트리아(2005, 2010), 캐나다(2011), 대만(1993, 2015), 독일(2003), 헝가리(2005), 이탈리아(2008), 일본(2004), 한국(2010, 2017), 슬로베니아(2004, 2010), 스페인(2000, 2008), 스웨덴(2003), 영국(2012), 미국(2003, 2011)
상위 중소득 국가 (12개)	칠레(1997), 우루과이(2006), 브라질(1996, 2002), 중국(2002, 2014), 콜롬비아(2008), 코스타리카(2004, 2013), 자메이카(2002), 멕시코(2004), 페루(2007), 남아프리카공화국(2005), 태국(2004), 터키(2006)
하위 중소득 국가 (9개)	엘살바도르(2010), 인도(2004), 인도네시아(2005), 케냐(1994, 2005), 나이지리아(2004, 2009), 필리핀(1999, 2015), 몰도바(2014), 세네갈(2015), 베트남(2008)
저소득 국가 (3개국)	캄보디아(2009), 에티오피아(2005), 모잠비크(2008)
4개 소득 분류 총 38개국	

주: 소득 분류는 세계은행의 기준을 참조하였으며, 소득분류별 국가명은 영문명 기준으로 제시함.
 자료: 연구진 작성

분석방법은 기초통계분석과 변수 간의 상관관계, 회귀분석을 이용한다. 국민이전계정을 구성하는 항목은 인구 전체 수준의 총량값을 제시하거나 1인당 평균값을 제시한다. 즉 총량값은 1인당 평균값에 국가별 인구 규모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시기별 혹은 국가별 인구 규모의 효과를 배제하고, 연령별 자원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1인당 평균값을 주로 이용한다. 이 연구도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1인당 연령집단별 평균값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제3절 한국의 공·사적이전 실태와 변화

1. 연령별 부양체계 전반

[그림 3-2]는 한국의 연령별 1인당 생애주기적자와 연령재배분의 구성 항목을 2010년과 2014년, 2017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분석기간 중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국민이전계정 자료가 제공되는 시작 연도인 2010년, 종료 연도인 2017년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을 포함한 고령층 대상 복지정책이 크게 확대된 2014년의 3개 연도를 선정하였다.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차감한 생애주기적자는 유년층과 고령층에서 양(+)의 값이며, 생산연령층은 음(-)의 값이다. 유년층의 생애주기적자 규모는 고령층보다 더 크며, 특히 고등학교 재학 연령에 해당하는 10대 후반에서 생애주기적자 규모가 최대치를 보인다. 생산연령층의 노동소득은 자신의 소비를 충당하고 잉여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년층과 고령층에게 이전될 수 있다. 2017년 기준 생애주기적자가 가장 큰 연령은 16세로 3,215만 원이다.

생애주기적자를 메꾸는 연령재배분은 민간이전, 공공이전, 공공·민간자산재배분(이하, 자산재배분 혼용)으로 구성되는데, 상대적으로 유년층은 민간이전의 비율이 높은 반면, 고령층은 공공이전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특히 최근으로 오면서 고령층의 연령재배분 규모가 공공이전 규모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2014년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등 노후 부양정책의 확대에 따른 효과로 판단된다. 생산연령층의 음(-)의 공공이전은 조세나 사회보험료 등을 통해 부양인구에게 이전되고, 음(-)의 민간이전은 가구 간 및 가구 내 이전을 통해서 부양인구에게 이전된다. 생산연령층의 부양 수단은 민간이전이 공공이전보다 더 크며, 자녀 연령대로 하향 이전되는 것으로 유추된다. 2017년 기준 연령재배분에서 민간이전이 가장 큰 연령은 16세로 2,103만 원이며, 공공이전이 가장 큰 연령은 85세 이상으로 1,493만 원이다. 반대로 민간이전과 공공이전의 음(-)의 값이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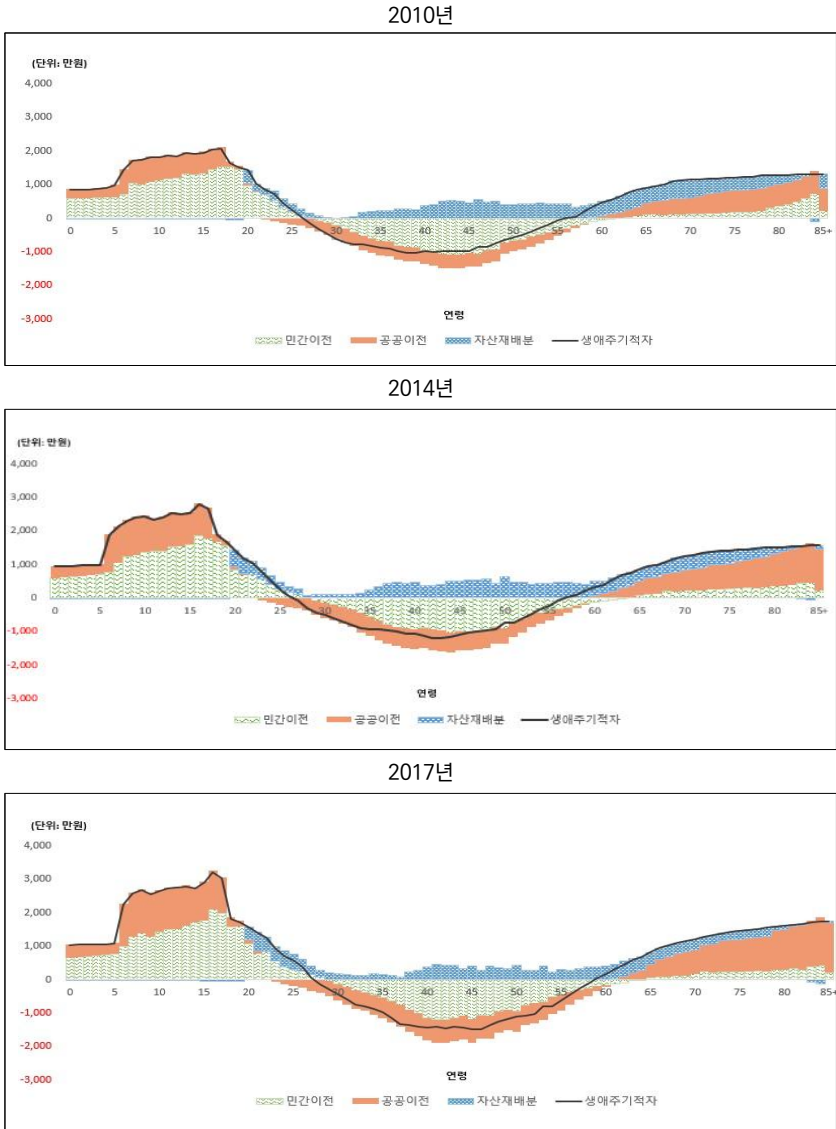
장 큰 연령은 42세로 민간이전 -1,196만 원, 공공이전 -701만 원이다. 즉 중장년층이 자녀와 노부모 부양을 위해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모두 활발하게 이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민간자산재배분은 21세에서 551만 원으로 가장 높다. 공공·민간자산재배분은 자산소득에서 저축을 차감한 값을 의미하므로, 21세는 인적자본 투자가 필요한 시기에 자산소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신용을 통해 생애주기적자를 메꾸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3]은 총량 수준에서 생애주기적자와 연령재배분을 보여준다. 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들여다보면 유년층의 생애주기적자가 고령층의 생애주기적자 규모보다 확대되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생산연령층의 부양 부담은 고령인구보다 유년인구에 더 쏠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령층의 민간이전의 규모는 다른 연령재배분 구성 항목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즉 최근 급격한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라 고령인구의 절대적인 규모와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고령인구의 부양 부담 문제가 나타나지 않은 모습이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향후 고령인구의 생애주기적자와 이를 메우는 연령재배분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85세 이상 연령에서 프로파일의 기울기가 급격하게 변하는데, 이는 국민이전계정의 연령 코딩 상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1인당 생애주기적자에서는 85세 이상의 기울기가 완만하지만, 총량 수준에서는 85세 이상의 모든 인구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연령 프로파일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최근으로 올수록 생산연령층의 공공이전 규모가 확대되어, 공공이전을 통한 부양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생산연령층 중 공공이전의 음(-)의 규모가 가장 큰 연령은 2010년 39세 -3조 8,810억 원에서 2014년 43세 -5조 5,700억 원, 2017년 46세 -6조 5,160억 원이다. 이러한 생산연령층의 공공이전 유출은 고령층보다 유년층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그림 3-3]에서 유년층의 공공이전이 고령층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그림 3-2] 연령별 1인당 생애주기적자 및 연령재배분 구성 항목 비교

(단위: 세, 만 원/년, 명목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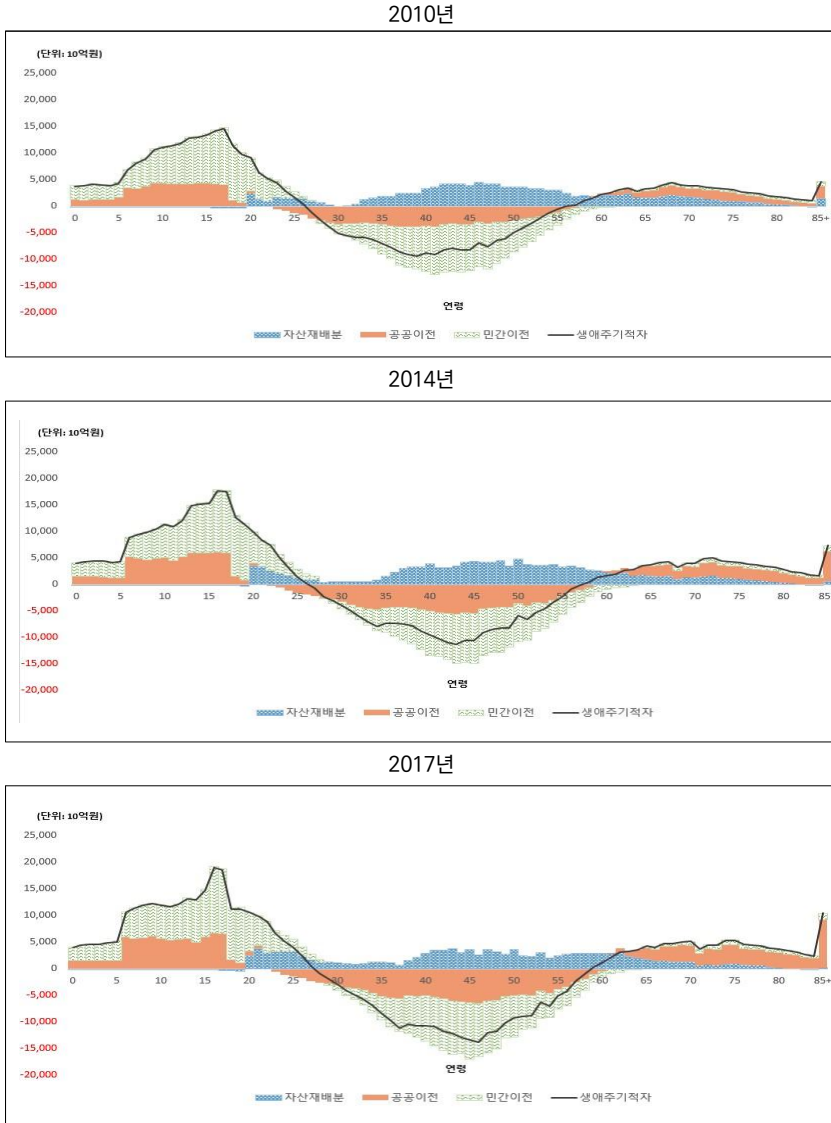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국민이전계정(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 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2021.7.9. 인출)

58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공·사적이전의 변화와 대응방안

[그림 3-3] 연령별 총량 생애주기적자 및 연령재배분 구성 항목 비교

(단위 : 세, 10억 원/년, 명목가격)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국민이전계정(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 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2021.7.9. 인출)

[그림 3-4]는 1인당 소비 원천을 보여준다. 소비의 재원은 공공이전이나 민간이전, 자산재배분 이외에도 근로 제공이나 사업 운영의 대가로 발생하는 노동소득이 포함된다. 생산연령층의 소비 원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노동소득이며, 고령층에서도 80대 이전까지 노동소득이 일정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으로 갈수록 고령층의 노동소득이 확대되고 더 늦은 나이에서도 소비 원천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70세의 노동소득은 2010년 192만 원에서 2014년 335만 원, 2017년 510만 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75세에서도 같은 기간 95만 원에서 194만 원으로 증가한 모습이다. 즉 고령층은 공공이전이나 민간이전, 자산재배분 이외에도 노동소득을 통해서 노후소득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최근 고령층의 노동소득 규모의 증가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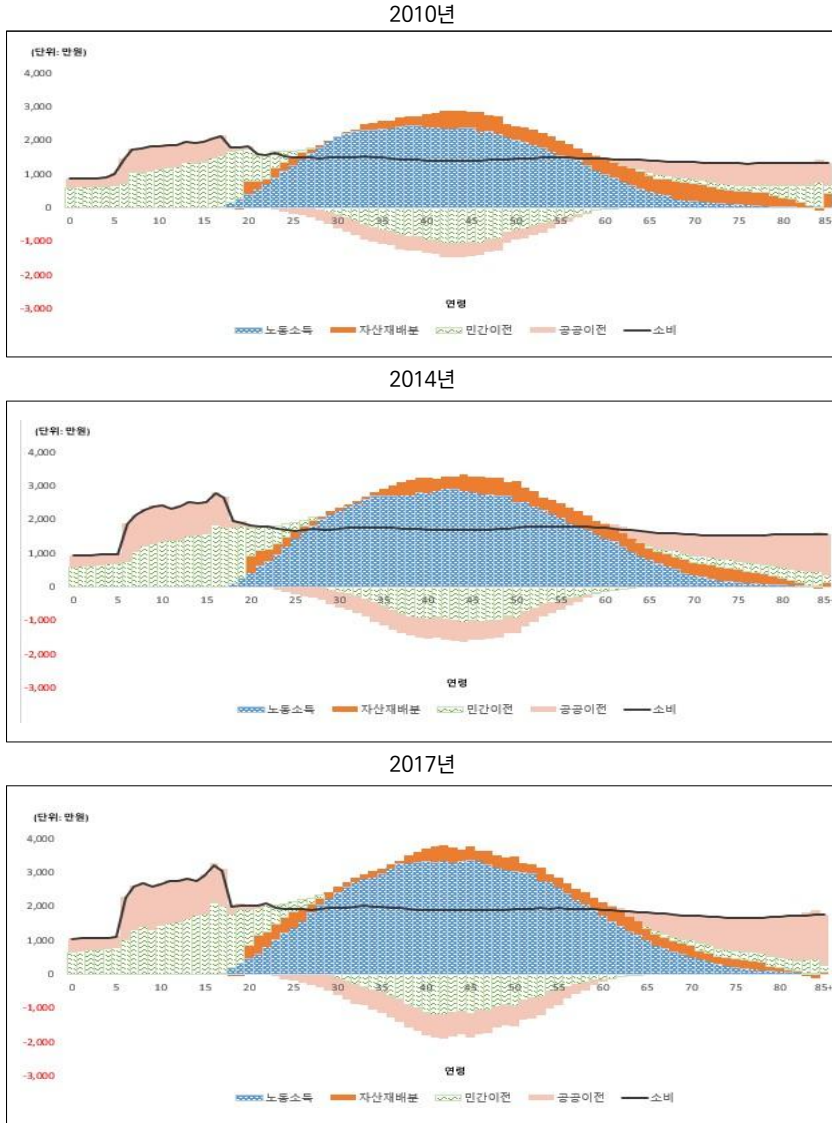
[그림 3-5]는 총량 수준에서 소비 원천을 보여준다. 1인당 연령 프로파일과 비교하여, 총량 수준의 연령 프로파일은 생산연령층에서 소비 원천 규모가 확대된 모습이다. 이는 한국의 생산연령층 인구가 2017년에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생산연령인구의 총량 수준의 소비 원천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생애주기적자가 음(-)의 값이 되는 시작 연령은 2010년 27세에서 2017년 28세로 1세 증가하였으며, 종료 연령은 2010년 55세에서 2017년 58세로 3세 증가하였다(〈표 3-3〉 참조). 생애주기적자 연령이 전반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특히 종료 연령이 더 늦어지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 청년들이 오래 교육받고 이후 취업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을 의미한다. 또한 고령층에서 생애주기적자 종료 연령이 다소 길어지는 것은 법정 정년의 60세 의무화나 주된 일자리 은퇴 이후 재취업 지원 등 정부의 고령층 고용 촉진 지원 정책의 영향이 일부 반영된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과거보다 건강수준이 양호한 고령층은 더 오래 노동 시장에 머물며 길어진 기대여명에 대응하고 있다.

60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공·사적이전의 변화와 대응방안

[그림 3-4] 연령별 1인당 소비 원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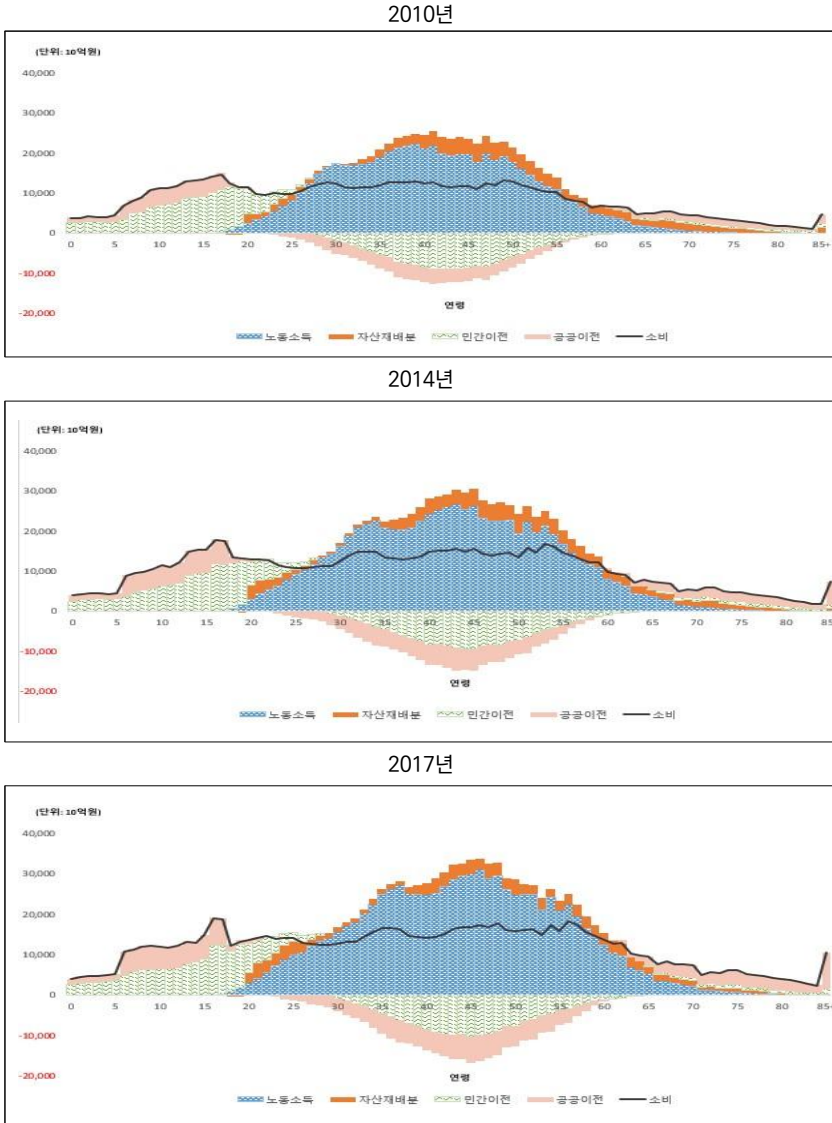
(단위 : 세, 만 원/년, 명목가격)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국민이전계정(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 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2021.7.9. 인출)

[그림 3-5] 연령별 총량 소비 원천 비교

(단위 : 세, 10억 원/년, 명목가격)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국민이전계정(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 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2021.7.9. 인출)

〈표 3-3〉 생애주기적자 기간

(단위: 세, 년)

구분	시작 연령	종료 연령	총 기간
2010년	27	55	29
2014년	27	57	31
2017년	28	58	31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국민이전계정(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2021.7.9. 인출)

2. 연령집단별 생애주기적자 특성

앞에서 연령 프로파일을 통해 연령별 전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았다면, 여기서는 연령집단별로 구체적인 수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총량 기준의 생애주기적자를 살펴보면, 2010년 120조 7,120억 원에서 2014년 133조 5,860억 원으로 증가한 후 2017년 118조 1,570억 원으로 감소하였다(〈표 3-4〉 참조). 생애주기적자를 구성하는 소비와 노동소득은 분석기간 중 모두 증가하였으며, 소비 증가율(연평균 4.5%)이 노동소득 증가율(연평균 5.3%)보다 낮아 생애주기적자의 감소가 발생한 것이다. 소비 규모는 2010년 735조 3,610억 원에서 2017년 999조 1,580억 원으로, 노동소득 규모는 2010년 614조 6,490억 원에서 2017년 881조 1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여기서 소비는 민간 소비와 공공 소비로 구성되며 교육과 보건, 기타 등을 의미한다. 노동소득은 임금근로자의 노동소득뿐 아니라 비임금근로자인 자영자의 노동소득을 포함한다(통계청, 2019.1.22.).

〈표 3-4〉 연령집단별 생애주기적자 규모와 연평균 증가율 추이(총량 기준)

(단위: 10억 원/년, 명목가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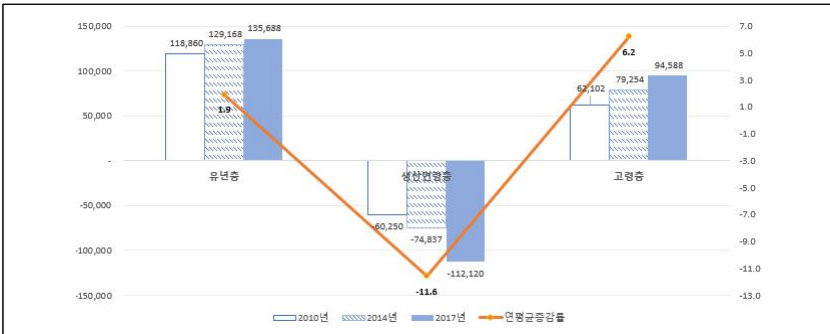
구분	구분	규모(10억 원)			연평균 증가율(%)
		2010년	2014년	2017년	
전체	생애주기적자(A-B)	120,712	133,586	118,157	-0.3
	소비(A)	735,361	890,158	999,158	4.5
	노동소득(B)	614,649	756,572	881,001	5.3
유년층 (0~14세)	생애주기적자(A-B)	118,860	129,168	135,688	1.9
	소비(A)	118,860	129,168	135,688	1.9
	노동소득(B)	0	0	0	-
생산연령층 (15~64세)	생애주기적자(A-B)	-60,250	-74,837	-112,120	-11.6
	소비(A)	545,050	663,704	742,057	4.5
	노동소득(B)	605,299	738,541	854,177	5.0
고령층 (65세 이상)	생애주기적자(A-B)	62,102	79,254	94,588	6.2
	소비(A)	71,451	97,285	121,412	7.9
	노동소득(B)	9,349	18,031	26,824	16.2

주: 1) 생산연령층의 생애주기적자는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작은 음(-)의 값을 보이며, 흑자를 의미함.
 2) 유년층의 노동소득은 분석연도 모두 0으로 연평균 증가율을 계산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국민이전계정(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2021.7.9. 인출)

〔그림 3-6〕 연령집단별 생애주기적자 규모 및 연평균 증가율(총량 기준)

(단위: 10억 원/년, 명목가격, %)



주: 생산연령층의 생애주기적자는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작은 음(-)의 값을 보이며, 흑자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국민이전계정(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2021.7.9. 인출)

연령집단별로 비교 분석하면, 생산연령층의 생애주기적자는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적은 음(-)의 값(흑자)으로 나타나는데 2010년 -60조 2,500억 원에서 2014년 -74조 8,370억 원, 2017년 -112조 1,200억 원으로 흑자가 커지고 있다. 이는 생산연령층의 소비 규모가 2010년 545조 500억 원에서 2017년 742조 570억 원으로 연평균 4.5% 증가한 반면, 생산연령층의 노동소득 규모는 같은 기간 605조 2,990억 원에서 854조 1,770억 원으로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5.0%)이 더 높기 때문이다.

유년층의 생애주기적자는 2010년 118조 8,600억 원에서 2017년 135조 6,880억 원으로 연평균 1.9% 증가하였으며, 고령층의 생애주기적자는 같은 기간 62조 1,020억 원에서 94조 5,880억 원으로 연평균 6.2% 증가하여 유년층보다 증가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피부양인구의 생애주기적자(유년층 1.9%, 고령층 6.2%)는 생산연령층의 생애주기적자 연평균 증가율(-11.6%)보다 절대 규모 면에서 낮은 편이다. 그러나 생애주기적자를 구성하는 소비와 노동소득은 고령층에서 각각 연평균 7.9%와 16.2% 증가하여 생산연령층의 각각 4.5%와 5.0%에 비해 높다. 즉 분석기간 중 생애주기적자는 생산연령층에서 가장 큰 변화율(음(-)의 값 확대)을 보이지만, 생애주기적자를 구성하는 소비와 노동소득을 살펴보면 고령층에서 가장 큰 변화(소비와 노동소득 양(+))의 값 확대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구조 고령화와 관련 있어 보인다. 향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소비와 노동소득 부문에서 고령층의 역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5〉와 같이 분석기간 중 인구 규모와 구성비를 살펴보았다. 총인구 규모는 분석기간 중 지속해서 증가하였으며(2010년 4,955만 명 → 2014년 5,075만 명 → 2017년 5,136만 명), 인구 구성비는 유년층 감소, 고령층 증가 속 생산연령층은 73%대에서 정체되어 있다. 유년층의 인구

구성비는 2010년 16.1%에서 2017년 13.1%로 3.0%p 감소하였으며, 고령층의 인구 구성비는 2010년 10.8%에서 2017년 13.8%로 3.0%p 증가하였다.

〈표 3-5〉 분석연도 연령집단별 인구 규모 및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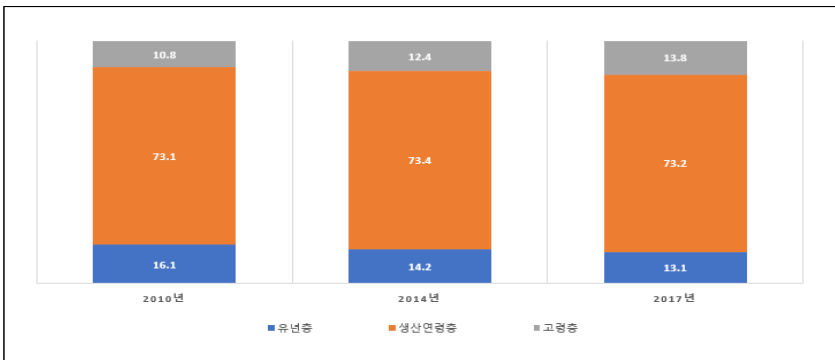
(단위: 명, %, %p)

구분	인구 규모			구성비			
	2010년	2014년	2017년	2010년	2014년	2017년	증감 (2010-2017년)
전체	49,554,112	50,746,659	51,361,911	-	-	-	-
유년층 (0~14세)	7,979,439	7,213,693	6,724,283	16.1	14.2	13.1	-3.0
생산연령층 (15~64세)	36,208,564	37,255,840	37,571,568	73.1	73.4	73.2	0.1
고령층 (65세 이상)	5,366,109	6,277,126	7,066,060	10.8	12.4	13.8	3.0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장래인구추계(https://kosis.kr/statistics List/statistics ListIndex.do?vwcd=MT_ZTITLE& menuId= M_01_01)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2021.11.20. 인출)

〔그림 3-7〕 분석연도 연령집단별 인구 구성비

(단위: %)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장래인구추계(https://kosis.kr/statistics List/statistics ListIndex.do?vwcd=MT_ZTITLE& menuId= M_01_01)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2021.11.20. 인출)

한편 UN 기준의 연령집단은 부양대상인 유년층(0~14세)과 고령층(65세 이상), 부양 주체인 생산연령층(15~64세)으로 크게 3개로 구분하는데, 연령집단 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연령집단 구분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생산연령층으로 분류된 10대 중후반부터 20대 중반까지의 연령층은 학령기로 직접적인 경제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고, 50~60대 연령층은 60세 법정 정년이 아직 안착되지 않아 상당수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시작하여 단계적인 은퇴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도 상대적으로 젊은 경우 여전히 사회적 기여를 통해 일정 수준 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연령집단을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 노동시장 진입과 탈퇴, 부양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소년층(0~19세), 청소년층(20~34세), 청중년층(35~49세), 신중년층(50~64세), 전기고령층(65~74세), 후기고령층(75세 이상)의 6개 집단으로 구분한다. 유소년층은 노동시장 진입 이전의 학령기 단계로 부양이 필요한 연령층이며, 청소년층은 대학교육 진학이나 군 복무 등을 걸쳐 단계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안착하는 연령층이다. 청중년층은 노동시장의 주된 노동연령층으로 경제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연령층이다. 신중년층은 주된 일자리에 은퇴한 후 고령인구에 접어들기 전 가교 일자리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여를 지속하는 연령층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은퇴 연령이 70대 초반이라는 점에서 75세 전후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젊고 부양 부담이 적은 전기고령층과 상대적으로 고연령으로 부양 부담이 높은 후기고령층으로 구분하였다.

세부 연령집단별로 생애주기적자를 살펴보면, 청소년층은 2010년 음(-)의 값이었던 생애주기적자가 2014년부터 양(+)의 값으로 전환하였고, 신중년층은 반대로 2010년 양(+)의 값이었던 생애주기적자가 2014년부

터 음(-)의 값으로 전환하였다. 청소년층의 생애주기적자는 2010년 -5조 8,900억 원에서 2014년 1,210억 원, 2017년 21조 1,810억 원이며, 신중년층의 생애주기적자는 2010년 1조 1,580억 원에서 2014년 -13조 9,410억 원, 2017년 -38조 7,480억 원이다. 청소년층의 경우 생애주기적자의 양(+)으로의 전환은 소비에 의해 주도된 반면, 신중년층의 경우 생애주기적자의 음(-)으로의 전환은 노동소득에 의해 주도되었다. 청소년층의 소비는 분석기간 중 연평균 3.0% 증가하여 2010년 165조 1,650억 원에서 2017년 203조 7,660억 원이며, 노동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이보다 낮은 0.9%로 2010년 171조 560억 원에서 2017년 182조 5,840억 원으로 나타났다. 신중년층의 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7.8%(2010년 130조 3,440억 원 → 2017년 220조 4,950억 원)로 노동소득의 연평균 증가율 10.5%(2010년 129조 1,860억 원 → 2017년 259조 2,430억 원)보다 작다. 즉 최근으로 오면서 청소년층은 부양대상 인구, 신중년층은 부양 주체 인구로 역할이 전환되었으며, 이는 길어진 학령기와 늦어진 노동 시장 진입, 늦어진 은퇴 연령과 베이비붐 세대의 신중년층 편입 등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세부 연령집단의 생애주기적자는 분석기간 중 방향성의 변화가 없었으며, 유소년층은 연평균 2.1%, 전기고령층은 3.0%, 후기고령층은 10.1% 증가하여 고령층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고령층의 생애주기적자 변화는 소비보다 노동소득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전기고령층의 경우 노동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이 16.0%로 소비(6.2%)보다 높고 후기고령층의 경우 각각 19.2%와 10.5%로 전기고령층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고령층의 생애주기적자의 변화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령층의 인구 규모 확대와 관련 있다.

반면 부양 주체인 청중년층은 연평균 증가율이 -5.4%로 음(-)의 값이

다. 청중년층의 소비는 연평균 3.9% 증가하여, 노동소득의 연평균 증가율(4.4%)보다 작다. 이는 청중년층은 소비보다 노동소득이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중년층의 부양 수준 확대 혹은 부양 부담 증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6〉 세부 연령집단별 생애주기적자 규모와 연평균 증가율 추이(총량 기준)

(단위: 10억 원/년, 명목가격, %)

구분		규모(10억 원)			연평균 증가율(%)
		2010년	2014년	2017년	
유소년층 (0~19세)	생애주기적자(A-B)	182,227	203,905	210,397	2.1
	소비(A)	185,065	206,361	213,594	2.1
	노동소득(B)	2,837	2,457	3,197	1.7
청소년층 (20~34세)	생애주기적자(A-B)	-5,890	121	21,181	-
	소비(A)	165,165	186,596	203,766	3.0
	노동소득(B)	171,056	186,476	182,584	0.9
청중년층 (35~49세)	생애주기적자(A-B)	-118,885	-135,752	-169,261	-5.4
	소비(A)	183,336	214,651	239,891	3.9
	노동소득(B)	302,221	350,403	409,153	4.4
신중년층 (50~64세)	생애주기적자(A-B)	1,158	-13,941	-38,748	-
	소비(A)	130,344	185,264	220,495	7.8
	노동소득(B)	129,186	199,205	259,243	10.5
전기고령층 (65~74세)	생애주기적자(A-B)	37,357	42,279	46,018	3.0
	소비(A)	45,923	58,807	70,169	6.2
	노동소득(B)	8,566	16,528	24,151	16.0
후기고령층 (75세 이상)	생애주기적자(A-B)	24,745	36,975	48,570	10.1
	소비(A)	25,528	38,478	51,243	10.5
	노동소득(B)	783	1,503	2,673	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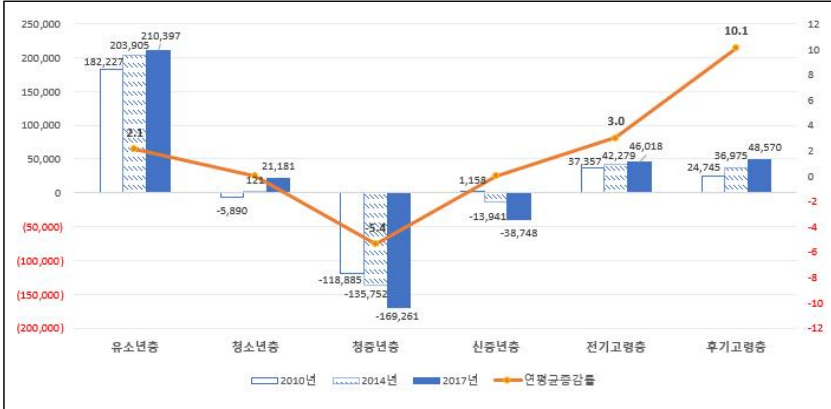
주: 1) 생산연령층의 생애주기적자는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작은 음(-)의 값을 보이며, 흑자를 의미함.

2) 청소년층과 신중년층은 분석연도 중 생애주기적자 값의 부호가 변화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계산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국민이전계정(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2021.7.9. 인출)

[그림 3-8] 세부 연령집단별 생애주기적자 규모 및 연평균 증가율(총량 기준)

(단위: 10억 원/년, 명목가격, %)



- 주: 1) 생산연령층의 생애주기적자는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작은 음(-)의 값을 보이며, 흑자를 의미함.
- 2) 청소년층과 신중년층은 분석연도 중 생애주기적자 값의 부호가 변화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계산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국민이전계정(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 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2021.7.9. 인출)

한편 분석기간 중 세부 연령집단별 인구 규모와 구성비를 살펴보았다. 인구 규모와 구성비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므로 인구 구성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유소년층과 청소년층, 청중년층은 2010년 대비 2017년 구성비가 감소한 반면, 신중년층과 전기고령층, 후기고령층은 2010년 대비 2017년 구성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산연령층 중에서도 50대 이상은 증가한 반면, 40세 미만은 감소하고 있어 생산연령층 내에서의 고령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955~1963년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과 연관 있다. 2010년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47~55세로 청중년층과 신중년층에 해당하지만, 2017년에는 54~62세로 모두 신중년층으로 편입되었다.

70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공·사적이전의 변화와 대응방안

〈표 3-7〉 분석연도 세부 연령집단별 인구 규모 및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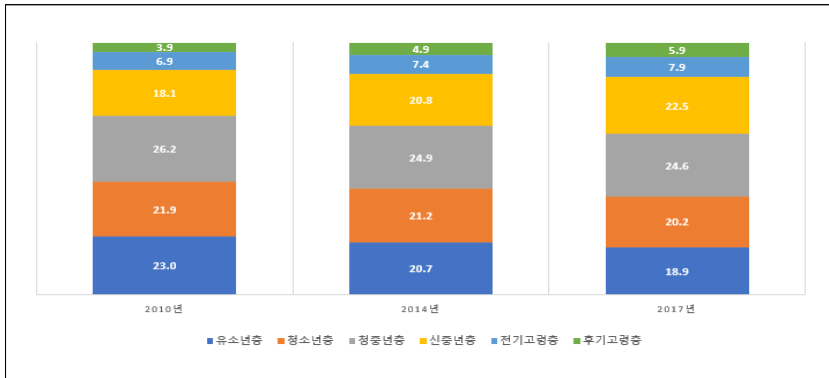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인구 규모			구성비		
	2010년	2014년	2017년	2010년	2014년	2017년
전체	49,554,112	50,746,659	51,361,911	-	-	-
유소년층 (0~19세)	11,408,232	10,503,422	9,706,738	23.0	20.7	18.9
청소년층 (20~34세)	10,850,938	10,761,989	10,389,360	21.9	21.2	20.2
청중년층 (35~49세)	12,965,115	12,629,100	12,639,646	26.2	24.9	24.6
신중년층 (50~64세)	8,963,718	10,575,022	11,560,107	18.1	20.8	22.5
전기고령층 (65~74세)	3,417,951	3,769,481	4,043,319	6.9	7.4	7.9
후기고령층 (75세 이상)	1,948,158	2,507,645	3,022,741	3.9	4.9	5.9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장래인구추계(https://kosis.kr/statistics List/statistics ListIndex.do?vwcd=MT_ZTITLE& menuId= M_01_01)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2021.11.20. 인출)

〔그림 3-9〕 분석연도 세부 연령집단별 인구 구성비

(단위: %)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장래인구추계(https://kosis.kr/statistics List/statistics ListIndex.do?vwcd=MT_ZTITLE& menuId= M_01_01)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2021.11.20. 인출)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면, 유소년층의 인구 구성비는 2010년 23.0%에서 2014년 20.7%, 2017년 18.9%로 지속해서 감소하여, 2010년 대비 2017년에 4.1%p 감소하였다. 청소년층의 인구 구성비는 2010년 21.9%에서 2014년 21.2%, 2017년 20.2%로 소폭 감소하여 분석기간에 1.7%p 감소하였다. 청중년층은 2010년 26.2%에서 2014년 24.9%, 2017년 24.6%로 감소하여, 2010년 대비 2017년에 1.6%p 감소하였다. 신중년층의 인구 구성비는 2010년 18.1%에서 2014년 20.8%, 2017년 22.5%로 증가하여 분석기간 중 4.4%p 증가하였다. 전기고령층은 2010년 6.9%에서 2014년 7.4%, 2017년 7.9%로, 후기고령층은 같은 기간에 각각 3.9%, 4.9%, 5.9%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총량 수준의 생애주기적자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연령집단별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보여준다. 이후 1인당 생애주기적자를 이용하여 세부 연령집단별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표 3-8〉 참조).

1인당 기준 세부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유소년층은 모든 연령집단 중 생애주기적자 규모가 가장 크며, 2010년 1,597만 원에서 2017년 2,168만 원으로 연평균 4.5% 증가하였다. 또 다른 부양대상 인구인 전기고령층과 후기고령층의 2017년 생애주기적자는 각각 1,138만 원과 1,607만 원으로 유소년층보다 규모가 작고 연평균 증가율도 각각 0.6%와 3.4%로 유소년층보다 작다. 이는 앞의 총량 기준 생애주기적자에서 후기고령층(10.1%), 전기고령층(3.0%), 유소년층(2.1%) 순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높았던 것과 다른 양상이다. 비록 1인당 생애주기적자는 유소년층이 가장 크지만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로 인해 총량 기준 생애주기적자는 고령층, 특히 후기고령층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고령층의 1인당 생애주기적자의 변화는 소비(전기고령층 3.7%, 후기고령층 3.7%)보다 노동소득(전기고령층 13.2%, 후기고령층 11.9%)에서 더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지만, 고령층의 노동소득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규모 측면에서의 변화는 크지 않다.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면, 전기고령층의 경우 노동소득이 2010년 251만 원에서 2017년 597만 원으로 분석기간 중 총 346만 원 증가하였으며, 후기고령층의 경우 노동소득이 같은 기간 40만 원에서 88만 원으로 총 48만 원 증가하였다.

분석기간 중 청소년층의 경우 2010년 -54만 원에서 2014년 1만 원, 2017년 204만 원으로 부양 주체에서 부양대상으로 전환되었으며, 신중년층의 경우 반대로 2010년 13만 원에서 2014년 -132만 원, 2017년 -335만 원으로 부양대상에서 부양 주체로 전환되었다. 청소년층의 생애주기적자는 소비(연평균 증가율 3.7%)가 노동소득(연평균 증가율 1.6%)보다 더 크게 증가한 반면, 신중년층은 노동소득(연평균 증가율 6.5%)이 소비(연평균 증가율 4.0%)보다 더 크게 증가하였다. 핵심 부양 주체인 청중년층의 생애주기적자는 2010년 -917만 원에서 2014년 -1,075만 원, 2017년 -1,339만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5.7%이다. 청중년층의 노동소득은 연평균 증가율이 4.8%로(2010년 2,331만 원 → 2017년 3,237만 원) 소비의 연평균 증가율 4.3%(2010년 1,414만 원 → 2017년 1,898만 원)보다 조금 더 크다. 이는 앞서 총량 기준에서 언급한 것처럼, 청중년층의 생애주기적자 규모가 더욱 확대되어 이들의 부양 수준이 확대 혹은 부양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8〉 세부 연령집단별 생애주기적자 규모와 연평균 증가율 추이(1인당 기준)

(단위: 만 원/년, 명목가격, %)

구분	규모(10억 원)			연평균 증가율(%)	
	2010년	2014년	2017년		
전체	생애주기적자(A-B)	244	263	230	-0.8
	소비(A)	1,484	1,754	1,945	3.9
	노동소득(B)	1,240	1,491	1,715	4.7
유소년층 (0~19세)	생애주기적자(A-B)	1,597	1,941	2,168	4.5
	소비(A)	1,622	1,965	2,200	4.5
	노동소득(B)	25	23	33	4.1

구분		규모(10억 원)			연평균 증가율(%)
		2010년	2014년	2017년	
청소년층 (20~34세)	생애주기적자(A-B)	-54	1	204	-
	소비(A)	1,522	1,734	1,961	3.7
	노동소득(B)	1,576	1,733	1,757	1.6
청중년층 (35~49세)	생애주기적자(A-B)	-917	-1,075	-1,339	-5.7
	소비(A)	1,414	1,700	1,898	4.3
	노동소득(B)	2,331	2,775	3,237	4.8
신중년층 (50~64세)	생애주기적자(A-B)	13	-132	-335	-
	소비(A)	1,454	1,752	1,907	4.0
	노동소득(B)	1,441	1,884	2,243	6.5
전기고령층 (65~74세)	생애주기적자(A-B)	1,093	1,122	1,138	0.6
	소비(A)	1,344	1,560	1,735	3.7
	노동소득(B)	251	438	597	13.2
후기고령층 (75세 이상)	생애주기적자(A-B)	1,270	1,474	1,607	3.4
	소비(A)	1,310	1,534	1,695	3.7
	노동소득(B)	40	60	88	11.9

- 주: 1) 생산연령층의 생애주기적자는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작은 음(-)의 값을 보이며, 흑자를 의미함.
2) 청소년층과 신중년층은 분석연도 중 생애주기적자 값의 부호가 변화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계산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국민이전계정(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2021.7.9. 인출)

[그림 3-10] 세부 연령집단별 생애주기적자 규모 및 연평균 증가율(인당 기준)

(단위: 만 원/년, 명목가격, %)



주: 생산연령층의 생애주기적자는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작은 음(-)의 값을 보이며, 흑자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국민이전계정(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2021.7.9. 인출)

3. 연령집단별 연령재배분 특성

가. 부문별 연령재배분

총량 기준의 연령재배분을 살펴보면, 2010년 120조 7,120억 원에서 2014년 133조 5,860억 원으로 증가한 후 2017년 118조 1,570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연평균 증가율은 -0.3%이다. 연령재배분은 생애주기적자를 메우는 것으로 생애주기적자의 규모 변화와 동일하다.

연령재배분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공공 부문은 음(-)의 값이며 민간 부문은 양(+의 값이다. 공공 부문은 유입보다 유출이 더 많고, 민간 부문은 유출보다 유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 부문의 경우 2010년 -55조 8,490억 원에서 2014년 -55조 3,430억 원, 2017년 -81조 9,020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6.8%이며, 민간 부문의 경우 2010년 176조 5,610억 원에서 2014년 188조 9,280억 원, 2017년 200조 590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8%이다.

연령집단별로 비교 분석하면, 유년층의 연령재배분은 공공 부문의 경우 2010년 42조 6,890억 원에서 2014년 54조 6,190억 원, 2017년 58조 8,490억 원으로 연평균 4.7% 증가하였으며, 민간 부문의 경우 2010년 76조 1,710억 원에서 2014년 74조 5,490억 원으로 감소한 후 2017년 76조 8,390억 원으로 연평균 0.1% 증가하였다. 즉 유년층의 민간 부문 연령재배분 규모가 공공 부문보다 큰 수준을 유지하지만, 증가율 측면에서는 공공 부문이 민간 부문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고령층의 연령재배분 규모는 2010년 민간 부문에서 공공 부문보다 더 컸으나, 최근 고령인구 대상 부양정책의 확대로 인해 2014년부터 공공 부문의 연령재배분이 민간 부문의 연령재배분보다 더 크다. 즉 2010~

2017년 동안 공공 부문의 연령재배분이 민간 부문의 연령재배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같이 최근 고령층의 공공 부문의 연령재배분 확대는 공적이전 정책의 확대와 더불어 고령인구 증가와도 관련 있다.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면, 고령층의 공공 부문 연령재배분은 2010년 25조 5,470억 원에서 2014년 41조 6,210억 원, 2017년 56조 8,980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2.1%로 유년층(4.7%)보다 더 크게 증가하였다. 고령층의 민간 부문 연령재배분은 2010년 36조 5,540억 원에서 2014년 37조 6,330억 원, 2017년 37조 6,910억 원으로 정체되어 연평균 증가율이 0.4%이다.

생산연령층의 경우 연령재배분이 음(-)의 값으로 부양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생산연령층의 공공 부문 연령재배분의 경우 2010년 -124조 850억 원에서 2014년 -151조 5,820억 원, 2017년 -197조 6,480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7.3%이다. 그에 반해 생산연령층의 민간 부문 연령재배분은 양(+)의 값으로 공공 부문에 비해 규모와 연평균 증가율(방향성에 상관없이 절댓값 기준)이 모두 작다. 민간 부문 연령재배분의 경우 2010년 63조 8,360억 원에서 2014년 76조 7,460억 원, 2017년 85조 5,280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4.3%이다.

〈표 3-9〉 연령집단별 및 부문별 연령재배분 규모와 연평균 증가율 추이(총량 기준)

(단위: 10억 원/년, 명목가격, %)

구분		규모(10억 원)			연평균 증가율(%)
		2010년	2014년	2017년	
전체	연령재배분(A+B)	120,712	133,586	118,157	-0.3
	공공 부문(A)	-55,849	-55,343	-81,902	-6.8
	민간 부문(B)	176,561	188,928	200,059	1.8
유년층 (0~14세)	연령재배분(A+B)	118,860	129,168	135,688	1.9
	공공 부문(A)	42,689	54,619	58,849	4.7
	민간 부문(B)	76,171	74,549	76,839	0.1

76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공·사적이전의 변화와 대응방안

구분		규모(10억 원)			연평균 증가율(%)
		2010년	2014년	2017년	
생산연령층 (15~64세)	연령재배분(A+B)	-60,250	-74,837	-112,120	-11.6
	공공 부문(A)	-124,085	-151,582	-197,648	-7.3
	민간 부문(B)	63,836	76,746	85,528	4.3
고령층 (65세 이상)	연령재배분(A+B)	62,102	79,254	94,588	6.2
	공공 부문(A)	25,547	41,621	56,898	12.1
	민간 부문(B)	36,554	37,633	37,691	0.4

주: +는 유입이 유출보다 많은 순유입, -는 유출이 유입보다 많은 순유출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국민이전계정(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2021.7.9. 인출)

세부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층은 2010년 음(-)의 값이었던 연령재배분이 2014년부터 양(+)의 값으로 전환하였고 신증년층은 반대로 2010년 양(+)의 값이었던 연령재배분이 2014년부터 음(-)의 값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생애주기적자에서 나타난 특성과 동일하다. 청소년층의 연령재배분은 2010년 -5조 8,900억 원에서 2014년 1,210억 원, 2017년 21조 1,810억 원으로 변화하였으며, 신증년층의 연령재배분은 2010년 1조 1,580억 원에서 2014년 -13조 9,410억 원, 2017년 -38조 7,480억 원으로 변화하였다. 청소년층의 연령재배분 양(+)의 전환은 민간 부문에 의해 주도되었고, 신증년층의 연령재배분 음(-)의 전환은 공공 부문에 의해 주도되었다. 청소년층의 공공 부문 증가율은 분석기간 중 연평균 -1.5%(2010년 -41조 4,370억 원 → 2017년 -45조 8,230억 원)이며, 민간 부문은 연평균 9.5%(2010년 35조 5,460억 원 → 2017년 67조 40억 원)로 공공 부문보다 크게 변화하였다. 신증년층의 공공 부문 연령재배분은 연평균 -16.5%(2010년 -22조 480억 원 → 2017년 -57조 6,500억 원)로 민간 부문의 연평균 -2.9%(2010년 23조 2,060억 원 → 2017년 18조 9,020억 원)보다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즉 최근으로 오면서

청소년층은 민간 부문의 유입 증가로 부양대상, 신중년층은 공공 부문의 유출이 증가하여 부양 주체로 역할이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0〉 세부 연령집단별 및 부문별 연령재배분 규모와 연평균 증가율 추이(총량 기준)

(단위: 10억 원/년, 명목가격, %)

구분		규모(10억 원)			연평균 증가율(%)
		2010년	2014년	2017년	
유소년층 (0~19세)	연령재배분(A+B)	182,227	203,904	210,397	2.1
	공공 부문(A)	55,954	74,256	79,797	5.2
	민간 부문(B)	126,273	129,648	130,599	0.5
청소년층 (20~34세)	연령재배분(A+B)	-5,890	121	21,181	-
	공공 부문(A)	-41,437	-44,941	-45,823	-1.5
	민간 부문(B)	35,546	45,062	67,004	9.5
청중년층 (35~49세)	연령재배분(A+B)	-118,885	-135,752	-169,261	-5.4
	공공 부문(A)	-73,866	-93,101	-115,124	-6.7
	민간 부문(B)	-45,019	-42,652	-54,138	-5.0
신중년층 (50~64세)	연령재배분(A+B)	1,158	-13,941	-38,748	-
	공공 부문(A)	-22,048	-33,177	-57,650	-16.5
	민간 부문(B)	23,206	19,236	18,902	-2.9
전기고령층 (65~74세)	연령재배분(A+B)	37,357	42,279	46,018	3.0
	공공 부문(A)	13,747	18,478	22,864	7.5
	민간 부문(B)	23,610	23,802	23,154	-0.3
후기고령층 (75세 이상)	연령재배분(A+B)	24,746	36,975	48,570	10.1
	공공 부문(A)	11,800	23,143	34,034	16.3
	민간 부문(B)	12,944	13,832	14,537	1.7

주: 1) +는 유입이 유출보다 많은 순유입, -는 유출이 유입보다 많은 순유출을 의미함.

2) 청소년층과 신중년층은 분석연도 중 연령재배분 값의 부호가 변화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계산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국민이전계정(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2021.7.9. 인출)

그 외 세부 연령집단의 연령재배분은 분석기간 중 방향성의 변화가 없었으며, 유소년층은 연평균 2.1%, 전기고령층은 3.0%, 후기고령층은 10.1% 증가하여, 이들 피부양인구집단 중에서 유소년층보다 고령층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았다. 이는 연령재배분이 생애주기적자를 메운다는 점에서 생애주기적자와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한편 이들 집단의 연령재배분 변화는 공공 부문에 의해 주도되었다. 유소년층의 경우 분석기간 중 공공 부문의 연평균 증가율이 5.2%로 민간 부문의 0.5%보다 높다. 전기 고령층의 경우 공공 부문의 연평균 증가율이 7.5%로 민간 부문의 -0.3%보다 높고, 후기고령층의 경우 각각 16.3%와 1.7%이다. 이러한 고령층의 연령재배분 변화는 상당수 고령인구 증가와 관련 있다.

반면 핵심 부양 주체인 청중년층의 연령재배분은 연평균 증가율이 -5.4%이다. 청중년층의 공공 부문은 연평균 증가율이 -6.7%이며, 민간 부문의 -5.0%보다 감소 폭이 크다. 청중년층은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에서 모두 음(-)의 값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청중년층의 자원이 피부양인구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최근으로 올수록 청중년층의 부양 부담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11〉과 같이 인구 규모의 효과를 배제한 1인당 연령재배분을 세부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유소년층은 모든 연령집단 중 연령재배분 규모가 가장 크며, 2010년 1,597만 원에서 2017년 2,168만 원으로 연평균 4.5% 증가하였다. 또 다른 부양대상 인구인 전기고령층과 후기고령층의 2017년 연령재배분은 각각 1,138만 원과 1,607만 원으로 유소년층보다 규모가 작고, 연평균 증가율도 각각 0.6%와 3.4%로 유소년층보다 작다. 이는 앞에서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이 반영된 총량 기준 연령재배분에서는 후기고령층(10.1%), 전기고령층(3.0%), 유소년층(2.1%) 순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높았던 것과 다른 양상이다.

〈표 3-11〉 세부 연령집단별 및 부문별 연령재배분 규모와 연평균 증가율 추이(1인당 기준)

(단위: 만 원/년, 명목가격, %)

구분		규모(만 원)			연평균 증가율(%)
		2010년	2014년	2017년	
유소년층 (0~19세)	연령재배분(A+B)	1,597	1,941	2,168	4.5
	공공 부문(A)	490	707	822	7.7
	민간 부문(B)	1,107	1,234	1,345	2.8
청소년층 (20~34세)	연령재배분(A+B)	-54	1	204	-
	공공 부문(A)	-382	-418	-441	-2.1
	민간 부문(B)	328	419	645	10.2
청중년층 (35~49세)	연령재배분(A+B)	-917	-1,075	-1,339	-5.7
	공공 부문(A)	-570	-737	-911	-7.1
	민간 부문(B)	-347	-338	-428	-5.4
신중년층 (50~64세)	연령재배분(A+B)	13	-132	-335	-
	공공 부문(A)	-246	-314	-499	-12.2
	민간 부문(B)	259	182	164	-6.4
전기고령층 (65~74세)	연령재배분(A+B)	1,093	1,122	1,138	0.6
	공공 부문(A)	402	490	565	5.0
	민간 부문(B)	691	631	573	-2.6
후기고령층 (75세 이상)	연령재배분(A+B)	1,270	1,474	1,607	3.4
	공공 부문(A)	606	923	1,126	9.3
	민간 부문(B)	664	552	481	-4.5

주: 1) +는 유입이 유출보다 많은 순유입, -는 유출이 유입보다 많은 순유출을 의미함.

2) 청소년층과 신중년층은 분석연도 중 연령재배분 값의 부호가 변화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계산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국민이전계정(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2021.7.9. 인출)

또한 고령층의 1인당 연령재배분의 변화는 민간 부문(전기고령층 -2.6%, 후기고령층 -4.5%)보다 공공 부문(전기고령층 5.0%, 후기고령층 9.3%)에서 더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인다.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전기고령층의 경우 공공 부문이 2010년 402만 원에서 2017년 565만 원으로 163만 원 증가하였으며, 후기고령층의 경우 공공 부문이 같은 기간 606만 원에서 1,126만 원으로 520만 원 증가하였다.

분석기간 중 청소년층의 경우 1인당 연령재배분이 2010년 -54만 원에서 2014년 1만 원, 2017년 204만 원으로 부양 주체에서 부양대상으로 전환되었으며, 신중년층의 경우 반대로 연령재배분이 2010년 13만 원에서 2014년 -132만 원, 2017년 -335만 원으로 부양대상에서 부양 주체로 전환되었다. 청소년층의 연령재배분은 민간 부문(연평균 10.2%)이 공공 부문(연평균 -2.1%)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며, 신중년층은 공공 부문(연평균 -12.2%)이 민간 부문(연평균 -6.4%)보다 더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신중년층의 경우 민간 부문에서 연령재배분 증가율은 음(-)의 값을 기록하여, 최근으로 올수록 그 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부양 주체인 청중년층의 1인당 연령재배분은 2010년 -917만 원에서, 2014년 -1,075만 원, 2017년 -1,339만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5.7%이다. 청중년층의 공공 부문은 연평균 증가율이 -7.1%(2010년 -570만 원 → 2017년 -911만 원)로 민간 부문의 연평균 증가율 -5.4%(2010년 -347만 원 → 2017년 -428만 원)보다 음(-)의 값이 크다. 이는 총량 기준 분석에서 언급한 것처럼, 청중년층의 경우 부양 부담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구성 항목별 연령재배분

총량 기준의 연령재배분을 구성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공공·민간자산재배분(이하 자산재배분)의 규모가 가장 크고 그다음 민간이전, 공공이전 순이다.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면, 자산재배분은 2010년 125조 9,110억 원에서 2014년 136조 9,660억 원으로 증가한 후, 2017년 124조 5,960억 원으로 감소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0.1%이다. 민간이전은 2010년 -5조 1,990억 원에서 2014년 -3조 3,800억 원으로 음(-)의 값

이 감소한 후, 2017년 -6조 4,390억 원으로 다시 확대되어 연평균 증가율이 -9.8%이다. 한편 여기서 공공이전과 민간이전은 유입에서 유출을 뺀 공공순이전과 민간순이전을 의미한다. 편의상 이하 설명에서 공공이전과 민간이전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연령집단별로 비교 분석하면, 먼저 유년층의 경우 분석기간 중 자산재배분이 감소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0.5%이며, 공공이전과 민간이전은 증가하여 각각 연평균 4.5%와 0.1%이다. 구체적인 수치로 비교하면, 자산재배분은 2010년 -1조 9,820억 원에서 2017년 -1조 9,000억 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공공이전은 같은 기간 44조 6,710억 원에서 60조 7,49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민간이전은 2010년 76조 1,710억 원에서 2017년 76조 8,39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즉 유년층의 경우 민간자산의 규모가 가장 크며, 최근으로 오면서 공공이전의 증가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생산연령층의 경우 자산재배분 규모가 가장 크고, 공공이전의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르다.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면, 자산재배분이 2010년 105조 3,280억 원에서 2017년 110조 6,420억 원으로 연평균 0.7% 증가하였으며, 공공이전은 같은 기간 -74조 740억 원에서 -125조 1,990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8.1%이다. 민간이전은 2010년 -91조 5,030억 원에서 2017년 -97조 5,630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0%이다. 즉 생산연령층의 경우 2010년에는 민간이전 유출이 공공이전 유출보다 더 컸으나, 2014년부터는 공공이전 유출이 민간이전 유출보다 더 커서 생산연령층의 주된 경제적 부양 항목의 변화가 감지된다.

고령층의 경우 분석기간 중 공공이전 규모와 증가 속도가 모든 연령집단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면, 자산재배분은 2010년 22조 5,650억 원에서 2017년 15조 8,530억 원으로 연

평균 증가율이 -4.9%이며, 공공이전은 같은 기간 29조 4,030억 원에서 64조 4,500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1.9%이다. 민간이전은 2010년 10조 1,330억 원에서 2017년 14조 2,850억 원으로 연평균 5.0% 증가하였다. 즉 고령층의 연령재배분의 구성 항목은 유년층의 연령재배분 구성 항목에 비해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3-12〉 연령집단별 및 구성 항목별 연령재배분 규모와 연평균 증가율 추이(총량 기준)
(단위: 10억 원/년, 명목가격, %)

구분		규모(10억 원)			연평균 증가율(%)
		2010년	2014년	2017년	
전체	연령재배분(A+B+C)	120,712	133,586	118,157	-0.3
	공공·민간자산재배분(A)	125,911	136,966	124,596	-0.1
	공공(순)이전(B)	0	0	0	0.0
	민간(순)이전(C)	-5,199	-3,380	-6,439	-9.8
유년층 (0~14세)	연령재배분(A+B+C)	118,860	129,168	135,688	1.9
	공공·민간자산재배분(A)	-1,982	-1,442	-1,900	-0.5
	공공(순)이전(B)	44,671	56,061	60,749	4.5
	민간(순)이전(C)	76,171	74,549	76,839	0.1
생산연령층 (15~64세)	연령재배분(A+B+C)	-60,250	-74,837	-112,120	-11.6
	공공·민간자산재배분(A)	105,328	118,623	110,642	0.7
	공공(순)이전(B)	-74,074	-101,981	-125,199	-8.1
	민간(순)이전(C)	-91,503	-91,479	-97,563	-1.0
고령층 (65세 이상)	연령재배분(A+B+C)	62,102	79,254	94,588	6.2
	공공·민간자산재배분(A)	22,565	19,785	15,853	-4.9
	공공(순)이전(B)	29,403	45,920	64,450	11.9
	민간(순)이전(C)	10,133	13,550	14,285	5.0

주: +는 유입이 유출보다 많은 순유입, -는 유출이 유입보다 많은 순유출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국민이전계정(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2021.7.9. 인출)

〈표 3-13〉에 제시된 세부 연령집단별로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유소년층의 자산재배분은 -1.0%, 공공이전은 4.9%, 민간이전은 0.5%로

공공이전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령재배분 규모 면에서는 2017년 기준 민간이전이 130조 5,990억 원으로 공공이전(83조 930억 원), 자산재배분(-3조 2,960억 원)보다 크다.

전기고령층의 경우 자산재배분의 연평균 증가율은 -4.3%이며, 공공이전은 연평균 7.8%, 민간이전은 연평균 4.8%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전기고령층의 연령재배분 구성 항목 중 공공이전이 27조 9,570억 원으로 가장 크고, 그다음 자산재배분(12조 590억 원), 민간이전(6조 50억 원) 순이다. 후기고령층의 경우 자산재배분은 연평균 증가율이 -6.6%이며, 공공이전과 민간이전은 각각 연평균 16.1%와 5.2% 증가하였다. 즉 후기고령층의 연령재배분 구성 항목의 변화가 전기고령층의 변화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17년 기준 후기고령층의 연령재배분 구성 항목 중 공공이전이 36조 4,950억 원으로 가장 크고, 그다음 민간이전은 8조 2,780억 원, 자산재배분은 3조 7,960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기 및 후기고령층 모두 자산재배분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최근으로 올수록 부동산, 주식 등을 통한 수익(임대료, 배당금) 규모와 비중이 감소하고 공공이전의 규모와 비중이 커지고 있다. 특히 후기고령층은 전기고령층과 달리 민간이전이 공공이전 다음으로 2번째로 중요한 항목이라는 점에서 자산재배분의 역할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전기노인은 자산재배분이 2번째로 중요한 항목). 그리고 전기 및 후기고령층의 연령재배분 구성 항목의 변화는 청소년층에 비해 급격한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층의 경우 민간이전이 연평균 20.4%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다음 자산재배분 연평균 9.7%, 공공이전 연평균 -1.4% 순이다. 즉 청소년층은 자산재배분과 민간이전의 확대로 인해 2010년 음(-)의 연령재배분이 2014년부터 양(+)의 연령재배분으로 변화하였다. 핵심 부양 주체인 청중년층의 경우 공공이전이 연평균 -7.4%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

며, 그다음 자산재배분은 연평균 증가율이 -3.6%이다. 민간이전이 연평균 0.7%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중년층은 2017년 기준 민간이전의 규모가 -124조 7,040억 원으로 공공이전의 -84조 3,800억 원이나 자산재배분의 39조 8,230억 원보다 크다는 점에서, 민간이전이 청중년층의 가장 큰 부양 항목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신중년층은 공공이전의 연평균 증가율이 -23.0%이며, 그다음 민간이전의 연평균 증가율은 -8.1%이다. 반면 자산재배분은 연평균 0.7% 증가하였다. 특히 신중년층의 경우 공공이전과 민간이전의 증가로 인해 2010년 양(+)의 연령재배분이 2014년부터 음(-)의 연령재배분으로 전환되었다. 2017년 기준 신중년층의 연령재배분 구성 항목은 민간이전 -46조 3,430억 원, 공공이전 -33조 2,650억 원, 자산재배분 40조 8,600억 원이다. 즉 신중년층 역시 부양 주체로 일정 수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가장 큰 부양 항목은 청중년층과 동일하게 민간이전으로 확인되었다.

〈표 3-13〉 세부 연령집단별 및 구성 항목별 연령재배분 규모와 연평균 증가율 추이(총량 기준)

(단위: 10억 원/년, 명목가격, %)

구분		규모(10억 원)			연평균 증가율(%)
		2010년	2014년	2017년	
유소년층 (0~19세)	연령재배분(A+B+C)	182,227	203,904	210,397	2.1
	공공·민간자산재배분(A)	-3,327	-2,488	-3,296	-1.0
	공공(순)이전(B)	59,281	76,743	83,093	4.9
	민간(순)이전(C)	126,273	129,648	130,599	0.5
청소년층 (20~34세)	연령재배분(A+B+C)	-5,890	121	21,181	-
	공공·민간자산재배분(A)	16,355	21,012	31,355	9.7
	공공(순)이전(B)	-27,629	-32,653	-29,898	-1.4
	민간(순)이전(C)	5,384	11,762	19,724	20.4
청중년층 (35~49세)	연령재배분(A+B+C)	-118,885	-135,752	-169,261	-5.4
	공공·민간자산재배분(A)	51,440	52,967	39,823	-3.6
	공공(순)이전(B)	-51,783	-71,760	-84,380	-7.4
	민간(순)이전(C)	-118,542	-116,959	-124,704	-0.8

구분		규모(10억 원)			연평균 증가율(%)
		2010년	2014년	2017년	
신중년층 (50~64세)	연령재배분(A+B+C)	1,158	-13,941	-38,748	-
	공공·민간자산재배분(A)	38,879	45,690	40,860	0.7
	공공(순)이전(B)	-9,273	-18,251	-33,265	-23.0
	민간(순)이전(C)	-28,447	-41,381	-46,343	-8.1
전기고령층 (65~74세)	연령재배분(A+B+C)	37,357	42,279	46,017	3.0
	공공·민간자산재배분(A)	16,451	14,443	12,059	-4.3
	공공(순)이전(B)	16,570	21,639	27,957	7.8
	민간(순)이전(C)	4,336	6,197	6,005	4.8
후기고령층 (75세 이상)	연령재배분(A+B+C)	24,745	36,975	48,570	10.1
	공공·민간자산재배분(A)	6,115	5,341	3,796	-6.6
	공공(순)이전(B)	12,834	24,281	36,495	16.1
	민간(순)이전(C)	5,796	7,353	8,278	5.2

주: 1) +는 유입이 유출보다 많은 순유입, -는 유출이 유입보다 많은 순유출을 의미함.

2) 청소년층과 신중년층은 분석연도 중 연령재배분 값의 부호가 변화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계산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국민이전계정(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2021.7.9. 인출)

〈표 3-14〉에 제시한 인구 규모의 효과를 배제한 1인당 연령재배분을 세부 연령집단별 구성 항목으로 비교하면, 청소년층은 모든 연령집단 중에서 민간이전의 규모가 가장 크다. 청소년층의 민간이전은 2010년 1,107만 원에서 2017년 1,345만 원으로 연평균 2.8% 증가하였다. 청소년층은 모든 연령집단 중에서 분석기간 중 자산재배분과 민간이전의 증가율이 가장 크다. 2010년 청소년층의 자산재배분은 151만 원에서 2017년 302만 원으로 연평균 10.4% 증가하였으며, 민간이전은 같은 기간 5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연평균 21.1% 증가하였다.

〈표 3-14〉 세부 연령집단별 및 구성 항목별 연령재배분 규모와 연평균 증가율 추이(1인당 기준)
(단위: 만 원/년, 명목가격, %)

구분		규모(만 원)			연평균 증가율(%)
		2010년	2014년	2017년	
유소년층 (0~19세)	연령재배분(A+B+C)	1,597	1,941	2,168	4.5
	공공·민간자산재배분(A)	-29	-24	-34	-3.4
	공공(순)이전(B)	520	731	856	7.4
	민간(순)이전(C)	1,107	1,234	1,345	2.8
청소년층 (20~34세)	연령재배분(A+B+C)	-54	1	204	-
	공공·민간자산재배분(A)	151	195	302	10.4
	공공(순)이전(B)	-255	-303	-288	-2.0
	민간(순)이전(C)	50	109	190	21.1
청중년층 (35~49세)	연령재배분(A+B+C)	-917	-1,075	-1,339	-5.7
	공공·민간자산재배분(A)	397	419	315	-3.2
	공공(순)이전(B)	-399	-568	-668	-7.8
	민간(순)이전(C)	-914	-926	-987	-1.1
신중년층 (50~64세)	연령재배분(A+B+C)	13	-132	-335	-
	공공·민간자산재배분(A)	434	432	353	-2.9
	공공(순)이전(B)	-103	-173	-288	-18.5
	민간(순)이전(C)	-317	-391	-401	-4.2
전기고령층 (65~74세)	연령재배분(A+B+C)	1,093	1,122	1,138	0.6
	공공·민간자산재배분(A)	481	383	298	-6.6
	공공(순)이전(B)	485	574	691	5.2
	민간(순)이전(C)	127	164	149	2.3
후기고령층 (75세 이상)	연령재배분(A+B+C)	1,270	1,474	1,607	3.4
	공공·민간자산재배분(A)	314	213	126	-12.3
	공공(순)이전(B)	659	968	1,207	9.0
	민간(순)이전(C)	298	293	274	-1.2

주: 1) +는 유입이 유출보다 많은 순유입, -는 유출이 유입보다 많은 순유출을 의미함.

2) 청소년층과 신중년층은 분석연도 중 연령재배분 값의 부호가 변화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계산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국민이전계정(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 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2021.7.9. 인출)

청중년층의 공공이전과 민간이전의 음(-)의 값은 모든 연령집단 중에서 가장 크다. 청중년층의 공공이전은 2010년 -399만 원에서 2017년

-668만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7.8%인 반면, 민간이전은 같은 기간 -914만 원에서 -987만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1%이다. 신중년층은 분석기간 중 자산재배분의 연평균 증가율이 -2.9%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연령집단 중에서 자산재배분 규모가 가장 크다(2010년 434만 원 → 2017년 353만 원). 그리고 신중년층의 음(-)의 민간이전은 청중년층 다음 2번째로 커서 2010년 -317만 원에서 2017년 -401만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4.2%이다. 즉 연평균 증가율 측면에서 신중년층의 민간이전은 청중년층의 -1.1%보다 더 크게 하락하였다.

전기고령층과 후기고령층은 자산재배분 감소율과 공공이전 증가율이 다른 연령집단과 비교하여 높은 편인데, 특히 후기고령층은 모든 연령집단 중 가장 높다. 후기고령층의 자산재배분은 2010년 314만 원에서 2017년 126만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2.3%이며, 공공이전은 같은 기간 659만 원에서 1,207만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9.0%이다. 전기고령층은 후기고령층보다 변화 폭이 조금 낮아서 자산재배분의 경우 2010년 481만 원에서 2017년 298만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6.6%이며, 공공이전의 경우 같은 기간 485만 원에서 691만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5.2%이다.

4. 고령층의 공공이전과 민간이전의 관계

가. 공공이전과 민간이전

앞에서 국민이전계정은 공공이전과 민간이전을 유입과 유출로 측정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여기서는 유입과 유출을 고려하여 고령층의 공공이전과 민간이전의 특성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표 3-15〉 참조).

먼저 총량 기준의 공공이전을 살펴보면, 고령층의 경우 공공이전 유입이 유출보다 크다. 2017년 기준으로 고령층 전체의 공공이전 유입은 104조 5,060억 원으로 공공이전 유출(40조 560억 원)의 2.5배 수준이다. 고령층의 공공이전 유입(11.6%)은 연평균 증가율 면에서도 유출(11.2%)보다 조금 높은 편이다.

총량 기준 민간이전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2017년 기준 가구 간 이전이 4조 9,560억 원으로 가구 내 이전(9조 3,300억 원)보다 적지만 연평균 증가율 측면에서는 가구 간 이전이 14.0%로 가구 내 이전(2.0%)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으로 오면서 고령층이 자녀와 동거하는 경향이 낮아져 가구 내 이전이 줄고, 대신 가구 간 이전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민간이전을 유입과 유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7년 가구 간 이전의 유입이 12조 8,260억 원으로 유출(7조 8,700억 원)보다 크고 가구 내 이전의 유입도 28조 1,940억 원으로 유출(18조 8,650억 원)보다 크다. 즉 고령층의 경우 민간이전의 유입이 민간이전의 유출보다 크며, 특히 가구 내 이전이 가구 간 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령층을 세분화하여 전기고령층과 후기고령층으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대체로 유지되지만, 두 연령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 후기고령층이 전기고령층보다 공공이전과 민간이전의 유입, 유출의 크기와 연평균 증가율이 크다. 이는 후기고령층이 전기고령층보다 이전(transfer)에 의한 부양이 더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기고령층에서 주목할 또 다른 지점은 가구 내 이전의 유입에서 연평균 증가율이 -0.4%로 음(-)의 값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후기고령층의 가구 내 이전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후기고령층은 가구 내 이전의 유출 증가보다 유입 증가가 더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15〉 고령층의 공공이전과 민간이전 추이(총량 기준)

(단위: 10억 원/년, 명목가격, %)

구분		규모(10억 원)			연평균 증가율(%)
		2010년	2014년	2017년	
고령층 전체	공공(순)이전(A-B)	29,403	45,920	64,450	11.9
	유입(A)	48,512	73,995	104,506	11.6
	유출(B)	19,109	28,075	40,056	11.2
	민간(순)이전(C-D+E-F)	10,133	13,550	14,285	5.0
	가구 간 이전(C-D)	1,984	4,850	4,956	14.0
	유입(C)	4,604	11,400	12,826	15.8
	유출(D)	2,620	6,550	7,870	17.0
	가구 내 이전(E-F)	8,149	8,700	9,330	2.0
	유입(E)	19,155	23,461	28,194	5.7
유출(F)	11,006	14,761	18,865	8.0	
전기고령층 (65~74세)	공공(순)이전(A-B)	16,570	21,639	27,955	7.8
	유입(A)	30,559	42,288	54,953	8.7
	유출(B)	13,989	20,649	26,998	9.8
	민간(순)이전(C-D+E-F)	4,336	6,197	6,007	4.8
	가구 간 이전(C-D)	680	1,417	1,061	6.6
	유입(C)	2,681	5,901	6,308	13.0
	유출(D)	2,001	4,484	5,247	14.8
	가구 내 이전(E-F)	3,656	4,780	4,946	4.4
	유입(E)	11,953	14,333	17,021	5.2
유출(F)	8,297	9,553	12,075	5.5	
후기고령층 (75세 이상)	공공(순)이전(A-B)	12,834	24,281	36,495	16.1
	유입(A)	17,954	31,707	49,553	15.6
	유출(B)	5,120	7,426	13,057	14.3
	민간(순)이전(C-D+E-F)	5,796	7,353	8,278	5.2
	가구 간 이전(C-D)	1,304	3,433	3,895	16.9
	유입(C)	1,923	5,499	6,518	19.1
	유출(D)	619	2,066	2,623	22.9
	가구 내 이전(E-F)	4,493	3,921	4,384	-0.4
	유입(E)	7,202	9,129	11,173	6.5
유출(F)	2,710	5,208	6,789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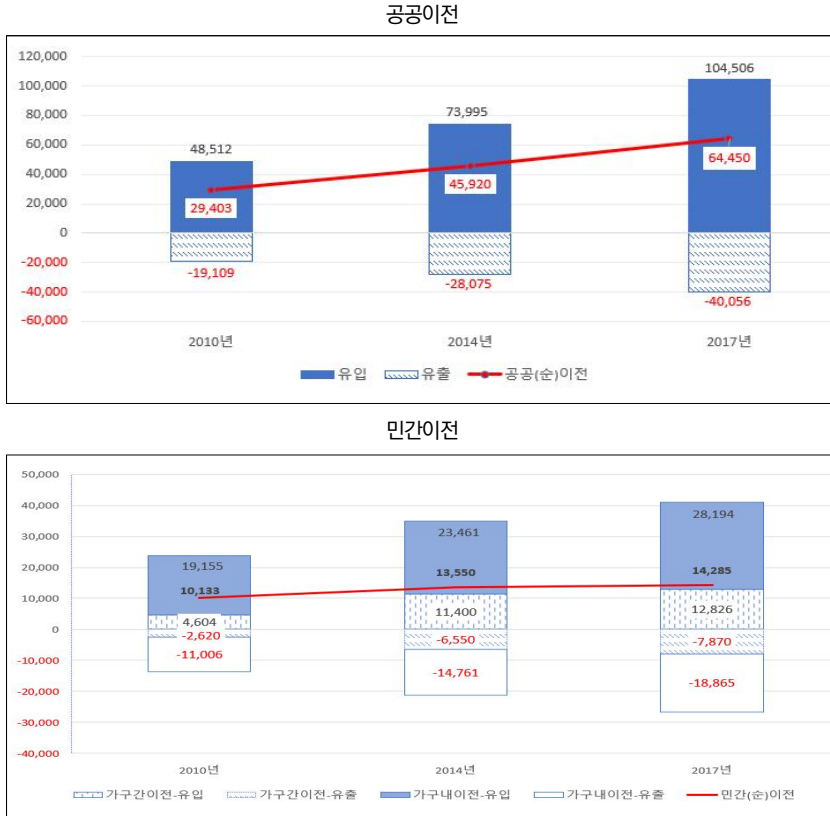
자료: 1) 통계청.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국민이전계정(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2021.7.9. 인출)

2) 통계청. (각 연도). 국민이전계정 원자료 세부 전산자료. 소득통계개발과-1187(2021.7.30. 접수)

90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공·사적이전의 변화와 대응방안

[그림 3-11] 고령층의 공공이전과 민간이전 추이(총량 기준)

(단위: 10억 원/년, 명목가격)



자료: 1) 통계청,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국민이전계정(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 Index.do?vwcd=MT_ZTITITLE&menuId=M_01_01)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2021.7.9. 인출)

2) 통계청, (각 연도), 국민이전계정 원자료 세부 전산자료, 소득통계개발과-1187 (2021.7.30. 접수)

한편 2017년 총량 기준 고령층의 공공(순)이전은 64조 4,500억 원으로 민간(순)이전의 14조 2,850억 원보다 많고, 2010~2017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도 공공(순)이전이 11.9%로 민간(순)이전의 5.0%보다 높은 편이다. 따라서 절대 규모 측면에서 고령층의 공공이전과 민간이전은 모두

증가하였지만, 그 증가 속도는 공공이전이 더 빨랐다.

〈표 3-16〉의 1인당 기준 공공이전을 살펴보면, 고령층의 경우 공공이전 유입이 유출보다 크다. 2017년 기준으로 고령층 전체의 공공이전 유입은 1,479만 원으로 공공이전 유출(567만 원)의 약 2.5배 수준이다. 고령층의 공공이전 유입은 7.3%로 연평균 증가율 면에서도 유출(6.9%)보다 높다.

1인당 기준 민간이전은 2017년 기준 가구 간 이전이 70만 원으로 가구 내 이전(132만 원)보다 적지만, 연평균 증가율 측면에서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분석기간 중 가구 간 이전의 연평균 증가율이 9.5%인 반면, 가구 내 이전은 연평균 증가율이 -2.0%로 음(-)의 값이다. 이는 2010~2017년 동안 고령층의 가구 간 이전과 가구 내 이전의 유입 및 유출은 모두 지속해서 증가하였으나, 가구 내 이전의 유출이 가구 내 이전의 유입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민간이전을 유입과 유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7년 가구 간 이전의 유입이 182만 원으로 유출(111만 원)보다 크고 가구 내 이전의 유입도 399만 원으로 유출(267만 원)보다 크다. 즉 고령층은 민간이전의 유입이 유출보다 크며, 특히 가구 내 이전이 가구 간 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령층 집단을 전기고령층과 후기고령층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본 결과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대체로 유지되지만, 민간이전에서 후기고령층은 다른 특성을 보인다. 후기고령층의 가구 간 이전은 2010년 67만 원에서 2017년 129만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9.8%이나, 가구 내 이전은 같은 기간 231만 원에서 145만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6.4%이다. 이로써 후기고령층의 민간(순)이전은 2010년 298만 원에서 2017년 274만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2%를 기록하여 전기고령층의 민간(순)이전 연평균 증가율인 2.3%와 다른 방향성을 보인다.

92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공·사적이전의 변화와 대응방안

〈표 3-16〉 고령층의 공공이전과 민간이전 추이(1인당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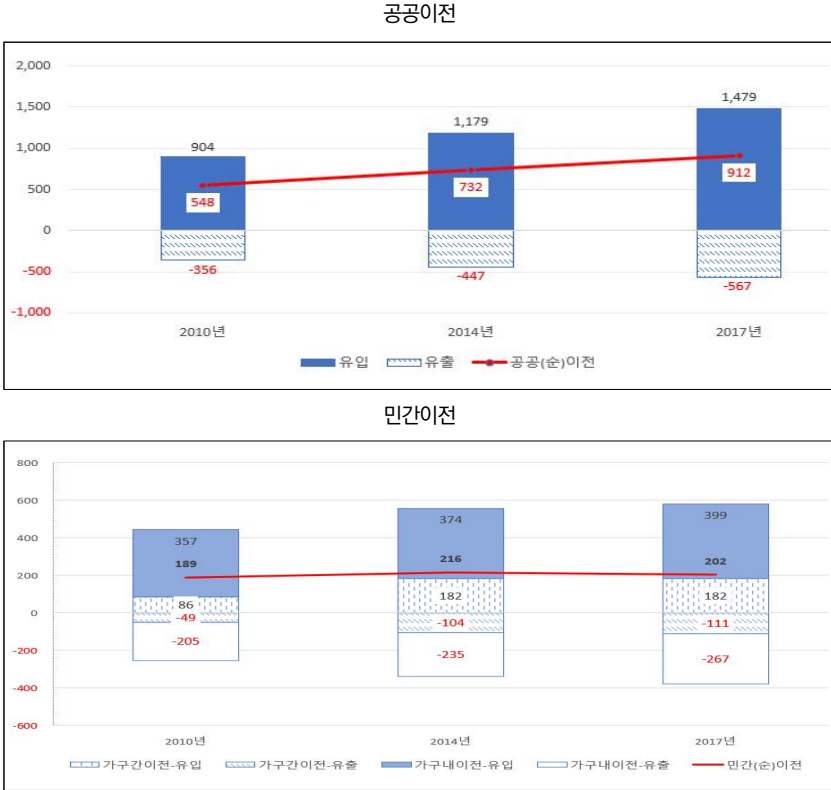
(단위: 만 원/년, 명목가격, %)

구분		규모(만 원)			연평균 증가율(%)
		2010년	2014년	2017년	
고령층 전체	공공(순)이전(A-B)	548	732	912	7.5
	유입(A)	904	1,179	1,479	7.3
	유출(B)	356	447	567	6.9
	민간(순)이전(C-D+E-F)	189	216	202	1.0
	가구 간 이전(C-D)	37	77	70	9.5
	유입(C)	86	182	182	11.3
	유출(D)	49	104	111	12.4
	가구 내 이전(E-F)	152	139	132	-2.0
	유입(E)	357	374	399	1.6
	유출(F)	205	235	267	3.8
전기고령층 (65~74세)	공공(순)이전(A-B)	485	574	691	5.2
	유입(A)	894	1,122	1,359	6.2
	유출(B)	409	548	668	7.3
	민간(순)이전(C-D+E-F)	127	164	149	2.3
	가구 간 이전(C-D)	20	38	26	3.8
	유입(C)	78	157	156	10.4
	유출(D)	59	119	130	11.9
	가구 내 이전(E-F)	107	127	122	1.9
	유입(E)	350	380	421	2.7
	유출(F)	243	253	299	3.0
후기고령층 (75세 이상)	공공(순)이전(A-B)	659	968	1,207	9.0
	유입(A)	922	1,264	1,639	8.6
	유출(B)	263	296	432	7.3
	민간(순)이전(C-D+E-F)	298	293	274	-1.2
	가구 간 이전(C-D)	67	137	129	9.8
	유입(C)	99	219	216	11.8
	유출(D)	32	82	87	15.4
	가구 내 이전(E-F)	231	156	145	-6.4
	유입(E)	370	364	370	0.0
	유출(F)	139	208	225	7.1

자료: 1) 통계청.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국민이전계정(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2021.7.9. 인출)

2) 통계청. (각 연도). 국민이전계정 원자료 세부 전산자료. 소득통계개발과-1187 (2021.7.30. 접수)

[그림 3-12] 고령층의 공공이전과 민간이전 추이(1인당 기준) (단위: 만 원/년, 명목가격)



자료: 1) 통계청.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국민이전계정(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 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2021.7.9. 인출)

2) 통계청. (각 연도). 국민이전계정 원자료 세부 전산자료. 소득통계개발과-1187 (2021.7.30. 접수)

이상 고령층의 공공이전과 민간이전을 유입과 유출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를 종합하면, 고령층의 경우 공공이전의 유입이 주도하는 뚜렷한 증가세 속에서 민간이전은 유출이 유입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최근 고령층의 공공이전과 민간이전 변화 추이에서 고령층의 민간이전 유출이 증가하는 측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달리 말해 공공이전에 의한 고령층의 경제수준 향상은 민간이전의 유출로 이어져 정부가 의도한 정책의 효과는 줄어들 여지가 있는 것이다. 또한 절대 규모 측면에서 고령층의 공공(순)이전은 민간(순)이전보다 크며, 최근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모 측면에서의 공공이전과 민간이전의 변화 분석으로는 서로 간의 관계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어지는 항에서는 공공이전과 민간이전의 구성비 변화를 통해서 대체 관련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 고령층 부양체계의 변화 및 공공이전과 민간이전의 관계

65세 이상 고령층의 총량 기준 연령재배분의 구성비, 즉 부양체계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공공이전의 경우 2010년 47.3%에서 2014년 57.9%, 2017년 68.1%로 증가하였다. 반면 자산재배분은 2010년 36.3%에서 2014년 25.0%, 2017년 16.8%로 감소하였다. 민간이전은 2010년 16.3%에서 2014년 17.1%로 조금 증가하였으나, 2017년 15.1%로 감소하고 있다. 즉 고령층 부양체계에서 민간이전의 구성비 변화 폭이 가장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3]은 고령층의 부양체계의 구성비 변화이다. 분석기간 중 고령층의 부양체계는 오른쪽 중간에서 아래로 이동하는 궤적을 보여준다. 삼각형 그림은 왼쪽 변이 자산재배분을 의미하며 아래에서 위로 향할수록 부양체계 내에서 자산재배분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른쪽 변은 공공이전이며 위에서 아래로 향할수록 부양체계 내에서 공공이전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 변은 민간이전의 비율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할수록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고령층 부양체계를 보여주는 삼각형 그림은 2010~2017년 동안 고령층의 공공이전은 증

가하는 반면 민간이전은 감소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자산재배분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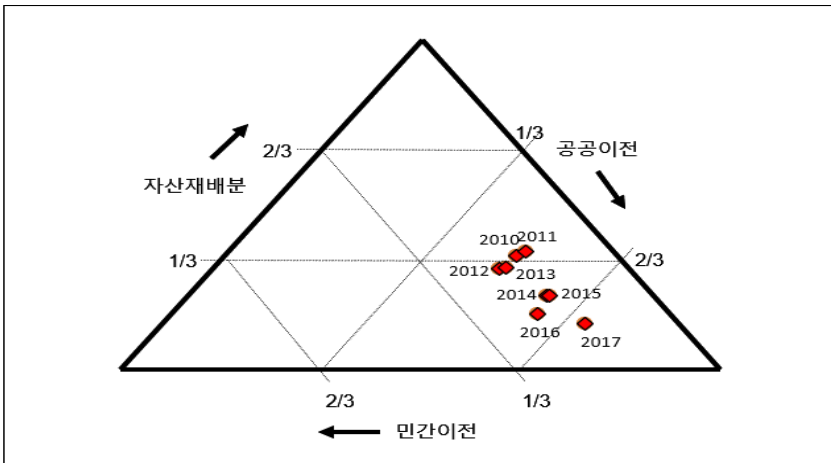
〈표 3-17〉 65세 이상 고령층 부양체계의 구성비

(단위: %)

구분	공공이전	자산재배분	민간이전	계
2010년	47.3	36.3	16.3	100.0
2011년	48.2	37.6	14.2	100.0
2012년	46.6	32.7	20.7	100.0
2013년	47.5	33.1	19.5	100.0
2014년	57.9	25.0	17.1	100.0
2015년	58.4	24.9	16.7	100.0
2016년	59.3	19.6	21.2	100.0
2017년	68.1	16.8	15.1	100.0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국민이전계정(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2021.7.9. 인출)

〔그림 3-13〕 65세 이상 고령층 부양체계의 변화 궤적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국민이전계정(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2021.7.9. 인출)

한편 앞에서 고령층을 세분화하면 전기고령층과 후기고령층의 부양 양상이 다르며, 특히 75세 이상 후기고령층 대상의 부양 수준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표 3-18>과 같이 75세 이상 후기고령층의 총량 기준 부양체계의 구성비를 살펴본다. 75세 이상 후기고령층 역시 공적이전의 경우 2010년 51.9%에서 2014년 65.7%, 2017년 75.1%로 증가하였다. 반면 자산재배분은 2010년 24.7%에서 2014년 14.5%, 2017년 7.8%로 감소하였으며, 민간이전 역시 2010년 23.4%에서 2014년 19.9%, 2017년 17.1%로 감소하였다. 즉 75세 이상 후기고령층의 부양체계 역시 65세 이상 고령층 전체와 같이 공공이전의 증가, 자산재배분 및 민간이전의 감소 경향이 확인된다. 다만 75세 이상 후기고령층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층에 비해 공공이전과 민간이전의 구성비가 더 높다는 점에서 이들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

<표 3-18> 후기고령층 부양체계의 구성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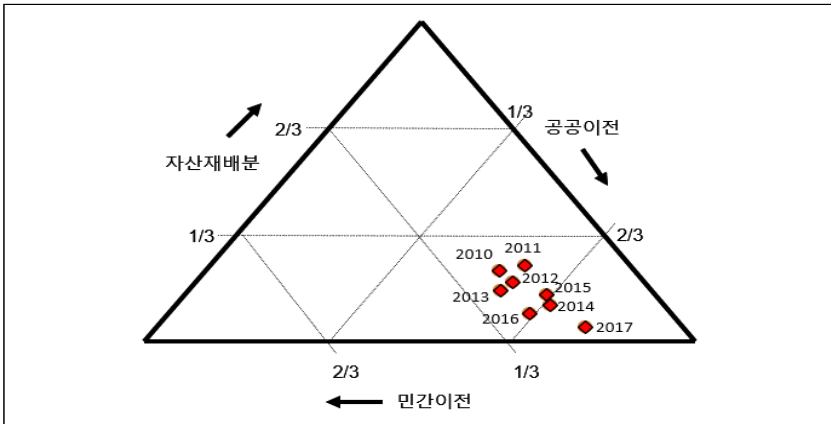
구분	공공이전	자산재배분	민간이전	계
2010년	51.9	24.7	23.4	100.0
2011년	55.6	26.0	18.4	100.0
2012년	55.1	18.6	26.4	100.0
2013년	55.9	21.1	23.1	100.0
2014년	65.7	14.5	19.9	100.0
2015년	63.5	17.6	18.9	100.0
2016년	63.5	11.8	24.8	100.0
2017년	75.1	7.8	17.1	100.0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국민이전계정(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2021.7.9. 인출)

[그림 3-14]는 후기고령층의 부양체계 구성비 변화이다. 후기고령층의 부양체계는 65세 이상 전체 고령층보다 더욱 뚜렷하게 오른쪽 하단에

몰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양체계 궤적에서 후기고령층의 가장 큰 변화는 공공이전의 증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산재배분 역시 아래로 이동하며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민간이전은 상대적으로 횡보하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모습이다.

[그림 3-14] 후기고령층 부양체계의 변화 궤적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국민이전계정(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 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2021.7.9. 인출)

즉 고령층 부양체계의 변화 궤적을 통해 공공이전의 증가와 민간이전의 감소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고령층의 부양체계로서 공공이전과 민간이전은 일정 수준의 대체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이 고령층의 공공이전과 민간이전의 대체 관계는 사회변화 속 고령층의 삶의 질이 하락하지 않도록 정부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는 2010~2017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고령층 공공이전과 민간이전의 대체 관계를 규명한 것으로, 향후 국민이전계정이 축적된 이후 더 명료한 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제4절 부양체계의 국제비교

1. 국가별 부양체계 특성

국민이전계정 자료는 소비 및 소득수준, 저축 또는 공·사적이전의 유출과 유입 등 연령별 경제적 특성의 차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이처럼 연령별, 경제적 특성별 차이를 국가별로 비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로 중요하다. 첫째, 국가별로 은퇴한 고령인구의 소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원하는 체계, 즉 부양체계가 다르다. 일부 국가에서 고령층은 사회복지제도에 크게 의존하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 고령층이 저축 및 자산에 더 크게 의존한다.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은퇴한 고령층이 자녀 등 가족, 즉 사적이전에 크게 의존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둘째, 국가별로 사회복지제도, 소비수준, 경제활동 참가 등 경제적 생애주기가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셋째, 횡단면 분석에서 볼 때 인구구조가 국가마다 다르다. 넷째, 한 국가 내에서도 시기별로 세대의 역할이 다르다. 예컨대 기대수명과 건강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사람들은 65세 이후에도 훨씬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차이를 염두에 두고 가장 최신의 국민이전계정 자료를 통해 27개국의 부양체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5]는 유소년층의 부양체계이며, 왼쪽부터 공공이전 비율이 높은 국가를 제시하였다. 자산재배분은 유소년층 부양에서 매우 제한적인 역할을 한다. 즉 유소년층을 부양하는 것은 정부나 가족이지, 유소년층이 보유한 자산이나 저축은 아니며 국가 간 최저, 최고의 범위도 -6%에서 +6%로 편차가 크지 않다. 공공이전은 유소년층 부양체계의 12.0~60.0%를 차지한다. 유소년층의 평균 공공이전 비율은 37.0%이며, 대부분의 국가가 30~50%의 범위 내에 속

100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공·사적이전의 변화와 대응방안

〈표 3-19〉 0~19세 유소년층의 부양체계

(단위 : %)

국가	공공이전	민간이전	자산재배분	국가	공공이전	민간이전	자산재배분
핀란드	60.0	40.0	0.0	중국	38.0	63.0	-1.0
프랑스	60.0	46.0	-6.0	싱가포르	36.0	62.0	2.0
헝가리	57.0	39.0	3.0	대만	33.0	63.0	4.0
스웨덴	51.0	49.0	0.0	몰도바	33.0	67.0	1.0
호주	48.0	49.0	3.0	코스타리카	31.0	68.0	1.0
미국	48.0	48.0	4.0	인도네시아	31.0	68.0	1.0
러시아	47.0	46.0	7.0	영국	31.0	69.0	0.0
일본	46.0	53.0	1.0	태국	29.0	73.0	-2.0
오스트리아	46.0	53.0	1.0	멕시코	22.0	75.0	3.0
한국	45.0	57.0	-1.0	칠레	21.0	73.0	6.0
스페인	44.0	56.0	0.0	우루과이	19.0	82.0	-1.0
이탈리아	43.0	56.0	1.0	필리핀	19.0	82.0	0.0
슬로베니아	42.0	57.0	1.0	인도	13.0	82.0	5.0
독일	41.0	57.0	2.0	엘살바도르	12.0	88.0	0.0

자료: 1) 통계청.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국민이전계정(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2021.7.9. 인출)

2) National Transfer Accounts Project 홈페이지. (각 연도). DATA-Database(<https://www.ntaccounts.org/web/nta/show/>)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2021.4.3. 인출)

한편 고령층의 부양체계는 유소년층의 부양체계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림 3-16]은 65세 이상 고령층의 부양체계를 공공이전 비율이 높은 순으로 왼쪽부터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령층의 경우 부양체계에서 공공이전과 자산재배분의 비율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민간이전의 비율이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민간이전은 아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그 비율이 매우 작거나 음수(-)인데, 음(-)의 값은 민간이전의 유출(지출)이 유입(소득)보다 많다는 뜻으로, 고령층이 자녀나 손자녀로부터 사적이전소득을 받는 금액보다 고령층이 자녀나 손자녀에게 주는 사적이전지출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아시아 국가 중 한국, 중국, 태국, 대만, 싱가포르에서는 민간이전 비율이 15.0~68.0%로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싱가포르에서 민간이전의 비율이 가장 높는데, 그 이유는 싱가포르가 가족 단위의 고령층 부양을 매우 중요시하고, 가족이 부모를 부양할 경우 그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그 어느 국가도 민간이전의 비중이 40.0%를 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령층 부양의 핵심은 공공이전이다. 공공이전은 거의 모든 국가가 고령층 부양체계에서 30.0% 이상을 차지하며 스웨덴과 같이 100.0%를 넘는 국가도 있다. 공공이전 비율이 100.0%를 넘는 것은 음(-)의 민간이전을 상쇄하는 것이다. 즉 스웨덴의 고령층은 평균적으로 자신의 소비를 충족하고도 남는 공공이전을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제공할 여유가 있는데, 이는 즉 음(-)의 민간이전을 발생시킨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서구 국가가 고령층의 부양체계에서 공공이전의 비율이 높다. 미국과 같이 연금의 노후 소득대체율이 낮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약 60% 이상의 노후소득보장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의 경우는 서구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인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는 공공이전의 비율이 미미하거나 심지어는 음(-)의 값이다. 음(-)의 공공이전은 간접세 등을 포함한 조세 부담(공적이전지출)이 정부 지원(공적이전소득)보다 크다는 의미이며, 아시아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보기 드문 현상이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서구와 같이 고소득 국가에 해당하지만, 공공이전의 비율이 0이다. 그 이유는 싱가포르의 연금제도는 대부분의 국가가 택하고 있는 부과방식이 아닌 중앙연금기금의 개인계좌를 통한 적립방식이기 때문이다. 즉, 싱가포르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연금보다는 오히려 강제저축에 기반한 개인의 노후소득보장제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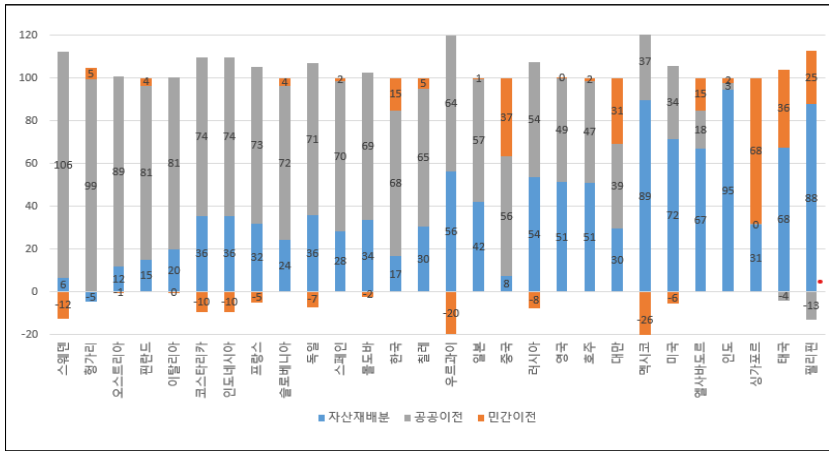
일부 유럽 국가를 제외하면 자산재배분 역시 고령층의 부양체계에서

102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공·사적이전의 변화와 대응방안

중요하다. 한국과 중국은 자산재배분의 비중이 낮은 편인데, 그 이유는 두 국가 모두 민간이전에 의한 가족 부양이 자산재배분보다 중요한 부양 수단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고령층의 부양체계에서 공공이전 비율이 68.0%로 민간이전보다 조금 높으며, 27개국 중 13번째 순위이다.

[그림 3-16] 65세 이상 고령층의 부양체계

(단위 : %)



자료: 1) 통계청.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국민이전계정(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 Index.do? vvwcd=MT_ZTITLE&menuId=M_01_01)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2021.7.9. 인출)

2) National Transfer Accounts Project 홈페이지. (각 연도). DATA-Database(<https://www.ntaccounts.org/web/nta/show/>)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2021.4.3. 인출)

<표 3-20> 65세 이상 고령층의 부양체계

(단위 : %)

국가	공공이전	민간이전	자산재배분	국가	공공이전	민간이전	자산재배분
스웨덴	106.0	-12.0	6.0	우루과이	64.0	-20.0	56.0
헝가리	99.0	5.0	-5.0	일본	57.0	1.0	42.0
오스트리아	89.0	-1.0	12.0	중국	56.0	37.0	8.0
핀란드	81.0	4.0	15.0	러시아	54.0	-8.0	54.0
이탈리아	81.0	0.0	20.0	영국	49.0	0.0	51.0
코스타리카	74.0	-10.0	36.0	호주	47.0	2.0	51.0

국가	공공이전	민간이전	자산재배분	국가	공공이전	민간이전	자산재배분
인도네시아	74.0	-10.0	36.0	대만	39.0	31.0	30.0
프랑스	73.0	-5.0	32.0	멕시코	37.0	-26.0	89.0
슬로베니아	72.0	4.0	24.0	미국	34.0	-6.0	72.0
독일	71.0	-7.0	36.0	엘살바도르	18.0	15.0	67.0
스페인	70.0	2.0	28.0	인도	3.0	2.0	95.0
몰도바	69.0	-2.0	34.0	싱가포르	0.0	68.0	31.0
한국	68.0	15.0	17.0	태국	-4.0	36.0	68.0
칠레	65.0	5.0	30.0	필리핀	-13.0	25.0	88.0

자료: 1) 통계청.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국민이전계정(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2021.7.9. 인출)

2) National Transfer Accounts Project 홈페이지. (각 연도). DATA-Database(<https://www.ntaccounts.org/web/nta/show/>)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2021.4.3. 인출)

2. 공공이전

국민이전계정은 연령별 1인당 조세 부담(유출)과 수혜액(유입)을 산정하기 때문에 미래의 부양체계를 파악하거나 인구 변화가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추정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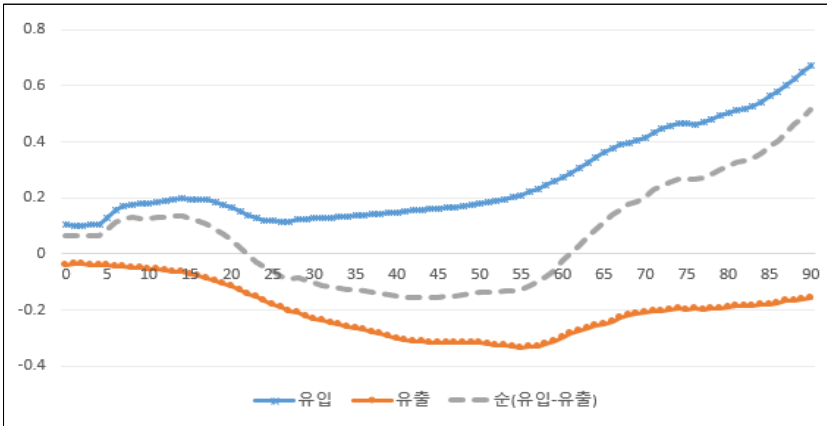
[그림 3-17]은 비교 국가의 평균 공공이전 연령 프로파일로, 연령별 1인당 유입과 유출, 그리고 순유입(유입-유출)을 30~49세의 평균 노동소득으로 나누었다. 가령, 55세를 보면 유입 0.2, 유출 0.35로 순유입은 -0.15가 되는데, 이는 55세의 경우 30~49세 평균 노동소득의 35.0%를 세금이나 연금 보험료 등으로 공공 부문에 이전하고, 30~49세 평균 노동소득의 20.0%를 현물이나 현금으로 받고, 15.0%는 유년층이나 고령층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17]에서 보듯이 20대 중반부터 50대 후반까지의 연령층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고령층은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인구구조 고령화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 수 있다.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은 국가별 인구구조와 복지제도, 세금제도(특히 직접세, 간접세 비중) 등에 따라 다르다.

[그림 3-17] 공공이전 유입, 유출, 순유입(전 세계 평균)

(단위 : 30~49세 평균 노동소득 대비 비율)



주: 38개국의 연령별 1인당 평균값임.

- 자료: 1) 통계청.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국민이전계정(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2021.7.9. 인출)
 2) 통계청. (각 연도). 국민이전계정 원자료 세부 전산자료. 소득통계개발과-1187 (2021.7.30. 접수)
 3) National Transfer Accounts Project 홈페이지. (각 연도). DATA-Database(<https://www.ntaccounts.org/web/nta/show/>)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2021.4.3. 인출)

국가의 소득수준별 공공이전의 특성을 살펴본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국가의 소득 분류는 세계은행의 분류를 참조하여 고소득 국가, 상위 중소득 국가, 하위 중소득 국가, 그리고 저소득 국가의 4분위로 한다. [그림 3-18]은 공공(순)이전을 국가 간 소득수준별로 제시하였으며, 소득수준별로 공공(순)이전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고소득 국가에서는 유년층과 고령층에 대한 부담이 다른 국가보다 높고, 그만큼 조세 부담도 큰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경우 유년층에 대한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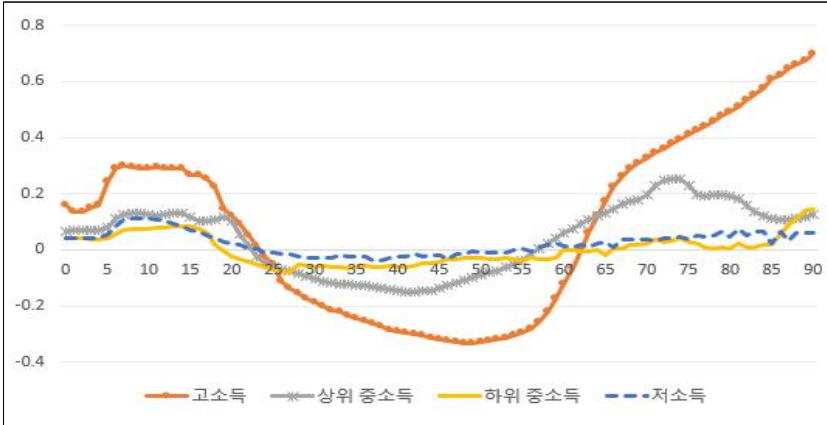
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약 15세까지 비슷하다. 이는 의무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통한 공공 지원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15~22세까지는 상위 중소득 국가, 하위 중소득 국가, 저소득 국가 간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 고등학교 및 대학 진학률 차이에 따른 학령인구 대비 1인당 공공(순)이전은 각 국가의 소득수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25세부터 60대 초반까지 조세 부담(유출)이 혜택(유입)보다 큰 연령집단에서는 국가별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률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소득 국가의 경우 이들의 순유출은 30~49세 평균 노동소득 대비 30.0%를 넘는 반면, 저소득 및 하위 중소득 국가의 순유출은 5.0% 내외에 불과하다.

고소득 국가의 경우 고령층의 순유입은 연령별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80세에서는 1인당 순유입(순혜택)이 30~49세 평균 노동소득의 절반 수준(50.0%)에 달한다. 반면 상위 중소득 국가의 경우 70세 중반에서 1인당 순유입이 최고 20.0% 수준에 도달한 후 다시 감소하는데, 이는 상위 중소득 국가들이 사회복지제도를 실시한 시기와 혜택을 받는 연령 등과 관련 있다. 하위 중소득 또는 저소득 국가의 경우 고령층의 1인당 유입은 미미하며, 대부분의 유입은 유년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지점은 저소득 국가의 고령층이 하위 중소득 국가의 고령층보다 1인당 공공이전 순유입이 큰데, 바로 이 점이 순유입 연령 프로파일의 한계이다. 하위 중소득 국가의 고령층은 저소득 국가의 고령층에 비해 공공이전의 유입이 많지만, 유출 역시 많아 순유입 연령 프로파일에서는 이를 알 수 없다. 즉 모든 부양체계를 자세히 파악하려면 유입과 유출을 동시에 파악해야 한다.

[그림 3-18] 국가 소득수준별 공공이전 순유입

(단위 : 30~49세 평균 노동소득 대비 비율)



주: 38개국의 연령별 1인당 평균값임.
 자료: 1) 통계청.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국민이전계정(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2021.7.9. 인출)
 2) National Transfer Accounts Project 홈페이지. (각 연도). DATA-Database(<https://www.ntaccounts.org/web/nta/show/>)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2021.4.3. 인출)

[그림 3-19]는 공공이전의 유입, 유출, 순유입을 국가별 소득수준으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공공이전의 유출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조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특히 하계도 상위 중소득 국가와 하위 중소득 국가 간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하위 중소득 국가의 경우 고소득 국가나 상위 중소득 국가와 달리 고령층도 상당한 액수의 조세를 부담한다. 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노동소득의 분포이다. 노동소득의 경우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자영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영자는 임금근로자보다 연령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 저소득 국가일수록 자영업의 비중이 임금근로의 비중보다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소득수준별 노동소득 특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세 등이 공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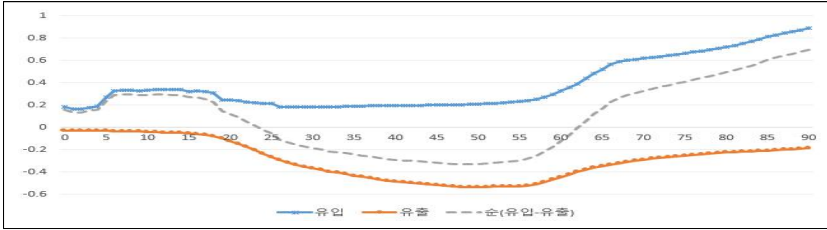
이전 유출의 연령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친다. 다른 하나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인데, 상당수의 고소득 국가는 직접세 비중이 간접세 비중보다 높다. 즉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의 경우 조세의 연령 프로파일이 U자형에 가깝지만,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의 경우 U자형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즉 간접세는 소득이 아닌 소비에 의존하고, 고령층의 경우 소득보다 소비가 높은 경우가 많아 이러한 공공이전 유출의 연령 프로파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공공이전 유입의 경우 국가의 소득수준별로 더욱 큰 차이를 보이는데, 저소득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령층의 1인당 공공이전 유입이 유년층의 1인당 공공이전 유입보다 더 많다. 특히 고소득 국가에서 고령층으로의 공공이전 유입은 매우 크며 청장년층으로의 유입도 상당히 커서 전체적으로 고부담 고헤택의 선진국형 공공이전의 모습을 보인다. 상위 중소득 국가의 경우도 후기고령층을 제외하면 선진국형 공공이전의 연령 프로파일과 같은 모습이며, 상위 중소득 국가는 점차 선진국형 고소득 국가의 공공이전의 모습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위 중소득 국가의 경우 앞서 고령층도 세금을 부담하는 모양을 보였듯이(공공이전의 유출), 공공이전 유입도 많아 순유입 프로파일이 저소득 국가처럼 완만한 모습을 보인다. 저소득 국가는 공공이전 유입이 유년층에게만 집중되어 있어 다른 국가들의 공공이전 모습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즉 저소득 국가에서는 아직 연금이나 보건의료의 혜택과 같이 고령층을 위한 공공 부문의 부양체계가 크게 발달하지 않은 결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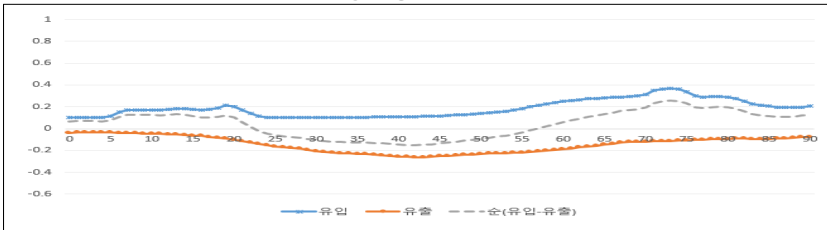
[그림 3-19] 국가 소득수준별 공공이전 유입, 유출, 순유입

(단위 : 30~49세 평균 노동소득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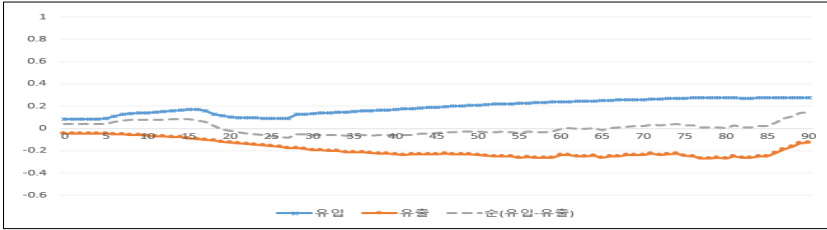
고소득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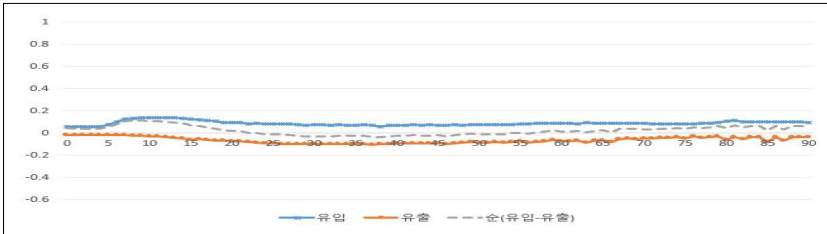
상위 중소득 국가



하위 중소득 국가



저소득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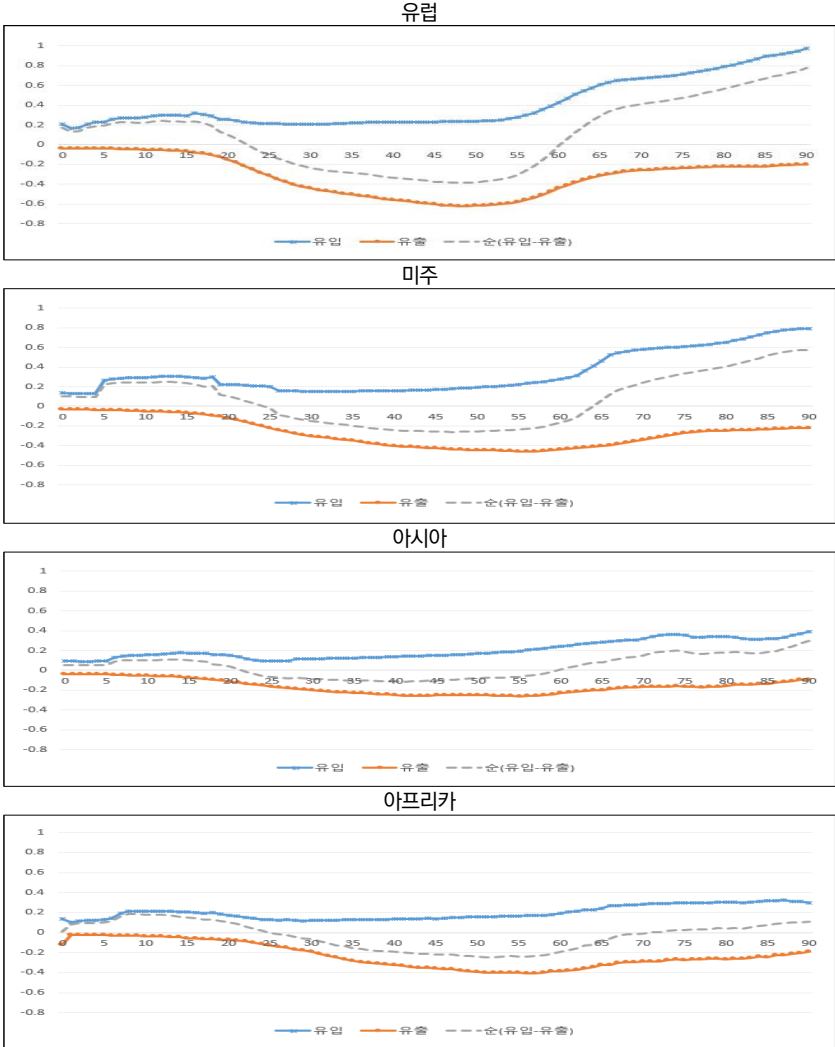


주: 38개국의 소득수준별 연령별 1인당 평균값임.

자료: 1) 통계청.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국민이전계정(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2021.7.9. 인출), 2) 통계청. (각 연도). 국민이전계정 원자료 세부 전산자료. 소득통계개발과-1187(2021.7.30. 접수), 3) National Transfer Accounts Project 홈페이지. (각 연도). DATA-Database(<https://www.ntaccounts.org/web/nta/show/>)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2021.4.3. 인출)

[그림 3-20] 지역별 공공이전 유입, 유출, 순유입

(단위 : 30~49세 평균 노동소득 대비 비율)



주: 38개국의 지역별 연령별 1인당 평균값임.

자료: 1) 통계청.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국민이전계정(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2021.7.9. 인출). 2) 통계청. (각 연도). 국민이전계정 원자료 세부 전산자료. 소득통계개발과-1187(2021.7.30. 접수). 3) National Transfer Accounts Project 홈페이지. (각 연도). DA TA-Database(<https://www.ntaccounts.org/web/nta/show/>)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2021.4.3. 인출)

이러한 공공이전의 국가 간 소득수준별 차이가 지역 간 문화적, 역사적 차이에 의한 것인지 살펴보았다(〔그림 3-20〕 참조). 그 결과 공공이전의 유입, 유출, 순유입의 규모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연령 프로파일의 모양은 지역 간 차이가 크지 않다.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들도 앞서 살펴본 저소득 국가의 평균과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인다. 즉 유럽, 미주, 아시아, 아프리카 순으로 고령층의 공공이전 규모가 줄어들지만, 공공이전 연령 프로파일의 기본 모양은 아프리카 국가들도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공공이전의 발달이 지역적 특성보다는 국가의 경제적 특성, 즉 소득수준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지역별 공공이전의 특성을 종합하면 고령층 부양체계에 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한국은 고령층 부양을 위한 공공이전 확대에 따른 정책 효과에 대해 서구 사회보다 더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간이전의 경우 주로 아시아에서 나타나는 고령층의 부양 특성이며, 유럽과 미주, 아프리카에서는 고령층에 대한 민간이전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의 지리적 차이-비아시아 국가, 아시아 국가-를 고려하여,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고령층 부양체계 간 대체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 즉 비아시아 국가에서는 민간이전과 자산재배분의 대체 가능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에 더해 공공이전과 민간이전의 대체 가능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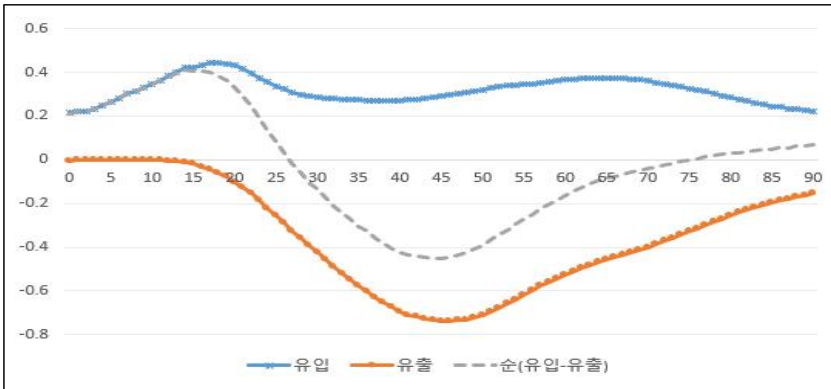
3. 민간이전

인구구조의 변화가 민간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민간이전 체계의 연령별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유년층의 의존도 증가는 한 국가의 모든 생산연령층에게 동등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민간이전 유입이

가족에 의해 연결되는 네트워크로 작동되기 때문이다.

[그림 3-21]은 민간이전의 유입과 유출, 그리고 민간이전이 개인의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공공이전과 마찬가지로 민간이전의 부담은 생산연령층이 지게 되며, 그 비중은 공공이전에 비해 훨씬 크다. 즉 부양 체계로서 민간이전은 고령층의 경우 공공이전보다 작을 수 있지만, 부담자인 생산연령층의 경우 민간이전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이전보다도 크다.

[그림 3-21] 민간이전 유입, 유출, 순유입(전 세계 평균)
(단위 : 30~49세 평균 노동소득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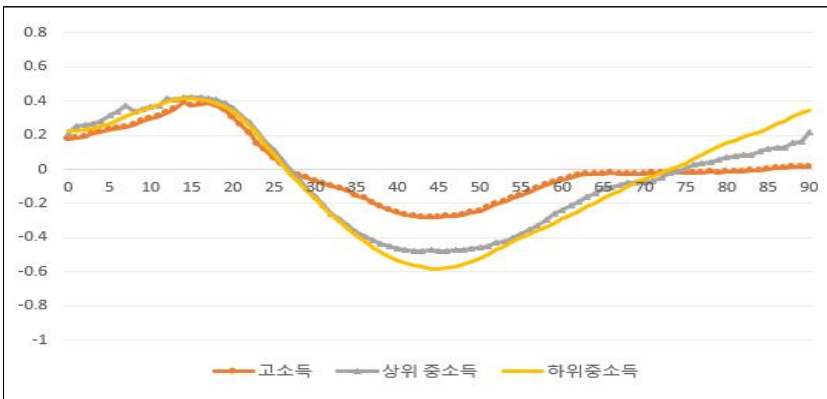


주: 38개국의 연령별 1인당 평균값임.
 자료: 1) 통계청.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국민이전계정(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2021.7.9. 인출)
 2) 통계청. (각 연도). 국민이전계정 원자료 세부 전산자료. 소득통계개발과-1187 (2021.7.30. 접수)
 3) National Transfer Accounts Project 홈페이지. (각 연도). DATA-Database(<https://www.ntaccounts.org/web/nta/show/>)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2021.4.3. 인출)

[그림 3-21]의 27세 이하, 73세 이상에서 순이전(유입-유출)은 양(+)의 값으로, 이를 충당하는 민간이전의 유출은 성인 세대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30대 중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 민간이전의 순유출

은 30~49세의 평균 노동소득 대비 40.0% 이상이며, 40대 후반의 경우 순유출이 가장 큰 연령집단으로 30~49세의 평균 노동소득 대비 70.0%에 달한다. 참고로 공공이전의 최대 순유출 부담 집단조차도 30~49세의 평균 노동소득 대비 40.0% 미만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매우 크다.

[그림 3-22] 국가 소득수준별 민간이전 순유입 (단위 : 30~49세 평균 노동소득 대비 비율)



주: 38개국의 연령별 1인당 평균값임.
 자료: 1) 통계청.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국민이전계정(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2021.7.9. 인출)
 2) National Transfer Accounts Project 홈페이지. (각 연도). DATA-Database(<https://www.ntaccounts.org/web/nta/show/>)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2021.4.3.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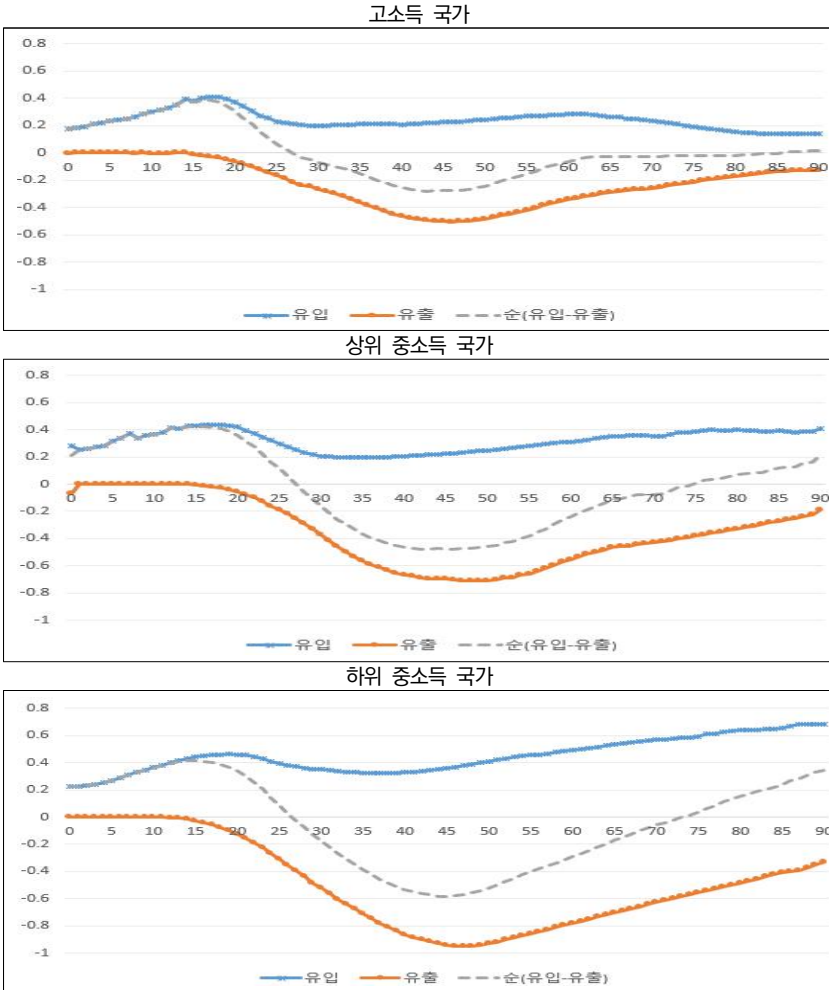
[그림 3-22]에 제시된 국가의 소득수준별 민간(순)이전을 살펴보면, 공공(순)이전과 큰 차이가 있다. 다만 저소득 국가의 국가 간 편차로 인한 평균값의 왜곡이 크게 나타나서, 저소득 국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국가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고령층에 대한 민간이전의 순유입이 크고, 그에 따라 생산연령층의 민간이전 순유출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하위 중소득 국가 > 상위 중소득 국가 > 고소득 국가). 특히 25세부터 60세 초반까지 부담(유출)이 혜택(유입)보다 큰 생산연령층의 경우 국가의 소득수준

별 부담 수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득 국가의 30대부터 40대 후반까지의 순유출은 30~49세의 평균 노동소득 대비 50.0~60.0%에 달할 정도로 큰 반면, 고소득 국가의 해당 연령의 순유출은 10.0% 내외로 매우 낮다. 하지만 유년층에 대한 민간(순)이전은 국가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유사한 연령 프로파일을 보여 공공(순)이전과 대조를 보인다. 공공(순)이전은 고소득 국가에서 유년층의 규모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큰 편이다.

[그림 3-23]은 순유입 그래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 소득수준별 민간이전의 유입, 유출, 순유입을 제시하였다. 민간이전의 유입과 유출 규모 모두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 더 높다. 그러나 연령별로는 유입과 유출에서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 고령층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민간이전 유입이 유출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30~49세의 경우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 민간이전 유출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하위 중소득 국가의 경우 40대 중후반에는 민간이전의 유출이 30~49세 평균 노동소득의 100.0%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와 비교하여 고소득 국가의 경우 40대 중후반의 민간이전 유출 규모가 30~49세 평균 노동소득의 30.0% 미만에 그친다.

[그림 3-23] 국가 소득수준별 민간이전 유입, 유출, 순유입

(단위 : 30~49세 평균 노동소득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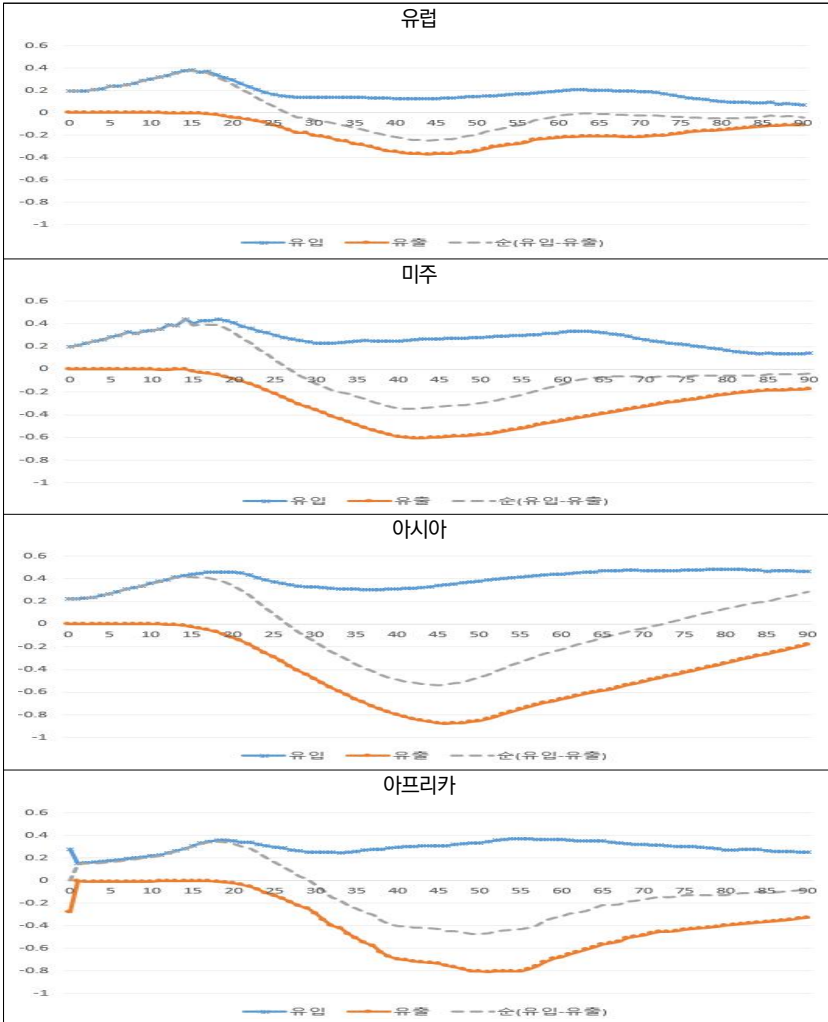


주: 38개국의 소득수준별 연령별 1인당 평균값임.
 자료: 1) 통계청.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국민이전계정(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ITLE&menuId=M_01_01)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2021.7.9. 인출)
 2) 통계청. (각 연도). 국민이전계정 원자료 세부 전산자료. 소득통계개발과-1187 (2021.7.30. 접수)
 3) National Transfer Accounts Project 홈페이지. (각 연도). DATA-Database(<https://www.ntaccounts.org/web/nta/show/>)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2021.4.3. 인출)

그렇다면 이러한 민간이전의 연령 프로파일 차이는 과연 국가 간 소득 수준별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일까? 민간이전은 공공이전보다 문화적, 역사적 차이에 더 크게 의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별 민간이전 연령 프로파일을 분석하였다(그림 3-24) 참조). 지역별 민간이전 비교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아시아 국가의 민간이전 유입이다. 흥미롭게도 유럽, 미주, 아프리카는 민간이전의 규모 차이는 있으나 고령층의 유입이 낮은 연령 프로파일 모습이 매우 유사한 반면, 아시아 국가는 고령층의 민간이전 유입이 뚜렷하게 증가한다. 특히 70세를 전후로 민간이전의 순유입이 양(+)으로 바뀌며, 그 규모 면에서는 유소년층에서 민간이전 유입이 가장 높은 18~22세 수준과 비슷하다. 즉 민간이전 유입의 규모는 국가의 소득 수준별로, 민간이전 유입의 연령별 프로파일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공공이전의 유입과는 매우 다른 특성이다.

[그림 3-24] 지역별 민간이전 유입, 유출, 순유입

(단위 : 30~49세 평균 노동소득 대비 비율)



주: 38개국의 지역별 연령별 1인당 평균값임.

자료: 1) 통계청.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국민이전계정(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ITLE&menuId=M_01_01)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2021.7.9. 인출), 2) 통계청. (각 연도). 국민이전계정 원자료 세부 전산자료. 소득통계개발과-1187(2021.7.30. 접수), 3) National Transfer Accounts Project 홈페이지. (각 연도). DATA-Database(<https://www.ntaccounts.org/web/nta/show/>)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2021.4.3. 인출)

4. 고령층의 공공이전과 민간이전 간의 관계

앞에서 강조하였듯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세대 간 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한 국가의 부양체계의 방향성을 추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고령층의 부양체제로서 공공이전과 민간이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이들의 상관계수는 -0.54로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민간이전이 다수의 아시아 국가를 포함하여 나타나는 자료 분포의 특이성일 수 있다.

아시아와 비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추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시아 지역이 아닌 경우 공공이전과 민간이전의 상관관계는 거의 0에 가깝다. 다만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공공이전과 민간이전의 상관관계가 -0.49로 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적이전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공적이전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21〉 고령층 부양체계 간 상관관계

구분	고령층 자산재배분	고령층 민간이전	고령층 공공이전
고령층 자산재배분	1		
고령층 민간이전	-0.1086	1	
고령층 공공이전	-0.7749	-0.5440	1

자료: 1) 통계청.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국민이전계정(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2021.7.9. 인출)

2) National Transfer Accounts Project 홈페이지. (각 연도). DATA-Database(<https://www.ntaccounts.org/web/nta/show/>)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2021.4.3. 인출)

〈표 3-22〉 아시아 지역 여부별 부양체계 간 상관관계

비아시아 국가			
	고령층 자산재배분	고령층 민간이전	고령층 공공이전
고령층 자산재배분	1		
고령층 민간이전	-0.3703	1	
고령층 공공이전	-0.9208	-0.021	1

아시아 국가			
	고령층 자산재배분	고령층 민간이전	고령층 공공이전
고령층 자산재배분	1		
고령층 민간이전	-0.2299	1	
고령층 공공이전	-0.7346	-0.4913	1

주: 비아시아 국가는 18개국, 아시아 국가는 9개국임.

자료: 1) 통계청.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국민이전계정(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2021.7.9. 인출)

2) National Transfer Accounts Project 홈페이지. (각 연도). DATA-Database(<https://www.ntaccounts.org/web/nta/show/>)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2021.4.3. 인출)

제5절 소결

이 장에서는 국민이전계정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연령집단별 공·사적이전의 실태와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기존 연구보다 연령집단을 세분화하여 변화하는 부양체계의 특성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생애주기적 자를 메꾸는 연령재배분은 민간이전, 공공이전, 자산재배분으로 구성되는데, 상대적으로 유년층은 민간이전의 비율이 높은 반면, 고령층은 공공이전의 비율이 높았다. 특히 최근으로 오면서 고령층의 연령재배분 규모가 공공이전 규모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어 2014년 기초연금제도 도입 등 고령층 부양정책의 확대에 따른 효과로 보여진다. 생산연령층의 음(-)의 공공이전은 조세나 사회보험료 등을 통해 부양인구에게 이전되고, 음(-)의 민간이전은 가족 간 그리고 가족 내 이전을 통해서 부양인구에게 이

전된다. 생산연령층의 부양 수단은 민간이전이 공공이전보다 더 크며, 주로 자녀 연령대로 하향 이전되는 것으로 유추된다.

소비의 재원은 공공이전이나 민간이전, 자산재배분 이외에도 근로 제공이나 사업 운영의 대가로 발생하는 노동소득이 포함된다. 생산연령층의 소비 원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노동소득이며, 고령층에서도 80대 이전까지 노동소득이 일정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으로 올수록 고령층의 노동소득이 다소 낮은 나이에서도 소비 원천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2010~2017년 고령층의 공공이전과 민간이전을 유입과 유출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고령층의 경우 공공이전의 유입이 주도하는 증가세 속에서 민간이전은 유출 증가율이 유입 증가율보다 더 높은 특성을 보였다. 이는 고령층의 최근 공공이전과 민간이전의 변화 추이는 고령층의 민간이전의 유출 증가 측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공공이전에 의한 고령층의 경제수준 향상은 민간이전의 유출로 이어져 정부가 의도한 노후소득보장의 효과는 줄어들 여지가 있다.

또한 고령층의 부양체계 변화 궤적을 통해 공공이전의 증가(2010년 47.3% → 2017년 68.1%)와 민간이전의 감소(2010년 16.3% → 2017년 15.1%)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고령층의 부양체계로서 공공이전과 민간이전은 대체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고령층의 공공이전과 민간이전의 대체 관계는 사회변화 속 고령층의 삶의 질이 하락하지 않도록 정부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38개국의 국민이전계정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의 소득수준별, 지역별 공적이전과 사적이전 등의 부양체계를 비교하였으며, 고령층의 공공이전과 민간이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부양체계 간의 상관관계수 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고령층의 공공이전과 민간이전의 대체

관계는 오직 아시아권에서만 나타나는 특성이었다. 이는 제2장의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제3장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의 고령층 대상 민간이전은 이타적 동기가 여전히 지배적이며, 공공이전과 민간이전의 대체 관계가 확인되었다.



제4장

공·사적이전에 관한 미시적 접근: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제1절 분석 배경

제2절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제3절 연령집단별 공·사적이전 실태와 변화

제4절 고령층의 공·사적이전 실태와 변화

제5절 소결

제 4 장

공·사적이전에 관한 미시적 접근: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제1절 분석 배경

이 장에서는 고령층⁷⁾의 공·사적이전에 관한 국내 실태를 미시적으로 분석한다. 생애과정에서 노동시장 지위가 하락하고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하는 노년기에 가족과 국가로부터 받는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최근의 분석 결과로, 이원진, 정해식, 전지현, 2019, p.97). 이 연구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십여 년의 고령층 공·사적이전 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이 연구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전체 인구의 연령·공·사적이전 프로파일을 토대로 고령층의 공·사적이전 실태를 파악한다. 고령층의 공·사적이전 및 소득 실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인구와의 비교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연구는 연령집단별 공·사적이전 및 소득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공·사적이전이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 변화를 평탄화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노인 빈곤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공·사적이전 실태를 분석한다. 정책적 관점에서 고령층의 공·사적이전 및 소득 분포에 대한 분석은 결국 한국의 심각한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 연구는 빈곤선과 비교하여 노후소득 수준을 평가하고, 공·사적이전이 노인 빈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소득, 연령, 가구 유형을 기준으로 하위집단을 구분하여 고령층의 공·사적이전 실태를 분석한다.

7) 이 장에서 고령층은 65세 이상을 의미하고, 맥락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집단을 지칭하기 위해 '고령층'과 '노인'을 혼용한다.

고령층의 인구학적 특성과 경제적 필요가 공·사적이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령층의 공·사적이전 실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위집단별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하위집단별 분석은 더욱 정교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2절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1. 분석자료

이 연구는 2011~2019년(소득 연도)⁸⁾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최근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국세청, 보건복지부, 각 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소득 및 비소비지출 행정자료로 서베이 조사 결과를 보완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기 때문에, 현실의 소득 분포를 비교적 정확하게 포착한다는 장점이 있다(통계청, 2020a). 단, 통계청은 2016년 이후 시기에 대해서만 행정자료로 보완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행정자료 보완이 이루어지기 전후에 일정한 시계열 단절이 발생하게 된다. 이원진 외(2019, pp.155-156)의 분석에 따르면, 행정자료 보완은 2016년 가처분 소득의 규모와 불평등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주된 관심인 공적이전소득의 경우, 행정자료 보완이 2016년 공적연금, 아동 관련 급여, 기초생활보장의 현금급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평균을 증가시켰다(이원진 외, 2019, p.135). 이러한 시계열 단절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서베이를 조사한 2011~2016년 소득 데이터(이하 ‘조사데이터’)와 행정자료로 보완한 2016~2019년 소득 데이터(이하 ‘행정보완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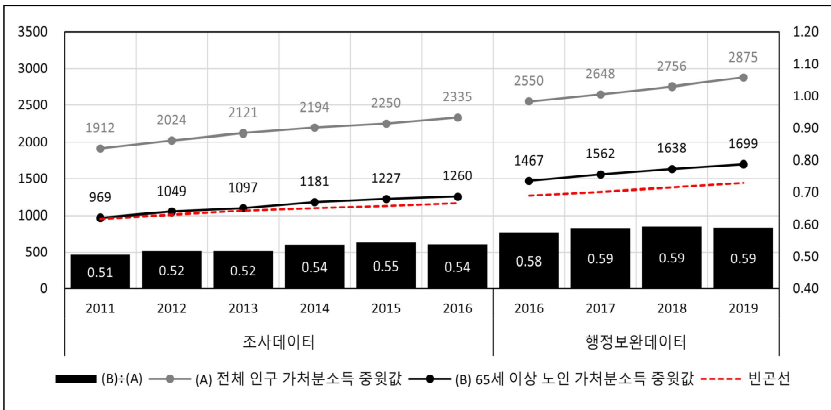
8) 가계금융복지조사는 t년에 t-1년의 소득을 조사한다. 이 장에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소득 연도를 기준으로 연도를 표기한다.

를 분석한 결과를 구분하여 보고한다. 2016년의 경우 조사데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가 모두 제공되기 때문에, 두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를 비교하여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시계열 단절의 수준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림 4-1]에는 2011~2016년 조사데이터와 2016~2019년 행정보완데이터로 전체 인구나 고령층의 가처분소득 증릿값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⁹⁾¹⁰⁾ [그림 4-1]을 살펴보면, 조사데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로 계산한 2016년 가처분소득 증릿값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2016년 고령층 증릿값을 전체 인구 증릿값으로 나눈 비율은 0.54와 0.58로 그 차이가 작지 않았다.

[그림 4-1] 가처분소득 증릿값

(단위: 만 원/년, 명목가격, 비율)



주: 제곱근 균등화 소득을 개인 단위로 분석함. 빈곤선은 전체 인구 가처분소득 증릿값의 50%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2011~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 통계청 MDIS(RAS 21072002)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9) 연도별로 전체 인구 사례 수는 45,095~56,652명이고, 고령층 사례 수는 7,549~9,592명이다.
 10) 정확한 수치는 <부표 4-1>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는 조사데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로 분석한 결과의 시계열이 안정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단, 두 데이터의 시계열을 종합하여 2011~2019년 추이에 대한 판단을 시도해볼 수는 있다. 예를 들어, 고령층 중위값을 전체 인구 중위값으로 나눈 비율이 2011~2016년 0.51에서 0.54로 증가하였고, 2016~2019년 0.58에서 0.59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행정자료 보완으로 인한 2016년의 단절(0.54와 0.58의 차이)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십여 년간 고령층과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 격차가 대체로 감소해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 소득 정의 및 분석방법

〈표 4-1〉에는 이 연구에서 소득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제시하였다. 우선 사적이전소득은 다른 가구와 비영리 단체로부터 받은 이전소득을 의미하고, 사적이전지출은 다른 가구와 비영리 단체에게 제공한 이전지출을 의미한다.¹¹⁾¹²⁾ 따라서 가구가 받은 순사적이전은 사적이전소득에서 사적이전지출을 차감하여 구할 수 있다.¹³⁾ 공적이전소득은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기타 공적이전소득¹⁴⁾으로 구성되고, 공적이전지출은 세

11) 2020년(조사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표를 살펴보면, 가구 간 이전소득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부모·자녀·친지·동료 등으로부터 받은 현금 및 현물소득”으로, 비영리 단체로부터의 이전소득은 “자선단체, 노동조합, 종교단체 등 민간·비영리 단체로부터 장학금·구호금 등의 형태로 받은 현금 및 현물소득”으로, 가구 간 이전지출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부모·자녀·친지·동료 등에게 보낸 현금 및 현물지출(생활보조금, 경조금, 물품 지원 등)”로, 비영리 단체로의 이전지출은 “자선단체, 노동조합, 종교단체 등 민간·비영리 단체에 지급한 현금 및 현물지출(종교기부금, 기타 기부금, 직장노조비, 상호회비, 친목회비 등)”이라고 서술되어 있다(통계청, 2020b).

12) 가구 간 이전소득은 “생활비, 교통비, 양육비 등” “월, 분기, 연간 등 주기성을 가지고 예측 가능한 소득”을 의미하고, “결혼·장례 등에 대한 경조금 소득은 부정기적 소득이므로 제외”한다(통계청, 2020c, p.106).

13) 통계청은 공식 소득분배지표를 작성할 때 OECD 소득분배 데이터베이스의 최신 기준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사적이전지출을 차감하여 시장소득을 정의한다(통계청, 2017, p.1).

금과 사회보험료를 의미한다. 따라서 가구가 받은 순공적이전은 공적이전소득에서 공적이전지출을 차감하여 구할 수 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일차소득으로 정의하고, 일차소득에 순사적이전을 합산하여 시장소득으로, 시장소득에 순공적이전을 합산하여 가처분소득으로 정의한다.

〈표 4-1〉 소득 정의

(+) 근로소득	일차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가구 간 이전소득, 비영리 단체로부터의 이전소득	순사적이전	순공적이전		
(-) 사적이전지출: 가구 간 이전지출, 비영리 단체로의 이전지출				
(+)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기타 공적이전소득			순공적이전	
(-) 공적이전지출: 세금, 사회보험료				

자료: 연구진 작성

이 연구에서는 가구 내 가구원이 획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한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후 개인 단위로 분석한다. 이는 개별 가구원이 획득한 소득이 가구 내에서 공유되어 다른 가구원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가정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와 동거하는 고령층은 자녀가 획득한 근로소득을 활용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성인 자녀와 동거하는 고령층은 가구 내에서 성인 자녀와 의식주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직접 성인 자녀로부터 용돈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

14)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외 공적이전소득으로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금급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고용보험 급여, 산재보험 급여, 농어업 정부 보조금, 취업지원 관련 급여, 보훈급여, 긴급복지지원, 체육연금, 장수수당 등을 조사한다(통계청, 2020b).

내에서 발생하는 사적이전을 조사하지 않으므로, 이 장에서 분석하는 사적이전은 가구 간 이전을 의미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¹⁵⁾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6년에 다음과 같이 사적이전 측정 방법을 크게 변경하였다. 2011~2015년에는 사적이전소득을 하나의 항목으로 조사하였지만, 2016~2019년에는 가구 간 이전소득과 비영리 단체로부터의 이전소득을 분리하여 조사하였다(통계청, 2018; 통계청, 2020c). 가구 간 이전소득과 비영리 단체로부터의 이전소득의 합과 사적이전소득이 개념적으로 동일하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항목을 분리하여 조사한 경우 더 자세한 응답을 유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2011~2015년에는 사적이전소득과 가구 간 이전지출을 조사할 때 현물이전을 제외하였지만, 2016~2019년에는 현물이전을 포함하였다(통계청, 2018; 통계청, 2020c).¹⁶⁾ 다음으로 2011~2015년에는 가구 간 이전지출과 비영리 단체로의 이전지출 항목을 가구 단위로 조사하였지만, 2016~2019년에는 가구원 단위로 조사하였다(통계청, 2018; 통계청, 2020c). 마지막으로 2011~2015년에는 경조사비 지출을 소비지출 항목으로 조사하였으나, 2016~2019년에는 가구 간 이전지출 항목으로 조사하였다(통계청, 2018; 통계청, 2020c).¹⁷⁾ 이와 같이 2016년부터 변경된 사적이전 측정 방법은 대체로 사적이전의 조사값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2016년에 사적이전 측정 방법을 변경한 것은 사적이전 추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그림 4-2]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전체

15)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원뿐만 아니라 취업이나 학업 때문에 따로 살지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가구에 포함한다(통계청, 2020c, p.27). 따라서 부모와 따로 살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학생이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은 사적이전으로 포착되지 않는다.

16) 가구 간 이전소득에 “정기적인 현금 입금 이외에 의료비·보험료·통신비·관리비 등 지원 금액 및 쌀 등 현물의 시장평가금액”을 포함한다(통계청, 2020c, p.106).

17) 가구가 받는 경조금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므로 가구 간 이전소득에서 제외하지만, 가구가 지출하는 경조비는 대체로 정기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가구 간 이전지출에 포함한다(통계청, 2020c, p.106, p.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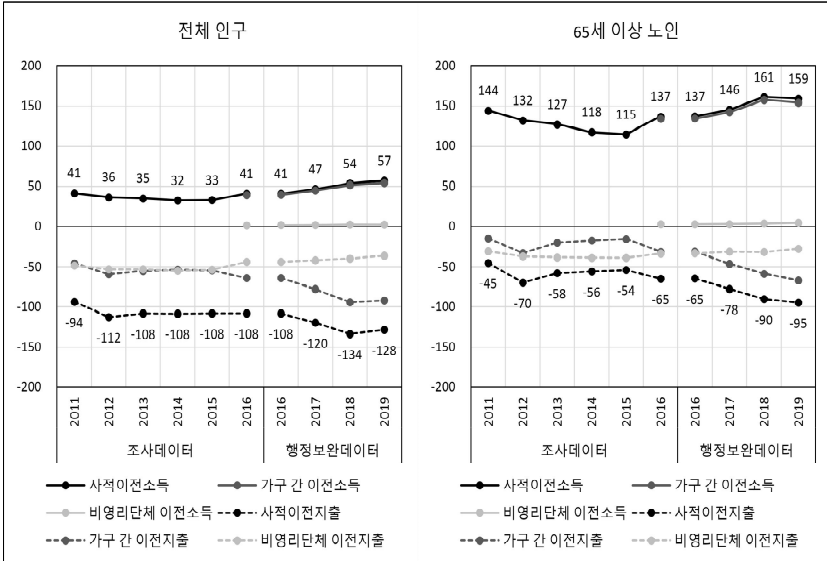
인구의 사적이전소득 평균과 가구 간 이전지출 평균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¹⁸⁾ 단, 2016년에 비영리 단체로 보낸 이전지출 평균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사적이전지출 평균은 2017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고령층은 사적이전소득, 사적이전지출, 가구 간 이전지출 평균이 모두 2016년부터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2016년의 사적이전 측정 방법 변화가 사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지출의 규모를 증가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사적이전 측정 방법이 2016년에 변경된 후 2019년까지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시작된 사적이전 증가 추이가 2017년 이후에도 대체로 지속되었다는 분석 결과는 분명하게 해석하기 어렵다. 만약 응답자가 2~3년에 걸쳐 천천히 변경된 측정 방법에 순응하였다면 이와 같은 패턴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 보수적으로 접근할 때, 2016년 이후 사적이전 증가 추이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18) 정확한 수치는 <부표 4-2>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림 4-2] 사적이전소득 및 사적이전지출 평균

(단위: 만 원/년, 명목가격)



주: 제공된 균등화 소득을 개인 단위로 분석하며, 지출은 음수로 표현함. 사적이전은 행정자료로 보완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6년 조사데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 수치가 일치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 (각 연도). 2011~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 통계청 MDIS(RAS 21072002)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한편, 사적이전은 가구 간 이전뿐만 아니라 가구-비영리 단체 간 이전을 포함한다. 그런데 가구 간 이전과 가구-비영리 단체 간 이전은 그 성격이 상이하므로, 전체 사적이전에서 두 항목이 차지하는 규모를 세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4-2]를 살펴보면, 전체 인구와 노인 모두 사적이전소득의 대부분을 가구 간 이전소득이 차지하였고, 비영리 단체로부터의 이전소득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장의 분석에서 사적이전소득을 사실상 가구 간 이전소득으로 해석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음을 의미한다. 반면 사적이전지출 중에서는 비영리 단체로의 이전지출이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나타났다. 단, 2016년 이후 가구 간 이전지출 평균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최근에는 비영리 단체

로의 이전지출보다 가구 간 이전지출이 사적이전지출을 훨씬 더 많이 설명하게 되었다. 요컨대, 이 장의 분석에서 사적이전소득은 사실상 가구 간 이전소득을 의미하고, 사적이전지출은 가구 간 이전지출과 비영리 단체로의 이전지출을 모두 일정하게 포함하지만 최근 가구 간 이전지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모든 분석에는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균등화 가구소득을 개인 단위로 분석하기 위해, 가구 가중치를 가구 내 개인에게 할당하여 개인 가중치로 활용하였다. 빈곤선은 각 연도 균등화 가처분소득의 개인 단위 증릿값의 50%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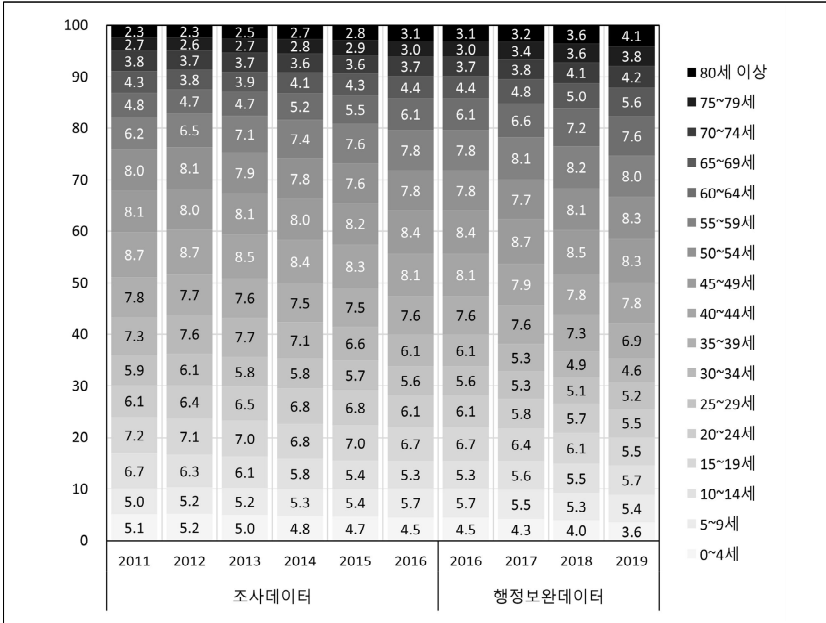
제3절 연령집단별 공·사적이전 실태와 변화

이 절에서는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연령집단별 공·사적이전 실태와 변화를 살펴본다. 연령집단은 0~79세를 5세 단위 구간으로 구분하고 80세 이상 구간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그림 4-3]에는 이 같이 구성한 연령집단의 분포를 보고하였다.¹⁹⁾ [그림 4-3]은 최근 십여 년간 중고령층 비율이 증가하고 유소년층과 청장년층 비율이 감소하는 고령화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13.1%에서 2019년 17.7%로 증가하였고, 15세 미만 유소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16.9%에서 2019년 14.6%로 감소하였다.

19) 정확한 수치는 <부표 4-3>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림 4-3] 연령집단별 비율: 2011~2019년

(단위: %)



주: 2016년 조사자료와 행정보완자료 수치가 일치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2011~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 통계청 MDIS(RAS 21072002)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1. 공적이전과 사적이전 규모

〈표 4-2〉는 2019년 개인의 연령집단별 사적이전 및 공적이전 평균이다. 우선 사적이전소득 평균을 살펴보면, 아동과 근로연령층은 연간 약 20~30만 원 수준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지만,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이행할 때 60~64세의 연간 79만 원에서 80세 이상의 201만 원으로 빠르게 증가한다. 한편 사적이전지출 평균은 60세 미만이 연간 114~155만 원이지만,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이행할 때 60~64세의 연간 136만 원에서 80세 이상의 74만 원으로 빠르게 감소한다. 사적이전소득에서 사적이전

지출을 차감한 순사적이전의 평균은 65세 미만의 경우 연간 -87~-131만 원의 음(-)의 값을 기록하지만, 이후 65세 이상 연령집단은 양(+)의 값으로 전환된다. 또한 순사적이전이 65~69세 6만 원, 70~74세 54만 원, 75~79세 94만 원, 80세 이상 127만 원으로 증가한다. 이는 사적 자원이 근로연령층에서 고령층으로 이전되어 노년기에 순사적이전이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전체 인구는 평균적으로 사적이전소득보다 사적이전지출이 크기 때문에 순사적이전 평균이 연간 -72만 원이지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사적이전지출보다 많은 사적이전소득을 받는다. 60세 미만 연령집단 중에서는 주로 노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45~49세의 사적이전소득 수준이 가장 낮았고 사적이전지출 수준이 가장 높다.

다음으로 공적이전소득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의 공적이전소득 평균이 연간 509~775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고, 60세 미만 연령집단 중에서는 0~4세 아동과 그 부모 세대인 30~34세의 공적이전소득 평균이 연간 186~209만 원으로 높다. 이는 한국의 소득보장체계가 주로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구성되어 있고, 추가로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 같은 아동 대상 소득보장제도가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반영한 후에도 이 같은 연령-공적이전 프로파일은 그다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60세 미만 연령집단은 공적이전소득보다 많은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결과 연간 -258~-534만 원의 순공적이전 평균을 나타낸 반면,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의 순공적이전 평균은 각각 연간 138만 원, 527만 원, 565만 원, 451만 원, 411만 원이다.

순사적이전과 순공적이전을 합산한 순공·사적이전 평균을 살펴보면, 공·사적이전을 통해 60세 미만 연령집단으로부터 60세 이상 연령집단,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로 경제적 자원이 이동한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령집단 간 수평적 재분배에는 사적이전보다 공적이전이 훨씬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제3장에서 민간이전과 공공이전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고, 거시 차원에서 연령집단별 주요 부양체계를 살펴본 결과와 차이가 있다. 즉 가구 내 이전을 제외하고 가구 간 이전만을 고려할 경우 유소년층에 대한 부양 부담 수준을 과소평가하고, 고령층의 공적이전에 대한 부양 부담 수준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령집단별 공·사적이전의 실태와 변화는 분석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표 4-2〉 2019년 연령집단별 사적이전 및 공적이전 평균

구분	사적이전			공적이전			순공·사적이전 (A-B+C-D)
	사적이전소득(A)	사적이전지출(B)	순사적이전(A-B)	공적이전소득(C)	공적이전지출(D)	순공적이전(C-D)	
0~4세	26	-114	-88	186	-464	-278	-366
5~9세	30	-117	-87	113	-537	-424	-511
10~14세	29	-127	-98	82	-616	-534	-632
15~19세	33	-143	-110	98	-607	-508	-619
20~24세	31	-127	-97	115	-568	-452	-549
25~29세	33	-125	-93	153	-573	-420	-512
30~34세	32	-127	-95	209	-467	-258	-354
35~39세	27	-123	-96	167	-509	-342	-438
40~44세	28	-131	-103	112	-537	-425	-529
45~49세	24	-155	-131	106	-639	-533	-664
50~54세	31	-152	-121	108	-598	-491	-612
55~59세	39	-153	-114	206	-550	-344	-459
60~64세	79	-136	-56	509	-371	138	82
65~69세	120	-114	6	767	-240	527	533
70~74세	154	-101	54	775	-210	565	618
75~79세	177	-82	94	618	-167	451	545
80세 이상	201	-74	127	578	-167	411	537
전체	57	-128	-72	262	-484	-221	-293

주: 재근근 균등화 소득을 개인 단위로 분석하였으며, 지출은 음수(-)로 표현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2011~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 통계청 MDIS(RAS21072002)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단위: 만 원/년, 명목가격)

2. 소득수준별 공적이전과 사적이전 규모 비교

그렇다면 사적이전과 공적이전이 연령-소득 프로파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그림 4-3]을 살펴보면, 2019년 공·사적이전을 반영하기 전의 일차소득 평균이 노년기로의 이행에 따라 55~59세의 연간 4,218만 원에서 80세 이상의 1,307만 원으로 급감한다.²⁰⁾ 75세 이상 고령노인의 일차소득 평균은 빈곤선보다 낮게 나타나, 고령층이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에서 적절한 수준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획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60세 미만 연령집단 중에서는 아동과 그 부모 세대의 일차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는데, 이는 아동 부양의 경제적 부담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적이전과 공적이전은 60세 미만 연령집단의 소득수준을 낮추고 60세 이상 연령집단의 소득수준을 높임으로써 이 같은 연령-소득 프로파일을 평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공·사적이전을 반영한 후에 생애주기에서 일차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45~49세의 소득 평균이 연간 4,461만 원에서 3,797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일차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75~79세의 소득 평균은 연간 1,291만 원에서 1,836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공·사적이전, 특히 공적이전이 생애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소득 위험을 일정하게 분산하는 수평적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단, 공·사적이전을 반영한 후에도 여전히 노년기에 소득수준이 급감하는 연령-소득 프로파일이 뚜렷하게 남아 있는데, 이는 현행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한계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 같은 아동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적이전이 아동을 부양하는 생애 단계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패턴

20) 정확한 수치는 <부표 4-4>를 참조하기 바란다.

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지금까지 연령집단을 기준으로 공·사적이전의 수평적 재분배 실태를 살펴보았으며, 다음으로는 일차소득분위를 기준으로 공·사적이전의 수직적 재분배 실태를 살펴본다. <표 4-3>에서 일차소득분위는 균등화 일차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를 10등분하여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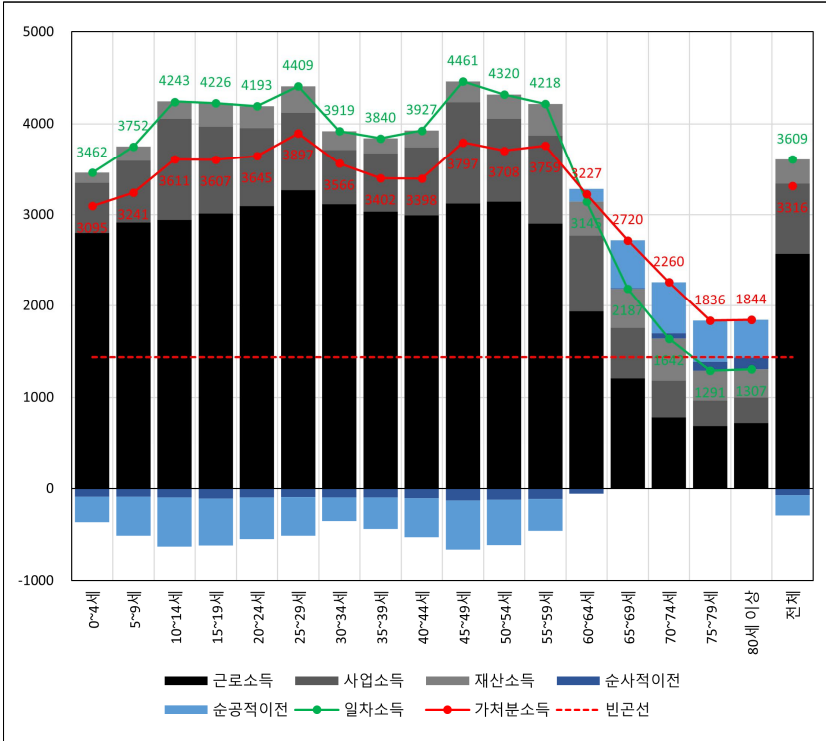
<표 4-3>을 살펴보면, 2019년 사적이전과 공적이전이 모두 일차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순수혜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¹⁾ 예를 들어, 일차소득 1분위는 평균적으로 사적이전지출보다 사적이전소득을 연간 177만 원 더 받고, 공적이전지출보다 공적이전소득을 연간 692만 원 더 받는다. 반면 일차소득 10분위는 평균적으로 사적이전지출보다 사적이전소득을 연간 308만 원 덜 받고, 공적이전지출보다 공적이전소득을 연간 1,807만 원 덜 받는다. 이와 같은 공·사적이전의 수직적 재분배 효과는 첫째, 소득수준이 낮은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공·사적이전을 받는 관계와 둘째, 연령과 무관하게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공·사적이전을 받는 관계가 결합된 결과로 판단된다. 특히, 사적이전보다 규모가 큰 공적이전의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훨씬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언급해둘 필요가 있다. [그림 4-4]는 공·사적이전, 특히 공적이전이 일차소득보다 가치분소득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²²⁾ 예를 들어 2019년 일차소득 1분위의 일차소득 평균은 연간 193만 원에 불과하지만, 공·사적이전을 반영한 후 1,062만 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단, 공·사적이전이 반영된 후에도 일차소득 1~2분위의 가치분소득 평균은 빈곤선에 미치지 못한다.

21) <부표 4-5>와 같이 고령층의 절반 이상이 일차소득 1분위와 일차소득 2분위에 속한다.

22) 정확한 수치는 <부표 4-6>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림 4-3] 2019년 연령집단별 소득 평균

(단위: 만 원/년, 명목가격)



주: 제공된 균등화 소득을 개인 단위로 분석하였으며, 빈곤선은 전체 인구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2011~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 통계청 MDIS(RAS 21072002)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표 4-3〉 2019년 일차소득분위별 사적 이전 및 공적 이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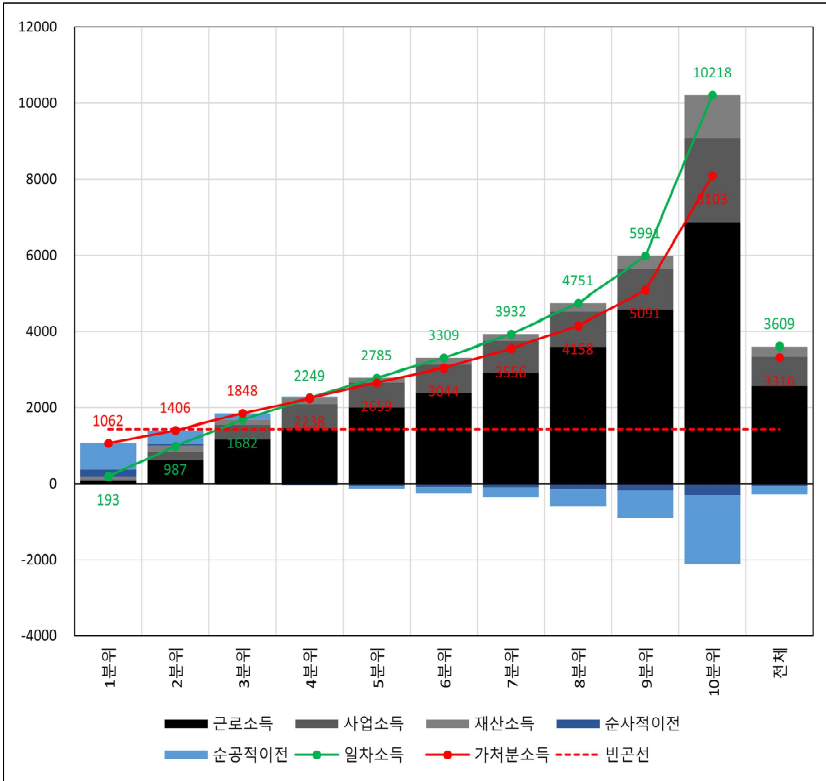
구분	사적 이전			공적 이전			순공·사적이전 (A+B+C-D)
	사적 이전 소득(A)	사적 이전 지출(B)	순사적이전(A-B)	공적 이전 소득(C)	공적 이전 지출(D)	순공적이전(C-D)	
일차소득 1분위	231	-53	177	735	-43	692	869
일차소득 2분위	116	-69	47	470	-98	372	418
일차소득 3분위	65	-70	-5	329	-159	170	166
일차소득 4분위	39	-84	-44	233	-200	33	-11
일차소득 5분위	29	-91	-62	198	-262	-64	-126
일차소득 6분위	24	-114	-91	163	-337	-174	-265
일차소득 7분위	23	-123	-101	147	-422	-275	-376
일차소득 8분위	15	-162	-147	129	-575	-446	-593
일차소득 9분위	12	-196	-184	112	-828	-717	-900
일차소득 10분위	13	-321	-308	107	-1,914	-1,807	-2,115
전체	57	-128	-72	262	-484	-221	-293

주: 재평균 균등화 소득을 개인 단위로 분석하였으며, 지출은 음수(-)로 표현함. 일차소득분위는 균등화 일차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를 10등분하여 구성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2011~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 통계청 MDIS(RAS21072002)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단위: 만 원/년, 명목가격)

[그림 4-4] 2019년 일차소득분위별 소득 평균

(단위: 만 원/년, 명목가격)



주: 제공된 균등화 소득을 개인 단위로 분석하였으며, 일차소득분위는 균등화 일차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를 10등분하여 구성함. 빈곤선은 전체 인구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2011~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 통계청 MDIS(RAS 21072002)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3. 공·사적이전의 변화

이와 같은 공·사적이전 실태는 최근 십여 년간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표 4-4>는 2011년과 2016년의 조사자료, 2016년과 2019년의 행정보
 완자료로 분석한 연령집단별 순사적이전 및 순공적이전 평균이다. 앞에

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첫째, 공적이전소득 및 공적이전지출의 행정자료 보완으로 인해 2016년 조사자료보다 행정보완자료의 공적이전 규모가 크다는 점과 둘째, 2016년 사적이전 측정 방법 변경이 2016년 이후 사적이전 추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에 주의하여 분석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 <표 4-4>를 횡단적으로 살펴보면, 공·사적이전, 특히 공적이전이 60세 미만 연령집단의 소득을 감소시켰고 60세 이상 연령집단의 소득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첫째, 고령층의 순공적이전이 시간에 따라 크게 증가했다는 점과 둘째, 60세 미만 연령집단 중에서 아동과 30대의 순공적이전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전자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확대를, 후자는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 등 아동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확대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짐작해볼 수 있다.

<표 4-5>는 2011년과 2016년의 조사자료, 2016년과 2019년의 행정보완자료로 분석한 일차소득분위별 순사적이전 및 순공적이전 평균이며, 최근으로 올수록 공·사적이전, 특히 공적이전의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증가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일차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은 최근으로 올수록 더 많은 공적이전소득을 받게 되었고, 일차소득 수준이 높은 고소득층은 최근으로 올수록 더 많은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지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표 4-4〉 2011년/2016년/2019년 연령집단별 순사회적접점 및 순공적접점 평균

구분	2011년 조사데이터		2016년 조사데이터		2016년 행정보완데이터		2019년 행정보완데이터	
	순사회적접점	순공적접점	순사회적접점	순공적접점	순사회적접점	순공적접점	순사회적접점	순공적접점
0~4세	-81	-251	-84	-304	-84	-298	-88	-278
5~9세	-75	-266	-83	-335	-83	-350	-87	-424
10~14세	-76	-259	-97	-360	-97	-387	-98	-534
15~19세	-81	-261	-99	-332	-99	-375	-110	-508
20~24세	-66	-263	-86	-335	-86	-391	-97	-452
25~29세	-72	-241	-79	-322	-79	-347	-93	-420
30~34세	-79	-220	-84	-259	-84	-256	-95	-258
35~39세	-79	-249	-88	-297	-88	-296	-96	-342
40~44세	-93	-284	-102	-348	-102	-376	-103	-425
45~49세	-92	-286	-114	-364	-114	-420	-131	-533
50~54세	-83	-259	-107	-369	-107	-432	-121	-491
55~59세	-61	-122	-87	-221	-87	-255	-114	-344
60~64세	-6	131	-44	196	-44	177	-56	138
65~69세	57	223	23	408	23	412	6	527
70~74세	105	179	79	378	79	387	54	565
75~79세	152	159	102	338	102	339	94	451
80세 이상	106	137	105	317	105	303	127	411
전체	-52	-174	-67	-192	-67	-217	-72	-221

주: 재평균 균등화 소득을 개인 단위로 분석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2011~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 통계청 MDIS(RAS21072002)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단위: 만 원/년, 평표가액)

〈표 4-5〉 2011년/2016년/2019년 일차소득분위별 순사적이전 및 순공적이전 평균

구분	2011년 조사데이터		2016년 조사데이터		2016년 행정보완데이터		2019년 행정보완데이터	
	순사적이전	순공적이전	순사적이전	순공적이전	순사적이전	순공적이전	순사적이전	순공적이전
1분위	215	343	173	537	710	152	504	656
2분위	42	88	24	172	196	21	195	215
3분위	-4	-15	-17	28	11	-10	46	36
4분위	-25	-63	-88	-69	-115	-44	-43	-87
5분위	-52	-121	-173	-54	-196	-64	-87	-151
6분위	-66	-147	-213	-83	-283	-75	-152	-227
7분위	-87	-221	-309	-105	-373	-96	-245	-341
8분위	-116	-306	-422	-124	-500	-125	-355	-480
9분위	-152	-415	-566	-168	-717	-173	-566	-739
10분위	-281	-892	-1,173	-275	-1,338	-259	-1,463	-1,723
전체	-52	-174	-227	-67	-259	-67	-217	-284

주: 재평균 균등화 소득을 개인 단위로 분석하였으며, 일차소득분위는 균등화 일차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를 10등분하여 구성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2011~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 통계청 MIDIS(RAS21072002)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단위: 만 원/년, 명목가액)

4. 공·사적이전과 빈곤

그렇다면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은 빈곤율을 얼마나 감소시켰을까? <표 4-6>은 2011년과 2016년의 조사데이터, 2016년과 2019년의 행정보완 데이터로 일차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빈곤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때 시장소득 빈곤율에서 일차소득 빈곤율을 차감한 수치를 사적이전의 빈곤율 감소 효과로, 가처분소득 빈곤율에서 시장소득 빈곤율을 차감한 수치를 공적이전의 빈곤율 감소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6>을 살펴보면, 우선 횡단적으로 공적이전이 60세 이상 연령집단의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공적이전은 60세 이상 연령집단의 빈곤율을 8.0~22.0%p 감소시켰다. 사적이전 역시 대체로 고령층의 빈곤율을 감소시켰지만, 공적이전과 비교할 때 사적이전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 상당히 작은 편이었다. 예를 들어 2019년 사적이전은 70세 이상 연령집단의 빈곤율을 2.0%p 감소시키는 데 그쳤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공적이전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강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적이전이 전체 인구의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2011~2016년 1.0%p에서 2.0%p로, 2016~2019년 2.0%p에서 4.0%p로 소폭 증가하였다. 주로 공적연금의 성숙과 기초(노령)연금의 확대 등에 따라 공적이전의 고령층 빈곤율 감소 효과가 시간에 따라 눈에 띄게 증가하였지만, 최근에는 공적이전이 아동과 근로연령층의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에는 2018년 아동수당 도입 및 확대, 2019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확대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적이전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 최근으로 올수록 정체·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사적이전은 65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율을 2.0~4.0%p 감소시켰지만, 2019년 사적이전

은 65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율을 0.0~2.0%p밖에 감소시키지 못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6년 사적이전의 측정 방법이 변경되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지만, 적어도 공적이전과 비교할 때 사적이전이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공·사적이전, 특히 공적이전은 고령층의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즉 공·사적이전은 근로연령층과 고령층의 빈곤율 격차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연령-빈곤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 이와 같은 공·사적이전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표 4-6>에서 보듯이, 여전히 전체 인구보다 고령층의 가처분소득 빈곤율이 매우 높다는 점은 분명하게 강조될 필요가 있다.

〈표 4-6〉 2011년/2016년/2019년 연령집단별 빈곤율 감소 효과

(단위: %, %p)

구분	2011년 조사데이터			2016년 조사데이터			2016년 행정보원데이터			2019년 행정보원데이터										
	(A) 일차 소득	(B) 시장 소득	(C) 가처분 소득	(A) 일차 소득	(B) 시장 소득	(C) 가처분 소득	(A) 일차 소득	(B) 시장 소득	(C) 가처분 소득	(A) 일차 소득	(B) 시장 소득	(C) 가처분 소득								
0~4세	8.0	9.0	10.0	0.0	2.0	6.0	6.0	8.0	0.0	2.0	12.0	13.0	14.0	1.0	1.0	11.0	12.0	12.0	1.0	-1.0
5~9세	9.0	9.0	10.0	0.0	1.0	9.0	9.0	11.0	0.0	2.0	13.0	14.0	15.0	1.0	1.0	11.0	11.0	10.0	0.0	-1.0
10~14세	12.0	11.0	13.0	0.0	1.0	10.0	10.0	11.0	0.0	1.0	14.0	14.0	16.0	0.0	1.0	12.0	11.0	10.0	0.0	-1.0
15~19세	13.0	13.0	14.0	0.0	1.0	13.0	13.0	14.0	0.0	1.0	15.0	16.0	15.0	0.0	-1.0	13.0	13.0	11.0	0.0	-2.0
20~24세	11.0	11.0	11.0	-1.0	0.0	12.0	11.0	12.0	0.0	1.0	11.0	11.0	11.0	0.0	0.0	12.0	12.0	10.0	0.0	-2.0
25~29세	7.0	7.0	8.0	-1.0	1.0	6.0	6.0	7.0	0.0	1.0	8.0	8.0	9.0	0.0	1.0	8.0	8.0	7.0	0.0	-1.0
30~34세	8.0	8.0	8.0	0.0	1.0	7.0	7.0	7.0	0.0	0.0	11.0	11.0	11.0	0.0	0.0	10.0	11.0	9.0	1.0	-1.0
35~39세	8.0	8.0	9.0	0.0	1.0	8.0	8.0	9.0	0.0	1.0	12.0	13.0	13.0	1.0	0.0	10.0	10.0	10.0	0.0	-1.0
40~44세	9.0	9.0	10.0	0.0	2.0	8.0	8.0	9.0	0.0	1.0	12.0	12.0	13.0	0.0	1.0	11.0	11.0	10.0	0.0	-1.0
45~49세	10.0	10.0	11.0	0.0	1.0	10.0	10.0	11.0	0.0	1.0	12.0	13.0	13.0	0.0	0.0	11.0	12.0	11.0	0.0	-1.0
50~54세	11.0	10.0	12.0	0.0	1.0	10.0	10.0	11.0	0.0	1.0	10.0	11.0	12.0	0.0	1.0	12.0	12.0	11.0	0.0	-1.0
55~59세	18.0	18.0	15.0	-1.0	-2.0	14.0	14.0	14.0	0.0	-1.0	14.0	14.0	13.0	0.0	-1.0	13.0	14.0	12.0	0.0	-2.0
60~64세	35.0	34.0	26.0	-1.0	-8.0	28.0	28.0	20.0	0.0	-8.0	28.0	27.0	19.0	0.0	-8.0	25.0	25.0	16.0	-1.0	-8.0
65~69세	53.0	51.0	39.0	-2.0	-12.0	48.0	46.0	32.0	-2.0	-14.0	46.0	44.0	28.0	-2.0	-16.0	43.0	43.0	25.0	0.0	-18.0
70~74세	64.0	61.0	51.0	-4.0	-10.0	64.0	61.0	46.0	-2.0	-15.0	60.0	57.0	41.0	-3.0	-16.0	63.0	61.0	39.0	-2.0	-22.0
75~79세	70.0	67.0	59.0	-3.0	-8.0	71.0	68.0	58.0	-3.0	-10.0	71.0	67.0	56.0	-3.0	-11.0	71.0	68.0	53.0	-2.0	-15.0
80세 이상	63.0	60.0	54.0	-4.0	-6.0	70.0	69.0	58.0	-1.0	-11.0	69.0	67.0	57.0	-2.0	-10.0	72.0	70.0	57.0	-2.0	-13.0
전체	18.0	18.0	17.0	-1.0	-1.0	18.0	18.0	16.0	0.0	-2.0	20.0	20.0	18.0	0.0	-2.0	21.0	21.0	16.0	0.0	-4.0

주: 계층간 균등화 소득을 개인 단위로 분석하였으며, 빈곤선은 연도별 전체 인구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임. 일차소득/시장소득/가처분소득 빈곤율과 그 차이를 보고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2011~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 통계청 MDIS(RAS21072002)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제4절 고령층의 공·사적이전 실태와 변화

이 절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 및 공·사적이전 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이 절에서는 고령층을 소득, 연령, 가구 유형을 기준으로 몇 개의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1. 고령층의 특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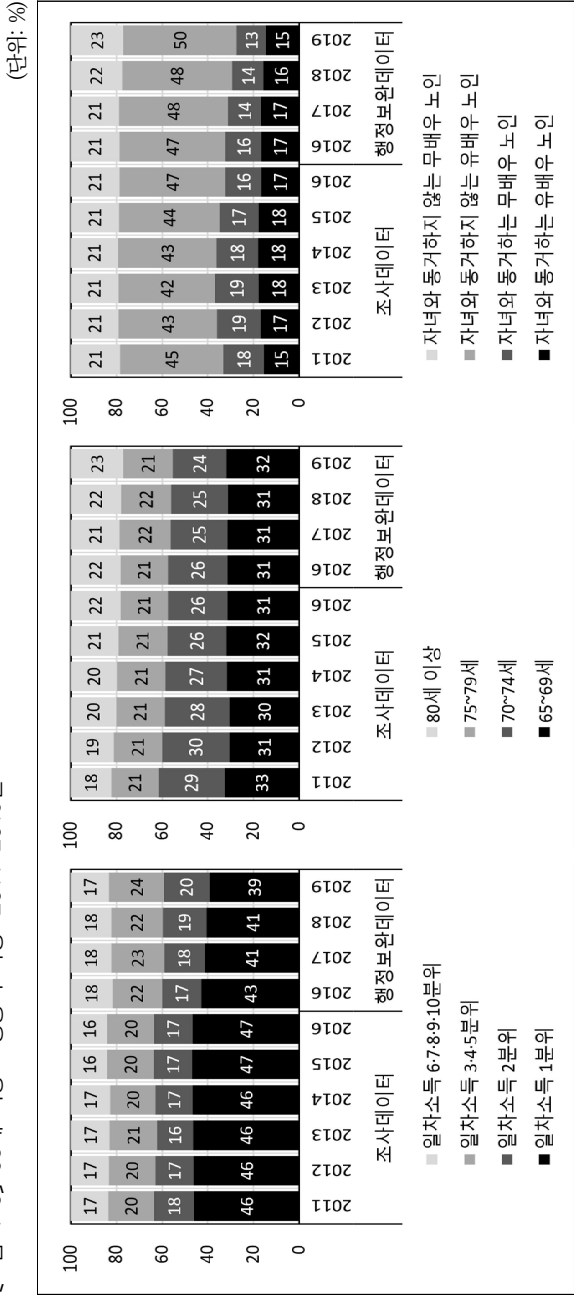
[그림 4-5]에는 2011~2019년 기간에 고령층의 특성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보고하였다.²³⁾ 좌측 그래프는 일차소득 분포의 시간에 따른 변화이다. 이때 일차소득분위는 고령층이 아니라 전체 인구를 10등분하여 구성하였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일차소득 1분위에 속한 노인의 비율이 46.0%라는 분석 결과는 전체 인구의 하위 10%에 해당하는 일차소득을 가진 노인이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6.0%임을 의미한다. 횡단적으로 고령층의 일차소득 1분위 비율은 39.0~47.0%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 능력이 감소하는 노년기에 일차소득 수준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2011~2016년에는 일차소득분위 비율이 거의 유지되었지만 2016~2019년에는 1분위 비율이 43.0%에서 39.0%로 4.0%p 감소하였고 2~5분위 비율이 39.0%에서 44.0%로 5.0%p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으로 오면서 고령층의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어²⁴⁾ 근로 연령층과 고령층의 일차소득 격차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3) 정확한 수치는 <부표 4-7>을 참조하기 바란다.

24) 통계청(2021a)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연령집단의 고용률은 2016년 39.5%에서 2020년 42.4%로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증가하였다.

다음으로는 고령층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았다. 2011~2019년 기간에 80세 이상 고령노인의 비율이 18.0%에서 23.0%로 증가하였고, 70~74세 비율이 29.0%에서 24.0%로 감소하였다. 이는 고령화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고령층 내에서 후기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시간에 따라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그림 4-5]의 우측에는 고령층의 가구 유형 분포를 보고하였다. 2011~2019년 기간에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무배우 노인과 유배우 노인의 비율이 각각 21.0%에서 23.0%로, 45.0%에서 50.0%로 증가하였고, 자녀와 동거하는 무배우 노인의 비율이 18.0%에서 13.0%로 감소하였다. 이는 노인과 성인 자녀의 동거가 감소하는 추이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그림 4-5] 65세 이상 고령층의 특성: 2011~2019년



주: 일차소득분위는 균등화 일차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를 10등분하여 구성함.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를 활용하여 1) 본인이 가구주/배우자이고 가구 내 미혼/기혼 자녀 및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 2) 본인이 기혼 자녀 및 배우자이고 가구 내 손자녀 및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 3) 본인이 부모인 경우, 4) 본인이 조부모이고 가구 내 부모가 존재하는 경우 자녀와 동거하는 것으로 정의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2011~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 통계청 MIDIS(RAS21072002)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2. 고령층의 공·사적이전 규모 변화

[그림 4-6]에서는 고령층의 공·사적이전 규모를 살펴보았다.²⁵⁾ 고령층의 사적이전소득 평균은 2011~2015년 연간 144만 원에서 115만 원으로 감소한 후 2019년까지 연간 159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순사적이전 평균은 2011~2015년 연간 99만 원에서 61만 원으로 감소한 후 2016~2019년 연간 64~72만 원 수준에서 대체로 정체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6년에 사적이전 측정 방법을 변경했기 때문에 사적이전 추이를 해석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가구 간 이전 항목과 가구·비영리 단체 간 이전 항목의 분리, 현물이전 포함 등 사적이전의 측정 방법 변경이 주로 사적이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근 십여 년간 고령층의 평균적인 순사적이전이 시간에 따라 정체하였거나 감소하였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공적이전을 살펴보면, 공적연금 평균이 2011~2016년 연간 174만 원에서 302만 원으로, 2016~2019년 연간 329만 원에서 402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기초(노령)연금 평균이 2011~2016년 연간 60만 원에서 139만 원으로, 2016~2019년 연간 138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기타 공적이전소득 평균 역시 일정하게 증가하였다. 이같이 시간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제도가 확대된 결과 고령층의 순공적이전 평균은 2011~2016년 연간 181만 원에서 366만 원으로, 2016~2019년 연간 366만 원에서 493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순공적이전의 빠른 증가는 순사적이전의 정체·감소와 뚜렷하게 대조된다. 2011년에는 고령층의 순공적이전 평균이 순사적이전 평균의 약 2배였지만, 2019년에는 약 8배로 나타났다. 순사적이전과 순공적이전을 합산한 순공·사적이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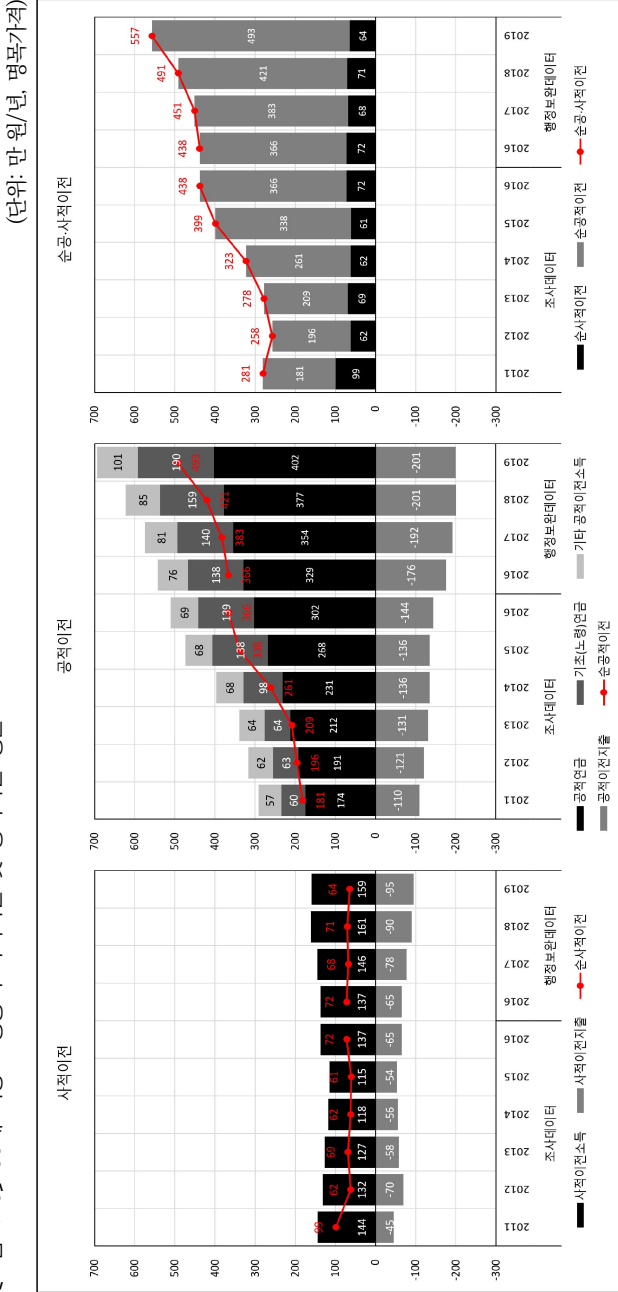
25) 정확한 수치는 <부표 4-8>을 참조하기 바란다.

은 2011~2016년 연간 281만 원에서 438만 원으로, 2016~2019년 연간 438만 원에서 557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 같은 공·사적이전의 변화는 고령층의 소득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그림 4-7]의 좌측을 살펴보면, 공·사적이전, 특히 공적이전이 크게 증가한 덕분에 고령층의 일차소득 평균보다 가처분소득 평균이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²⁶⁾ 우측 그래프를 살펴보면, 고령층의 가처분소득에서 순공적이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1~2016년 13.0%에서 21.0%로, 2016~2019년 18.0%에서 22.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조사자료와 행정보완자료의 차이는 행정자료 보완으로 인한 시계열 단절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근 십여 년간 공적이전의 노후소득 기여도가 상당히 증가하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반면, 사적이전의 노후소득 기여도는 대체로 정체·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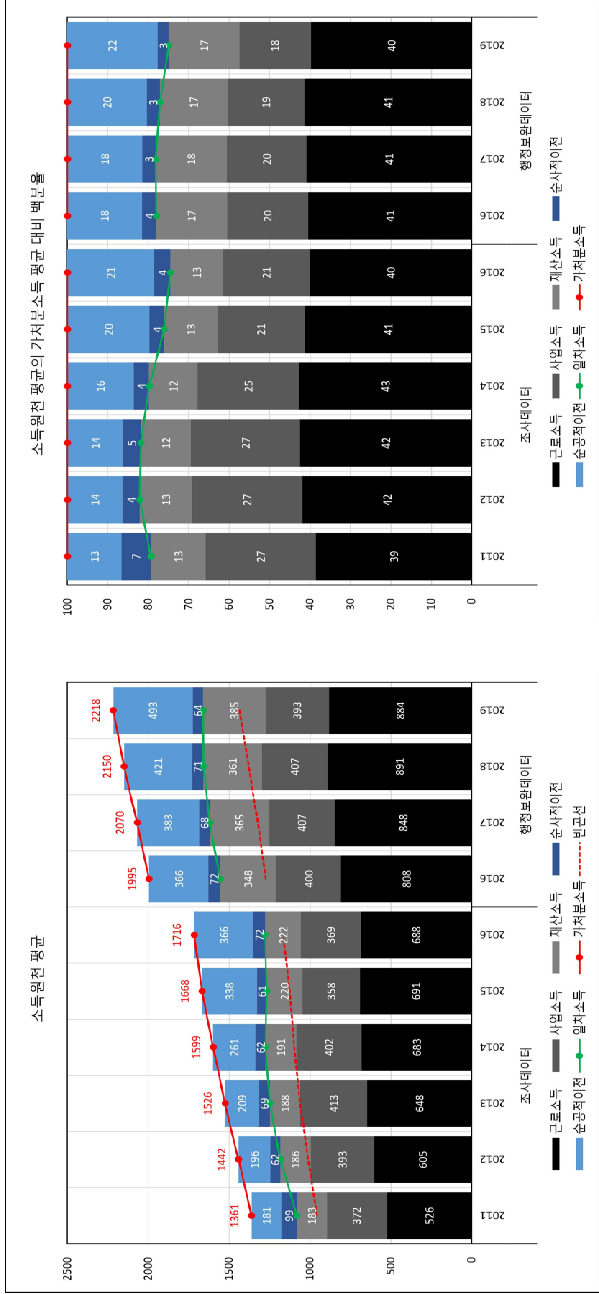
26) 정확한 수치는 <부표 4-9>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림 4-6] 65세 이상 고령층의 사적이전 및 공적이전 평균



주: 재평균 균등화 소득을 개인 단위로 분석하였으며, 지출은 음수(-)로 표현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2011~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 통계청 MDIS(RAS21072002)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그림 4-7] 65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 평균



주: 제평균 공동화 소득을 개인 단위로 분석하였으며, 민간소득은 연도별 전체 인구 가치분소득 증감분의 50%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2011~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 통계청 MIDIS(RAS21072002)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3. 고령층의 하위집단별 공·사적이전 규모 변화

다음으로 [그림 4-8]에는 고령층의 하위집단별 순사적이전 및 순공적이전 평균을 보고하였다.²⁷⁾ 우선 순사적이전을 살펴보면, 일차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배우자가 없을 때 순사적이전 평균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 능력이 약하고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작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적이전을 받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노인의 경제적 필요가 사적이전의 주요 결정요인이라는 이타주의 모델의 예측을 지지한다(이원진, 2018, pp.105-120).

다음으로 순공적이전을 살펴보면, 순사적이전과 유사하게 대체로 노인의 일차소득 수준이 낮고 자녀와 동거하지 않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순공적이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순사적이전과 달리 75세 이상 고령노인의 순공적이전 평균이 상대적으로 작았는데, 이는 시간에 따른 공적연금의 성숙으로 인해 최근 고령층에 진입한 코호트가 상대적으로 많은 공적연금을 수급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순사적이전과 달리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 중에서 무배우 노인보다 유배우 노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순공적이전을 받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주로 사별 여성 노인보다 노인부부가 공적연금을 수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순공적이전의 하위집단별 분포는 노동시장 이력에 기초한 소득비례 방식의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기여 방식의 공공부조·사회수당 등 다양한 성격의 노후소득보장제도가 결합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 순사적이전과 순공적이전을 합산하여 살펴보면, 연령에 따른 순공·사적

27) 정확한 수치는 <부표 4-10>을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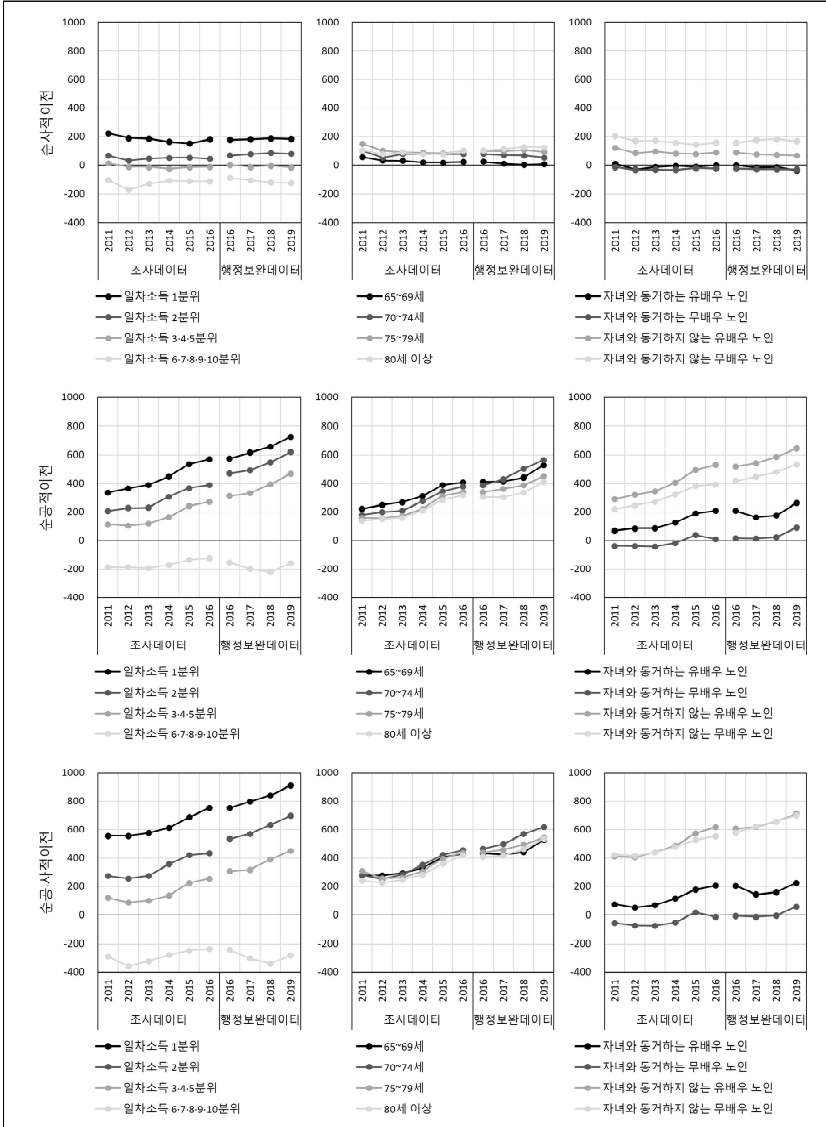
이전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고, 일차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와 동거하지 않을 때 더 많은 순공·사적이전을 받는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일차소득 6~10분위 노인이 받은 순공·사적이전 평균은 시간에 따라 그다지 증가하지 않은 반면, 일차소득 1~5분위 노인이 받은 순공·사적이전 평균이 시간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순공·사적이전의 노후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강해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가구 유형별 분석 결과는 순공·사적이전이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의 저소득 위험을 완화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9]에는 고령층의 하위집단별 일차소득 및 가처분소득 평균을 보고하였다.²⁸⁾ 가처분소득 평균은 일차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와 동거할 때, 자녀와 동거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가 있을 때 상대적으로 컸다. 그런데 공·사적이전은 이와 같은 집단 간 격차를 일정하게 축소하기 때문에 일차소득 격차보다는 가처분소득 격차가 조금 더 작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11~2019년 일차소득 2분위 노인의 일차소득 평균은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지만, 공·사적이전이 반영된 가처분소득 평균은 빈곤선을 상회한다. 이는 공·사적이전이 노인 빈곤 완화에 일정하게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단, 공·사적이전이 반영된 후에도 집단 간 소득 격차의 패턴이 대체로 유지된다는 점은 언급해둔다.

28) 정확한 수치는 <부표 4-11>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림 4-8] 65세 이상 고령층의 하위집단별 순사적이전 및 순공적이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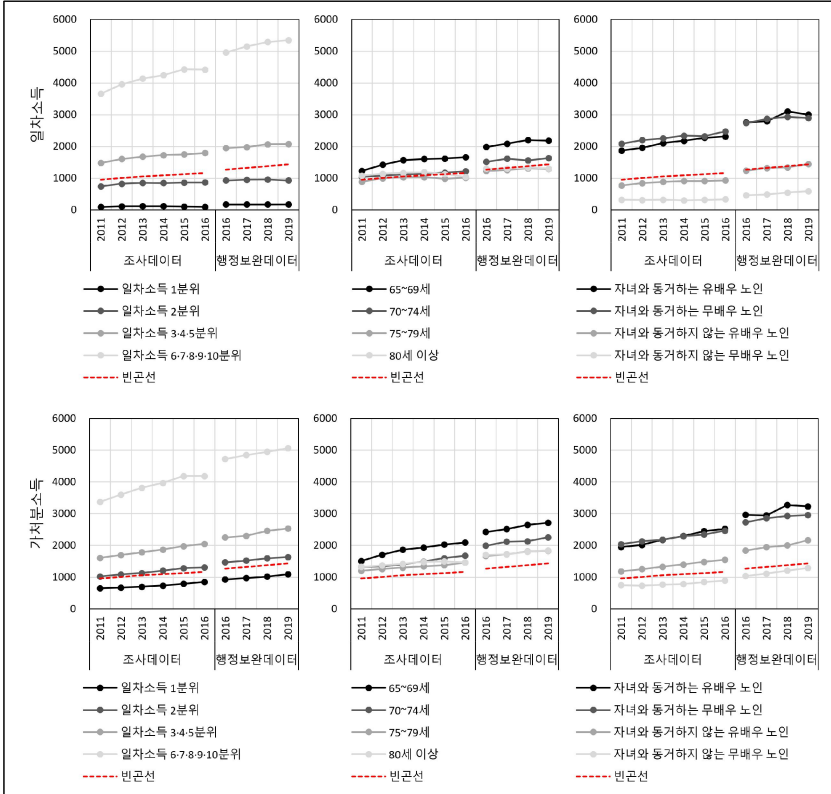
(단위: 만 원/년, 명목가격)



주: 제공근 균등화 소득을 개인 단위로 분석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2011~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 통계청 MDIS(RAS 21072002)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그림 4-9] 65세 이상 고령층의 하위집단별 일차소득 및 가처분소득 평균

(단위: 만 원/년, 명목가격)



주: 제공된 균등화 소득을 개인 단위로 분석하였으며, 빈곤선은 연도별 전체 인구 가처분소득 중 윗값의 50%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2011~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 통계청 MDIS(RAS 21072002)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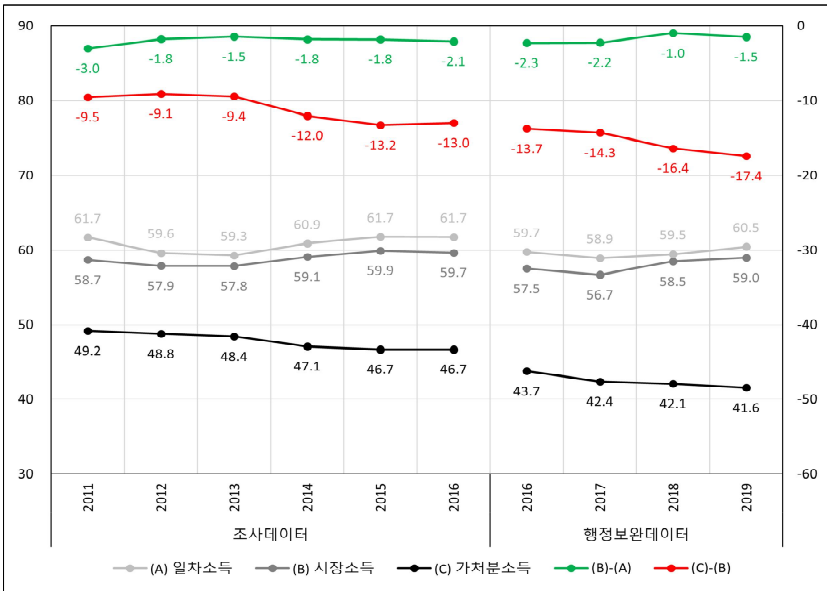
4. 고령층의 빈곤 수준 변화

[그림 4-10]은 고령층의 빈곤율이다. 일차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빈곤율을 보고하였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소득 빈곤율에서 일차소득 빈곤율을 차감한 수치를 사적이전의 빈곤율 감소 효과, 가처분소

득 빈곤율에서 시장소득 빈곤율을 차감한 수치를 공적이전의 빈곤율 감소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²⁹⁾

[그림 4-10] 65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율: 2011~2019년

(단위: %, %p)



주: 제공된 균등화 소득을 개인 단위로 분석하였으며, 빈곤선은 연도별 전체 인구 가처분소득 중 윗값의 50%임. 일차소득/시장소득/가처분소득 빈곤율과 그 차이를 보고하였음.
 자료: 통계청, (각 연도). 2011~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 통계청 MDIS(RAS 21072002)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한편 고령층의 일차소득 빈곤율은 약 60.0% 수준으로 시간에 따라 뚜렷한 증감 추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사적이전은 빈곤율을 1.0~3.0%p 감소시켰는데, 2016~2019년 사적이전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대체로 시간에 따라 소폭 감소한 결과 고령층의 시장소득 빈곤율이 57.5%에서 59.0%로 증가하였다. 이는 향후 노후소득보장제도가 강화되지 않는다면

29) 정확한 수치는 <부표 4-12>를 참조하기 바란다.

노인 빈곤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공적이전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 2011~2016년 9.5%p에서 13.0%p로, 2016~2019년 13.7%p에서 17.4%p로 증가하였고, 그 결과 고령층의 가처분소득 빈곤율이 2011~2016년 49.2%에서 46.7%로, 2016~2019년 43.7%에서 41.6%로 감소하였다. 즉 노후소득보장제도가 강화된 덕분에 최근 십여 년간 고령층의 빈곤율이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사적이전과 공적이전이 모두 고령층의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였지만, 횡단적으로 공적이전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훨씬 컸고, 시간에 따라 사적이전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대체로 정체·감소한 반면 공적이전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였다. 즉 빈곤율 감소 효과를 기준으로 할 때 사적이전보다 공적이전의 노후소득 기여도가 횡단적으로 더 크고 시간에 따라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5. 고령층의 하위집단별 빈곤 수준 변화

〈표 4-7〉은 고령층의 하위집단별 빈곤율이다. 고령층의 빈곤율은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와 동거하지 않을 때, 자녀와 동거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가 없을 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사적이전이 빈곤율을 일정하게 감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집단 간 빈곤율 격차의 패턴은 대체로 유지되었다. 특히 가구 유형에 따른 빈곤율 격차가 상당히 컸는데, 주로 자녀와의 동거가 고령층의 빈곤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2019년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14.0~18.0%였지만,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유배우 노인과 무배우 노인의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각각 41.0%, 73.0%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시간에 따라 자녀와 노인의 동거가 감소하는 인구학적 변화가(그림 4-5 참조) 고령층의

빈곤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단, 공적연금의 성숙과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인상 등과 같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확대에 따라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의 가처분소득 빈곤율이 대체로 시간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노인 빈곤의 증장기 추이는 주로 자녀와의 동거 감소와 노후소득보장제도 확대가 결합한 결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표 4-8>은 고령층의 하위집단별 빈곤율 감소 효과이다. 시장소득 빈곤율에서 일차소득 빈곤율을 차감한 수치를 살펴보면, 대체로 사적이전이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의 빈곤율을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사적이전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 시간에 따라 정체·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2019년에는 사적이전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빈곤율을 거의 감소시키지 못했거나 오히려 소폭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고, 사적이전이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의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2.0%p에 그쳤다.

다음으로 가처분소득 빈곤율에서 시장소득 빈곤율을 차감한 수치는 공적이전의 빈곤율 감소 효과를 보여준다. 공적이전은 대체로 공적연금을 많이 받는 75세 미만 전기노인의 빈곤율을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시켰고, 특히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유배우 노인의 빈곤율을 크게 감소시켰다. 주로 공적연금이, 부분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이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유배우 노인이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일정 수준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 <표 4-7>에서 확인하였듯이 공적이전이 반영된 후에도 2019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유배우 노인의 빈곤율이 41.0%로 여전히 높았다는 점은 언급해둘 필요가 있다. 한편, 일차소득 빈곤율이 약 90% 수준으로 극단적으로 높은 자녀와 비동거하는 무배우 노인의 경우, 노후소득보장제도가 꾸준히

확대된 2019년에도 공적이전이 이들의 빈곤율을 12.0%p밖에 감소시키지 못했고, 그 결과 가처분소득 빈곤율이 73.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와 사별하고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이 현재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구성하는 주요 집단임을 보여준다.

〈표 4-7〉 65세 이상 고령층의 하위집단별 빈곤율

구분	조사데이터					행정보연데이터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령									
65~69세	53.0	49.0	48.0	48.0	50.0	48.0	46.0	44.0	43.0
70~74세	64.0	64.0	63.0	66.0	63.0	64.0	60.0	59.0	63.0
75~79세	70.0	67.0	67.0	70.0	73.0	71.0	71.0	70.0	71.0
80세 이상	63.0	62.0	63.0	64.0	66.0	70.0	69.0	69.0	72.0
일차소득 빈곤율									
재녀와 동거하는 유배우 노인	27.0	27.0	27.0	28.0	28.0	25.0	23.0	23.0	25.0
재녀와 동거하는 무배우 노인	25.0	24.0	24.0	26.0	28.0	27.0.0	28.0	28.0	27.0
재녀와 동거하지 않는 유배우 노인	75.0	73.0	73.0	74.0	74.0	73.0	70.0	68.0	67.0
재녀와 동거하지 않는 무배우 노인	90.0	91.0	91.0	93.0	91.0	90.0	89.0	89.0	87.0
가처분소득 빈곤율									
65~69세	39.0	36.0	34.0	33.0	33.0	32.0	28.0	27.0	25.0
70~74세	51.0	52.0	52.0	49.0	46.0	46.0	41.0	39.0	39.0
75~79세	59.0	58.0	58.0	59.0	60.0	58.0	56.0	54.0	53.0
80세 이상	54.0	55.0	54.0	53.0	55.0	58.0	57.0	57.0	57.0
재녀와 동거하는 유배우 노인	21.0	22.0	21.0	19.0	18.0	16.0	14.0	15.0	14.0
재녀와 동거하는 무배우 노인	21.0	21.0	20.0	21.0	21.0	22.0	22.0	19.0	18.0
재녀와 동거하지 않는 유배우 노인	55.0	56.0	56.0	54.0	52.0	51.0	46.0	44.0	41.0
재녀와 동거하지 않는 무배우 노인	80.0	82.0	81.0	81.0	79.0	80.0	78.0	76.0	73.0

주: 재검근 균등화 소득을 개인 단위로 분석하였으며, 빈곤선은 연도별 전체 인구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임. 일차소득/가처분소득 빈곤율을 보고 하였음.

자료: 통계청, (각 연도), 2011~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 통계청 MDIS(RAS21072002)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단위: %)

〈표 4-8〉 65세 이상 고령층의 하위집단별 빈곤율 감소 효과

(단위: %p)

구분	조사데이터					행정보원데이터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령	65~69세	-2.0	-2.0	-1.0	-1.0	-1.0	-2.0	-1.0	0.0	0.0
	70~74세	-4.0	-2.0	-2.0	-3.0	-3.0	-2.0	-3.0	-2.0	-2.0
	75~79세	-3.0	-2.0	-2.0	-2.0	-2.0	-3.0	-3.0	-1.0	-2.0
	80세 이상	-4.0	-1.0	-2.0	-1.0	-1.0	-1.0	-2.0	-1.0	-2.0
일차소득 빈곤율	자녀와 동거하는 유배우 노인	-1.0	0.0	0.0	-1.0	-1.0	-1.0	-1.0	0.0	0.0
	자녀와 동거하는 무배우 노인	-1.0	-1.0	0.0	0.0	-1.0	0.0	-1.0	0.0	0.0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유배우 노인	-4.0	-2.0	-2.0	-2.0	-2.0	-3.0	-3.0	-1.0	-2.0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무배우 노인	-4.0	-3.0	-3.0	-3.0	-3.0	-2.0	-2.0	-3.0	-2.0
연령	65~69세	-12.0	-12.0	-13.0	-14.0	-16.0	-14.0	-16.0	-18.0	-18.0
	70~74세	-10.0	-10.0	-9.0	-14.0	-14.0	-15.0	-16.0	-20.0	-22.0
	75~79세	-8.0	-7.0	-7.0	-9.0	-11.0	-10.0	-11.0	-13.0	-14.0
	80세 이상	-6.0	-7.0	-7.0	-9.0	-10.0	-11.0	-10.0	-11.0	-13.0
가처분소득 빈곤율	자녀와 동거하는 유배우 노인	-4.0	-4.0	-5.0	-8.0	-9.0	-8.0	-7.0	-8.0	-11.0
	자녀와 동거하는 무배우 노인	-3.0	-3.0	-3.0	-4.0	-6.0	-5.0	-7.0	-8.0	-9.0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유배우 노인	-16.0	-15.0	-15.0	-19.0	-20.0	-20.0	-20.0	-21.0	-24.0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무배우 노인	-5.0	-6.0	-7.0	-8.0	-9.0	-8.0	-9.0	-10.0	-12.0

주: 1) 제1군 균등화 소득을 개인 단위로 분석하였으며, 빈곤선은 연도별 전체 인구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임.
 2) 순사적이전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 시장소득 빈곤율에서 일차소득 빈곤율을 차감한 수치로, 순공적이전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 가처분소득 빈곤율에서 시장소득 빈곤율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2011~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 통계청 MDIS(RAS21072002)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제5절 소결

이 장에서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11~2019년 기간에 나타난 고령층의 소득 및 공·사적이전 실태를 살펴보았다. 분석대상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다는 점, 2016년에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사적이전 측정 방법이 변경되었다는 점,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행정자료 보완으로 인해 시계열 단절이 발생하였다는 점으로 인해 공·사적이전 실태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생애주기별·하위집단별 소득 및 공·사적이전 실태를 횡단적으로 파악하는 데 무리가 없었고, 또한 길지 않은 분석대상 기간에도 불구하고 최근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빠른 확대를 성공적으로 포착할 수 있었다. 이하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몇 가지 시사점을 논의한다.

첫째, 공·사적이전, 특히 공적이전이 노년기에 소득수준이 급감하는 패턴의 생애주기별 소득 격차를 평탄화하는 데 일정 수준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소득보장제도와 조세제도, 가족 부양제도는 근로연령층에서 고령층으로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고, 그 결과 근로연령층-고령층의 소득·빈곤 격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연령-소득·빈곤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친다. 평균적으로 근로연령층은 공·사적이전소득보다 공·사적이전지출이 크고, 고령층은 공·사적이전지출보다 공·사적이전소득이 크기 때문에, 공·사적이전은 근로연령층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고령층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수평적 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사적이전보다 공적이전이 규모가 크고 수평적 재분배 효과도 훨씬 크다는 점을 언급해둘 필요가 있다.

둘째, 사적이전보다 공적이전의 노후소득 기여도가 횡단적으로 크고 시간에 따라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1~2019년 기간에

65세 이상 고령층의 순공적이전 평균은 순사적이전 평균의 약 2배에서 약 8배로 크게 증가하였다. 국민연금이 꾸준히 성숙해가고,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개편되어 급여액이 인상되는 등 노후소득보장제도가 확대함에 따라 고령층의 공적이전소득이 빠르게 증가했다. 그 결과 2011~2019년 기간에 고령층의 순공적이전 평균은 연간 181만 원에서 493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공적이전이 고령층의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2011~2016년에 9.5%p에서 13.0%p로, 2016~2019년에 13.7%p에서 17.4%p로 증가하였다. 반면 고령층의 사적이전은 절대적인 규모, 가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노후소득 기여도가 대체로 시간에 따라 정체·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6년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사적이전의 측정 방법을 변경한 것이 사적이전 추이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공적이전과 비교할 때 사적이전의 노후소득 기여도가 횡단적으로 작고, 그 격차가 시간에 따라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적이전은 성인 자녀가 따로 사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최근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발전에 따라 사적이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완만하게 약해지고 있고, 더욱 약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최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확대 추이가 뚜렷하지만, 여전히 노인 빈곤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시간에 따라 공적이전이 고령층의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강해진 덕분에 고령층의 빈곤율이 2011~2016년에 49.2%에서 46.7%로, 2016~2019년에 43.7%에서 41.6%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전체 인구의 빈곤율보다 매우 높다. 게다가 2016~2019년에 고령층의 시장소득 빈곤율이 57.5%에서 59.0%로 증가하였다는 분

석 결과는 노후소득보장제도가 강화되지 않았더라면 고령층의 빈곤율이 시간에 따라 증가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향후 노인 빈곤이 시간에 따라 악화하지 않도록 억제하기 위해서는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지속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이 성숙하면 나타나는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나 크레딧(credit) 확대 등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초연금 인상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등 공공부조·사회수당을 강화하는 접근도 즉각적으로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시간에 따라 성인 자녀와 노인의 동거가 감소하는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노인 빈곤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성인 자녀는 사적이전이라는 가구 간 이전 행위뿐만 아니라 동거라는 가구 내 이전 행위를 통해 노부모를 부양한다(이원진, 2018, pp.3-4).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과 동거하지 않는 노인의 빈곤율 격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녀와 동거하는 것은 고령층의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시간에 따라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비율이 감소하는 변화는 고령층의 빈곤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노인-자녀동거 감소에 대응하여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의 빈곤율을 지속해서 감소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제5장

고령층 공·사적이전 변화에 관한 국제비교: LIS를 이용하여

제1절 분석자료 및 분석전략

제2절 고령층의 공·사적이전 실태 국제비교

제3절 고령층의 공·사적이전 변화 추이 국제비교

제4절 소결

제 5 장

고령층 공·사적이전 변화에 관한 국제비교: LIS를 이용하여

제1절 분석자료 및 분석전략

1. 분석자료

이 장은 한국을 포함한 OECD 및 아시아 주요국 고령층의 공·사적 이전소득의 수준과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룩셈부르크 소득조사(Luxembourg Income Study, 이하 LIS) 자료를 활용한다.

LIS 자료센터(LIS · Cross-national Data Center in Luxembourg)는 유럽, 북미,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에 걸쳐 대략 50여 개국의 비교 가능한 미시 소득자료(harmonized micro-data)를 구축하여 공개하고 있다. LIS 소득자료는 개인 단위와 가구 단위의 노동소득, 자본소득, 연금소득, 연금 제외 공적이전소득, 그리고 사적이전소득 뿐만 아니라 세금과 사회기여금,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지출을 포함하고 있다. LIS 소득자료는 대략 1970년대 후반 1차 웨이브 구축을 시작으로 2021년 현재 대략 11개의 웨이브까지 자료가 구축되었으며, 각 웨이브별로 사용 가능한 국가와 변수가 다르다.

각 국가별 자료들(data set)은 해당 국가의 필요에 의해 작성되므로 변수들의 종류와 조사 범위에 차이가 있으며, 이들 개별 국가 자료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harmonized) 자료의 생산, 가공 등 표준화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LIS 소득자료의 공개는 개별 국가의 자료 조사연도와 비교할 때 약 5~7년 지체되고 있다. LIS 소득자료에 포함된 각 국가의 원자료는 대부분 해당 국가의 통계청 혹은 관련 정부 기관에서

생산하므로 자료의 신뢰성이 높다. 한국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농가경제조사를 결합한 자료가 LIS 소득자료에 포함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최근 웨이브인 11차의 경우 일부 국가에 한해 2018~2019년 자료가 공개되었다. 따라서 이 장은 다양한 국가 간 비교 분석을 위해 2014~2016년에 해당하는 10차 자료를 주로 활용하고자 한다.

2. 분석 단위와 소득 개념, 가중치

고령층의 공·사적이전소득 국제비교는 개인 단위로 분석하며,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은 가구 단위로 측정하지만, 빈곤을 측정하는 개인 단위로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장은 개인이 가구소득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균등화된 가구소득을 개인의 경제적 지표로 사용한다. 이는 가구 단위 소득자료를 이용하여 개인 단위의 빈곤율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 장에서 산출한 상대빈곤율은 LIS 자료센터 홈페이지³⁰⁾의 “Inequality and Poverty Key Figures”에서 제시한 각 국가별 65세 이상 상대빈곤율과 측정 방식이 동일하다. 빈곤선은 중위소득 50% 기준이며, 중위소득은 균등화된 가처분소득으로 산출한다. LIS 소득자료 상의 총소득은 노동소득, 자본소득, 연금소득, 연금 제외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의미하며, 총소득에서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제외한 금액을 가처분소득으로 정의한다. 노동소득(current income from labour)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모두 포함하며, 자본소득(current income from capital)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임

30) LIS Cross-National Data Center in Luxembourg. (각 연도). Luxembourg Income Study-Inequality and Poverty Key Figures. <http://www.lisdatacenter.org/lis-ikf-webapp/app/search-ikf-figures> (2021.7.2. 인출)

대료, 저작권사용료 등을 의미한다. 연금소득(income from pensions)은 공적연금, 사적연금, 개인연금 등과 같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연금소득(자발적, 비자발적)을 의미하며, 보험방식(insurance), 수당방식(universal), 공공부조(assistance) 방식을 포함한다. 연금 제외 공적이전소득(income from public social benefits excluding public pensions)은 연금을 제외한 모든 방식(보험, 보편, 공공부조)의 현금성 사회보장이전과 현물성 공공부조를 의미한다. 사적이전소득(private transfers)은 개인 및 비영리 단체 등 민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현금과 현물 및 서비스 이전을 포함한다. 모든 소득 항목의 마이너스(-) 값은 0으로 코딩하였으며, 가구원 수의 제곱근을 나누어 균등화하여 분석한다.

한편 LIS 자료센터는 국가 비교를 위한 상대빈곤율 산출을 위해 상단(top)과 하단(bottom)에 코딩을 적용하는데, 균등화된 가구소득 중윗값의 10배를 상단 값, 균등화된 가구소득 평균값의 1%를 하단 값으로 대체한다(bottom-coding).³¹⁾

3. 분석국가와 분석연도, 분석전략

이 장의 분석대상은 한국을 포함하여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아시아의 국가들이다. 분석국가는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발달하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국가의 지리적 위치도 고려하여 대륙별로 고르게 국가를 포함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오세아니아 국가 중 호주, 유럽의 경우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북유럽의 노르웨이, 중부 유럽의 오스트리아와 독일, 남부 유럽의 그리스, 서유럽

31) 따라서 각 국가별 원자료와 LIS 소득자료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의 영국, 북미 국가로는 캐나다와 미국, 그리고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과 베트남, 대만을 선정하였다. 아시아 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대만과 베트남의 경우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한국과 비슷하게 가족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같은 아시아 문화권 국가들의 공·사적이전의 경향을 비교하고자 추가하였다. 참고로 아시아 문화권 국가 중 중국의 경우 2002년과 2013년 LIS 소득자료가 있지만, 공적이전소득(연금, 공공부조, 수당 등) 정보가 누락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LIS 소득자료 표준화 작업이 대부분 완료된 10차 웨이브, 즉 2014~2016년 자료를 활용하였다(〈표 5-1〉 참조). 한국의 LIS 소득자료는 2006년부터 포함되었기에 이 장에서는 2006년, 2008년, 2014년, 2016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11차 웨이브가 공개된 영국과 미국의 경우 2018년과 2019년 시점 자료인 11차 웨이브를 사용하였으며, 10차 웨이브 자료가 구축되지 않은 국가들은 각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는 호주(2014년), 일본(2013년), 베트남(2013년)이다.

한편 최근 OECD 선진국들의 소득구성 연구 결과(안서연, 이은영, 2018), 연금제도가 성숙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노인 가구의 사적이전소득 비율이 1.0% 미만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국의 가족 부양의식이나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고령층의 공·사적이전소득의 변화는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발달 단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성숙도에 따라 동일한 시기를 분석하더라도 국가 간 양상은 다를 수 있다. 이에 연구진은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OECD 국가들에 한정하여 최근 시점뿐만 아니라 과거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고령층의 공·사적이전의 소득구성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유럽과 북미의 일부 국가는 1차 웨이브(1978~

1982년)부터 구축되었으며, 현재까지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노르웨이, 독일,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 이들 6개국에 한해서는 공·사적이전소득의 변화 추이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1차 웨이브인 1980년 전후반 시점과 1990년대 중반(1994~1995년)과 2000년대 중반(2006~2008년)을 추가로 분석한다. 또한 유럽 국가 중 자료 구축 시점이 늦은 오스트리아와 그리스의 경우 1990년대 중반(1994~1995년)과 2000년대 중반(2006~2008년)을 추가로 분석한다.

반면 아시아 국가 중 이 연구의 분석대상 국가인 한국(2006년)과 일본(2008년)의 자료는 대략 2000년대 중반부터 사용 가능하며, 대만(2005년, 2016년)의 경우 자료 구축은 1981년에 시작되었지만 그간 공적연금의 발달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와 같은 2000년대 이후 시기를 분석한다. 베트남은 이보다 늦은 2011년부터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는 2000년대 중후반(베트남은 2011년)과 가장 최근 시점의 사용 가능한 자료(2013~2016년) 간의 변화를 분석한다.

〈표 5-1〉 국가별 분석연도

구분		분석연도
오세아니아	호주	1981년, 1995년, 2008년, 2014년
	노르웨이	1979년, 1995년, 2007년, 2016년
	오스트리아	1994년, 2007년, 2016년
유럽	독일	1978년, 1995년, 2006년, 2018년
	그리스	1995년, 2007년, 2016년
	영국	1979년, 1995년, 2008년, 2018년
북미	캐나다	1981년, 1994년, 2007년, 2017년
	미국	1979년, 1995년, 2008년, 2018년
아시아	일본	2008년, 2013년
	베트남	2011년, 2013년
	대만	2005년, 2016년
	한국	2006년, 2008년, 2014년, 2016년

자료: 연구진 작성

분석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OECD 분석대상 국가들의 최근 연도 자료를 사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소득수준을 비교한다. 평균소득은 총소득을 기준으로 비교하며, 총소득은 각 소득 항목별 균등화된 값의 합으로 산출한다. 그리고 소득 항목별로 공·사적이전소득의 특성을 살펴본다.

둘째, 분석대상 국가의 노인빈곤율을 분석하고, 분석대상 국가들을 상대로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의 소득수준 대비 노인의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 분석한다. 이는 각 국가별로 노인의 실질소득 수준과 경제적 지위 수준을 세대별 형평성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노인빈곤율과 소득구성을 비교 분석할 때 가구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고령자가 가구주 또는 배우자인 경우와 고령자가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분석한다.

가구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LIS 소득자료가 제공하는 범위에서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를 이용하여 노인이 해당 가구의 가구주이거나 배우자인 경우 '노인가구주' 가구로 분류하였으며, 노인이 해당 가구 가구주의 부모(시부모/처부모 포함)인 경우 '자녀가구주-노인동거'로 구분하였다. 즉 노인가구주는 노인부부 또는 노인단독 가구 유형이나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 유형 등이 해당한다. 반면에 자녀가구주-노인동거는 자녀와 함께 살며 가구 내 이전 등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유형이 해당한다. 이러한 분류는 매우 임의적일 수 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미시 소득자료에서는 함께 사는 가구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구 내 이전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령층의 공·사적이전소득에 대한 좀 더 확장된 논의를 시작하는 데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노인의 소득구성 비율 분석을 통해 공·사적이전소득의 점유율 변

화를 분석한다. 전체 노인을 살펴본 후, 가구 유형별로 비교한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의 경우 주로 성인 자녀로부터 부모 세대로 사적이전소득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자녀와 동거하는 지에 따라 공·사적이전소득의 분포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또한 소득계층별 노인의 공·사적이전소득을 비교하기 위해 소득 5분위 중 하위 20%(1분위)와 상위 20%(5분위)의 소득구성을 추가로 비교한다.

제2절 고령층의 공·사적이전 실태 국제비교

1. 노인의 소득 규모와 빈곤을 비교

분석국가 고령층의 전반적인 경제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소득 규모(2017년 USD)와 노인빈곤율(%), 그리고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의 평균소득 대비 노인의 평균소득 비율(%), 핵심생산가능인구의 중위소득 대비 노인의 중위소득 비율(%)을 제시한다. 평균소득을 비교하기 위해 각 국가의 통화가치를 2017년 미국 달러(United States Dollar, 이하 USD)로 조정된 값을 이용한다. LIS 소득자료는 각 국가의 현지 통화를 1년 주기(annualisation)로 기입하기 때문에 국가 간, 시계열의 직접 비교가 힘들다(LIS 유저가이드, 2020). 따라서 국가 간 비교 가능하게 화폐가치를 조정하는 과정을 2단계 거쳤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각 국가의 조사 시점이 2013년부터 2019년(한국은 2006년 포함)까지 시차가 있어 각 국가의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이하 CPI)를 이용하여 현지 화폐를 2017년 값으로 조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2017년

CPI로 조정된 현지 화폐를 2017년 USD(2017=1)로 조정하였다. 구매력 평가 디플레이터(Purchasing Power Parity Deflators, 이하 PPP 디플레이터)는 세계은행의 개발지표(World Bank's Development Indicators)에서 추출한 값을 사용하며, 각 국가의 화폐가치 조정을 위한 CPI와 PPP를 함께 고려한 '2017년 LIS PPP' 값이 LIS 홈페이지에 제공되고 있다. 이후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2017년 LIS PPP로 조정된 소득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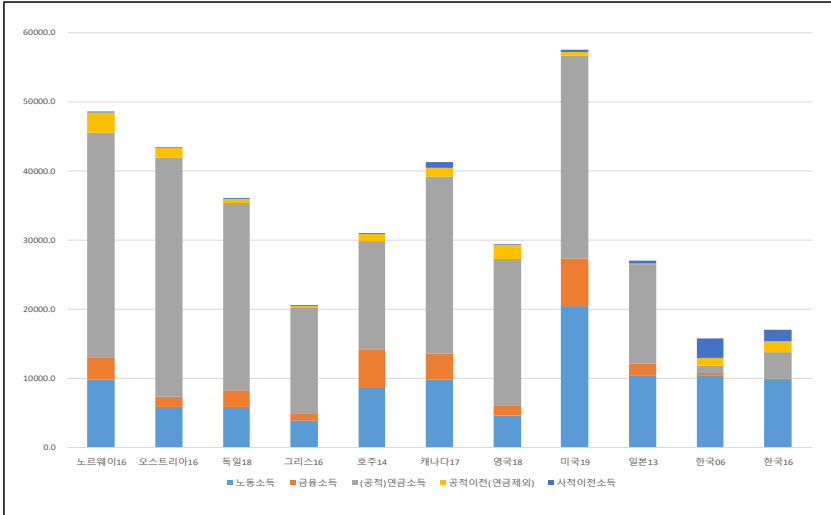
[그림 5-1]은 OECD 주요국 고령층의 연간 평균 총소득을 보여준다.³²⁾ 평균소득 규모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미국이 약 5만 7559달러로 가장 높고, 노르웨이가 4만 8,518달러로 2번째로 높다. 오스트리아와 캐나다는 4만 달러 초반대이다(각각 4만 3,551달러, 4만 1,297달러). 반면 비교 국가 10개국 중 한국은 고령자의 평균소득 규모가 가장 낮다. 2016년 기준 평균소득은 1만 7,023달러로 2016년의 1만 5,808달러보다 증가했지만, 여전히 10개국 중 가장 낮다. 그리스는 2만 611달러로 한국 다음으로 고령자의 평균 소득수준이 낮다.

소득 항목별로 살펴보면, 노동소득은 미국이 2만 달러 이상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 일본이 1만 536달러, 노르웨이 9,901달러, 한국 9,710달러(2016년 기준) 순이다. 고령자의 노동소득 규모가 큰 국가는 65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높은데, 2020년 기준 한국이 35.3%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일본(25.5%)과 미국(19.4%)은 OECD 평균인 15.5%보다 높다(OECD, 2021).

32) 정확한 수치는 <부표 5-1>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림 5-1] OECD 주요국 노인의 평균 총소득 규모(연간 기준)

(단위: USD 2017)



자료: LIS Cross-National Data Center in Luxembourg. (각 연도). DATA ACCESS. <http://www.lisdatacenter.org/data-access/> (2021.7.2. 접속)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다음으로 [그림 5-2]는 한국의 2006년, 2008년, 2014년, 2016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의 소득 항목별 평균소득과 가구 유형별 평균소득을 분석하였다.³³⁾ 기초노령연금(2008년)과 기초연금(2014년)의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연도의 소득 특성을 살펴보면, 2006년과 2008년 자료의 경우 각각 2005년과 2007년 소득을 의미하며, 이는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이전의 결과를 의미한다.³⁴⁾ 2014년과 2016년 자료의 경우 각각 2013년과 2015년의 소득을 의미하기 때문에 2014년의 자료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당시(2013년 기준 단독 최대 월 9만 4,500원, 부부 최대 월 15만 1,400원)의 소득이고,³⁵⁾ 마지막 2016년의 자료는 기초연금 개편

33) 정확한 수치는 <부표 5-2>를 참조하기 바란다.

34) 노후소득보장 관련 제도는 제6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35) 2014년 7월에 시행된 기초연금의 경우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할 때 급여액이 2배 가까이 인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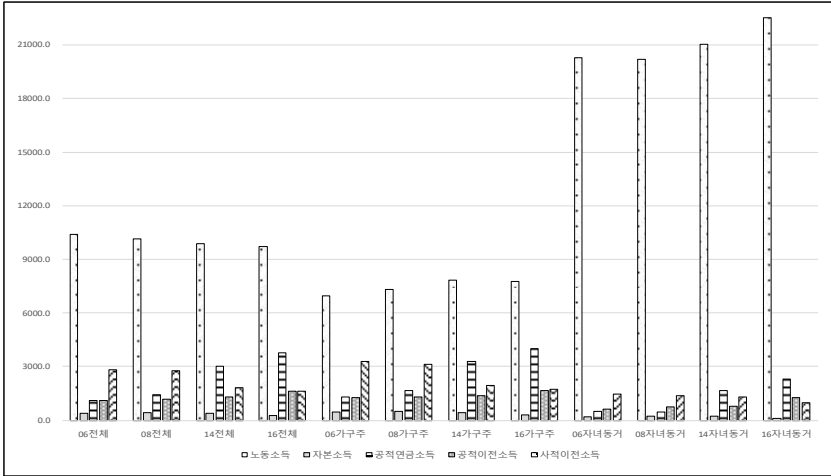
후(2015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월 20만 원, 부부가구 최대 월 32만 원)의 소득을 의미한다.

분석기간 동안 공적연금 수급액 증가 및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등 공적이전소득의 변화는 노인의 소득수준과 구성에 영향을 미쳤다. 공적이전소득의 평균 수급액을 살펴보면, 기초노령연금 도입 이전인 2006~2008년은 약 300달러 증가하였으며(각각 1,109달러, 1,411달러),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2008~2014년에는 약 1,890달러로 2006~2008년 기간의 증가율 대비 6배 이상이다(2008년 1,411달러, 2014년 3,300달러). 그리고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2016년은 약 755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적연금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동안 사적이전소득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기초노령연금 도입 전인 2006~2008년 사이 전체 노인의 사적이전소득은 2006년 2,810달러에서 2008년 2,758달러로 대략 52달러 감소하였지만,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2008~2014년에는 929달러 감소하였다. 이후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2016년에는 198달러 감소하였다. 즉 2006년에서 2016년 사이 공적연금소득이 2,680달러 증가하는 동안, 사적이전소득은 1,179달러 감소하였다.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노인가구주의 경우 사적이전소득 감소액이 1,547달러로 자녀가구주-노인동거의 470달러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림 5-2] 한국 노인의 소득수준

(단위: USD 2017)



주: 2006년, 2008년, 2014년, 2016년 기준

자료: LIS Cross-National Data Center in Luxembourg. (각 연도). DATA ACCESS. <http://www.lisdatacenter.org/data-access/> (2021.7.2. 접속)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그림 5-3]은 국가별 노인빈곤율을 나타낸 그림이다. 전체 노인 및 가구 유형별 노인빈곤율을 제시하였다.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의 경우 가구주와의 관계 조사항목에서 부모라는 항목이 조사되지 않아, 자녀가구주-노인동거의 노인빈곤율은 산출하지 않았다.³⁶⁾ 10개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노르웨이로 4.4%이며,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으로 47.0%이다. 그 외에 오스트리아, 독일, 그리스 등의 유럽 국가들(영국 제외)은 모두 10.0% 미만의 빈곤율을 보였으며, 호주의 경우 26.6%, 미국 22.0%, 일본 21.0%로 이들은 OECD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노인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과 베트남의 아시아 국가 역시 노인빈곤율이 각각 22.6%와 24.0%로 높은 편이나, 한국과 비교하여 2분의 1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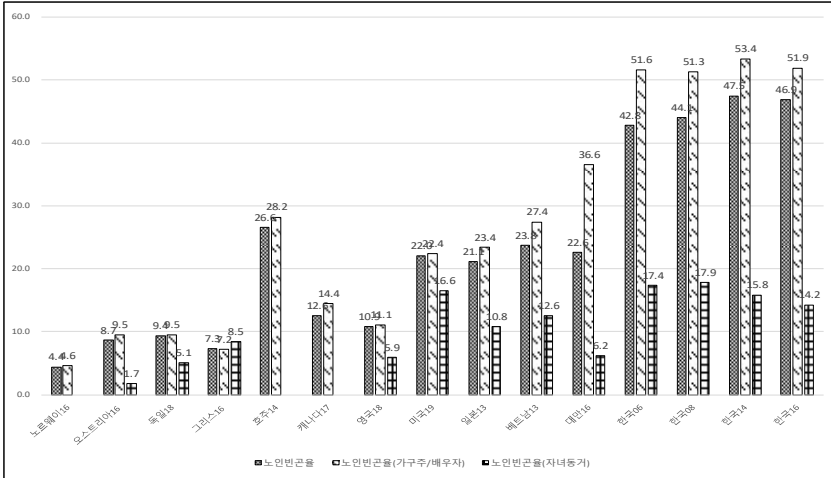
36) 분석국가의 최신 연도 기준 가구 유형별 비율은 <부표 5-3>을 참조하기 바란다.

모든 국가에서 노인가구주의 경우 전체 노인빈곤율보다 약간 높지만, 특히 대만, 베트남,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 노인빈곤율은 경제력 있는 자녀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다. 특히 대만의 경우 전체 노인빈곤율은 22.6%인데 반해, 노인가구주의 노인빈곤율은 39.1%로 매우 높으며, 자녀가구주-노인동거의 노인빈곤율은 6.2%여서 가구 유형에 따라 빈곤율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가구주/배우자 노인빈곤율은 2006년과 2008년의 경우 전체 노인빈곤율보다 10.0%p 높아 대략 50.0% 이상이지만, 2014년과 2016년은 그 차이가 다소 완화되어 6.0%p이다. 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가구 유형에서 노인가구주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³⁷⁾ 최근 노인인구에 진입하는 집단의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녀가구주-노인동거의 노인빈곤율은 전체 노인빈곤율보다 25.0~33.0%p 낮다. 일본의 경우 노인빈곤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가구 유형에 따른 빈곤율 차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작은 편인 10.0%p로 나타났다.

37) 2006년 기준 노인가구주 비율은 74.2%이며, 2008년 기준 78.0%, 2014년 84.3% 그리고 2016년 기준 86.7%로 증가하였다.

[그림 5-3] 전체 및 가구 유형별 노인빈곤율

(단위: %)



자료: LIS Cross-National Data Center in Luxembourg. (각 연도). DATA ACCESS. <http://www.lisdatacenter.org/data-access/> (2021.7.2. 접속)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다음으로 <표 5-2>에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노인빈곤율 완화 효과를 비교하였다. (1) 전체 노인빈곤율과 (2) 균등화 가처분소득에서 균등화된 연금소득과 연금 제외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하지 않은 소득으로 산출한 빈곤율(공적이전소득 미포함 빈곤율), 그리고 (3) 균등화 가처분소득에서 균등화 사적이전소득을 포함하지 않은 소득으로 산출한 빈곤율(사적이전소득 제외 빈곤율)을 제시하였다. 이는 (2)와 (3)에서 제외된 소득이 없다면 빈곤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산출하여, 해당 소득 항목이 빈곤율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노인빈곤율이 가장 낮은 노르웨이의 경우 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노인빈곤율은 87.8%까지 치솟는 반면, 사적이전소득은 거의 측정되지 않아 빈곤율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국가들의 노인빈곤율은 15.0% 이하이며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 또한 대략 75%p 이상이다. 한국 다음으로 20%대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보

인 호주, 미국, 일본의 경우에도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는 대략 50%p 수준인 반면, 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는 1.0%p 미만으로 매우 적다. 아시아 국가인 베트남과 대만의 경우에도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는 각각 14.0%p와 20.0%p로 OECD 주요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지만, 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는 OECD 주요국보다 높은 8.0%p, 17.0%p이다.

한국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가 2006년 약 10%p에서 2016년 약 20%p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는 OECD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국의 결과는 아시아 주요국과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가 유사한 수준이다. 사적이전소득의 경우에도 한국은 2006년 12.7%p에서 2016년 6.1%p로 빈곤 완화 효과가 감소하였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와 같이 일정 수준의 역할을 하고 있다.

〈표 5-2〉 노인빈곤율과 공·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

(단위: %, %p)

구분	빈곤율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미포함 빈곤율	미포함 빈곤율	빈곤완화 효과	빈곤완화 효과	
	(1)	(2)	(3)	(1)-(2)	(1)-(3)	
오세아니아	호주(2014년)	26.6	76.8	27.0	-50.1	-0.4
	노르웨이(2016년)	4.4	87.8	4.4	-83.3	0.0
유럽	오스트리아(2016년)	8.7	89.6	8.9	-80.9	-0.2
	독일(2018년)	9.4	89.5	9.6	-80.1	-0.3
	그리스(2016년)	7.3	86.8	8.2	-79.5	-0.9
	영국(2018년)	10.9	87.4	11.0	-76.5	-0.1
	캐나다(2017년)	12.6	79.8	13.4	-67.2	-0.8
북미	미국(2019년)	22.0	70.2	22.3	-48.2	-0.2
	일본(2013년)	21.1	70.8	21.4	-49.7	-0.3
아시아	베트남(2013년)	23.8	37.4	32.0	-13.6	-8.3
	대만(2016년)	22.6	42.1	39.1	-19.5	-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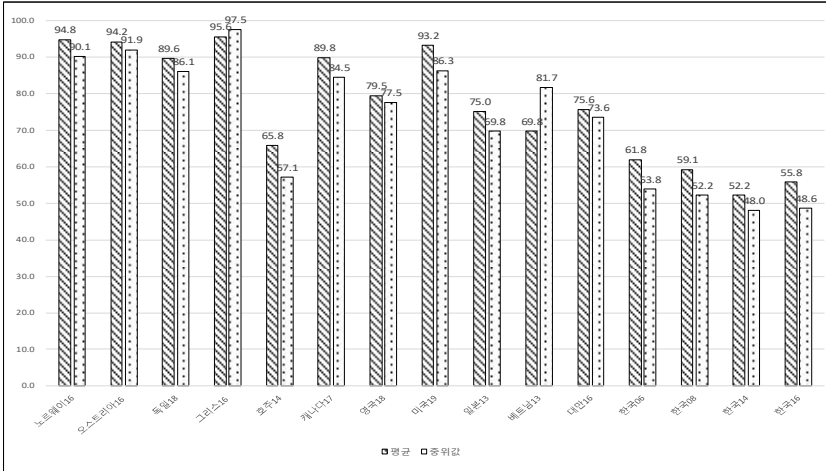
구분	빈곤율	공적이전소득 미포함 빈곤율	사적이전소득 미포함 빈곤율	공적이전소득 빈곤완화 효과	사적이전소득 빈곤완화 효과
	(1)	(2)	(3)	(1)-(2)	(1)-(3)
한국(2006년)	42.8	52.5	55.4	-9.8	-12.7
한국(2008년)	44.1	54.3	55.6	-10.2	-11.5
한국(2014년)	47.5	63.3	53.9	-15.9	-6.5
한국(2016년)	46.9	66.8	53.1	-19.9	-6.1

자료: LIS Cross-National Data Center in Luxembourg. (각 연도). DATA ACCESS. <http://www.lisdatacenter.org/data-access/> (2021.7.2. 접속)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그림 5-4]는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의 평균소득 또는 중위소득 대비 노인의 소득수준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핵심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의 경제적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볼 수 있다. OECD 주요국 중 노인빈곤율이 낮은 국가의 경우 노인의 소득수준이 핵심생산가능인구의 평균 혹은 중위값의 80~90%이다. 특히 그리스의 경우 노인의 평균/중위 소득이 핵심생산가능인구의 각각 95.6%와 97.5%에 이른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국가인 호주의 경우 노인의 평균소득이 핵심생산가능인구의 65.8%에 그치며, 일본의 경우 75.0%로 나타났다. 아시아 국가인 베트남과 대만의 경우에도 평균소득 기준 약 70%대를 보이는데, 한국은 2006년 61.8%에서 2016년 55.8%(중위값 기준 2006년 53.8%에서 2016년 48.6%)로 감소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의 노인빈곤율 증가와 관련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핵심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의 평균소득 비율이 중위소득 비율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대부분의 국가(그리스와 베트남 제외)에서 소득 상위층에 속하는 노인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5-4] 핵심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의 평균/중위소득 수준

(단위: %)



자료: LIS Cross-National Data Center in Luxembourg. (각 연도). DATA ACCESS. <http://www.lisdatacenter.org/data-access/> (2021.7.2. 접속)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2. 노인의 소득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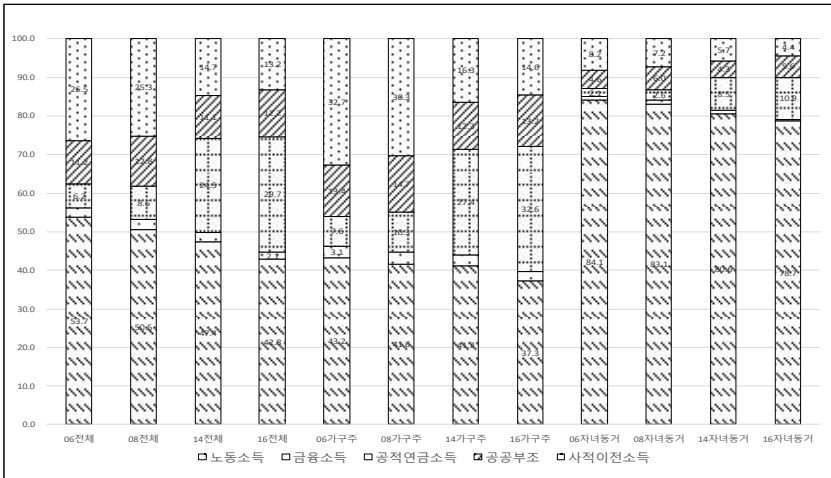
분석국가 노인의 소득구성을 비율(%)로 비교한다. 소득구성의 비율은 노인 개인별 소득구성비(%)의 평균으로 산출하며, 전체 노인과 가구 유형별, 그리고 소득 1분위(하위 20%)와 소득 5분위(상위 20%) 간 차이를 분석한다.

[그림 5-5]는 2006~2016년 기간 중 한국의 노인 전체 및 가구 유형별 소득구성을 보여준다. 먼저 노동소득은 2006년 53.7%에서 2016년 42.8%로 감소하지만, 여전히 노인 소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연금소득은 2006년 6.2%에서 2016년 29.7%로 23.5%p의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사적이전소득은 같은 기간 26.5%에서 13.2%로 13.3%p 감소하였다. 분석기간 중 자본소득 비율은 대략 2%대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노인의 자녀동거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노인가구의 소득구성은 전체 노인과 비교하여 노동소득의 비율이 낮고(약 5~10%), 연금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비율은 높다. 노인가구의 노동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은 분석기간 중 감소 추이(노동소득 43.2% → 37.2%, 사적이전소득 32.7% → 14.6%), 연금소득은 상승 추이(7.5% → 32.6%)를 보인다. 자녀가구-노인동거의 경우 성인 자녀가 가구주이기 때문에 노동소득이 약 80% 수준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그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연금소득은 2006년 2.1%에서 2016년 10.9%로 약 5배 수준으로 증가한 반면, 사적이전소득은 같은 기간 8.2%에서 4.4%로 약 2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모든 유형에서 연금 제외 공적이전소득의 비율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그림 5-5] 한국 노인의 소득구성 변화

(단위: %)



주: 2006년, 2008년, 2014년, 2016년 기준

자료: LIS Cross-National Data Center in Luxembourg. (각 연도). DATA ACCESS. <http://www.lisdatacenter.org/data-access/> (2021.7.2. 접속)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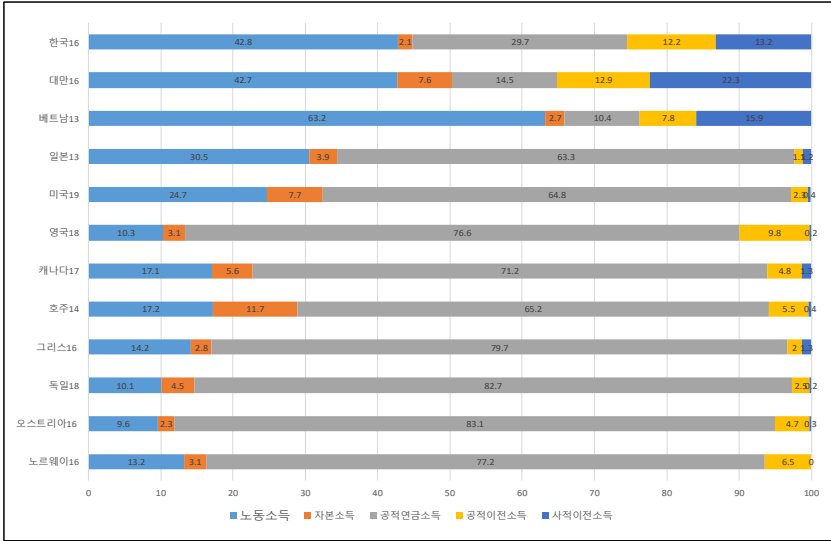
다음으로 OECD 주요국의 소득구성비를 비교한다([그림 5-6], [그림 5-7] 참조). LIS 소득자료 기준 가장 최근 연도(2013~2019년)로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5-6]은 전체 노인의 소득구성비(%)를 나타낸 결과이다. 한국과 대만, 베트남, 일본의 아시아 4개국 노인의 노동소득 비율이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편이나, 국가별 차이는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2016년 기준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42.8%로 소득구성 항목 중 가장 높고, 대만의 경우에도 한국과 비슷한 42.7%이다. 베트남은 노동소득 비율이 63.2%로 비교 대상인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고, 일본은 30.5%로 다소 낮지만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노인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인 미국과 호주 노인의 노동소득 비율이 각각 24.7%와 17.2%로 높는데, 이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불충분성과 관련 있다. 노인의 소득구성에서 연금소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국가는 오스트리아로 83.1%이다. 그 외에 독일(82.7%), 그리스(79.7%), 노르웨이(77.2%), 영국(76.6%) 순으로 높다. 연금 제외 공적이전소득의 비율이 높은 국가는 공적연금제도가 미성숙한 대만(12.9%), 한국(12.2%), 베트남(7.8%) 순이며, 사적이전소득의 비율이 높은 국가는 대만(22.3%), 베트남(15.9%), 한국(13.2%) 순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는 공적연금의 성숙으로 인해 사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작다.

[그림 5-6] 전체 노인의 소득구성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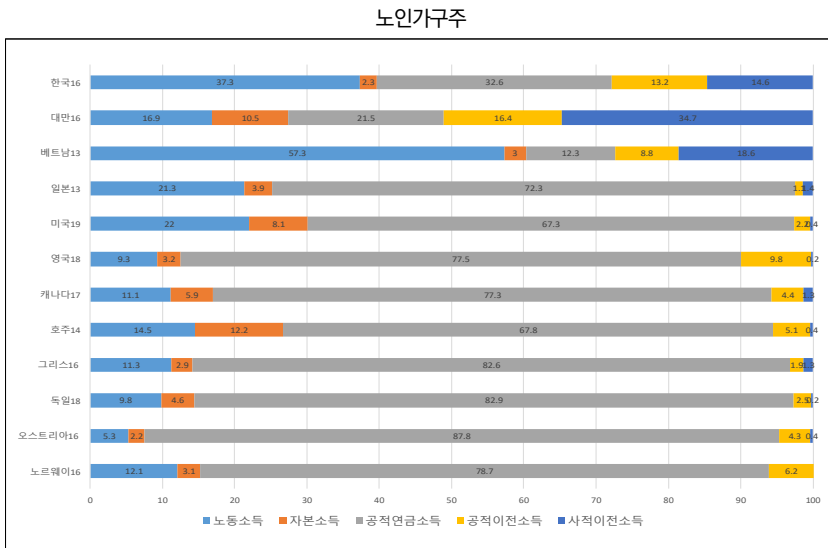
자료: LIS Cross-National Data Center in Luxembourg. (각 연도). DATA ACCESS. <http://www.lisdatacenter.org/data-access/> (2021.7.2. 접속)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그림 5-7]은 가구 유형별 노인의 소득구성을 보여주는데, 전체 노인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면, 모든 국가에서 노인가구주의 노동소득 비율이 낮다. 특히 대만의 경우 전체 노인의 노동소득 비율은 42.7%인데 반해 노인가구주는 16.9%로 25.8%p 감소하여, 비교 대상 국가 중 가구 유형별 차이가 가장 크다. 이는 대만은 자녀가구주-노인동거 가구 유형의 비율이 높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대만의 자녀가구주-노인동거 유형은 45.5%로 같은 아시아 국가인 베트남(23.4%), 일본(17.6%), 한국(13.2%)에 비해 높다. 반대로 연금소득 구성비는 OECD 및 아시아 주요국 모두 전체 노인보다 노인가구주에 속한 노인이 높다. 사적이전소득은 아시아 국가에서 노인가구주의 가구 유형이 전체 노인보다 높았으며, 한국은 1.4%p, 베트남 2.7%p, 대만 12.4%p, 일본 0.2%p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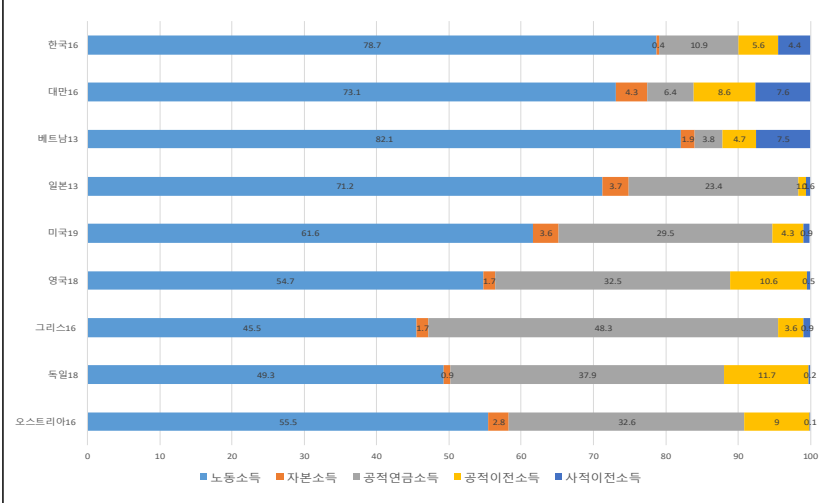
한편 자녀가구주-노인동거의 가구 유형은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의 경우 해당 항목이 조사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자녀가구주-노인동거의 경우 노동소득 비율이 전체 노인이나 노인가구주보다 높지만, OECD 국가의 연금소득 비율이 여전히 30.0% 이상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또 다른 특징은 오스트리아(9.0%), 독일(11.7%), 영국(10.6%), 미국(4.3%)의 경우 연금 제외 공적이전소득의 비율이 전체 노인과 노인가구주보다 높다는 점이며, 이는 이들 국가에서 노인이 자녀가구주와 동거하는 경우 두 세대가 모두 빈곤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5-7] 가구 유형별 노인의 소득구성비

(단위: %)



자녀가구주-노인동거



자료: LIS Cross-National Data Center in Luxembourg. (각 연도). DATA ACCESS. <http://www.lisdatacenter.org/data-access/> (2021.7.2. 접속)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제3절 고령층의 공·사적이전 변화 추이 국제비교

이 절에서는 LIS 소득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OECD 주요국과 아시아를 구분하여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OECD 주요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아시아 주요국에 비해 도입과 발전의 시간이 길며, LIS 구축 시작 연도 또한 아시아 주요국과 비교할 때 크게 앞서기 때문이다. 일본은 OECD에 속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자료 분석이 가능하므로 아시아 국가와 비교한다.

공·사적이전의 변화는 가구 유형별과 소득분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그 이유는 OECD 주요국과 아시아 주요국은 가족의 부양인식 수준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발달 수준이 다른데, 이러한 영향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력 있는 자녀와 동거하여 가구 내 사적이전 발생 가능성이 큰 것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 검토에 의하면, 공·사적이전의 구성과 역할은 고령층의 소득계층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1. OECD 주요국 노인의 공·사적이전 변화

LIS 소득자료 기준으로 1980년대 전후,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중반의 공·사적이전소득의 변화를 분석한다.

추가 분석을 실시한 국가들은 대부분 유럽이나 영미권 국가여서 자녀가구주-노인동거 비율이 매우 낮다. 그로 인해 전체 노인의 소득구성과 노인가구주에 속한 노인의 소득구성 간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 일부 국가의 1980년대 자료의 가구주와의 관계 정보가 누락된 점으로 인해 '노인가구주'와 '자녀가구주-노인동거'의 소득구성 비율만 제시한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1987년이 최초로 구축된 자료지만, 소득 항목별 변수의 부재로 대신 1994년 자료부터 활용하였다. 그리스는 1995년이 가장 처음 구축된 자료이다. 자녀가구주-노인동거의 소득구성비를 추가로 분석한 오스트리아와 그리스의 자녀동거 비율은 다음과 같다. 오스트리아의 자녀동거 비율은 1994년 6.2%에서 2007년 10.1%로 증가하였으며, 그리스의 경우 1995년 18.1%로 오스트리아의 3배 수준이었으나 2007년 8.7%로 크게 감소하여 오스트리아보다 낮았다. 즉 유럽 국가 중에서도 가족주의 성향이 비교적 강한 그리스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성인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비율이 18.0% 수준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점차 감소한 것이다.

북유럽 사민주의 국가인 노르웨이의 1979년과 보수주의 국가인 독일

구분	독일78	독일95	독일06	그리스95	그리스07	그리스95	그리스07
	가구주	가구주	가구주	가구주	가구주	자녀동거	자녀동거
노동소득	5.5	5.6	6.2	11.9	15.2	58.6	50.4
자본소득	10.6	5.2	5.4	4.7	4.3	3.5	4.0
연금소득	76.4	87.1	85.9	78.9	77.7	34.9	41.3
연금 제외 공적이전소득	4.2	1.7	2.2	2.2	1.2	2.6	2.4
사적이전소득	3.3	0.4	0.3	2.3	1.6	0.4	1.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구분	호주81	호주95	호주08	캐나다81	캐나다97	캐나다07
	가구주	가구주	가구주	가구주	가구주	가구주
노동소득	10.6	10.0	12.2	12.4	8.6	8.0
자본소득	15.4	13.2	12.2	19.5	9.6	8.2
연금소득	70.6	74.8	71.0	61.9	74.8	78.0
연금 제외 공적이전소득	2.5	1.6	4.0	5.0	5.6	4.0
사적이전소득	0.9	0.4	0.6	1.2	1.4	1.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가구주는 '노인가구주' 가구 유형, 자녀동거는 '자녀가구주-노인동거' 가구 유형을 의미함.
 자료: LIS Cross-National Data Center in Luxembourg. (각 연도). DATA ACCESS. <http://www.lisdatacenter.org/data-access/> (2021.7.2. 접속)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그리스는 노인가구주의 사적이전소득 비율이 1995년 2.3%, 2007년 1.6%로 높지 않지만,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높은 편에 속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그리스는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자녀가구주-노인동거 비율이 높은 편인데, 이들 자녀가구주-노인동거의 소득구성에서 연금소득의 비율은 1995년 34.9%에서 2007년 41.3%로 증가하여 오스트리아의 경우 1994년 36.2%에서 2007년 31.5%로 감소한 것과 상반된 결과이다. 또한 그리스는 오스트리아와 달리 자녀가구주-노인동거의 경우 연금 제외 공적이전소득이 2%대로 낮고 노인가구주(1.2%)와 차이가 크지 않은

데, 이는 그리스의 경우 오스트리아에 비해 공공부조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유추된다. 호주의 경우에도 1981년과 1995년, 2008년 모두 연금소득이 70%대를 차지하였으며, 사적이전소득은 1.0%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캐나다는 연금소득이 1981년 61.9%에서 2007년 78.0%까지 증가하였으며, 사적이전소득은 대략 1.2~1.8% 수준을 보였다.

〈표 5-4〉는 각각 OECD 주요국의 소득 1분위(하위 20%)와 소득 5분위(상위 20%)의 소득구성비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1분위에 속하는 노인의 소득구성 특성은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는데,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그리스(9.7%)와 미국(9.4%)은 다른 OECD 국가(1~3%대)에 비해 노동소득 비율이 높은 편이다. 연금소득의 비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80.0% 이상을 차지하는데, 특히 노르웨이와 독일은 약 90%에 이른다. 다만 노동소득 비율이 높았던 미국과 그리스의 경우 연금소득 비율이 약 80%로 OECD 주요국 중에서 낮은 편이다. 연금 제외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소득에서 10.0% 이하인데, 영국 10.0%, 캐나다 9.2%, 오스트리아 8.0% 순이다. 사적이전소득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1.0% 미만이지만, 그리스는 4.8% 수준으로 예외적으로 높다.

5분위에 속하는 노인의 소득구성을 살펴보면, 노동소득의 비율이 높는데 호주 47.0%, 노르웨이 44.2% 순이다(〈표 5-4〉 참조). 이들 국가는 연금소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대로 노동소득의 비율이 낮은 국가는 오스트리아(21.3%)와 독일(24.8%), 그리스(25.8%)인데, 이들 국가는 연금소득의 비율이 약 60~70%대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소득 1분위와 비교해서 5분위 노인들은 자본소득의 비율이 높는데, 특히 호주(23.7%)와 미국(16.7%)이 높다. 사적이전소득은 캐나다(2.9%)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0.6% 이하로 낮다.

〈표 5-4〉 OECD 주요국 노인의 소득분위별 소득구성: 1분위와 5분위

(단위: %)

	1분위							
	노르웨이 (2016)	오스트리아 (2016)	독일 (2018)	그리스 (2016)	호주 (2014)	캐나다 (2017)	영국 (2018)	미국 (2019)
노동소득	1.7	3.0	4.0	9.7	3.5	3.3	2.2	9.4
자본소득	2.1	1.7	1.7	1.4	7.8	2.5	1.4	3.7
연금소득	89.5	86.4	89.3	79.6	81.4	84.3	86.1	79.8
연금 제외 공적이전소득	6.7	8.0	4.9	4.5	6.9	9.2	10.0	6.6
사적이전소득	0.0	0.9	0.1	4.8	0.5	0.7	0.2	0.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분위							
	노르웨이 (2016)	오스트리아 (2016)	독일 (2018)	그리스 (2016)	호주 (2014)	캐나다 (2017)	영국 (2018)	미국 (2019)
노동소득	44.2	21.3	24.8	25.8	47.0	34.3	24.4	39.4
자본소득	8.5	5.8	14.1	6.3	23.7	13.7	8.1	16.7
연금소득	42.8	70.2	59.9	67.1	28.4	48.0	66.0	42.7
연금 제외 공적이전소득	4.5	2.5	1.0	0.6	0.7	1.0	1.3	0.5
사적이전소득	0.0	0.3	0.2	0.2	0.2	2.9	0.2	0.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LIS Cross-National Data Center in Luxembourg. (각 연도). DATA ACCESS. <http://www.lisdatacenter.org/data-access/> (2021.7.2. 접속)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2. 아시아 주요국 노인의 공·사적이전 변화

〈표 5-5〉는 아시아 주요국 고령층의 소득구성 추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일본은 2008년과 2013년, 대만은 2005년과 2016년 자료를, 베트남은 현재 사용 가능한 2011년과 2013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일본은 2008년과 2013년 사이 전체 노인의 노동소득 비율이 37.4%에서 30.5%로 6.9%p 감소하였지만, 연금소득은 55.9%에서 63.3%로 7.4%p 증가하였다. 일본은 아시아 국가이지만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발달 수준이 매

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가구 유형에 상관없이 노인의 소득구성에도 같은 변화가 감지된다. 노인가구주의 연금소득 비율이 두 해 모두 70%대에 이르는 반면, 자녀가구주-노인동거의 연금소득 비율은 20%대이다. 그 외 연금 제외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은 가구 유형이나 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1%대 내외로 낮았다.

베트남은 2011~2013년 기간 동안 노인의 소득구성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다만 노인의 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노인가구주와 자녀가구주-노인동거 유형에서 각각 50%대와 80%대로 높은 편이며, 연금소득은 가구 유형에 상관없이 10%대 이하로 낮았다. 베트남은 2011년 연금소득이 10.0%, 연금 제외 공적이전소득이 9.0%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3년 연금소득은 10.4%로 거의 변화가 없으나 연금 제외 공적이전소득은 7.8%로 다소 감소하였다. 연금 제외 공적이전소득의 감소 폭은 노인가구주에서 더 컸다. 사적이전소득은 2011년 5.5%에서 2013년 15.9%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노인가구주의 경우 18.6%로 자녀가구주-노인동거의 6~7%대보다 높은 편이다.

대만의 자녀가구주-노인동거 비율은 2005년~2016년 사이 약 45%를 유지하며(2005년 45.1%, 2016년 45.5%),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노인의 소득구성을 살펴보면, 노동소득은 40%대로 한국과 비슷하지만 사적이전소득은 약 22%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다. 또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7%대로 높은 편이며, 가구 유형별로는 노인가구주가 더 높다. 연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 주요국이나 일본에 비해 작은 편이며, 특히 2005~2016년 사이 노인가구주의 경우 5.5%p 감소하였다(27.0% → 21.5%). 또한 노인 가구주의 경우 연금 제외 공적이전소득은 같은 기간 6.9%p 증가한 반면(9.5% → 16.4%), 사적이전소득은 35%대를 유지하였다.

〈표 5-5〉 아시아 주요국의 가구 유형별 노인의 소득구성 변화

(단위: %)

구분	일본08	일본13	일본08	일본13	일본08	일본13
	전체	전체	가구주	가구주	자녀동거	자녀동거
노동소득	37.4	30.5	21.9	21.3	75.2	71.2
자본소득	4.3	3.9	4.7	3.9	3.3	3.7
연금소득	55.9	63.3	70.7	72.3	20.0	23.4
연금 제외 공적이전소득	1.3	1.1	1.4	1.1	0.7	1.1
사적이전소득	1.1	1.2	1.3	1.4	0.8	0.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구분	베트남11	베트남13	베트남11	베트남13	베트남11	베트남13
	전체	전체	가구주	가구주	자녀동거	자녀동거
노동소득	62.5	63.2	55.2	57.3	83.9	82.1
자본소득	3.0	2.7	3.4	3.0	1.8	1.9
연금소득	10.0	10.4	12.5	12.3	2.6	3.8
연금 제외 공적이전소득	9.0	7.8	10.3	8.8	5.3	4.7
사적이전소득	5.5	15.9	18.6	18.6	6.4	7.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구분	대만05	대만16	대만05	대만16	대만05	대만16
	전체	전체	가구주	가구주	자녀동거	자녀동거
노동소득	44.4	42.7	18.3	16.9	75.9	73.1
자본소득	7.5	7.6	10.3	10.5	4.0	4.3
연금소득	17.9	14.5	27.0	21.5	7.0	6.4
연금 제외 공적이전소득	7.9	12.9	9.5	16.4	6.0	8.6
사적이전소득	22.3	22.3	34.9	34.7	7.1	7.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가구주는 '노인가구주' 가구 유형, 자녀동거는 '자녀가구주-노인동거' 가구 유형을 의미함.
 자료: LIS Cross-National Data Center in Luxembourg. (각 연도). DATA ACCESS. <http://www.lisdatacenter.org/data-access/> (2021.7.2. 접속)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다음으로 아시아 국가의 소득 1분위와 소득 5분위 노인들의 소득구성은 〈표 5-6〉과 같다. 먼저 1분위의 특성은 일본의 경우 공적연금소득 비율이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7.6%p 증가하고(66.8% → 74.4%), 노동

	5분위					
	일본 (2008)	일본 (2013)	베트남 (2011)	베트남 (2013)	대만 (2005)	대만 (2016)
노동소득	61.0	64.0	68.2	68.0	64.4	58.0
자본소득	12.0	9.4	5.0	4.9	13.4	14.5
연금소득	25.3	24.9	14.0	15.2	11.9	17.7
연금 제외 공적이전소득	0.2	0.3	3.0	2.9	4.2	4.4
사적이전소득	1.5	1.4	9.8	8.9	6.1	5.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LIS Cross-National Data Center in Luxembourg. (각 연도). DATA ACCESS. <http://www.lisdatacenter.org/data-access/> (2021.7.2. 접속)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아시아 주요국의 5분위 노인 소득구성을 살펴보면, 일본과 베트남, 대만의 세 국가 모두 노동소득 비율이 58.0~68.2%로 가장 높다. 자본소득 비율은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대만이 14.5%로 가장 높고, 일본은 9.4%, 베트남 4.9% 순이다. 연금소득은 일본이 24.9%, 대만 17.7%, 베트남 15.2% 순으로 높다. 사적이전소득 또한 1분위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만의 경우 2016년 기준 1분위의 사적이전소득은 36.0%에 이를 정도로 높지만, 5분위의 사적이전소득은 5.4% 수준에 그친다.

〈표 5-7〉은 한국의 소득 1분위(하위 20%)와 소득 5분위(상위 20%)에 속한 노인들의 소득구성비를 보여준다. 2006년 기준 1분위 노인들의 경우 노동소득은 38.4%, 사적이전소득은 37.7%로 사적이전소득의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반면 연금소득은 4.0%로 매우 낮고, 연금 제외 공적이전소득은 17.1%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약 10년간 큰 변화를 보이는데, 2016년 기준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23.8%로 2006년에 비해 14.6%p 감소하였으며, 연금소득의 비율은 2016년 39.6%로 2006년 4.0%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35.6%p). 반면 연금 제외 공적이전소득은

같은 기간 17.1%에서 15.9%로 1.2%p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액을 받고, 생계급여에서 해당 금액만큼 삭감된 것이 반영된 결과로 유추된다. 특히 1분위의 연금소득 증가는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및 확대에 의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5분위 소득구성의 추세는 1분위와 비슷하며, 노동소득은 2006년과 2016년 기간 동안 80.9%에서 70.6%로 10.3%p 감소하였으며, 연금소득은 5.8%에서 16.9%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연금 제외 공적이전소득은 3~5%대로 거의 변화가 없으며, 사적이전소득은 2006년 7.3%에서 2016년 5.1%로 2.2%p 감소하였다.

〈표 5-7〉 한국 노인의 소득분위별 소득구성: 1분위와 5분위

(단위: %)

구분	1분위				5분위			
	2006년	2008년	2014년	2016년	2006년	2008년	2014년	2016년
노동소득	38.4	32.7	28.8	23.8	80.9	77.3	70.6	70.6
자본소득	2.8	2.6	2.5	2.6	2.4	2.5	2.3	1.7
연금소득	4.0	7.9	32.7	39.6	5.8	9.5	14.2	16.9
연금 제외 공적이전소득	17.1	20.6	15.5	15.9	3.6	3.4	4.3	5.7
사적이전소득	37.7	36.2	20.5	18.1	7.3	7.3	8.6	5.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LIS Cross-National Data Center in Luxembourg. (각 연도). DATA ACCESS. <http://www.lisdatacenter.org/data-access/> (2021.7.2. 접속)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분석

제4절 소결

이 장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OECD 및 아시아 주요국 노인들의 소득 규모와 소득구성비를 공·사적이전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OECD 선진국의 경우 이미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초반부터 공적연

금제도의 성숙도가 높았기 때문에,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사적이전소득이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일본은 서구 선진국과 매우 비슷한 소득구성을 보여주는데, 이는 일본의 공적연금제도가 매우 성숙하였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일본의 연금제도는 1945년 ‘노동자연금보험법’으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이미 1985년 국민연금을 전 국민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는 큰 개혁을 단행하였다(국민연금공단, 2021b).

또한 OECD 국가들 중 비교적 노인빈곤율이 높은 나라인 호주, 미국, 일본의 경우에도 노인의 가구소득 구성에서 연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60%로 약 30%인 한국의 2배 가까운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적연금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아시아 국가 노인들의 소득구성은 OECD 국가의 소득구성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데, 예상했듯이 노동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비율이 높고, 연금소득과 연금 제외 공적이전소득의 비율이 매우 낮았다. 특히 소득계층별로 상위 20%(소득 5분위)와 하위 20%(소득 1분위)의 소득구성은 큰 차이를 보였다. OECD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1분위 노인의 소득구성에서 공적연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0~90%에 이르지만, 노동소득은 10.0%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반면 5분위 노인의 소득구성은 노동소득과 연금소득의 구성 비율에서 국가간 편차를 보이는데, 사회보험 위주로 사회보장정책이 발달한 보수주의 국가인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경우 5분위 노인의 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20%대로 여전히 낮았으며 연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60~70%로 높았다.

아시아 국가 중 베트남과 대만의 소득구성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베트남의 경우 소득 1분위 노인의 노동소득 비율이 50.0% 이상으로 가장

높고, 사적이전소득은 25.7~27.4%, 연금 제외 공적이전소득이 13.9~16.0% 수준이었다. 반면 대만은 사적이전소득이 약 36%로 가장 높고, 노동소득 비율은 20%대, 연금소득은 19.2~25.2%였다. 한편 베트남과 대만의 소득 5분위 노인의 소득구성은 공통적으로 노동소득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즉 아시아 국가들은 공적연금제도가 성숙한 유럽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아시아 국가 내에서도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발전 단계에 따라 소득수준별 소득구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은 2006년과 2016년 사이의 짧은 기간 중 2008년 7월 기초노령 연금의 도입, 2014년 7월 기초연금의 도입이라는 2차례의 공적연금제도의 확대를 경험하였다. 이로 인해 해당 기간 동안 연금소득의 비율이 2006년 6.2%에서 2016년 29.7%로 23.5%p의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 반대로 사적이전소득은 같은 기간 26.5%에서 13.2%로 13.3%p의 감소를 보였다. 사적이전소득의 경우 비율의 감소뿐만 아니라, 절대액의 감소율(2006년 기준 2,810.8달러 → 2016년 1,632.3달러) 또한 58.0%에 이른다(〈부표 5-2〉 참조). 즉 공적연금소득 확대기에 사적이전소득이 감소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며, 이는 공적이전소득 즉 기초연금의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초분석을 통한 결과로써 정교한 모델링을(modelling)을 통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는 강성호(2011), 김종예·금현섭(201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향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의 수급액이 증가하더라도 그 증가하는 비율 또는 금액만큼 노인의 소득 증가 혹은 빈곤감소 효과로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만, 베트남 같은 아시아 국가들의 가족주의 경향은 여전히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보다 사적이전소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따른 공적연금제도 혹은 공적이전소득 제도의 큰 변화가 포착되지 않았으며, 사적이전소득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강성호(2011)는 실제 공적이전소득의 확대에 의한 대체효과뿐만 아니라 가족 부양의식의 변화도 사적이전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대만의 경우 가족의 부양의식 변화로 인한 사적이전소득의 구축 효과는 자료의 한계로 직접적인 검증은 하지 못하였지만, 자녀동거 노인의 비율이 2005년과 2016년 모두 50.0%에 육박하여, 이로 인한 사적이전소득의 구축 효과도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유럽 국가의 경우 소득자료의 구축 시점인 1970년대 후반부터 이미 사적이전소득이 매우 낮아 연금을 포함한 공적이전소득의 확대가 사적이전소득을 감소시켰는지 분석하기 힘들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LIS 소득자료의 사적이전소득은 가구 간(between households)의 이전소득을 측정하는 것이며, 가구 내에 동거하면서 이전하는 소득, 즉 성인 자녀와 노부모 사이의 사적이전소득은 포함하지 못한다. 또한 LIS 소득자료의 사적이전소득은 친척/가족 간 사적이전소득뿐만 아니라 비영리 단체로부터의 이전소득을 함께 측정한다는 엄밀한 의미에서 성인 자녀와 노부모 사이의 사적이전소득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의 경우 분석자료의 제한으로 최근 기초연금 금액 인상의 효과는 포함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동거 형태를 구분할 때,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자녀가구주-노인동거의 가구 유형의 경우 가구주/배우자가 자녀인 경우로만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6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 대응방안

제 6 장 결론

제1절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복지제도의 발전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한국에서 고령층의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공적이전 정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한 거시적 접근과 함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LIS 등을 이용한 미시적 접근을 통해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변화 추이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Cox(1987)의 사적소득이전 동기에 관한 선구적 연구 이후 가족 간 사적이전의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공·사적이전의 대체 관계를 실증하는 연구가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나 아직 합의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다만 최근 연구에서 공·사적이전의 대체 관계가 약화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배성우 외, 2008; 전승훈, 박승준, 2011; 전승훈, 박승준, 2012; 이정화, 문상호, 2014; 황남희 외, 2014; 박종선, 정세은, 2020; 최유성, 황남희, 2020).

공·사적이전에 관한 거시적 분석에서 한국의 유년층은 부양 재원으로 사적이전의 역할이 큰 반면 고령층은 공적이전의 역할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최근으로 오면서 고령층의 공적이전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데, 최근 노인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른 효과로 보인다. 고령층의 부양체계 변화 궤적을 통해, 공공이전의 증가(2010년 47.3% → 2017년 68.1%)와 민간이전의 감소(2010년 16.3% → 2017년 15.1%) 경향성을 확인하였

다. 즉 최근 한국 고령층의 부양체계에서 공·사적이전의 대체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38개국의 국민이전계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층을 부양하는 재원으로 사적이전은 아시아적 특성으로 유럽과 미주,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공적이전은 국가의 경제적 특성, 즉 소득수준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상대적으로 고소득 국가 고령층의 노후소득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공·사적이전에 관한 미시적 접근에서는 2011~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 최근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발전에 따라 공적이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커지고 있으나(2011년 181만 원 → 2019년 493만 원) 사적이전은 완만하게 약화된 모습을 확인하였다(2011년 99만 원 → 2019년 64만 원). 따라서 국민이전계정(가구 간 이전 + 가구 내 이전)보다 사적이전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 간 이전)에서도 고령층의 노후소득으로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대체 관계를 알 수 있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한국의 대표적인 소득분배 지표 생산자료라는 점에서 이를 통해 고령층의 빈곤율을 살펴보았다. 최근 공적이전 정책의 확대에 의해 고령층의 빈곤율은 2011년 49.2%에서 2019년 41.6%로 감소하였지만, 빈곤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즉 최근 약 10년간 고령층의 노후소득원에서 공적이전은 사적이전의 감소 폭보다 더 크게 증가하였지만, 한국 고령층의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는데 역부족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인 자녀는 사적이전이라는 가구 간 이전 행위뿐만 아니라 동거라는 가구 내 이전 행위를 통해 노부모를 부양한다는 점에서(이원진, 2018, pp.3-4), 자녀동거 여부에 따른 고령층의 빈곤율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녀동거는 고령층의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으로 오면서 고령층의 자녀동거 비

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고령층의 빈곤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LIS 분석에서도 한국의 경우 2006년과 2016년 사이의 짧은 기간 중 기초연금 중심의 공적연금 확대기에 사적이전이 감소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대체효과로 해석된다.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유사하게 고령층의 빈곤은 높은 수준이며, 자녀와 동거하는 고령가구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 향후 고령층의 빈곤 수준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층의 소득구성을 분석한 12개국의 LIS 국제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적연금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아시아권 국가(일본 제외)에서 고령층의 소득구성은 OECD 국가의 소득구성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데, 노동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비율은 높지만 연금소득과 연금 제외 공적이전소득의 비율이 매우 낮았다. 반면 비아시아권(일본 포함) 국가는 연금소득의 구성비가 높지만, 근로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 특히 비아시아권 내 OECD 선진국의 경우 이미 1970년대 후반이나 1980년대 초반부터 공적연금제도의 성숙도가 높아져,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사적이전소득이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시아 및 비아시아권 12개국은 공통적으로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고령층의 노동소득 구성비가 높아 가구 내 이전을 통한 부양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고령층이 자녀와 함께 살면 자녀의 노동소득을 경제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즉 고령층의 가구 형태가 1인 혹은 부부가구 중심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노후소득원으로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관계를 분석할 때, 사적이전의 범위는 가구 간 이전에 국한하기보다 가구 내 이전을 포함해야 현실을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정책 대응방안

1.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방향성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방향성은 고령층의 부양에서 개인(자산, 저축), 가족(사적 이전), 국가(공적 이전)의 책임 비중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냐의 문제와 관련 있다. 노후 부양체계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의 적절한 비율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치가 개입되어야 하며, 이는 사회적으로 합의를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OECD 선진국의 공·사적이전 관계를 살펴볼 때, 한국의 사적이전소득이 감소하는 경향은 고령층 부양의 책임이 가족에서 사회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된다. 한국의 복지국가로의 진전과 가족 부양의식의 약화는 고령층 부양을 위한 공적이전 정책에 더 많은 역할을 강조하지만, 이 경우 고령층을 부양하는 생산연령층에게 공적이전 정책의 기여 확대라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인구수가 확대되는 고령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생산연령인구의 사회적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생애주기별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실태와 변화, 특히 고령층의 공·사적이전의 실태와 변화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한국 고령층의 소득보장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연구진은 가족 부양의식의 약화와 노부모에 대한 사적이전의 감소 속 높은 노인빈곤율을 경험하는 한국에서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방향성은 첫째, 빈곤 노인 대상 소득보장 지원 강화, 둘째,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공적이전 정책의 방향 설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연구의 제3장과 제4장, 제5장에서는 분석자료와 분석 시기에 상관 없이 고령층의 노후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의 증가와 사적이전소득의 감소 추세를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향후 진행될 노인인구의 절대 규모 증가는 국가 차원에서 고령층 대상 공적이전을 더욱 빠른 속도로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010~2017년 동안 국민이전계정을 분석한 결과, 최근으로 오면서 1인당 기준보다 총량 수준에서 고령층 대상 공적이전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와 LIS를 이용한 분석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2011~2019년 동안 40%대(가처분소득 기준)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발전으로 인한 공적이전의 규모 확대가 고령층의 빈곤율을 낮춘 덕분에 노인의 빈곤율이 2011년 49.2%에서 2019년 41.6%로 7.6%p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전체 인구의 빈곤율(10%대)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는 향후 고령층 대상 공적이전의 확대는 우선 빈곤 노인에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편 최근 공적이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고령층의 빈곤 수준이 높은 것은 정부의 소득이전 확대 규모가 성인 자녀로부터 받는 사적이전의 감소를 메꿀 수 없는 불충분한 수준의 결과일 수 있다.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대체 관계를 고려하여 어느 수준의 공적이전이 고령층의 생활 수준을 전체 국민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소득보장정책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는 고령인구를 부양하는 생산연령인구의 부담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즉 인구구조 변화 시대에 고령층의 빈곤율을 낮추되, 생산연

령층의 부양 부담을 크게 확대하지 않기 위해 노후소득보장정책은 빈곤 노인을 우선 배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5장에서 분석한 LIS의 선진국 실증자료를 근거로 비춰볼 때, 한국의 노인빈곤율을 20%대까지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의 소득구성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대략 60%대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별로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가족 부양의식 등의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한계가 있지만, OECD 내에서 상대적으로 노인 빈곤 수준이 높은 호주, 일본, 미국 등에서도 노인의 가구소득 중에서 연금소득의 비율이 약 60% 수준에 이른다. 2019년 한국은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이 가처분소득의 22.0%에 불과하여,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고민이 요구된다. 특히 현세대 고령층은 기여 기반의 국민연금보다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초연금의 확대나 기여를 전제로 하지 않는 보완적인 연금제도로의 접근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볼 수 있다.

고령층의 높은 빈곤율은 현세대 노인에 대한 이야기지만, 미래 세대 노인의 노후소득수준 역시 크게 향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우해봉, 한정립, 2017; 황남희 외, 2021). 고령층 대상 부양정책은 빈곤 노인에 초점을 두고 빈곤 수준을 낮추기 위한 방향으로 우선 설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때 현세대 노인과 미래 세대 노인을 구분하여 정책적 접근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현세대 노인은 이미 정규 노동시장에서 점진적 은퇴를 거치고 있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 기여 기반의 공적연금의 수급권 확보나 보장수준의 확대로 접근하기 어렵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초연금제도 등 공공부조 성격의 정책적 접근이 가능하다. 반면 미래 세대 노인은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인 국민연금과 더불어 퇴직연금의 수급권과 보장수준 확대를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하 노후소득보장정책 대응방안은

별도의 항에서 제도별로 개선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한국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고령인구의 증가와 동시에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연령인구의 고령인구 부양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일자리 지원 정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고령층 대상 공적이전의 확대는 생산연령층의 부양 부담을 크게 확대시킨다는 점, 과거보다 고령층의 교육 및 건강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고령층 대상의 일자리 지원을 통해 스스로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역시 유효한 고령층 부양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 기여 기반의 소득보장정책은 개인의 일자리를 토대로 안정적인 준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자리 차원의 접근은 고령층의 소득보장 지원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고령층 부가조사에 의하면, 55~79세 고령자의 고용률은 56.0%이며 이보다 높은 68.1%가 향후 취업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1.7.27., p.1, p.14). 이러한 고용정책적 접근은 고령층의 근로 욕구를 충족하며, 생산연령층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고령층 대상의 일자리 정책은 정규 노동시장에서 정년 이후 동일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보조금이나 관련 제도 지원(계속고용 장려금, 임금체계 개편 지원 등), 고령층의 욕구와 신체 특성 등에 맞춘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지원 등), 연공급이 아닌 직무 또는 역할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령자의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이 평균 49.3세라는 점에서(통계청, 2021.7.27., p.2), 현재 추진 중인 전직 준비 지원 서비스(재취업 연계, 컨설팅, DB 구축 등)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퇴직 이전에 재취

업 기회를 확대 제공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주된 일자리에서 이미 퇴직한 구직자에게는 직업능력 개발 지원과 직업교육 이후 취업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노후소득보장정책 대응방안

노후소득보장정책 대응방안은 현세대 노인과 미래 세대 노인으로 구분하여 소득보장제도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고령층 지원방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도, 주택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찾아보고, 그리고 아직 연금소득을 준비할 수 있는 미래(예비) 고령층 지원방안으로 국민연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며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한국은 199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 1994년 개인연금, 2005년 퇴직연금,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 순차적으로 도입되었고,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기본 틀을 형성하였다. 이 외에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농지 등 자산을 활용하는 주택연금(2007년), 농지연금(2011년)이 추가로 도입되었다.

1961년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 정책은 아니지만,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0층, 공공부조로써 노인의 소득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즉 한국은 국민연금 도입을 기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기초연금,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농지연금)으로 구성된 다층노후소득보장체제로 외연을 확장하였다(박중서, 이윤경, 김은지 외, 2020).

[그림 6-1]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3층	개인/주택·농지연금 등				257만 명 ¹⁾ (가입)
2층	퇴직금/퇴직연금(DB, DC)	개인형 IRP			812만 명 ²⁾ (가입)
1층	국민연금		특수지역 연금	2,145만 명(가입) 461만 명(수급) ³⁾	
	기초연금			502.7만 명(수급) ⁴⁾	
0층	국민기초생활보장				163만 명(수급)
대상	근로자	자영자	기타	공무원 등	대상

주: 1) 세제적격 개인연금(2015), 2) 2016년 기준, 3) 노령(373만 명), 유족(71만 명), 장애(7만 명), 일시금(9만 명)(2018. 6월 기준), 4) 2018. 6월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19.1.9.).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https://www.mohw.go.kr/react/policy/policy_bd_vw.jsp?PAR_MENU_ID=06&MENU_ID=06410507&CONT_SEQ=347332&page=1 (2021.5.21. 인출)

가. 현세대 노인의 소득보장 지원방안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총 수급자 수는 2020년 약 204.6만 명이며, 전체 인구 대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급률은 3.9%이다(통계청, 2021c).³⁸⁾ 반면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이보다 높은 8.9%이다. 2018년 기준 노인빈곤율이 40.6%에 이르지만(OECD 홈페이지, 2021b),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약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38) 2020년 기준 전체 인구는 5,183만 6,239명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204만 6,213명이다.

고령층의 높은 빈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많은 노인이 더 많은 금액의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표 6-1〉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1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규모(A) ¹⁾	3,570,925	4,320,787	5,366,109	6,541,168	8,151,867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규모(B) ²⁾	324,832 (24.1)	367,657 (25.8)	391,214 (26.8)	419,452 (27.0)	723,514 (35.4)
65세 이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A/B×100%)	9.1	8.5	7.3	6.4	8.9

주: 1) 장래인구추계 중위가정을 기준으로 산출함.

2) ()는 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1) 통계청. (2021f). 국가통계포털-장래인구추계: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2 (2021.6.14. 인출)

2) 통계청. (2021b). 국가통계포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02&conn_path=I2 (2021.6.14. 인출)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 2017년 급여별 보장성 강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교육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순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2021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 상태이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써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김성아, 홍성운, 2021; 이윤경, 강은나, 황남희, 주보혜, 김세진, 2019).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을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빈곤 노인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급여수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추

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현재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이며,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이다.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은 상대빈곤율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중위소득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상대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현재 생계급여의 30% 수준은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수급 신청자가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이러한 재산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주거나 토지, 금융 등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재산 전반적으로 금액을 상향 조정, 환산율 인하 등 산정 방식의 개선이 요구되지만, 특히 자동차의 소득 환산율이 높아서 자동차 보유로 인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거주용 재산(월 1.04%)이나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의 낮은 환산율에 비해, 자동차는 월 100%(다만, 장애인 또는 생업용 자동차는 월 4.17% 적용)로 지나치게 높은 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다(박종서 외, 2020).

2) 기초연금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개혁의 대안으로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이후 기초연금으로 확대·발전하였다. 기초연금제도는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만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로 지급범위를 유지하였지만, 급여수준을 2배(20만원)로 인상하였다. 이후 기초연금액이 계속 인상되어 2021년 현재 30만원이다. 그러나 기초연금 급여액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빈곤율

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초연금의 인상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구조 고령화 속 노인인구 규모의 절대적인 증가에 따라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노인인구의 일정 비율을 정책 수혜자로 정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수혜 규모 확대와 그에 따른 재정 확대가 즉각적으로 반영되며, 후세대의 사회적 부양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비록 현세대 노인의 빈곤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즉각적인 방안으로 기초연금 급여의 상향 조정이 자주 이야기되지만, 이러한 세대 간 형평성 문제로 인해 노인 빈곤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지점이다.

2020년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률은 66.7%로(보건복지부, 2021, p.6). 기초연금의 목표 수급률 70.0%를 밑돈다. 이는 현행 기초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해야 수급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소득 하위 70%의 노인 중 일부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못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초연금에 대한 신청 안내를 강화하고 거주불명자 등 수급권자 발굴을 통해 정책적 목표치인 70.0%로 수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박종서 외, 2020, p.833).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리로 기준 중위소득의 30%를 생계급여 기준액으로 정하여, 현재 가구소득 수준이 이러한 기준액보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성 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을 낮추기 때문에 사실상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불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의 상대적 박탈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이들을 대상으로 10만 원의

부가급여를 도입하거나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인정액에서 기초연금을 제외 혹은 일정 비율(가령, 30%)을 공제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다(서한기, 2021.10.10.).

3) 주택연금제도

주택연금제도는 한국 고령층의 자가 주택 소유율이 높다는 점에서 자산 유동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도입되었다. 즉 주택연금은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3층을 구성하며, 자산 축적을 통한 노후소득 마련이라는 점에서 현세대 노인의 소득 지원방안으로 의미가 있다.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97%는 부동산을 보유하며 평균 부동산 규모는 2억 6,183만 원이다(이윤경 외, 2020a).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만 55세 이상³⁹⁾의 고령층이 가입할 수 있다. 이때 다주택자라도 주택의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며,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가입이 가능하다(HF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202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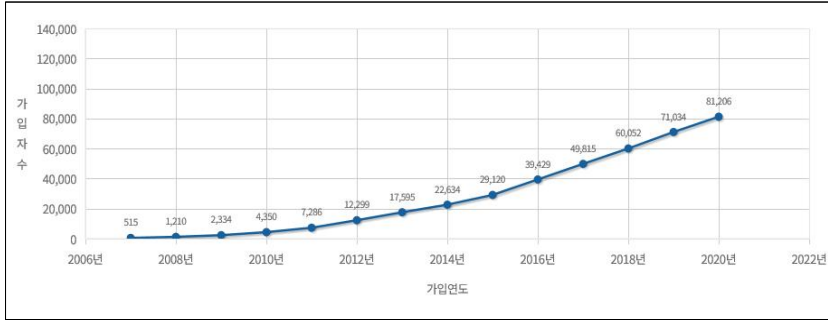
[그림 6-2]와 같이 최근 3년간 주택연금의 신규 가입건수는 1만 건 이상이며 누적 가입건수는 2020년 말 기준 8만 1,206명으로 수혜자가 많지 않다(HF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2021b). 주택연금제도는 가입요건의 제한,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 주택 상속 동기 등으로 인해 가입대상자의 1.0%가 가입하여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박종서 외, 2020).

39)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된다.

218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공·사적이전의 변화와 대응방안

[그림 6-2] 주택연금 가입자 수: 2006~2022년

(단위: 명)



자료: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2021b). 주택연금 이용현황. <https://www.hf.go.kr/hf/sub03/sub03.do> (2021.10.3. 인출)

2021년 9월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이며, 평균 월 지급금은 107만 원, 평균 주택가격은 3억 2,400만 원이다(HF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2021b). 주택연금제도의 지역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가입자의 약 68%가 서울·인천·경기와 같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이 지역의 평균 주택가격이 가장 높고 월 지급금도 높다(〈표 6-2〉 참조).

〈표 6-2〉 지역별 주택연금 이용 현황

(기준: 2021년 9월 말 기준, 단위: 명, %, 세, 만 원)

지역	가입자 수 (명)	전체 가입자 수 대비 비중(%)	평균 연령 (세)	평균 월 지급금(만 원)	평균 주택가격 (만 원)
전국	88,752	100.0	72	107만 원	324백만 원
서울	25,316	28.5	72	143만 원	458백만 원
경기	29,646	33.4	72	112만 원	337백만 원
인천	5,263	5.9	73	80만 원	230백만 원
부산	7,323	8.2	72	92만 원	258백만 원
대구	4,139	4.7	73	85만 원	236백만 원
광주	1,767	2.0	74	67만 원	181백만 원
대전	2,190	2.5	73	82만 원	221백만 원

지역	가입자 수 (명)	전체 가입자 수 대비 비중(%)	평균 연령 (세)	평균 월 지급금(만 원)	평균 주택가격 (만 원)
울산	1,002	1.1	71	79만 원	234백만 원
충북	1,384	1.6	73	62만 원	164백만 원
충남	1,440	1.6	73	63만 원	170백만 원
세종	174	0.2	70	103만 원	350백만 원
전북	1,634	1.8	73	55만 원	147백만 원
전남	802	0.9	74	52만 원	136백만 원
경북	1,487	1.7	73	58만 원	163백만 원
경남	3,389	3.8	72	64만 원	188백만 원
강원	1,443	1.6	74	61만 원	154백만 원
제주	353	0.4	73	92만 원	268백만 원

자료: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2021b). 주택연금 이용현황. <https://www.hf.go.kr/hf/sub03/sub03.do> (2021.10.3. 인출)

한편 주택연금은 근저당권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가입자가 사망한 후 6개월 이내에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 경우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가입자 사망 후 자녀와의 상속 분쟁이 발생하면 배우자는 기간 내에 주택연금을 승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근저당권 방식의 현행 주택연금은 보증금 없는 월세만 허용하고 있어 유희공간 임대를 통한 추가적인 소득 획득이 어려운 구조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주택연금의 운영방식을 신탁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신탁방식은 주택연금 가입자(위탁자 겸 수익자)가 수탁자(우선수익자)에게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의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주택연금 대출을 보증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가입자 사망 시 자녀 동의 없이 배우자 승계가 가능하고, 빈방 등의 유희공간을 보증금 있는 월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임대하여 추가적인 노후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박종서 외, 2020).

나. 미래 세대 노인의 소득보장 지원방안

1) 국민연금제도

2020년 말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는 2,210만 명으로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가입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장가입자(1,432만 명), 지역가입자(689만 명), 임의계속가입자(52만 명), 임의가입자(36만 명) 순으로 많다(국민연금공단, 2021). 사업장가입자의 확대로 사업장가입자는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임의계속가입자 및 임의가입자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역가입자의 약 61%는 장기체납자 또는 납부예외자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이다. 이는 향후 연금제도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무연금·저연금자의 문제가 여전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0.12., p.32). 따라서 최근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된 저소득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비정형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 제고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표 6-3〉 국민연금 가입 추이

(단위: 명, %)

구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계
1988. 12	4,431,039 (100.0)	- -	1,370 (0.0)	286 (0.0)	4,432,695 (100.0)
1999. 12	5,238,149 (32.2)	10,822,302 (66.6)	32,868 (0.2)	168,570 (1.0)	16,261,889 (100.0)
2009. 12	9,866,681 (53.0)	8,679,861 (46.6)	36,368 (0.2)	40,935 (0.2)	18,623,845 (100.0)
2019. 12	14,157,574 (63.7)	7,232,063 (32.6)	328,727 (1.5)	497,865 (2.2)	22,216,229 (100.0)

구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계
2020. 12	14,320,025 (64.8)	6,898,118 (31.2)	362,328 (1.6)	526,557 (2.4)	22,107,028 (100.0)

주: 1)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사업장 입·퇴사, 사업의 등록 및 폐업 등으로 수시로 변경되며, 납부 예외자를 포함함.

2) ()는 비율을 의미함.

자료: 국민연금공단. (2021). 2020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국민연금 가입자 수(가입자의 종류별, 연도별). https://www.nps.or.kr/jsppage/share/public_request/request_04_01.jsp (2021.6.17. 인출)

한편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 상한은 59세로 현재 60세 이상 근로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되어 2033년까지 65세가 될 예정이라는 점에서⁴⁰⁾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수급 연령 조정에 맞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고령층의 국민연금 가입 제외는 기업에서 인건비 부담을 낮춰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 가입 상향 조정에 따른 고령 근로자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접근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노령연금 기준)은 2020년 말 54만 원으로 노후소득으로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보험 가입기간 확대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황남희 외, 2021).

한편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에 내재된 저부담-고수익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담과 혜택 수준을 조정하고, 향후 인구구조 고령화, 경제 성장 둔화, 노동시장 불안정성 증대로 인한 국민연금 재정의 미래 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율의 현실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40) 2021년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2세이다.

재정 안정화 개혁에도 불구하고 2018년 제4차 재정추계 결과에 의하면 2057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며(보건복지부, 2018.12. p.2), 재정 안정화의 한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도입 당시 3.0%에서 1993년 6.0%, 1998년 9.0%로 소폭 상향 조정된 이후 20여 년 넘게 고정되어 있다. 특히 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의하면, 인구구조 고령화의 가속화로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이 당겨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급여 강화는 기여(보험료) 인상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황남희 외, 2021).

즉 인구구조 고령화에 대응하여 미래 세대 노인을 위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가입 사각지대의 축소와 가입기간 확대를 위한 지원이 요구되며, 동시에 재정 측면에서 보험료 인상도 함께 이루어져 지속가능성 및 후세대의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

2) 퇴직연금제도

2005년 말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 등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근로자의 노후소득 재원 확충을 위해 퇴직금제도의 대체 제도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2010년부터 전체 사업장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전체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 대상이며, 2012년부터 신설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금제도가 아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⁴¹⁾ 퇴직연금은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55세부터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41)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연금은 사적연금으로 분류되지만, 법으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준공적연금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비록 퇴직연금이 공적연금은 아니지만 미래 세대 노인 대상 소득보장에서 주요한 정책 수단이므로, 현재 퇴직연금의 의무 가입에도 노후소득보장의 역할이 매우 작다는 점에서 향후 활성화를 위한 가입-운영-수급 단계별 개선이 요구된다.

먼저 가입 단계에서는 제도의 가입 강제, 가입 또는 추가 기여가 어려운 경우 충분한 유인체계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 대상 근로자 대비 실제 가입률은 2020년 52.4%이며, 사업장 단위 도입률은 27.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통계청, 2021.12.23.).

운영 단계에서는 현재 높은 수준의 퇴직연금 해지 및 중도 인출 비율을 낮춰서 퇴직연금 적립금이 누수되지 않고 장기 투자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퇴직연금은 이직이나 퇴직이 아니더라도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사유가 광범위하여 생활자금으로 소진되고 있다.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 사유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또는 주거 목적의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요양비 부담 등이며, 여기에 해당할 경우 어려움 없이 퇴직연금의 전액 중도 인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퇴직연금이 주요 노후소득원으로 역할을 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박종서 외, 2020, p.775). 통계청의 2020년 퇴직연금 통계에 의하면, 중도인출 인원은 6만 9,139명, 인출금액은 2조 6,192억 원이며 주된 중도인출 사유는 주택 구입 42.3%, 장기요양 23.7%, 주거 임차 23.1% 등으로 확인된다(통계청, 2021.12.23., p.19).

〈표 6-4〉 퇴직연금 가입 현황(근로자 기준)

(단위: 명, %)

연도	가입 대상 근로자 수	가입 근로자 수	가입률
2016년	10,588,453	5,221,202	49.3
2017년	10,830,161	5,437,938	50.2
2018년	10,937,712	6,104,704	51.3
2019년	11,508,858	5,929,473	51.5
2020년	11,865,340	6,219,497	52.4

주: 2016년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현황은 2016년 및 2017년 공개된 자료의 수치가 상이하여 최근 공개된 2017년 퇴직연금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함.

자료: 1) 통계청. (2018.12.28.). 2017년 하반기 및 연간 퇴직연금통계.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 행정통계과 보도자료. p.10.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7/index.board?bmode=read&bSeq=&aSeq=372316&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2021.6.30. 인출)

2) 통계청. (2019.12.27.). 2018년 기준 퇴직연금통계결과.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 행정통계과 보도자료. p.10.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7/index.board?bmode=read&bSeq=&aSeq=379638&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2021.6.30. 인출)

3) 통계청. (2020.12.24.). 2019년 퇴직연금통계결과.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 행정통계과 보도자료. p.10.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7/index.board?bmode=read&bSeq=&aSeq=387113&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2021.6.30. 인출)

4) 통계청. (2021.12.23.). 2020년 퇴직연금통계결과.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 행정통계과 보도자료. p.10.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7/index.board?bmode=read&bSeq=&aSeq=415954&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2021.12.27. 인출)

또한 퇴직연금의 운영 단계에서 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2020년 기준 2.58%로(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2021.4.5, p.4), OECD 국가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박종서 외, 2020, p.777).⁴²⁾

마지막으로 수급 단계에서는 일시금 수령을 억제하여 노후 연금으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0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영현황 통계에

42) 2008~2018년 동안 평균 수익률이 터키 9.5%, 네덜란드 7.7%, 캐나다 7.4%, 아이슬란드 7.2%, 이스라엘 7.1% 등이다(OECD, 2018, p.29; 박종서 외, 2020, p.777에서 재인용).

의하면, 퇴직연금이 시작된 계좌의 연금수령 비율은 3.3%에 불과하여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다(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2021.4.5., p.4).



〈국내 자료〉

- 감사연구원. (2019). 주요국의 저출산 정책의 비교 연구. 서울: 감사연구원·감사원.
https://www.bai.go.kr/eri/board/base/detail?brdId=ERK_0001&postNo=192 (2021.10.25. 인출)
- 강성진, 전형준. (2005). 사적 소득이전의 동기와 공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에 대한 연구. 공공경제, 10(1), 23-46.
- 강성호. (2011). 부양의식 및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와 소득보장효과. 재정정책논집, 13(1), 113-144.
-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2021.4.5.).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 100조 원 돌파-퇴직연금 총 적립금 255.5조 원 달성.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107 (2021.10.15. 인출)
- 관계부처 합동. (2020.1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117> (2021.5.27. 인출)
- 국민연금공단. (2021a). 2020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국민연금 가입자 수(가입자의 종류별, 연도별). https://www.nps.or.kr/jsppage/share/public_request/request_04_01.jsp (2021.6.17. 인출)
- 국민연금공단. (2021b). 연금이 쉬워진다-국민연금 개혁의 방향. #은: 국민연금 BLOG. (2020.6.5.). https://m.blog.naver.com/pro_nps/221990930916 (2021.7.29. 인출)
- 김중예, 김현섭. (2018). 공적이전소득에 따른 사적이전소득의 변화: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2(4), 25-53.
- 김현섭, 백승주. (2014). 공적연금, 사적이전 그리고 주관적 후생: 소득안정화 역할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2(1), 145-175.
- 김성아, 홍성운. (202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실태 및 정책 경험 분석

- 과 함의. 보건복지포럼, 41-54.
- 김수영, 이강훈. (2009). 이전소득의 독거노인가구 빈곤경감 효과 비교. 한국노년학, 29(4), 1559-1575.
- 김유경. (2016). 부양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부양특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35, 62-79.
- 김을식, 이지혜. (201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중손실 측정: 내생성을 고려한 도구변수 분석. 재정학연구, 9(1), 113-148.
- 김진욱. (2002). 한국의 소득불평등 변화 요인 분석: 가구주 특성을 중심으로. 사회경제평론, 19, 267-293.
- 김태완, 신화연, 임완섭, 김기태, 최준영, 김보미, ..., 남재량. (2020). 노인빈곤의 실태와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연구.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희삼. (2008). 사적 소득이전과 노후소득보장. 한국개발연구, 30(1), 71-130.
- _____. (2014).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족과 정부의 역할. KDI Policy Study, 2, 1-106.
- 박기백, 성명재. (2016). 공적, 사적이전소득이 가구내 소득 이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제발전연구, 22(3), 1-30.
- 박종서, 이윤경, 김은지 외.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마련 지원 연구. 세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종선, 정세은. (2020). 한국 고령자 가계에 있어서 공적연금이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연구, 36(3), 29-53.
- 반정호. (2008). 최근 소득분배 현황과 조세 및 공적이전의 재분배효과 - 근로자 가구를 중심으로 -. 노동리뷰, 22-40.
- 배성우, 손지아, 박순미. (2008). 빈곤노인가구의 특성과 빈곤탈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42, 291-317.
- 백동현, 김용훈. (2013).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 구축효과 분석. 지방행정연구, 27(1), 249-272.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2011, 2014, 2017,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18.8.17.).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5739 (2021.5.21. 인출)
- 보건복지부. (2018.12.).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종합운영계획.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7106&page=1 (2021.4.3. 인출)
- _____. (2019.1.9.).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https://www.mohw.go.kr/react/policy/policy_bd_vw.jsp?PAR_MENU_ID=06&MENU_ID=06410507&CONT_SEQ=347332&page=1 (2021.5.21. 인출)
- _____. (2021). 통계로 본 2020년 기초연금.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68592 (2022.1.4. 인출)
- _____. (2021.6.7.). 새로운 노인층의 등장, 달라지는 노인세대-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5977 (2021.6.7. 인출)
- 서한기. (2021.10.10.). [이슈 In]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우는 저소득노인 50만명 ... 언제 눈물씻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1007054200501> (2021.12.27. 인출)
- 설귀환, 임병인. (2019).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기초노령연금의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동태적 구축효과 분석. 보건사회연구, 39(4), 249-279.
- 성재민. (2006).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나타난 사적이전. 월간 노동리뷰, 15, 75-83.

- 손병돈. (2020). 사적 소득이전과 소득간 관계. 사회보장연구, 36(4), 33-56.
- 신혜리, 남승희, 이다미. (2014).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 및 두 이전소득 간의 관계 연구. 사회과학연구, 40(1), 117-138.
- 안서연, 이은영. (2018). 노인의 소득-자산 구성과 수준에 관한 연구: OECD 주요 국가 비교를 중심으로. 전주: 국민연금연구원.
- 여유진. (2013). 노인의 가구유형별 빈곤과 공적 이전의 빈곤감소효과 분석: 정책 함의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40, 185-219.
- 여유진, 남찬섭, 조한나. (2018).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복지국가의 역사적·철학적 기반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2019). 한국의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 이슈앤포커스, 364, 1-8.
- 우해봉. (2021). 인구구조 변화와 국민연금의 대응 방안. 연금포럼, 81, 19-30.
- 우해봉, 한정림. (2017). 소득계층별 다층노후소득보장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사회보장연구, 33(4), 211-239.
- 이경배. (2018). 기초연금 확대가 노인가구의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재정학연구, 11(1), 77-107.
- 이석민, 박소라, 김수호. (2015). 공적이전소득이 근로소득과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 국민기초생활보장 장기수급자의 구조적 문제 분석. 행정논총, 53(3), 171-195.
- 이윤경, 강은나, 황남희, 주보혜, 김세진. (2019). 노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주보혜, 남궁은하, ..., 김경래. (2020a).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윤경, 변수정, 김은정, 진화영, 주보혜, 남궁은하, ..., 정윤경. (2020b).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원진. (2013). 노년기 소득불평등 증가의 원인: 누적적 혜택/불리 모형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사회학, 47(5), 241-275.
- _____. (2018). 노인에 대한 자녀의 경제적 부양 추이의 결정요인: 동거와 사적이전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원진, 정해식, 전지현. (2019).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정화, 문상호. (2014). 기초연금이 고령자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 - 성향점수매칭(PSM) 이중차이(DID)를 활용한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3(3), 411-442.
- 장현주. (2019).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 대도시권과 비대도시권 노인가구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3(2), 359-379.
- 전승훈, 박승준. (2011). 공적 이전소득이 사적 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경제연구, 29(4), 171-205.
- _____. (2012).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에 대한 비교 분석. 경제연구, 30(2), 63-92.
- 정해식, 이다미, 이병재, 한겨레. (2020).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 담론 분석.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진재문, 김수영, 문경주. (2014). 노인가구의 빈곤 실태와 소득이전 효과에 관한 연구: 빈곤율, 빈곤갭, 소득이전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1(3), 239-258.
- 최유성, 황남희. (2020). 우리는 생애주기적자를 어떻게 충당하나? - 세대 간 경제 이해: 국민이전계정. KOSTAT 통계플러스, 2020년 가을호. 40-53. 대전: 통계청 통계개발원.
- 통계청. (2011.12.15.). 2011년 사회조사 결과(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bmode=read&aSeq=252721&pageNo=&rowNum=10&amSeq=&sTarget=&sTxt= (2021.5.20. 인출)
- _____. (2012.12.20.). 2012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bmode=read&bSeq=&aSeq=269287&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2021.10.1. 인출)

- _____. (2013.12.4.). 2013년 사회조사 결과(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bmode=read&bSeq=&aSeq=310486&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2021.5.20. 인출)
- _____. (2014.11.27.). 2014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bmode=read&bSeq=&aSeq=332322&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2021.10.1. 인출)
- _____. (2015.11.26.). 2015년 사회조사 결과(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bmode=read&bSeq=&aSeq=349987&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2021.5.20. 인출)
- _____. (2016.11.15.). 2016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bmode=read&bSeq=&aSeq=357457&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2021.10.1. 인출)
- _____. (2017). 가계금융복지조사 빈곤지표 및 소득분배지표 작성 변경사항. <http://www.narastat.kr/metascv/svc/SvcMetaDcDtaPopup.do?confmNo=930001&inputYear=2017> <https://meta.narastat.kr/> (2021.10.14. 인출)
- _____. (2017.11.7.). 2017년 사회조사 결과(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bmode=read&bSeq=&aSeq=364361&pageNo=1&rowNum=10&navCount=10&

- 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2021.5.20. 인출)
- _____. (2018). 가계금융복지조사 보고서. <https://kostat.go.kr/wsearch/search.jsp> (2021.10.7. 인출)
- _____. (2018.12.20.).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보도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4/4/index.board?bmode=read&bSeq=&aSeq=372146&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2021.10.7. 인출)
- _____. (2018.11.6.). 2018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bmode=read&bSeq=&aSeq=371501&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2021.10.1. 인출)
- _____. (2018.12.28.). 2017년 하반기 및 연간 퇴직연금통계.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 행정통계과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7/index.board?bmode=read&bSeq=&aSeq=372316&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2021.6.30. 인출)
- _____. (2019.1.22.). 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발 결과 - 연령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 측정. 통계청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보도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3/6/index.board?bmode=read&bSeq=&aSeq=372921&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2021.2.24. 인출)
- _____. (2019.3.28.).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보도자료.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2/6/index.board?bmode=read&aSeq=373873 (2021.6.28. 인출)
- _____. (2019.9.2.).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보도자료.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2/6/index.board?bmode=read&aSeq=373873

- at.go.kr/portal/korea/kor_nw/1/2/6/index.board?bmode=read&bSeq=&aSeq=377226&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2021.6.28. 인출)
- _____. (2019.11.25.). 2019년 사회조사 결과(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bmode=read&bSeq=&aSeq=378876&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2021.5.20. 인출)
- _____. (2019.12.9.). 2016년 국민이전계정. 통계청 통계개발원 연구기획실, 경제통계국 소득통계개발과 보도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3/6/index.board?bmode=read&bSeq=&aSeq=379134&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2021.5.3. 인출)
- _____. (2019.12.27.). 2018년 기준 퇴직연금통계결과.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 행정통계과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7/index.board?bmode=read&bSeq=&aSeq=379638&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2021.6.30. 인출)
- _____. (2020a).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의 조사자료와 행정자료의 통합방법 이해. 대전: 통계청.
- _____. (2020b). 통계설명자료-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표. <http://www.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aPopup.do?confmNo=930001&inputYear=2020> (2021.10.7. 인출)
- _____. (2020c). 통계설명자료-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지침서. <http://www.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aPopup.do?confmNo=930001&inputYear=2020> (2021.10.7. 인출)
- _____. (2020.11.18.). 2020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

- korea/kor_nw/1/6/3/index.board?bmode=read&bSeq=&aSeq=386249&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2021.10.1. 인출)
- _____. (2020.12.7.). 2017년 국민이전계정. 통계청 경제통계국 소득통계개발과 보도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3/6/index.board?bmode=read&bSeq=&aSeq=386491&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2021.1.28. 인출)
- _____. (2020.12.24.). 2019년 퇴직연금통계결과.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 행정통계과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7/index.board?bmode=read&bSeq=&aSeq=387113&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2021.6.30. 인출)
- _____. (2021a).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집계자료[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onn_path=I2 (2021.10.11. 인출)
- _____. (2021b). 국가통계포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02&conn_path=I2 (2021.6.14. 인출)
- _____. (2021c). 국가통계포털-국민이전계정: 생애주기적자계정(국가총액규모).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outLink=Y&entrType=#content-group (2021.2.28. 인출)
- _____. (2021d). 국가통계포털-국민이전계정: 연령재배분계정(국가총액규모).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outLink=Y&entrType=#content-group (2021.2.28. 인출)
- _____. (2021e). 국가통계포털-인구동향조사, 장래인구추계. <https://kosis.kr/>

- 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content-group. (2021.11.11. 인출)
- _____. (2021f). 국가통계포털-장래인구추계: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2 (2021.6.14. 인출)
- _____. (2021.7.27.).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보도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3/2/index.board?bmode=read&bSeq=&aSeq=390960&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2021.12.24. 인출)
- _____. (2021.9.29.). 2021 고령자통계.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403253 (2021.10.3. 인출)
- _____. (2021.11.17.). 2021년 사회조사 결과(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bmode=read&bSeq=&aSeq=415115&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2021.12.3. 인출)
- _____. (2021.12.23.). 2020년 퇴직연금통계결과.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 행정통계과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7/index.board?bmode=read&bSeq=&aSeq=415954&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2021.12.27. 인출)
- _____. (각 연도). 2011~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 통계청 MDIS(RAS21072002) 내부자료.
- _____. (각 연도). 2010, 2014, 2017년 국민이전계정 원자료[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2021.7.9. 인출)

- _____. (각 연도). 국민이전계정 원자료[세부 전산자료]. 통계청 소득통계개발과-1187(2021.7.30.)
- 하석철. (2012). 부모-자녀 간 소득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수혜자인 부모와 제공자인 자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4(2), 101-136.
- 행정안전부. (2021.1.4.). 사상 첫 인구감소, 세대수는 사상 최대. 행정안전부 주민과 보도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82058 (2021.6.28. 인출)
- 황남희, 이상협, 양찬미. (2014). 인구구조 변화와 공·사적 이전 부담실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황남희. (2021a). 고령층의 연금 수급권 구조 분석. *연금포럼*, 84, 7-17.
- _____. (2021b). 노인의 경제활동과 경제 수준. *보건복지포럼*, 300, 7-21.
- 황남희, 김태완, 진화영, 김경래, 신화연, 최옥금. (2021). 중장기 노후소득보장 전망 및 정책 연구. 세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2021a). 주택연금 소개. https://www.hf.go.kr/hf/sub03/sub01_02_01.do (2021.7.20. 인출)
- _____. (2021b). 주택연금 이용현황. <https://www.hf.go.kr/hf/sub03/sub03.do> (2021.10.3. 인출)

<국의 자료>

- Altonji, J. G., Hayashi, F., & Kotlikoff, L. J. (1997). Parental altruism and inter vivos transfers: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5(6), 1121-1166. <https://www.journals.uchicago.edu/doi/pdf/10.1086/516388> (2021.12.24. 인출)
- Arrondel, L., & Masson, A. (2006). Altruism, Exchange or Indirect Reciprocity: What Do the Data on Family Transfers Show?.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Giving, Altruism and Reciprocity*, 2, Chapter 14, pp. 971-1053, Elsevier.

- Becker, G. S., & Lewis. H. G. (1973).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2), pp. S279-S288.
- Becker, G. S. (1974). A Theory of Social Interac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6), 1063-1093.
- Cox, D. (1987). Motives for Private Income Transfer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3), 508-546.
- Cox, D., & Jimenez. E. (1989). Private transfers and public policy in developing countries: A Case study for Peru. *Working paper*, 345. USA: World Bank, Policy research department.
- Cox, D., & Rank, M. R. (1992). Inter-vivos transfers and intergenerational exchang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4(2), 305-314. <https://www.jstor.org/stable/pdf/2109662.pdf> (2021.12.23. 인출)
- Cox, D., & Jakubson, G. (1995). The connection between public transfers and private interfamily transfer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7(1), 129-167.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004727279401438T> (2021.12.23. 인출)
- Cox, D., & Fafchamps, M. (2008). Extended Family and Kinship Networks: Economic Insights and Evolutionary Directions. *Handbook of Development Economics*, 4(58).
- Garland, D. (2014). The welfare state: A fundamental dimension of modern government. *European Journal of Sociology*, 55(3), 327-364.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03).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tatistics. Report II of Sevente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International Labour Office Geneva. <https://www.ilo.org/public/english/bureau/stat/download/17thicls/r2hies.pdf> (2021.11.28. 인출)
- La, H. A., & Xu, Y. (2017). Remittances, social security, and the crowd

- ng-out effect: Evidence from Vietnam, *Journal of Asian Economics*, 49, 42-59,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1049007817300416>. (2021.12.24. 인출)
- Lee, R., & Mason, A. (Eds.). (2011). *Population Aging and the Generational Economy: A Global Perspective*, UK(Cheltenham and Northampton): Edward Elgar.
- LIS Cross-National Data Center in Luxembourg. (2020). LIS 유저가이드. <https://www.lisdatacenter.org/> (2021.6.20. 인출)
-
- _____ . (각 연도). Luxembourg Income Study-Inequality and Poverty Key Figures. <http://www.lisdatacenter.org/lis-ikf-webapp/app/search-ikf-figures> (2021.7.2. 인출)
-
- _____ . (각 연도). DATA ACCESS. <http://www.lisdatacenter.org/data-access/> (2021.7.2. 접속)
- Mason, A., Lee, R., & Lee, S-H. (2010). Population dynamics: Social Security, markets, and families,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63(3). 145-175.
- National Transfer Accounts Project. (각 연도). DATA-Database[데이터파일]. <https://www.ntaccounts.org/web/nta/show/> (2021.4.3. 인출)
- Nikolov, P., & Adelman, A. (2019). Do private household transfers to the elderly respond to public pension benefits? Evidence from rural China, *The Journal of the Economics of Ageing*, 14,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2212828X1930091X>. (2021.12.24. 인출)
- Nikolov, P., & Bonci, M. (2020). Do public program benefits crowd out private transfers in developing countries? A critical review of recent evidence. *World Development*, 134,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305750X20300930>. (2021.12.24. 인출)

- OECD. (2018). Pension market in Focus. <https://www.oecd.org/finance/private-pensions/pensionmarketsinfoocus.htm> (2021.12.24. 인출)
- _____. (2021a).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indicator). doi: 10.1787/8a801325-en (2021.9.6. 인출)
- _____. (2021b). OECD Stat: Social Protection and Well-being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s://stats.oecd.org/> (2021.12.24. 인출)
- Secondi, G. (1997). Private Monetary Transfers in Rural China: Are Families Altruistic?.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33(4), 487-511.
-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13). *National Transfer Accounts Manual: Measuring and analysing the generational economy*. New York: United Nations.

[부록 1]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분석 결과표

〈부표 4-1〉 가치분소득 증위값

구분	조사데이터										행정보안데이터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인구 가치분소득 증위값(A)	1,912	2,024	2,121	2,194	2,250	2,335	2,550	2,648	2,756	2,875			
65세 이상 노인 가치분소득 증위값(B)	969	1,049	1,097	1,181	1,227	1,260	1,467	1,562	1,638	1,699			
(B) ÷ (A)	0.51	0.52	0.52	0.54	0.55	0.54	0.58	0.59	0.59	0.59			
빈곤선	956	1,012	1,060	1,097	1,125	1,168	1,275	1,324	1,378	1,438			
전체 인구 사례 수(명)	56,652	53,709	51,642	51,127	50,872	49,518	49,518	48,590	46,847	45,095			
65세 이상 노인 사례 수(명)	7,549	7,707	7,861	8,043	8,281	8,571	8,571	9,064	9,269	9,592			

주: 재평균 균등화 소득을 개인 단위로 분석함. 빈곤선은 전체 인구 가치분소득 증위값의 50%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재분석



(부표 4-2) 사적이전소득 및 사적이전지출 평균

구분	조사데이터							행정보원데이터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적이전소득	41	36	35	32	33	41	41	47	54	57
가구 간 이전소득	-	-	-	-	-	39	39	45	51	54
비영리 단체 이전소득	-	-	-	-	-	2	2	2	2	2
인구 사적이전지출	-94	-112	-108	-108	-108	-108	-108	-120	-134	-128
가구 간 이전지출	-45	-59	-55	-54	-54	-64	-64	-78	-94	-92
비영리 단체 이전지출	-48	-53	-53	-55	-54	-44	-44	-42	-40	-36
사적이전소득	144	132	127	118	115	137	137	146	161	159
가구 간 이전소득	-	-	-	-	-	134	134	143	157	154
비영리 단체 이전소득	-	-	-	-	-	3	3	3	4	5
인구 사적이전지출	-45	-70	-58	-56	-54	-65	-65	-78	-90	-95
가구 간 이전지출	-14	-33	-20	-17	-15	-32	-32	-46	-59	-67
비영리 단체 이전지출	-31	-37	-38	-39	-39	-33	-33	-31	-32	-28

주: 1) 계급군 균등화 소득을 가구 단위로 분석하며, 지출은 음수(-)로 표현함. 사적이전은 행정자료로 보완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6년 조사데이터와 행정보원데이터 수치가 일치함.

2) 가구 간 이전소득과 비영리 단체 이전소득은 2016년부터 사적이전소득을 세분화하여 조사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재분석

〈부표 4-3〉 연령집단별 비율 (단위: %)

구분	조사데이터										행정보완데이터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0~4세	5.1	5.2	5.0	4.8	4.7	4.5	4.5	4.3	4.0	3.6			
5~9세	5.0	5.2	5.2	5.3	5.4	5.7	5.7	5.5	5.3	5.4			
10~14세	6.7	6.3	6.1	5.8	5.4	5.3	5.3	5.6	5.5	5.7			
15~19세	7.2	7.1	7.0	6.8	7.0	6.7	6.7	6.4	6.1	5.5			
20~24세	6.1	6.4	6.5	6.8	6.8	6.1	6.1	5.8	5.7	5.5			
25~29세	5.9	6.1	5.8	5.8	5.7	5.6	5.6	5.3	5.1	5.2			
30~34세	7.3	7.6	7.7	7.1	6.6	6.1	6.1	5.3	4.9	4.6			
35~39세	7.8	7.7	7.6	7.5	7.5	7.6	7.6	7.6	7.3	6.9			
40~44세	8.7	8.7	8.5	8.4	8.3	8.1	8.1	7.9	7.8	7.8			
45~49세	8.1	8.0	8.1	8.0	8.2	8.4	8.4	8.7	8.5	8.3			
50~54세	8.0	8.1	7.9	7.8	7.6	7.8	7.8	7.7	8.1	8.3			
55~59세	6.2	6.5	7.1	7.4	7.6	7.8	7.8	8.1	8.2	8.0			
60~64세	4.8	4.7	4.7	5.2	5.5	6.1	6.1	6.6	7.2	7.6			
65~69세	4.3	3.8	3.9	4.1	4.3	4.4	4.4	4.4	5.0	5.6			
70~74세	3.8	3.7	3.7	3.6	3.6	3.7	3.7	3.7	4.1	4.2			
75~79세	2.7	2.6	2.7	2.8	2.9	3.0	3.0	3.4	3.6	3.8			
80세 이상	2.3	2.3	2.5	2.7	2.8	3.1	3.1	3.2	3.6	4.1			

주: 2016년 조사자료와 행정보완자료의 수치는 일치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재분석

연령
집단

(부표 4-4) 2019년 연령집단별 소득 평균

구분	(단위: 만 원/년, 평표가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순사회적접근	순공적접근	일차소득	가처분소득
0~4세	2,803	551	108	-88	-278	3,462	3,095
5~9세	2,917	681	153	-87	-424	3,752	3,241
10~14세	2,946	1,110	187	-98	-534	4,243	3,611
15~19세	3,012	959	255	-110	-508	4,226	3,607
20~24세	3,095	859	239	-97	-452	4,193	3,645
25~29세	3,272	850	286	-93	-420	4,409	3,897
30~34세	3,115	599	206	-95	-258	3,919	3,566
35~39세	3,035	642	163	-96	-342	3,840	3,402
40~44세	2,992	750	184	-103	-425	3,927	3,398
45~49세	3,124	1,113	223	-131	-533	4,461	3,797
50~54세	3,145	913	262	-121	-491	4,320	3,708
55~59세	2,904	968	346	-114	-344	4,218	3,759
60~64세	1,937	838	370	-56	138	3,145	3,227
65~69세	1,209	549	429	6	527	2,187	2,720
70~74세	783	400	459	54	565	1,642	2,260
75~79세	689	279	322	94	451	1,291	1,836
80세 이상	722	278	306	127	411	1,307	1,844
전체	2,572	773	264	-72	-221	3,609	3,316

주: 재평균 균등화 소득을 개인 단위로 분석하였으며, 빈곤선은 전체 인구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재분석

연령

〈부표 4-5〉 일차소득분위별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 (단위: %)

구분	조사데이터						행정보원데이터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일차소득 1분위	46.0	46.0	46.0	46.0	47.0	47.0	43.0	41.0	41.0	39.0
일차소득 2분위	18.0	17.0	16.0	17.0	17.0	17.0	17.0	18.0	19.0	20.0
일차소득 3분위	9.0	9.0	9.0	9.0	9.0	10.0	9.0	11.0	10.0	11.0
일차소득 4분위	7.0	6.0	7.0	6.0	6.0	6.0	6.0	7.0	7.0	7.0
일차소득 5분위	4.0	5.0	5.0	5.0	5.0	4.0	6.0	5.0	5.0	5.0
일차소득 6분위	4.0	4.0	5.0	4.0	4.0	5.0	5.0	5.0	4.0	5.0
일차소득 7분위	4.0	3.0	3.0	3.0	4.0	3.0	4.0	4.0	5.0	4.0
일차소득 8분위	3.0	3.0	3.0	4.0	3.0	3.0	3.0	3.0	3.0	3.0
일차소득 9분위	3.0	3.0	3.0	3.0	3.0	2.0	3.0	3.0	3.0	2.0
일차소득 10분위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주: 일차소득 분위는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균등화 일차소득을 기준으로 10분위로 구성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재분석

〈부표 4-6〉 2019년 일차소득분위별 소득 평균

구분	(단위: 만 원/년, 명목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순사업이전	순공적이전	일차소득	가처분소득			
일차소득 1분위	89	31	73	177	692	193	1,062			
일차소득 2분위	623	220	144	47	372	987	1,406			
일차소득 3분위	1,161	396	125	-5	170	1,682	1,848			
일차소득 4분위	1,471	635	143	-44	33	2,249	2,238			
일차소득 5분위	2,006	658	121	-62	-64	2,785	2,659			
일차소득 6분위	2,376	755	177	-91	-174	3,309	3,044			
일차소득 7분위	2,926	825	180	-101	-275	3,932	3,556			
일차소득 8분위	3,609	918	224	-147	-446	4,751	4,158			
일차소득 9분위	4,579	1,080	332	-184	-717	5,991	5,091			
일차소득 10분위	6,887	2,211	1,121	-308	-1,807	10,218	8,103			
전체	2,572	773	264	-72	-221	3,609	3,316			

소득
분위

주: 제삼근 균등화 소득을 개인 단위로 분석하였으며, 일차소득분위는 균등화 일차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를 10등분하여 구성함. 빈곤선은 전체 인구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재분석

〈부표 4-7〉 65세 이상 고령층의 특성

(단위: %)

구분	조사데이터					행정보안데이터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소득 분위	일차소득 1분위	46.0	46.0	46.0	46.0	47.0	43.0	41.0	39.0
	일차소득 2분위	18.0	17.0	16.0	17.0	17.0	17.0	18.0	20.0
	일차소득 3·4·5분위	20.0	20.0	21.0	20.0	20.0	22.0	23.0	24.0
	일차소득 6·7·8·9·10분위	17.0	17.0	17.0	17.0	16.0	18.0	18.0	17.0
연령	65~69세	33.0	31.0	30.0	31.0	32.0	31.0	31.0	32.0
	70~74세	29.0	30.0	28.0	27.0	26.0	26.0	25.0	24.0
	75~79세	21.0	21.0	21.0	21.0	21.0	21.0	22.0	21.0
	80세 이상	18.0	19.0	20.0	20.0	21.0	22.0	21.0	23.0
자녀와 동거하는 유배우 노인	15.0	17.0	18.0	18.0	18.0	17.0	17.0	16.0	15.0
자녀와 동거하는 무배우 노인	18.0	19.0	19.0	18.0	17.0	16.0	16.0	14.0	13.0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유배우 노인	45.0	43.0	42.0	43.0	44.0	47.0	47.0	48.0	50.0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무배우 노인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2.0	23.0

주: 1) 일차소득분위는 균등화 일차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를 10등분하여 구성함.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를 활용하여 ① 본인이 가구주/배우자이고 가구 내에 미혼/기혼 자녀 및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 ② 본인이 기혼 자녀 및 배우자이고, 가구 내에 손자녀 및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 ③ 본인이 이 부모인 경우, ④ 본인이 조부모이고 가구 내에 부모가 존재하는 경우 자녀와 동거하는 것으로 정의함.
2) 자녀와의 동거 여부는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함.

- ① 본인이 가구주 또는 배우자인데 가구 내에 미혼 자녀 또는 기혼 자녀 및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와 동거하는 것으로 코딩함.
- ② 본인이 기혼 자녀 또는 그 배우자인데 가구 내에 손자녀 또는 그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와 동거하는 것으로 코딩함.
- ③ 본인이 부모이면 자녀와 동거하는 것으로 코딩함.
- ④ 본인이 조부모인데 가구 내에 부모가 있으면 자녀와 동거하는 것으로 코딩함.
- ⑤ 그 밖의 사례는 모두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것으로 코딩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재분석

〈부표 4-8〉 65세 이상 고령층의 사회적접근 및 공적접근 평균

구분	조사데이터						행정보원데이터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회적접근	144	132	127	118	115	137	137	146	161	159
사회적접근지출	-45	-70	-58	-56	-54	-65	-65	-78	-90	-95
순사회적접근	99	62	69	62	61	72	72	68	71	64
공적접근	174	191	212	231	268	302	329	354	377	402
기초(노령)연금	60	63	64	98	138	139	138	140	159	190
기타 공적접근소득	57	62	64	68	68	69	76	81	85	101
공적접근지출	-110	-121	-131	-136	-136	-144	-176	-192	-201	-201
순공적접근	181	196	209	261	338	366	366	383	421	493
순사회적접근	99	62	69	62	61	72	72	68	71	64
순공·사회적접근	181	196	209	261	338	366	366	383	421	493
순공·사회적접근	281	258	278	323	399	438	438	451	491	557

주: 재평균 균등화 소득을 개인 단위로 분석하였으며, 사회적접근지출과 공적접근지출은 음수(-)로 표현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재분석

〈부표 4-9〉 65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 평균

구분	조사데이터						행정보원데이터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근로소득	526	605	648	683	691	688	808	848	891	884
사업소득	372	393	413	402	358	369	400	407	407	393
재산소득	183	186	188	191	220	222	348	365	361	385
소득원천 평균	99	62	69	62	61	72	72	68	71	64
순공적이전	181	196	209	261	338	366	366	383	421	493
일차소득	1,081	1,184	1,249	1,276	1,269	1,279	1,557	1,619	1,659	1,662
가처분소득	1,361	1,442	1,526	1,599	1,668	1,716	1,995	2,070	2,150	2,218
빈곤선	956	1,012	1,060	1,097	1,125	1,168	1,275	1,324	1,378	1,438
근로소득	39.0	42.0	42.0	43.0	41.0	40.0	41.0	41.0	41.0	40.0
사업소득	27.0	27.0	27.0	25.0	21.0	21.0	20.0	20.0	19.0	18.0
재산소득	13.0	13.0	12.0	12.0	13.0	13.0	17.0	18.0	17.0	17.0
가처분소득 평균 대비 비율(%)	7.0	4.0	5.0	4.0	4.0	4.0	4.0	3.0	3.0	3.0
순공적이전	13.0	14.0	14.0	16.0	20.0	21.0	18.0	18.0	20.0	22.0
일차소득	79.0	82.0	82.0	80.0	76.0	74.0	78.0	78.0	77.0	75.0
가처분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	100.0	100.0	100.0

주: 재평균 균등화 소득을 개인 단위로 분석하였으며, 빈곤선은 연도별 전체 인구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인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재분석

(단위: 만 원/년, 명목가격, %)

〈부표 4-10〉 65세 이상 고령층의 하위집단별 순사적이전 및 순공적이전 평균

구분	조사데이터							행정보원데이터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소득 분위	일차소득 1분위	222	191	186	166	155	182	179	182	188	185
	일차소득 2분위	68	32	48	52	53	46	68	79	87	81
	일차소득 3·4·5분위	12	-12	-12	-25	-13	-12	-1	-13	-5	-15
	일차소득 6·7·8·9·10분위	-103	-174	-129	-108	-111	-112	-89	-105	-120	-123
순사적 이전	65~69세	57	32	30	19	18	23	23	10	2	6
	70~74세	105	53	78	80	80	79	79	72	69	54
	75~79세	152	104	92	88	85	102	102	99	110	94
	80세 이상	106	78	90	77	79	105	105	116	131	127
자녀 동거 여부	자녀와 동거하는 유배우 노인	10	-30	-14	-6	-12	-2	-2	-16	-14	-36
	자녀와 동거하는 무배우 노인	-14	-32	-30	-32	-20	-23	-23	-26	-28	-29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유배우 노인	124	87	97	83	80	90	90	78	74	68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무배우 노인	204	171	172	159	147	159	159	177	183	169
소득 분위	일차소득 1분위	335	365	391	448	534	571	574	616	655	725
	일차소득 2분위	208	227	230	306	368	390	468	491	548	620
	일차소득 3·4·5분위	112	101	116	163	240	269	311	332	395	467
	일차소득 6·7·8·9·10분위	-186	-186	-193	-170	-134	-122	-153	-199	-221	-158
순공적 이전	65~69세	223	248	266	311	389	408	412	415	441	527
	70~74세	179	200	209	273	344	378	387	430	501	565
	75~79세	159	155	172	221	312	338	339	362	388	451
	80세 이상	137	150	159	210	281	317	303	302	335	411
자녀 동거 여부	자녀와 동거하는 유배우 노인	67	83	85	125	190	209	208	163	176	262
	자녀와 동거하는 무배우 노인	-39	-39	-43	-18	39	10	17	15	25	88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유배우 노인	288	320	345	407	493	529	517	542	585	644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무배우 노인	221	245	269	321	382	394	418	446	478	533

(단위: 만 원/년, 명목가액)

구분	조사데이터						행정보원데이터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소득 분위	일차소득 1분위	557	556	577	613	690	753	753	798	843	910
	일차소득 2분위	276	259	278	358	421	435	536	570	635	700
	일차소득 3·4·5분위	124	90	104	138	227	257	310	319	391	452
	일차소득 6·7·8·9·10분위	-289	-359	-323	-278	-245	-234	-242	-303	-342	-282
순공·사적 이전	65~69세	280	280	296	330	407	431	434	425	443	533
	70~74세	283	252	288	353	424	457	467	502	569	618
	75~79세	311	259	265	309	396	440	441	461	497	545
	80세 이상	243	228	249	287	360	422	407	419	466	537
자녀 동거 여부	자녀와 동거하는 유배우 노인	78	53	71	118	178	206	205	147	161	227
	자녀와 동거하는 무배우 노인	-53	-71	-73	-50	19	-13	-6	-11	-3	59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유배우 노인	413	407	442	490	573	619	607	620	659	712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무배우 노인	425	416	441	480	529	553	578	624	661	702

주: 제곱근 균등화 소득을 개인 단위로 분석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재분석

(부표 4-11) 65세 이상 고령층의 하위집단별 일차소득 및 기초분소득 평균

구분	조사데이터							행정보원데이터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일차소득 1분위	98	117	124	123	107	101	171	177	175	181
일차소득 2분위	743	829	855	854	864	871	933	955	961	935
소득 분위	1,486	1,610	1,682	1,732	1,752	1,796	1,945	1,983	2,071	2,080
일차소득 3·4·5분위	3,665	3,961	4,140	4,248	4,432	4,422	4,958	5,154	5,291	5,348
일차소득 6·7·8·9·10분위	956	1,012	1,060	1,097	1,125	1,168	1,275	1,324	1,378	1,438
빈곤선	1,230	1,430	1,571	1,607	1,620	1,662	1,986	2,089	2,207	2,187
65~69세	1,046	1,087	1,116	1,139	1,179	1,220	1,520	1,617	1,565	1,642
70~74세	892	1,002	1,038	1,037	986	1,020	1,230	1,262	1,314	1,291
연령	1,082	1,144	1,173	1,197	1,137	1,046	1,298	1,304	1,337	1,307
일차소득	956	1,012	1,060	1,097	1,125	1,168	1,275	1,324	1,378	1,438
빈곤선	1,871	1,962	2,109	2,183	2,273	2,317	2,759	2,799	3,109	3,003
자녀와 동거하는 유배우 노인	2,090	2,204	2,255	2,343	2,324	2,479	2,740	2,871	2,934	2,897
자녀와 동거하는 무배우 노인	772	849	889	914	913	933	1,233	1,326	1,344	1,451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유배우 노인	324	317	326	305	319	341	460	492	550	595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무배우 노인	956	1,012	1,060	1,097	1,125	1,168	1,275	1,324	1,378	1,438
빈곤선										

(단위: 만 원/년, 평곡가계)

구분	조사데이터					행정보원데이터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소득 분위	일차소득 1분위	655	672	701	736	797	854	924	975	1,018	1,091
	일차소득 2분위	1,019	1,088	1,133	1,212	1,286	1,306	1,469	1,525	1,597	1,635
	일차소득 3·4·5분위	1,610	1,700	1,786	1,870	1,979	2,053	2,255	2,302	2,461	2,532
	일차소득 6·7·8·9·10분위	3,376	3,601	3,818	3,970	4,186	4,188	4,716	4,850	4,950	5,066
연령	빈곤선	956	1,012	1,060	1,097	1,125	1,168	1,275	1,324	1,378	1,438
	65~69세	1,510	1,710	1,867	1,937	2,027	2,093	2,420	2,514	2,650	2,720
	70~74세	1,329	1,340	1,404	1,492	1,603	1,677	1,987	2,118	2,134	2,260
	75~79세	1,203	1,261	1,302	1,346	1,383	1,460	1,670	1,723	1,811	1,836
가처분 소득	80세 이상	1,325	1,372	1,421	1,483	1,497	1,467	1,706	1,723	1,803	1,844
	빈곤선	956	1,012	1,060	1,097	1,125	1,168	1,275	1,324	1,378	1,438
	자녀와 동거하는 유배우 노인	1,948	2,015	2,180	2,301	2,451	2,523	2,964	2,946	3,271	3,230
	자녀와 동거하는 무배우 노인	2,037	2,133	2,182	2,293	2,342	2,467	2,734	2,860	2,932	2,956
자녀 동거 여부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유배우 노인	1,185	1,255	1,331	1,404	1,486	1,552	1,840	1,946	2,002	2,163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무배우 노인	749	733	767	785	848	894	1,038	1,116	1,211	1,297
	빈곤선	956	1,012	1,060	1,097	1,125	1,168	1,275	1,324	1,378	1,438

주: 재평균 균등화 소득을 개인 단위로 분석하였으며, 빈곤선은 연도별 전체 인구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임.
 자료: 통계청. (가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재분석

〈부표 4-12〉 65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율

(단위: %, %p)

구분	조사데이터					행정보원데이터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A) 일차소득	61.7	59.6	59.3	60.9	61.7	61.7	59.7	58.9	59.5	60.5
(B) 시장소득	58.7	57.9	57.8	59.1	59.9	59.7	57.5	56.7	58.5	59.0
(C) 가처분소득	49.2	48.8	48.4	47.1	46.7	46.7	43.7	42.4	42.1	41.6
빈곤율	-3.0	-1.8	-1.5	-1.8	-1.8	-2.1	-2.3	-2.2	-1.0	-1.5
(B)-(A)	-9.5	-9.1	-9.4	-12.0	-13.2	-13.0	-13.7	-14.3	-16.4	-17.4
(C)-(B)										

주: 제1고급 균등화 소득을 개인 단위로 분석하였으며, 빈곤선은 연도별 전체 인구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임. 일차소득/시장소득/가처분소득 빈곤율과 그 차이를 표기하였음.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재분석

[부록 2] LIS를 이용한 분석 결과표

〈부표 5-1〉 OECD 주요국의 노인 소득 항목별 평균 금액

(단위: USD 2017)

구분	노르웨이 (2016년)	오스트리아 (2016년)	독일 (2018년)	그리스 (2016년)	호주 (2014년)	캐나다 (2017년)	영국 (2018년)	미국 (2019년)	일본 (2013년)	한국 (2006년)	한국 (2016년)
노동소득	9,901	5,897	5,858	3,972	8,568	9,858	4,673	20,465	10,536	10,402	9,710
자본소득	3,121	1,469	2,440	907	5,625	3,804	1,315	6,903	1,665	381	275
연금소득	32,591	34,560	27,048	15,312	15,646	25,612	21,250	29,323	14,342	1,110	3,789
연금 제외 공적이전소득	2,900	1,529	686	284	1,115	1,231	2,117	555	134	1,105	1,616
사적이전소득	5	97	71	136	92	791	54	313	376	2,811	1,632

자료: LIS 소득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작성

〈부표 5-2〉 한국의 자녀가구 동거 형태에 따른 소득 항목별 평균 금액(2006년, 2008년, 2014년, 2016년)

(단위: USD 2017)

구분	전체				노인가구주(비동거)				자녀가구주-노인동거			
	2006년	2008년	2014년	2016년	2006년	2008년	2014년	2016년	2006년	2008년	2014년	2016년
노동소득	10,402	10,148	9,892	9,710	6,983	7,311	7,836	7,764	20,288	20,203	21,057	22,515
자본소득	381	438	390	275	452	496	423	305	177	224	214	85
연금소득	1,110	1,411	3,034	3,789	1,316	1,675	3,285	4,014	503	464	1,653	2,300
연금 제외 공적이전소득	1,105	1,178	1,299	1,616	1,273	1,299	1,392	1,670	621	753	794	1,247
사적이전소득	2,811	2,759	1,829	1,632	3,284	3,153	1,923	1,736	1,440	1,365	1,315	970

자료: IIS 소득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작성

〈부표 5-3〉 가구 유형별 비율

(단위: %)

구분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2016년)	독일 (2018년)	그리스 (2016년)	호주 (2014년)	캐나다 (2017년)	영국 (2018년)	미국 (2019년)	일본 (2013년)	대한 (2016년)	베트남 (2013년)	한국 (2016년)
노인가구주	95.0	89.7	98.4	90.5	92.8	85.4	96.2	91.2	80.7	53.6	75.2
자녀가구주-노인동거	-	7.9	0.5	8.0	-	-	1.8	5.2	17.6	45.5	23.4
기타	5.1	2.4	1.1	1.5	7.2	14.6	2.1	3.5	1.7	0.9	1.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IIS 소득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작성

간행물 회원제 안내

회원제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국제사회보장리뷰」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120,000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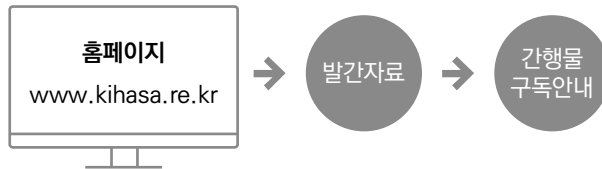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정기 간행물 회원

35,000원

가입방법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02-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02-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